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11호

2025. 12. 11.(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5-3525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

[행정예고]

제2025-3504호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 17

◈ 고 시

제2025-678호 행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19

제2025-6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 22

제2025-681호 마포로5구역 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 23

제2025-684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 30

제2025-686호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 33

제2025-687호 구로동 51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44

제2025-688호 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고시 ····· 61

제2025-689호 관악산근린공원(원신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6

제2025-690호 신내4가로공원(가칭)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5

제2025-693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92

제2025-694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95

제2025-695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97

제2025-696호 대모산근린공원(일원지구)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99

제2025-697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 127

제2025-698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129

제2025-699호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139

제2025-70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154

제2025-701호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5
제2025-703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 고시 ····· 194
제2025-704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7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97

◈ 공 고

제2025-3310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236
제2025-344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237
제2025-3442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238
제2025-3443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241
제2025-3444호 도시계획시설 사업(낙산근린공원 전망대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43
제2025-344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249
제2025-344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250
제2025-344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251
제2025-3453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252
제2025-3462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253
제2025-3463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254
제2025-346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255
제2025-3466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257
제2025-3467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266
제2025-3468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274
제2025-3473호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공시송달 공고 ····· 280
제2025-3479호 2025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 282
제2025-3480호 『상암 택지개발지구내』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사업용지 공급 공고 ····· 286
제2025-348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289
제2025-3488호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공시송달 공고 ····· 291
제2025-34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 294
제2025-3491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95
제2025-349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296
제2025-3496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304
제2025-3505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326
제2025-3506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 329
제2025-3520호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330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제110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334
제111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교지 · 시설물 임차기간에 관한 규칙 ····· 339

[입법예고]

제2025-469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41

◈ 구 고 시

제2025-99호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중구) ····· 352
제2025-145호 도시관리계획(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랑구) ····· 353
제2025-155호 도시관리계획(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북구) ····· 360
제2025-1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은평구) ····· 365
제2025-17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고시(동작구) ····· 368
제2025-17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 고시(동작구) ····· 374
제2025-2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초구) ····· 378
제2025-11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송파구) ····· 380

◈ 구 공 고

제2025-2188호 도시관리계획[종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①-1 (고려시장상가)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열람공고(성북구) ····· 381
제2025-20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은평구) ····· 415
제2025-20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은평구) ····· 418
제2025-207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은평구) ····· 425
제2025-207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은평구) ····· 433

제2025-2080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은평구) ····· 436
제2025-2081호 도시계획시설(진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은평구) ····· 442
제2025-208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은평구) ····· 445
제2025-208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은평구) ····· 447
제2025-2084호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은평구) ····· 449
제2025-2257호 도시계획시설(온수근린공원 연의지구)사업 공사 완료 공고(양천구) ····· 452
제2025-2173호 「상도동 283-226번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보상 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동작구) ····· 453
제2025-24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서초구) ····· 455
제2025-2764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55-16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강남구) ····· 457
제2025-2778호 도시공원(대모산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강남구) ··· 460
제2025-2209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송파구) ····· 461

◈ 사업소고시

제2025-4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62
제2025-4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62

◈ 사업소공고

제2025-5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강남소방서) ····· 463
제2025-47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영등포소방서) ····· 466
제2025-481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467

◈ 기 타

제2025-4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69

◈ 정 정

제2025-70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정정) 고시 ····· 470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525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개혁의 일관성 ·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영향분석 시 계량화된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시장이 수립한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다.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영향분석 결과에 대해 관계 실 · 본부 · 국장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규제 타당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함 (안 제5조)

라.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 직능단체 등의 규제정비 요청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마.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그 판단 기준으로 진입 · 경쟁 제한, 규제 수준의 현저한 부당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을 명시함 (안 제11조의2)

바. ‘재심사’ 규정을 신설하여 관계 실 · 본부 · 국장이 규제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개혁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창의규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창의규제담당관(전화: 2133-77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스: 02-768-8893

2) 이메일: 25rkdehdwn11@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창의규제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의 등록 및 입증책임) ① 각 실·본부·국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창의규제담당관은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규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②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실·본부·국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제1항에 따른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실·본부·국장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3조(규제의 공표) 창의규제담당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제사무목록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심사

제4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실·본부·국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실·본부·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① 실·본부·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본부·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2.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3. 규제 수단의 적절성
4. 그 밖에 실·본부·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본부·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장 규제의 정비 등

제6조(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 소관부서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규제개혁 업무 소관 실·본부·국장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한 4급 이상 공무원이 대리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협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 및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요문서에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실시 전에 창의규제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창의규제담당관은 법령·조례 등에 의견수렴 절차가 규정되어 있거나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창의규제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장이 사전협의 없이 자치법규 입법안을 입법예고하거나 중요문서를 고시·공고하려는 경우 소관부서에 사전협의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창의규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에 조례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규제사항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제출) ① 실·본부·국장은 제9조제4항의 사전협의 검토결과가 조례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법제심사 또는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별지 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조례 제7조에 따른 시민·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해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중요규제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실·본부·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2. 국제기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3.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4.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5. 그 밖에 시장이 중요규제로 보아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관계 실·본부·국장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본부·국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실·본부·국장에게 통보하고, 실·본부·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제10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각 실·본부·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개선권고 및 재심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실·본부·국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실·본부·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실·본부·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본부·국장은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 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실·본부·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규제총괄관

제16조(규제총괄관의 근무 형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촉된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으로 하며, 주당 2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규제총괄관의 수당) ① 규제총괄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규제총괄관의 수당 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제10조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심 의 의 결 사 항

(안)

제 출 자	○○○ 실·본부·국장
제출년월일	20 . . .

『 안』에 대한

신 설 · 강 화 규 제 검 토

Ⅰ 제 · 개정안 개요

1. 제 · 개정사유

2. 주요내용

□

○

○

Ⅱ 규 제 심 사 (안)

1. 심사대상 규제내용

규제사무명	규 제 사 무 내 용	비고

2. 규제의 신설 · 강화의 목적

○

○

3. 규제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

○

4. 관련 기관·단체 의견조회 결과

○

○

5. 규제 소관부서 자체심사 결과

○ 일시 :

○ 장소 :

○ 참석 :

○ 심사결과

-
-
-

6. 규제의 존속기한

○

참고 자료

1. 제·개정안
2. 관련 법령(발췌)
3. 규제영향분석서
4. 자체심사의견서
5. 기타 현황 자료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504호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2040 서울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위 치: 서울시 공업지역(16.76㎢, 다른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제외)
 다. 수립권자: 서울특별시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2025. 12. 11. ~ 12. 30. (20일간)
 나. 공개내용: 2040 서울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다.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02-2133-8328)

3.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고 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붙임양식) 작성 후 이메일(1pinetree@seoul.go.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02-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제출서

계 획 명	2040 서울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위 치	서울특별시 공업지역 전역 16.76㎢ (산업단지 등 제외)	
계획 수립기관	서울특별시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에따라 행정예고한 「2040 서울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78호

행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89호(2005.12.1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70호(2008.07.31.)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56호(2024.12.26.)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행당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행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행당 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77번지 일원
  • 면적 : 71,016.9㎡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효용증진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재편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 시행자(변경)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 사무소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5.12.15. ~ 2025.12.31.
   (1단계 사업준공 2019.12.05. / 2단계 사업준공 2023.06.29.
/ 3단계 사업준공 2025.12.31.)
   - 변경 : 2005.12.15. ~ 2026.12.31.
   (1단계 사업준공 2019.12.05. / 2단계 사업준공 2023.06.29.

/ 3단계 사업준공 2026.12.31.)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토지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아.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1)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철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주차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라) 광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마) 공원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바) 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사)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아) 방수설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행당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행당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효용증진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
-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재편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77번지 일원
- 면적 : 71,016.9㎡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 시행자(변경)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 사무소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5.12.15. ~ 2025.12.31.
  (1단계 사업준공 2019.12.05. / 2단계 사업준공 2023.06.29.
  / 3단계 사업준공 2025.12.31.)

- 변경 : 2005.12.15. ~ 2026.12.31.
(1단계 사업준공 2019.12.05. / 2단계 사업준공 2023.06.29.
/ 3단계 사업준공 2026.12.31.)

바.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내용(변경없음) : 생략
1)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6)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없음)
7)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아.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없음) : 생략
가. 개발계획 관련 결정도(변경 없음)
나. 실시계획 관련 결정도(변경 없음)
다. 지형도면(변경 없음)

4.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 02-2133-8495)
- 성동구 도시계획과 (☎ 02-2286-5553)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02-3416-365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하천의 명칭 : 청계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2층

3. 점용의 목적
  - 목 적 : 서울시 청계천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 전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중구 태평로1가 1 등 12개소
  - 면 적 : A=260.0㎡

5. 점용기간
 [변경]
  - <커넥X천 파빌리온> : 2025. 9. 29. ~ 2026. 12. 30. (457일간)
  - <그곳에 있었다_청계천 2025> : 2025. 9. 25. ~ 2030. 9. 25. (5년간)
  - <그곳에 있었다 2024> : 2025. 9. 25. ~10. 31. (37일간, 철거완료)
  - <청계유석> : 2025. 9. 15. ~ 12. 10. (87일간)
  - <기억의 자리>, <청계천 조우>, <청계초록: 눈길 손길>
    : 2025. 9. 15. ~ 2026. 4. 30. (151일간)
 [당초]
  - <커넥X천 파빌리온> : 2025. 9. 29. ~ 2026. 12. 30. (457일간)
  - <그곳에 있었다_청계천 2025> : 2025. 9. 25. ~ 2030. 9. 25. (5년간)
  - <그곳에 있었다 2024> : 2025. 9. 25. ~10. 31. (37일간)
  - <기억의 자리>, <청계유석>, <청계천 조우>, <청계초록: 눈길 손길>
    : 2025. 9. 15. ~ 11. 30. (77일간)

6. 최초허가 연월일 : 2025. 9. 1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81호

마포로5구역 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98호(2022.3.3.)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37호(2022.5.4.)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39호(2022.5.18.)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정정,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111호(2022.11.23.)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된 마포로5구역 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6차(2025.11.0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되어 정비계획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5구역 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1)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마포로5구역	충정로3가, 합동 28-5번지 일대	61,194.8	-	61,194.8	건설부고시 제345호('79.9.21)

(2) 정비지구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마포로5구역 9-1지구	중구 순화동 6-12 일원	1,591.6	-	1,591.6	

3)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해당없음)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조서(변경)

(1) 사회복지시설(변경)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사회복지시설	-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	부지면적 : - 연면적 : 1,701.51㎡	서울시고시 제2022-98호 ('22.3.3.)	

■ 사회복지시설(변경) 사유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변경내용	비 고
폐지	사회 복지시설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	시설 폐지	• 기존 공공기여 예정시설이었던 도심권50플러스센터의 위탁 운영 종료('22.11.29)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고 공공기여시설을 공공지원시설로 변경

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변경)

구 분		산정내용	비 고
도입 용도	기정	50플러스센터	• 기존 사회복지시설(50플러스센터) 운영(예정)부서 수요요청 취소에 따라, 공공기여시설 재수요조사를 이행하고 공공지원시설(운영 : 市 총무과)로 변경
	변경	공공지원시설	
시설연면적		1,701.51㎡	• 전용면적 851.62㎡ / 공용면적 849.89㎡ • 2층(단일사용), 3층(공동사용)
건축비		3,782,727원/㎡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4년), 부가세 제외
설치비용		6,436,347,818원	• 건축비 × 공공기여시설 연면적
부지가액		21,712,352원/㎡	• 사업시행계획인가 종전 감정평가금액 기준('22.7.27)
환산부지면적		414.52㎡	• 건축물 환산면적 + 토지지분면적
건축물 환산면적		296.44㎡	• 설치비용 ÷ 부지가액
토지지분면적		118.08㎡	• 기부채납시설 면적 ÷ 전체시설 면적 × 대지면적 = (1,701.51㎡ ÷ 22,935.14㎡) × 1,591.60㎡
순부담율		20.6%	• 구역 평균 순부담 16.5% 이상

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해당없음)

6)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7)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변경없음)
9)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없음)
※ 「마포로5구역 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38호, 2023.6.22.)」로 갈음
10)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1)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변경없음)
12)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3) 환경성 검토결과(변경없음)
14)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5)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6)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 (변경없음)
17)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해당없음)
19) 구역 내 옛길, 옛 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해당없음)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 (㎡)	구 분		비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마포로5구역 9-1지구	순화동 6-11 일원	1,591.6	1,591.6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사회복지시설(변경)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사회복지시설	-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	부지면적 : - 연면적 : 1,701.51㎡	서울시고시 제2022-98호 ('22.3.3.)	

■ 사회복지시설(변경) 사유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변경내용	비 고
폐지	사회 복지시설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	시설 폐지	• 기존 공공기여 예정시설이었던 도심권50플러스센터의 위탁 운영 종료('22.11.29)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고 공공기여시설을 공공지원시설로 변경

3)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Ⅲ. 2025년 제16차(' 25.11.0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Ⅵ. 관련도면 : 붙임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02-2133-4925) 및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77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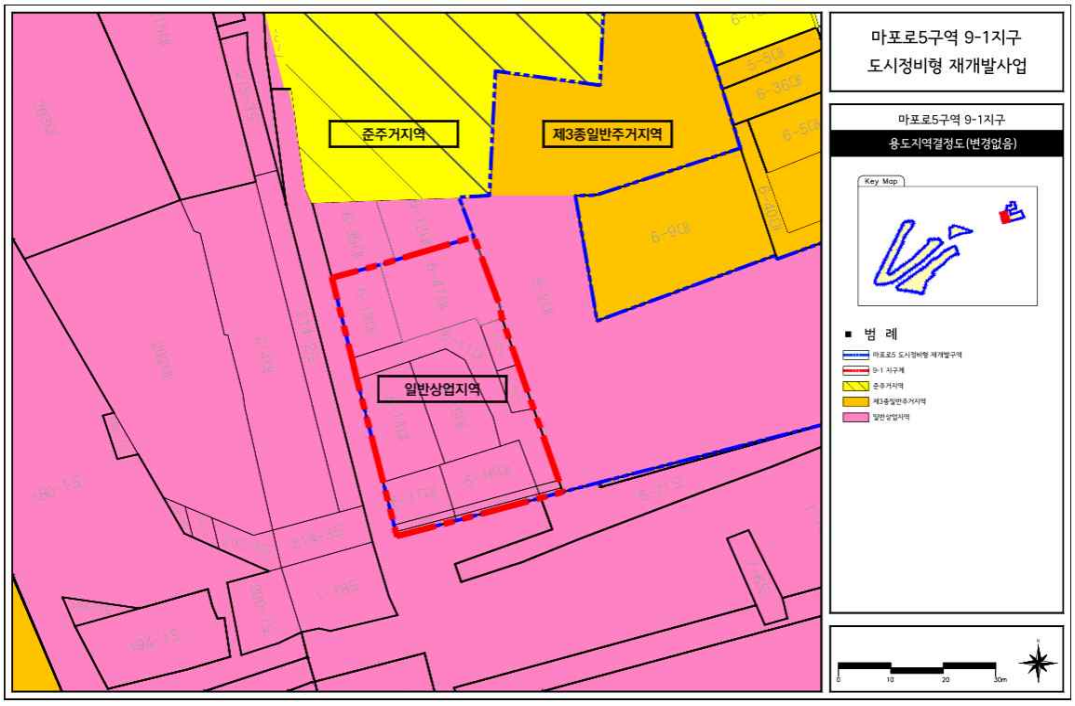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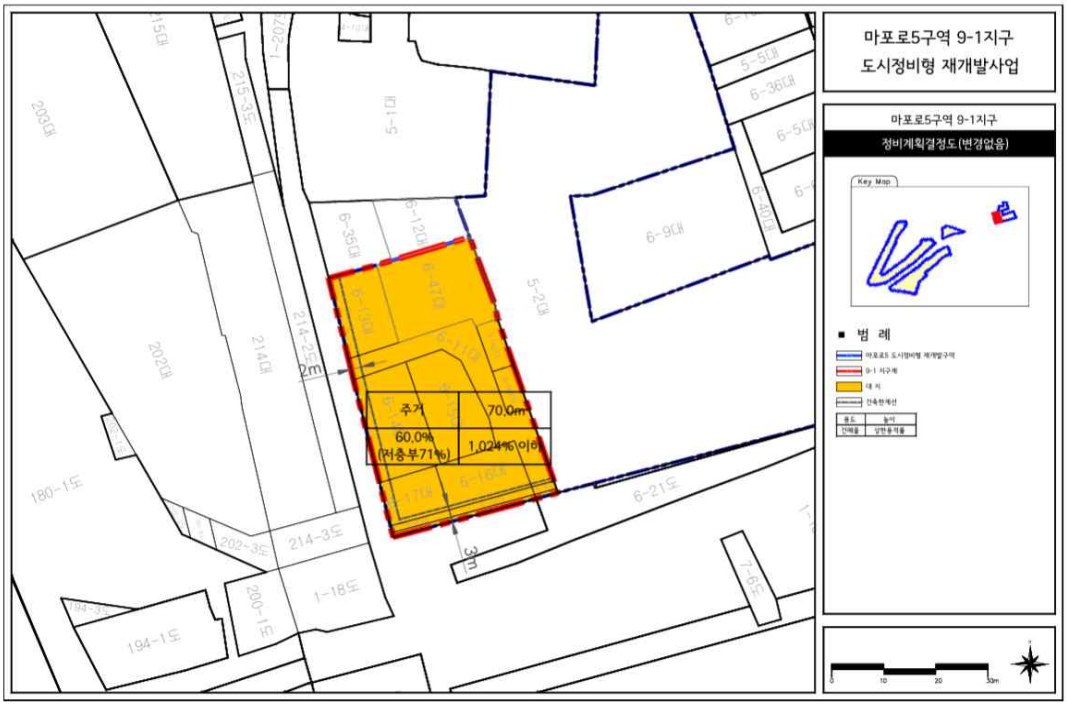
■ 마포로5구역 9-1지구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마포로5구역 9-1지구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 마포로5구역 9-1지구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84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25.02.27.)에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15호(’ 25.03.06.)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	자치구	명 칭(가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구로구	개봉동120-1 일대	개봉동120-1 일대	76,163.5	· 효율적 토지이용계획(안) 수립 등을 위한 구역계 변경
변경				79,903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	2025. 01. 23.	76,163.5	·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	2025. 01. 23.(기존구역) 2025. 11. 21.(추가구역)	57,166.1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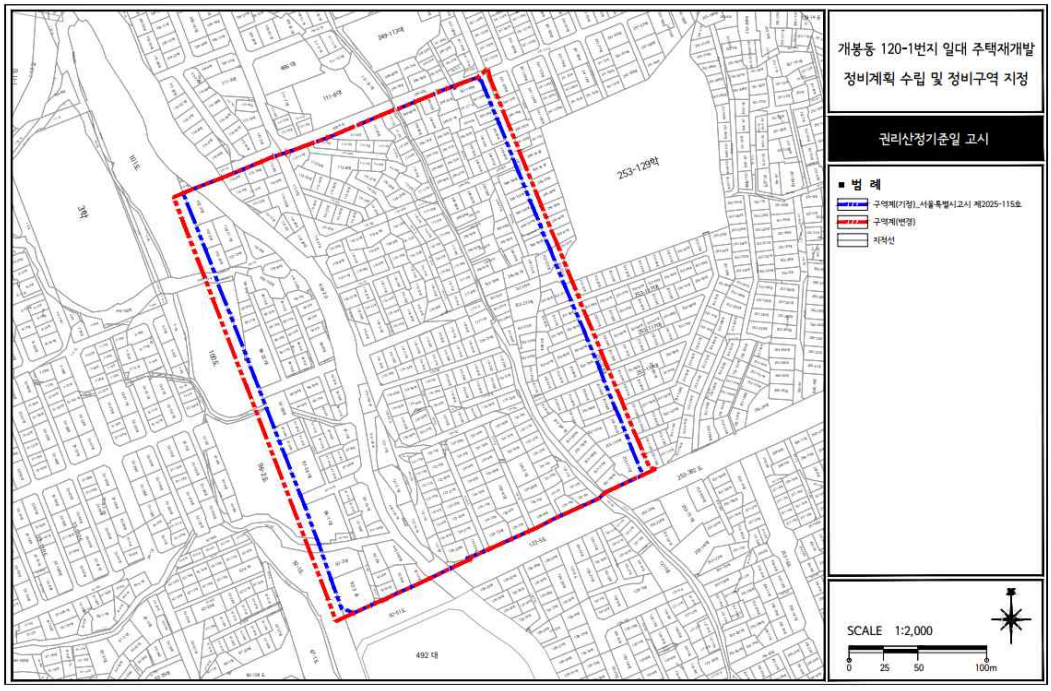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0) 또는 구로구 도시개발과(☎02-860-2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업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개봉동12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86호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70호(2018.7.5.)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공고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1호(2019.6.20.)로 고시되고, 제2022-432호(2022.11.3.)로 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3호(2023.12.28.)로 변경 고시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가. 지역의 명칭 : 변경없음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 변경없음

지역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강북구 수유동 4.19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	628,000㎡	

다. 사업기간(마중물사업) : 변경없음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가. 계획의 비전 및 목표 : 변경없음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1) 도시재생사업 및 재원조달계획
         ○ 마중물 사업 : (기정) 9개 사업 → (변경) 8개 사업
         ○ 협력 사업 : (기정) 11개 사업 → (변경) 9개 사업
         [기 정]

사업명			사업비(억원)				
			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
합계			574.8	23.0	451.98	49.82	50.0
마중물 사업 합계			200.0	-	200.0	-	-
마중물사업	1	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	36.5	-	36.5	-	-
	2	4.19민주묘지 재생 공론화 사업	2.0	-	2.0	-	-

사업명			사업비(억원)				
			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
	3	우이친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5.5	-	5.5	-	-
	4	마을 마케팅& 브랜딩사업	9.5	-	9.5	-	-
	5	정주환경 개선사업	13.36	-	13.36	-	-
	6	주거지 골목길 활성화 사업	15.5	-	15.5	-	-
	7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사업	85.0	-	85.0	-	-
	8	4.19 도시재생 지원사업	24.64	-	24.64	-	-
	9	젠트리피케이션 관리 및 대응사업	2.0	-	2.0	-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용역		6.0	-	6.0	-	-
협력사업 합계			374.8	23.0	251.98	49.82	50.0
협력사업	1	우이동 만남의 광장 인공 암벽장 조성사업	19.5	-	-	19.5	-
	2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125.0	-	125.0	-	-
	3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15.0	-	-	15.0	-
	4	진달래 어울림 숲 조성사업	80.3	18.0	58.18	4.12	-
	5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50.0	-	42.9	7.1	-
	6	우이령 마을 종합정비 및 파인트리 정상화	-	-	-	-	-
	7	경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5.0	-	5.0	-	-
	8	솔밭공원 바닥분수 설치 및 시설물 정비	9.1	5.0	-	4.1	-
	9	아카데미하우스 활성화 사업	50.0	-	-	-	50.0
	10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배움터 운영	20.9	-	20.9	-	-
	11	삼각산 시민청 확장 및 커뮤니티 기능강화	-	-	-	-	-

[변 경]

사업명			사업비(억원)				
			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
합계			467.31	34.0	319.15	114.16	-
마중물 사업 합계			91.13	-	91.13	-	-
마중물사업	1	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	35.93	-	35.93	-	-
	2	4.19민주묘지 재생 공론화 사업	1.98	-	1.98	-	-
	3	우이친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5.45	-	5.45	-	-
	4	마을 마케팅& 브랜딩사업	3.77	-	3.77	-	-
	5	정주환경 개선사업	11.03	-	11.03	-	-
	6	주거지 골목길 활성화 사업	10.69	-	10.69	-	-
	7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사업 (폐지)	0.50	-	0.50	-	-
	8	4.19 도시재생 지원사업	15.38	-	15.38	-	-
	9	젠트리피케이션 관리 및 대응사업	0.60	-	0.60	-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용역		5.80	-	5.80	-	-
협력사업 합계			376.18	34.0	228.02	114.16	-
협력사업	1	우이동 만남의 광장 인공 암벽장 조성사업	36.6	7.0	2.6	27.0	-
	2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163.6	-	163.6	-	-
	3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15.0	-	-	15.0	-
	4	진달래 어울림 숲 조성사업	67.6	27.0	-	40.6	-
	5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60.98	-	35.62	25.36	-
	6	우이령 마을 종합정비 및 파인트리 정상화	2.0	-	-	2.0	-
	7	경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5.0	-	5.0	-	-
	8	솔밭공원 바닥분수 설치 및 시설물 정비	4.2	-	-	4.2	-
	9	아카데미하우스 활성화 사업 (폐지)	-	-	-	-	-
	10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배움터 운영	21.2	-	21.2	-	-
	11	삼각산 시민청 확장 및 커뮤니티 기능강화 (폐지)	-	-	-	-	-

2) 파급효과

○ 마중물 사업 : (기정) 3개 부문, 9개 사업 → (변경) 3개 부문, 8개 사업

[기 정]

사 업 명			사업내용	파급효과
지역 역사·문화예술 중심지 조성	1	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	•4.19로, 삼양로173길 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조성	•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녹지 및 자투리쉼터 공간조성계획으로 낙후되고 특색 없는 가로경관에 활력 증진 •디자인 가로시설물 설치, 예술작품 설치 등을 통한 재미있는 거리환경 조성
	2	4.19 민주묘지 재생공론화 사업	•민주묘지재생 공론화 •타당성 분석 추진	•4.19혁명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공론화를 추진하여 국제적 위상에 맞는 재생방안 마련 •기존 묘지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주민·방문객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론화 기회 마련
도시형 여가 중심지 조성	3	우이천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생태놀이터,바닥분수 등	•우이동 만남의 광장 복합 활용으로 활용성 증대 •아이들을 위한 공간 제공
	4	마을 마케팅& 브랜딩사업	•로컬브랜드 전략 및 구상 •4.19민주묘지사거리 주변 상권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브랜딩 전략과 체계적인 실행으로 지역의 위상 및 매력도를 높여 지역브랜드 완성 •대학상권 특성을 살린 재미있고 활발한 가로 분위기를 연출하여 4.19권역의 방문 경쟁력을 높임
선순환 공동체 구축	5	정주환경 개선사업	•CCTV, 반딧불조명, 쓰레기분리수거장, LED표지판 등 설치	•주거지 골목길 야간환경 개선 및 안전성 제고 •골목 경관 개선 등 주민 숙원사업 해소 •정주환경 개선으로 거주 만족도 향상을 통한 인구 이탈 방지
	6	주거지 골목길 활성화 사업	•도로포장 개선 •가로시설물 설치 •환경정비	•주거지 골목길 환경 개선 및 안전성 제고 •유휴공간의 활용성 증대 •골목 경관 개선
	7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사업	•문화예술인 거점조성, 마을기업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용	•도시재생사업의 거점 마련으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추진 •주민의 영구적인 활동거점 마련으로 지속가능성의 제고
	8	4.19 도시재생 지원사업	•도시재생조직운영 •주민역량강화 •지역기반마을기업 지원 및 홍보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도시재생사업 컨트롤 타워 및 실행조직 운영으로 관련주체 협력체계의 효율성 제고 •마을기업 설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경제 구조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협의체 자생력 강화
	9	젠트리피케이션 관리 및 대응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및 상생협약 추진	•정책 수립의 지표로서 단기, 중기, 장기 방향을 도출하고 대응정책 구조화, 세분화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상생협약 추진 근거 마련

[변 경]

사 업 명			사업내용	파급효과
지역 역사·문화예술 중심지 조성	1	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	•4.19로, 삼양로173길 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조성	•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녹지 및 자투리쉼터 공간조성계획으로 낙후되고 특색 없는 가로경관에 활력 증진 •디자인 가로시설물 설치, 예술작품 설치 등을 통한 재미있는 거리환경 조성
	2	4.19 민주묘지 재생공론화 사업	•민주묘지재생 공론화 •타당성 분석 추진	•4.19혁명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공론화를 추진하여 국제적 위상에 맞는 재생방안 마련 •기존 묘지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주민·방문객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론화 기회 마련
도시형 여가 중심지 조성	3	우이천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생태놀이터,바닥분수 등	•우이동 만남의 광장 복합 활용으로 활용성 증대 •아이들을 위한 공간 제공
	4	마을 마케팅& 브랜딩사업	•로컬브랜드 전략 및 구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브랜딩 전략과 체계적인 실행으로 지역의 위상 및 매력도를 높여 지역브랜드 완성
선순환 공동체 구축	5	정주환경 개선사업	•CCTV, 반딧불조명, 쓰레기분리수거장, LED표지판 등 설치	•주거지 골목길 야간환경 개선 및 안전성 제고 •골목 경관 개선 등 주민 숙원사업 해소 •정주환경 개선으로 거주 만족도 향상을 통한 인구 이탈 방지
	6	주거지 골목길 활성화 사업	•도로포장 개선 •가로시설물 설치 •환경정비	•주거지 골목길 환경 개선 및 안전성 제고 •유휴공간의 활용성 증대 •골목 경관 개선
	7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사업 (폐지)	•주민활동 복합거점시설 건립 부지 선정 및 개발구상 용역	•지역 내 유사용도의 시설이 존재함에 따라 복합거점 조성사업 폐지 및 대체 시설 활용
	8	4.19 도시재생 지원사업	•도시재생조직운영 •주민역량강화 •지역기반마을기업 지원 및 홍보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도시재생사업 컨트롤 타워 및 실행조직 운영으로 관련주체 협력체계의 효율성 제고 •마을기업 설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경제 구조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협의체 자생력 강화
	9	젠트리피케이션 관리 및 대응사업	•젠트리피케이션 지표설정 및 조사, 모니터링	•정책 수립의 지표로서 단기, 중기, 장기 방향을 도출하고 대응정책 구조화, 세분화

○ 협력사업 : (기정) 3개 부문, 11개 사업 → (변경) 3개 부문, 9개 사업

[기 정]

사 업 명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 역사·문화 예술 중심지 조성	1	경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계 확대)
	2	아카데미하우스 활성화 사업	· 세미나 개최, 관광 및 숙박시설 확충
	3	솔밭공원 바닥분수 설치 및 시설물 정비	· 솔밭근린공원 현대화사업
도시형 여가 중심지 조성	4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 캠핑문화 확산 및 가족 여가활동을 위한 가족캠핑장 조성
	5	진달래 어울림 숲 조성사업	· 힐링공간 조성 및 도시농업체험장
	6	우이동 만남의 광장 인공 암벽장 조성사업	· 우이동 만남의 광장 내 국제규모의 인공암벽장 설치
	7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 우이동 먹거리마을 내 진입도로 확장
	8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 구조개선으로 폐지되는 도로구간을 주차장으로 확충
	9	우이령 마을 종합정비 및 파인트리 정상화	· 우이령 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 · 파인트리 공공기여 확보 등 정상화 추진
선순환 공동체 구축	10	삼각산 시민청 확장 및 커뮤니티 기능 강화	· 제2시민청 확장을 위한 인접부지 매입 및 확장으로 주민활동 거점 마련
	11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배움터 운영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사업·운영

[변 경]

사 업 명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 역사·문화 예술 중심지 조성	1	경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계 확대)
	2	아카데미하우스 활성화 사업(폐지)	-
	3	솔밭공원 바닥분수 설치 및 시설물 정비	· 솔밭근린공원 현대화사업
도시형 여가 중심지 조성	4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 캠핑문화 확산 및 가족 여가활동을 위한 가족캠핑장 조성
	5	진달래 어울림 숲 조성사업	· 힐링공간 조성 및 도시농업체험장
	6	우이동 만남의 광장 인공 암벽장 조성사업	· 우이동 만남의 광장 내 국제규모의 인공암벽장 설치
	7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 우이동 먹거리마을 내 진입도로 확장
	8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 구조개선으로 폐지되는 도로구간을 주차장으로 확충
	9	우이령 마을 종합정비 및 파인트리 정상화	· 우이령 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 · 파인트리 공공기여 확보 등 정상화 추진

사 업 명		사업명	사업내용
선순환 공동체 구축	10	삼각산 시민청 확장 및 커뮤니티 기능 강화(폐지)	-
	11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배움터 운영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사업 · 운영

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라. 예산집행계획

○ 마중물사업 : (기정) 총 사업비 200억원 → (변경) 총 사업비 91.13억원

○ 협력사업 : (기정) 총 사업비 374.8억원 → (변경) 총 사업비 376.18억원

[기 정]

사업명			사업비(억원)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574.8 (127.18)	20.82	96.3	121.99	127.94	46.16	34.41
마중물 사업 합계			200.0	1.5	9.9	8.59	103.94	41.66	34.41
마중물사업	1	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	36.5	-	-	1.47	18.01	15.58	1.44
	2	4.19민주묘지 재생 공론화 사업	2.0	-	-	-	2.0	-	-
	3	우이천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5.5	-	-	-	0.3	5.2	-
	4	마을 마케팅& 브랜딩사업	9.5	-	-	1.91	2.5	3.5	1.59
	5	정주환경 개선사업	13.36	-	-	-	4.0	4.68	4.68
	6	주거지 골목길 활성화 사업	15.5	-	-	0.97	9.53	5.0	-
	7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사업	85.0	-	-	-	62.0	2.0	21.0
	8	4.19 도시재생 지원사업	24.64	-	5.4	4.24	5.0	5.0	5.0
	9	젠트리피케이션 관리 및 대응사업	2.0	-	-	-	0.6	0.7	0.7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용역		6.0	1.5	4.5	-	-	-	-
협력사업 합계			374.8 (127.18)	19.32	86.4	113.4	24.0	4.5	-
협력사업	1	우이동 만남의 광장 인공 암벽장 조성사업	19.5	-	-	-	19.5	-	-
	2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125.0	17.2	62.3	45.5	-	-	-
	3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15.0	-	-	15.0	-	-	-
	4	진달래 어울림 숲 조성사업	80.3	2.12	10.0	10.0	미정	미정	미정
	5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50.0	-	-	31.0	미정	미정	미정
	6	우이령 마을 종합정비 및 파인트리 정상화	-	-	-	-	-	-	-
	7	경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5.0	-	5.0	-	-	-	-

사업명			사업비(억원)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8	솔밭공원 바닥분수 설치 및 시설물 정비	9.1	-	9.1	-	-	-	-
	9	아카데미하우스 활성화 사업	50.0	-	-	미정	미정	미정	미정
	10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배움터 운영	20.9	-	-	11.9	4.5	4.5	-
	11	삼각산 시민청 확장 및 커뮤니티 기능강화	-	-	-	-	-	-	-

[변 경]

사업명			사업비(억원)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467.31	6.51	21.69	106.79	250.08	59.29	17.10	5.85	-
마중물 사업 합계			91.13	1.51	7.09	6.67	15.62	42.89	11.70	5.65	-
마중물사업	1	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	35.93	-	-	0.78	4.71	24.57	0.22	5.65	-
	2	4.19민주묘지 재생 공론화 사업	1.98	-	-	-	1.38	0.6	-	-	-
	3	우이천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5.45	-	-	-	0.29	5.16	-	-	-
	4	마을 마케팅& 브랜딩사업	3.77	-	-	0.72	3.05	-	-	-	-
	5	정주환경 개선사업	11.03	-	-		0.56	0.24	10.23	-	-
	6	주거지 골목길 활성화 사업	10.69	-	-	0.61	1.94	8.14	-	-	-
	7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사업 (폐지)	0.50	-	-	-	-	0.50	-	-	-
	8	4.19 도시재생 지원사업	15.38	-	4.09	3.27	3.29	3.48	1.25	-	-
	9	젠트리피케이션 관리 및 대응사업	0.60	-	-	-	0.40	0.20	-	-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용역	5.80	1.51	3.00	1.29	-	-	-	-	-
협력사업 합계			376.18	5.00	14.6	100.12	234.46	16.40	5.40	0.20	-
협력사업	1	우이동 만남의 광장 인공 암벽장 조성사업	36.60	-	-	16.00	18.00	2.60	-	-	-
	2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163.60	-	0.40	16.40	146.80	-	-	-	-
	3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15.00	-	-	15.00	-	-	-	-	-
	4	진달래 어울림 숲 조성사업	67.60	-	10.00	10.00	39.00	8.60	-	-	-

사업명			사업비(억원)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5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60.98	-	-	35.62	25.36	-	-	-	-
	6	우이령 마을 종합정비 및 파인트리 정상화	2.00	-	-	2.0	-	-	-	-	-
	7	경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5.00	5.00	-	-	-	-	-	-	-
	8	솔밭공원 바닥분수 설치 및 시설물 정비	4.20	-	4.20	-	-	-	-	-	-
	9	아카데미하우스 활성화 사업 (폐지)	-	-	-	-	-	-	-	-	-
	10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배움터 운영	21.20	-	-	5.10	5.30	5.20	5.40	0.20	-
	11	삼각산 시민청 확장 및 커뮤니티 기능강화 (폐지)	-	-	-	-	-	-	-	-	-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기대효과 : 변경없음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3. 관련 도면 : 붙임참조

○ 위치도 1부.

○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1부.

4. 관련서류 열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02-2133-8439)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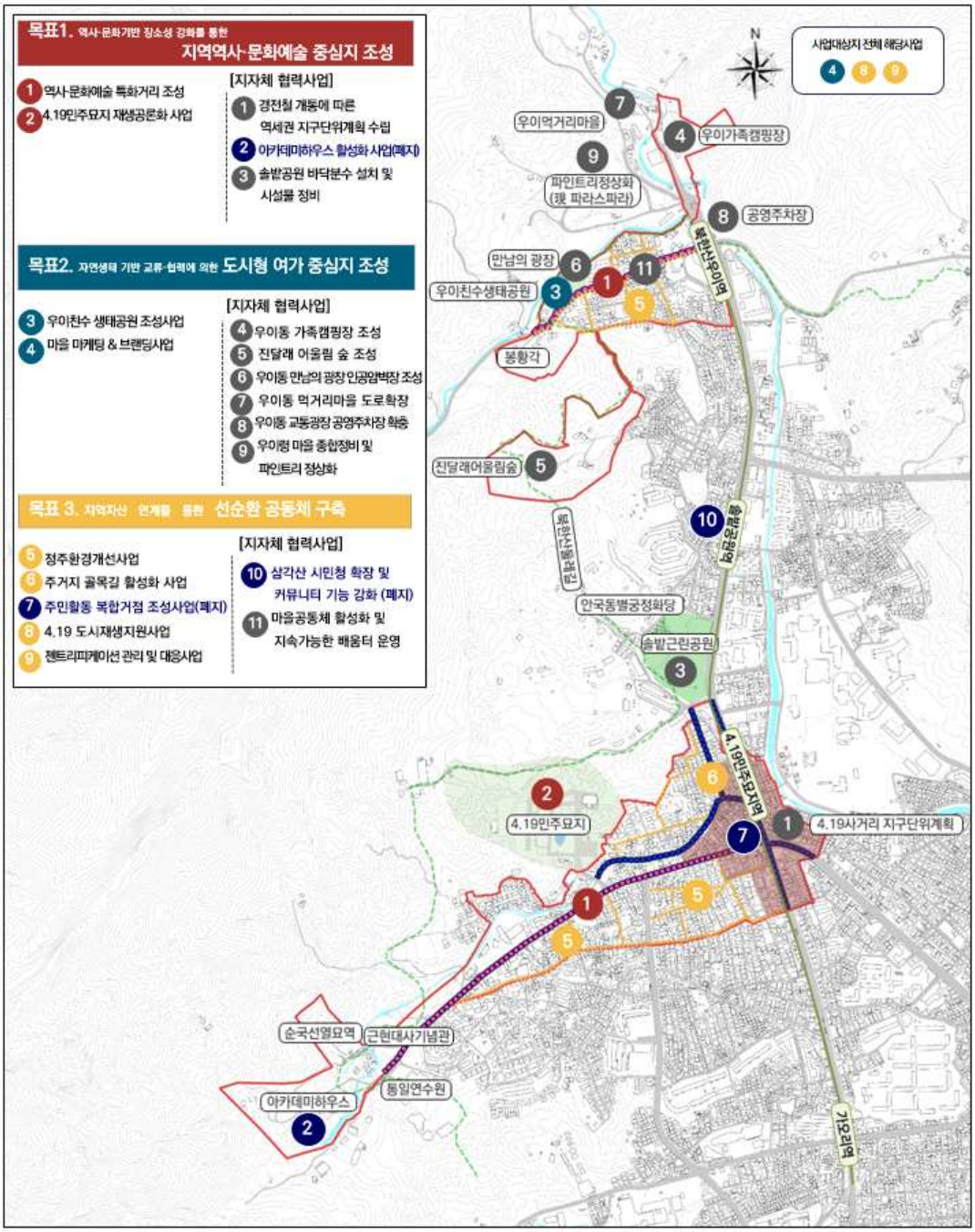
붙임1

위치도


방학역
파인트리
북한산우이역
계획대상지
봉황각
청한빌라 교차로
우이신설연장선
(2025년 착공 예정)
성원아파트 교차로
선덕고교입구 교차로
솔발공원역
솔발공원
4.19민주묘지역
국립4.19민주묘지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대상지
체류형 역사문화관광 중심
창동 상계
4.19
일자리·문화·신성장 중심
1km
미아
도심업걸 문화쇼핑업무 중심
2km
근현대사 기념관
우이-신설선
가오리역
아카데미 하우스

붙임2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687호

구로동 51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1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구로동 51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구로구 구로동 511번지 일대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60,962.6㎡	전체: 380동 노후·불량: 323동(85.0%)	-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도로등 정비기반시설 개선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계획으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 지정 조서

구분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구로동 51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구로구 구로동 511번지 일대	-	증)60,962.6	60,962.6	-

○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명칭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구로동 51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 구로구 구로동 511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 60,962.6㎡	노후·신축건축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계획적·효율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과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도모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60,962.6	100.0	-
시행구역	공동주택용지	A-1	사업가능구역1(가로주택정비)	18,575.0	30.5	-
		A-2	사업가능구역2(가로주택정비)	11,410.0	18.7	-
		A-3	사업가능구역3(가로주택정비)	9,730.0	15.9	-
		A-4	사업가능구역4(가로주택정비)	6,558.0	10.8	-
	정비기반시설	-	도로	5,705.3	9.4	-
시행구역외	존치	대지		3,915.0	6.4	-
		도로		5,069.3	8.3	-

※ 상기 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1) 도로 계획(안)

구분	합계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23	25~28	보조간선도로	4,250	신길동	구로동	일반도로	-	서고137호 ('97.4.30)	-
변경	대로	3	23	25~28	보조간선도로	4,250 (82)	신길동	구로동	일반도로	-	-	가감속차로 조성 L:82m B:3m
기정	기타도로			8	국지도로	230	구로동 460-4	구로동 448-28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1	①	14~19	집산도로	292	구로동 460-4	구로동 448-28	일반도로	-	-	도로확폭 (3차선조성 및 보도조성)
신설	소로	1	①	11	국지도로	67	구로동 448-28	구로동 448-33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1	②	10	국지도로	150	구로동 433-9	구로동 454-76	일반도로	-	-	A-2,A-3 구역간 건축협정 체결 시 입체결정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33	구로동 448-118	구로동 424-13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1	③	11	국지도로	133	구로동 448-118	구로동 424-13	일반도로	-	-	도로확폭 (보도조성)
신설	소로	1	④	8	국지도로	153	구로동 443-121	구로동 443-121	일반도로	-	-	보행자 우선도로 및 일방통행 (보도조성)
신설	소로	2	①	6~9	국지도로	378 (142)	구로동 420-58	구로동 431-3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③	8~10	국지도로	160	구로동 511-59	구로동 443-34	일반도로	-	-	폭원8m구간 일방통행
신설	소로	3	①	4	국지도로	80	구로동 420-45	구로동 419-11	일반도로	-	-	-

※ ( )는 구역계에 포함되는 도로 연장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23	대로3-23	도로 형태 변경	가감속차로 조성(L:82m, B:3m)
기타도로	중로1-①	도로 선형 조정 및 도로확폭 (B:8m→14~19m)	보광아파트 도로(계획)선형 연결
-	소로1-①	도로확폭 (B:8m→11m)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보차분리 및 원활한 진입을 고려한 도로 확폭 등
-	소로1-②	도로확폭 (B:5m→10m) ※A-2,A-3구역 건축협정 체결 시 입체결정	
소로2-3	소로1-③	도로확폭 (B:8m→11m)	
-	소로1-④	보행자우선도로지정 (B:8m)	
-	소로2-①	도로시설 결정 (B:6~9m)	
-	소로2-③	도로확폭 (B:6m→8~10m)	
-	소로3-①	도로신설 (B:4m)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3) 학교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구로 초등학교	초등 학교	구로동 443외11필지	18,321	감)604	17,717	'78.07.27 (서고제373호)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4)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초등학교	변경 면적 17,717㎡	초등학교 북측 구로중앙로27가길변 도로로 활용중인 학교 시설 선형 변경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5)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안)

구분	세대수	기준면적	설치기준	비고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566세대	1,768.75㎡ 이상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100세대~1,000세대 기준으로 세대당 2.5㎡ X 1.25 이상 설치	구역 내
사업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95세대	921.88㎡ 이상		구역 내
사업가능구역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52세대	787.50㎡ 이상		구역 내
사업가능구역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16세대	675.00㎡ 이상		구역 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라. 교통계획(안)

- 주변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존 도로망 계획을 유지함
- 증가되는 세대수를 고려하여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안전을 위해 구로동로 40길 도로 선형 조정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공공 보행통로	도면참조	- 지역민의 편리한 지역 이동 동선을 위해 6m확보 (대상지 북측 주거지 ~ 대상지 남측 대학병원, 구청 연계 동선)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도면참조 (구로동로42길,구로동로40길,구로동로38길,구로중앙로21길,구로중앙로27가길, 구로중앙로27나길,구로중앙로27다길변)	- 주요 간선도로변 일부 구간 및 구로초등학교변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
차량진출입 권장구간	불허구간 제외 전구역	- 진출입불허구간 외 차량 진출입 권장	-
보행자 우선도로	구로중앙로27나길	- 구로초등학교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구분		면적(㎡)				사업계획					비고 (동의율)
		계	공동주택 용지	정비기반 시설	존치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계		60,962.6	46,273.0	5,705.3	8,984.3	577	1,156	-	-	-	-
A-1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21,345.0	18,575.0	2,770.0	-	236	454	조합 (예정)	창립 총회	-	-
A-2	사업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12,588.0	11,410.0	1,178.0	-	160	285	조합 (예정)	동의서 검인	-	-
A-3	사업가능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11,099.8	9,730.0	1,369.8	-	85	238	조합 (예정)	동의서 검인	-	-
A-4	사업가능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6,945.5	6,558.0	387.5	-	96	179	조합 (예정)	동의서 검인	-	-
존치(필지)		3,915.0	-	-	3,915.0	-	-	-	-	-	-
존치(도로)		5,069.3	-	-	5,069.3	-	-	-	-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사업시행구역 및 가로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바.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안)

1) 「건축법」 제77조의 4에 따른 건축협정의 체결로 「건축법」 제77조 13에 따른 특례 적용 계획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특례사항	특례적용사유	비고
구로동 51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로동 420-40번지 일대	18,575.0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
	사업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로동 454번지 일대	11,410.0			
	사업가능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로동 451번지 일대	9,730.0			
	사업가능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로동 511번지 일대	6,558.0			

※ 상기의 건축협정의 특례사항 등은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사.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구분	내용		적용구역
시행구역 내	건폐율	50% 이하	공동주택용지(A-1) (제3종일반)
	용적률	기준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높이) 적용	
	건폐율	60% 이하	공동주택용지(A-2) (제2종일반)
	용적률	기준 200% 이하 법적상한 25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높이) 적용	
	건폐율	60% 이하	공동주택용지(A-3) (제2종일반)
	용적률	기준 200% 이하 법적상한 25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높이) 적용	
	건폐율	50% 이하	공동주택용지(A-4) (제3종일반)
	용적률	기준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높이) 적용	
시행구역 외	건폐율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준 적용	존치
	용적률		
	높이		

1. 기준용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2. 상한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3. 상한용적률의 적용 :
   ① A-1블록은 제2종일반, 제3종일반주거지역(혼재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기준용적률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 5에 따라 상향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건설 · 공급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건설 · 공급하여 상한용적률 적용 가능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 공급하여 상한용적률 적용 가능
   ④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시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 적용 가능
4. 높이 : 용도지역 층수 적용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아.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1) 건축물 배치 · 형태 · 건축선 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도로변 및 인접대지 경계부 (존치구역포함)	- 건축한계선 3m 적용	- 가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A-2구역 내 구로동로 40길변	- 건축한계선 5m 적용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A-3구역 내 구로동로 40길변	- 건축한계선 3~7m 적용	- 차량 통행을 위해 일시적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후 A-1구역 사업완료 시 보도부속형으로 변경
공공보행통로	도면참조	- 지역민의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위해 6m확보 - 지역권 설정을 통한 공공성 확보로 다수를 위한 쾌적한 보행환경 및 통경축 확보	- 대상지 북측 주거지 ~ 대상지 남측 대학병원, 구로구청 등을 연계하는 동선
담장 미설치	사업시행구역	- 도로변 및 구역간 담장 미설치	-
주동형태 및 입면계획	사업시행구역	- 가로대응 판상주동으로 중정 및 외부공간 형성 - 단지 중심부 타워주동으로 입체적적 경관 형성 - 단지 중심부 남북측 통경축 및 동서측 녹지경관축 조성	-
단차활용 계획	사업시행구역	- 데크의 단차를 활용하여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주차장 계획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건축물 용도 계획(안)

도면표시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시행구역	A	-1 -2 -3 -4	유형		- 공동주택 용지	-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시행구역 외	-	-	용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하여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존치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3)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분		검토항목	권장	필수
특별건축구역 지정	창의적 건축물 디자인 도시경관 창출	- 특별건축구역의 완화규정 적용 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고려하여 인동거리산정, 남향 및 일조만족 세대최대화 등 주거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	O	-
대지 및 배치계획	대지조성 계획	- 지형에 순응하여 원지형 및 주변 레벨을 고려해 과도한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계획 필요	O	-
		- 단차 발생시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배치등 효율적 계획 필요	O	-
	학교변을 고려한 계획	- 학교변을 고려한 저층 배치구간 계획필요	O	-
		- 저층 배치구간 주동간격을 확보하여 열린경관조성 필요	O	-
	배치계획	- 열린배치가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한 주동 배치	O	-
		- 타워형, 판상형 주동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계획 필요	O	-
	동선 및 외부공간 계획	- 기반시설의 접근성과 구로초등학교를 고려하여 건축한계선(3m)확보	-	O
		- 통학로를 고려한 보행안전공간 활용을 위해 A-2구역 일부 건축한계선(5m)확보	-	O
		- A-3구역 현황도로를 고려한 건축한계선(3~7m) 확보 A-1 구역 사업 완료 시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보도부속형	-	O

구분		검토항목	권장	필수
		- 지역민의 편리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하여 A-1구역 내 공공보행통로(6m)확보 (대상지 북측 주거지 ~ 대상지 남측 대학병원, 구청 연결)	-	0
		- 보행녹도, 보행통로 등 공공의 보행 접근성이 큰 곳에 저층부 주민공동시설배치	0	-
		- 보행을 통한 대상지 진입부는 녹지가 풍부한 보도로 디자인 실시	0	-
		- 구로중앙로27나길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	0
		- 구로동로40길 및 구로중앙로21길(보광아파트 북측 도로)3차로 조성 및 연계 (사업시행구역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	-	0
	스카이라인 및 경관계획	- 도시에 순응하며 입체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특성(주변단지)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0	-
	근린생활시설	- 생활가로변 근린생활시설 배치 계획	0	-
	가로공간	- 교통약자를 고려한 배리어프리확보 및 단지내 차량 진출입구간은 교통 정온화 포장 및 디자인 실시	0	-
공간구성의 다양화	개방적인 외부공간	- 가로에서의 접근성을 높이되 단지 내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함	0	-
		- 다양하고 연속적인 녹지 공간 조성으로 주변 소음 흡수 및 쾌적한 환경 조성	0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분양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1,329	1,114	215	-	-
A-1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로동 420-40번지 일대	566	474	92	-	소셜믹스 적용
A-2	사업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로동 454번지 일대	295	264	31	-	
A-3	사업가능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로동 451번지 일대	252	203	49	-	

구분		위치	전체세대	분양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A-4	사업가능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로동 511번지 일대	216	173	43	-	

1)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2)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개별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가로주택정비사업형에 한함)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차.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0,962.6	-	60,962.6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61.3	증)20,201.4	20,562.7	33.7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42,903.5	감)33,116.0	9,787.5	16.1
	제3종일반주거지역	17,697.8	증)12,914.6	30,612.4	50.2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1) 특별건축구역 지정 결정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위치	면적(㎡)	특례 사항	특례 적용 사유	비고
A-1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로동 420-40번지일대	18,575.0	-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역 -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
A-2	사업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로동 454번지 일대	11,410.0			
A-3	사업가능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로동 451번지 일대	9,730.0			
A-4	사업가능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로동 511번지 일대	6,558.0			

※ 상기의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등은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적용배제 또는 완화

구분	내용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61조)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 상기의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배제 및 완화) 등은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타.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 계획(안) : 해당없음

4.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5. 관계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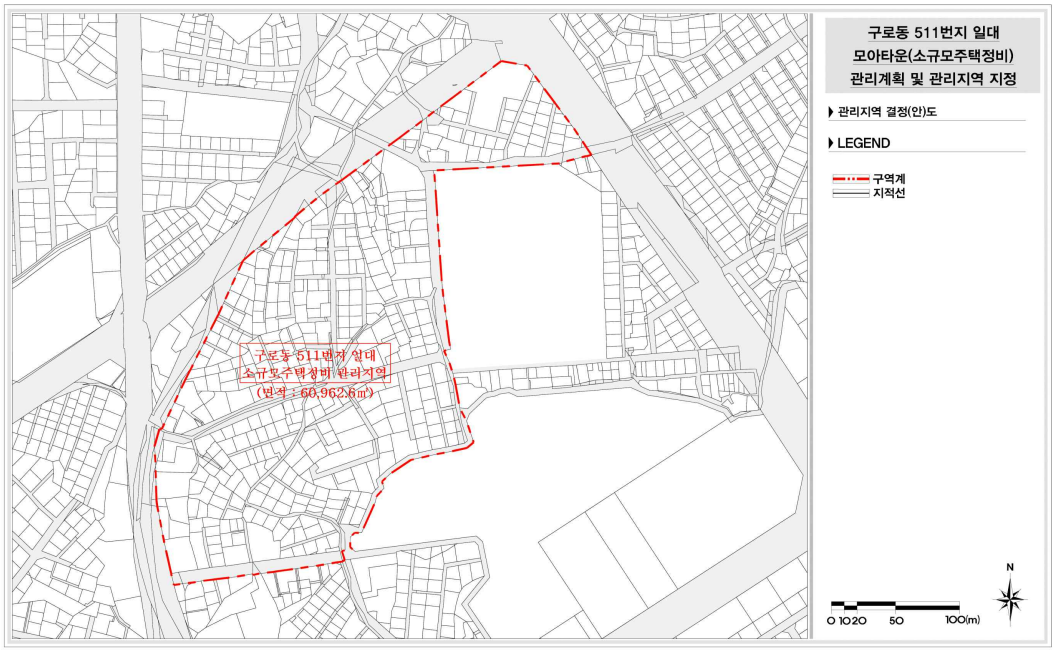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9) 및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02-860-2534)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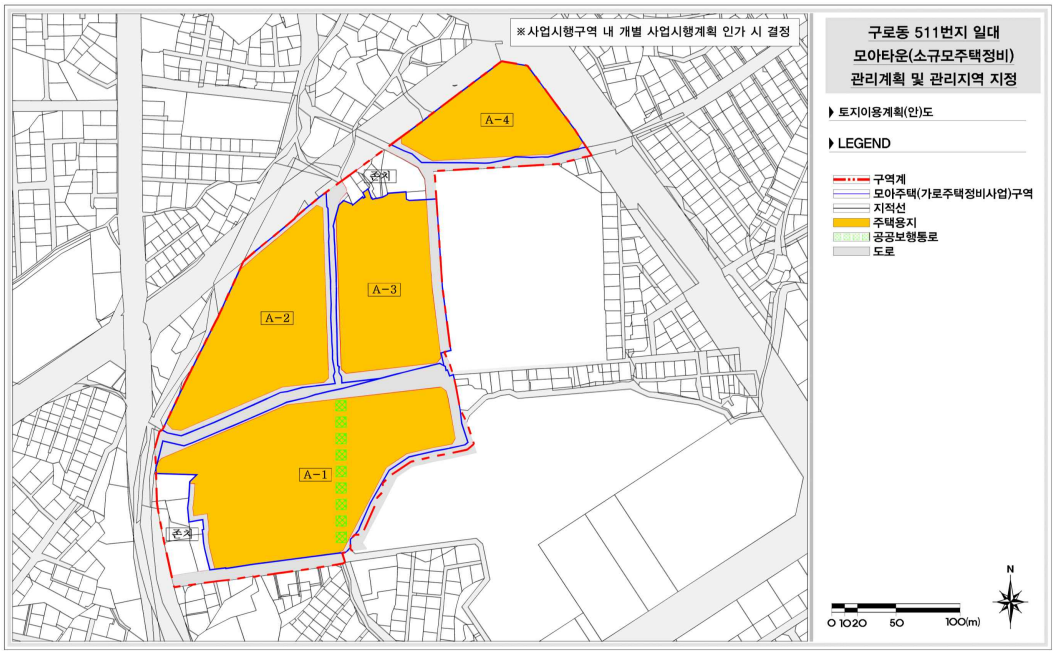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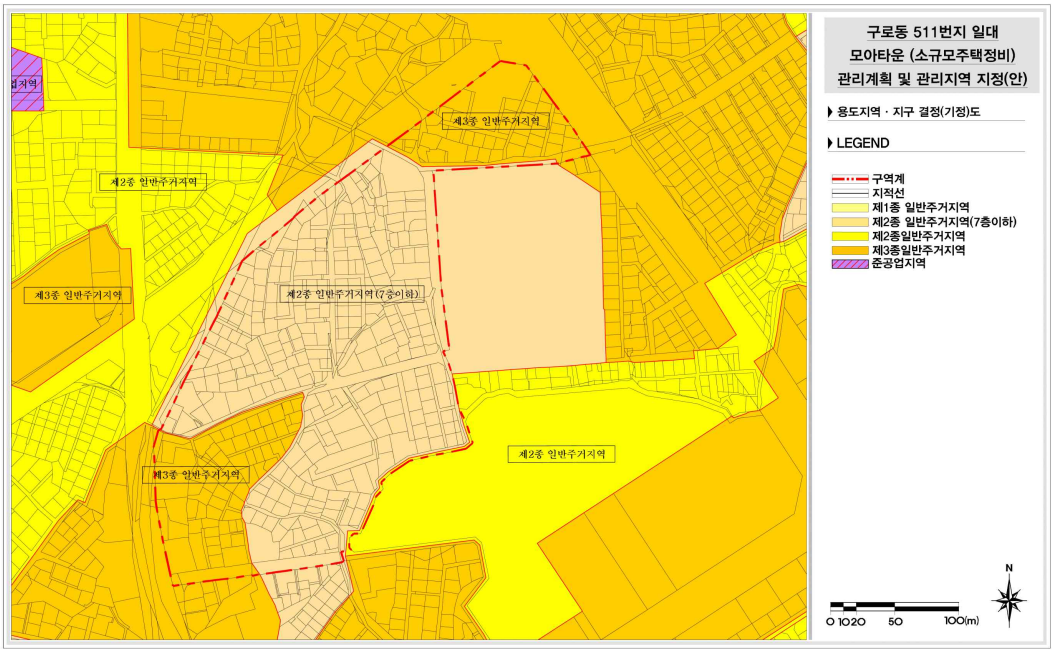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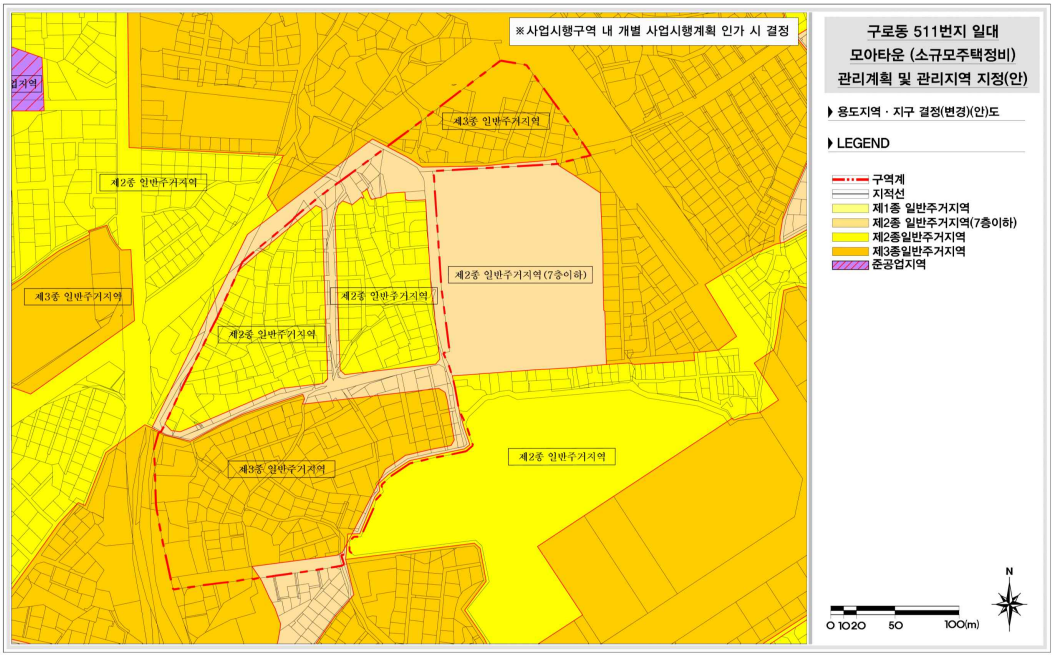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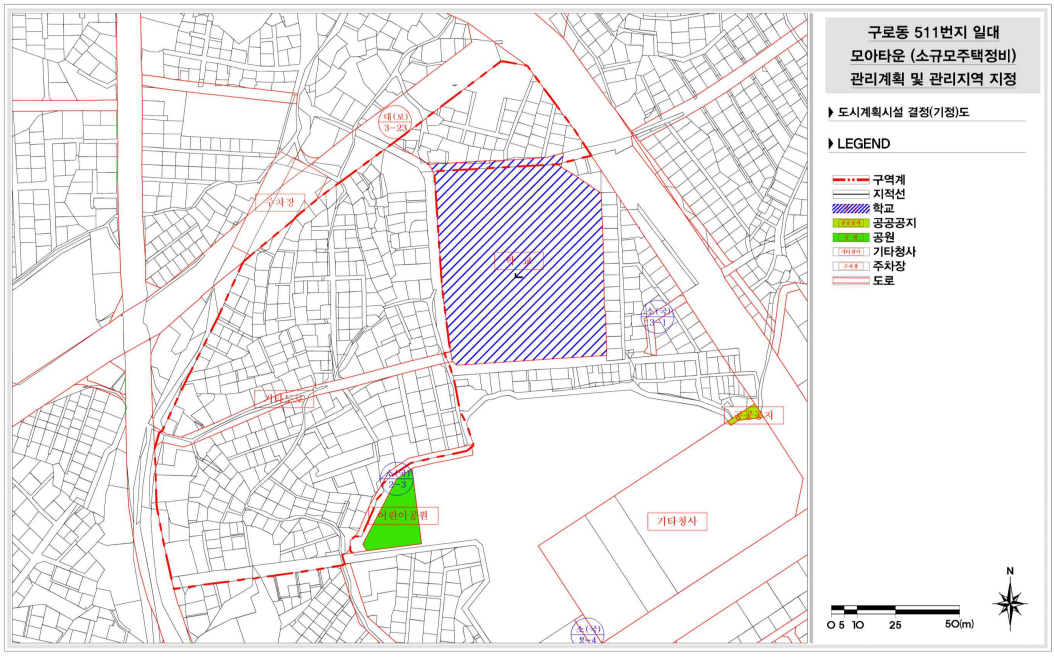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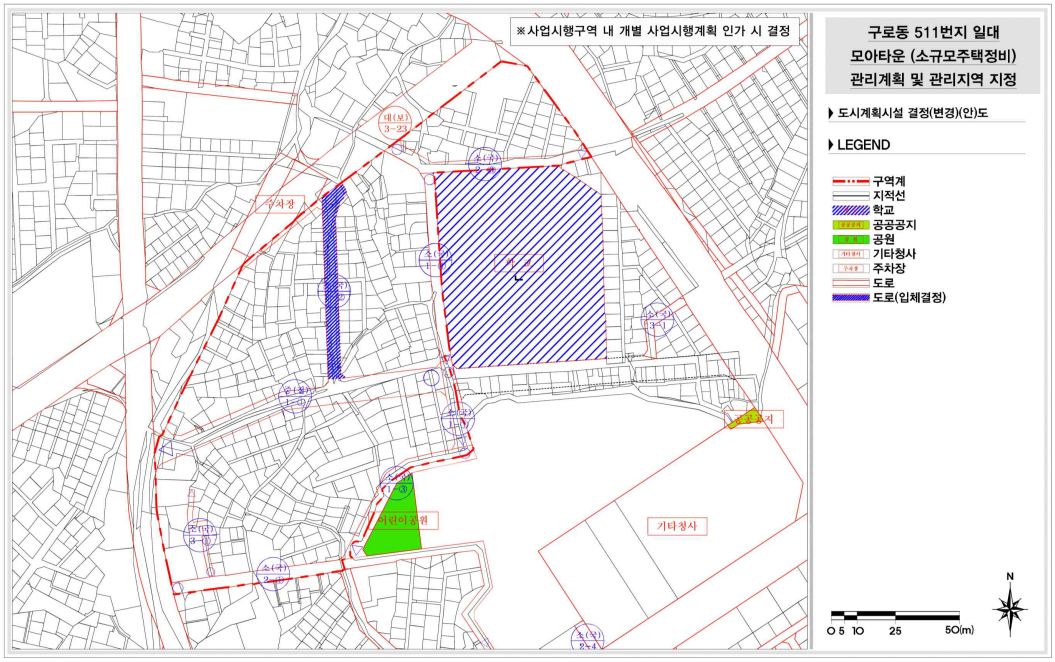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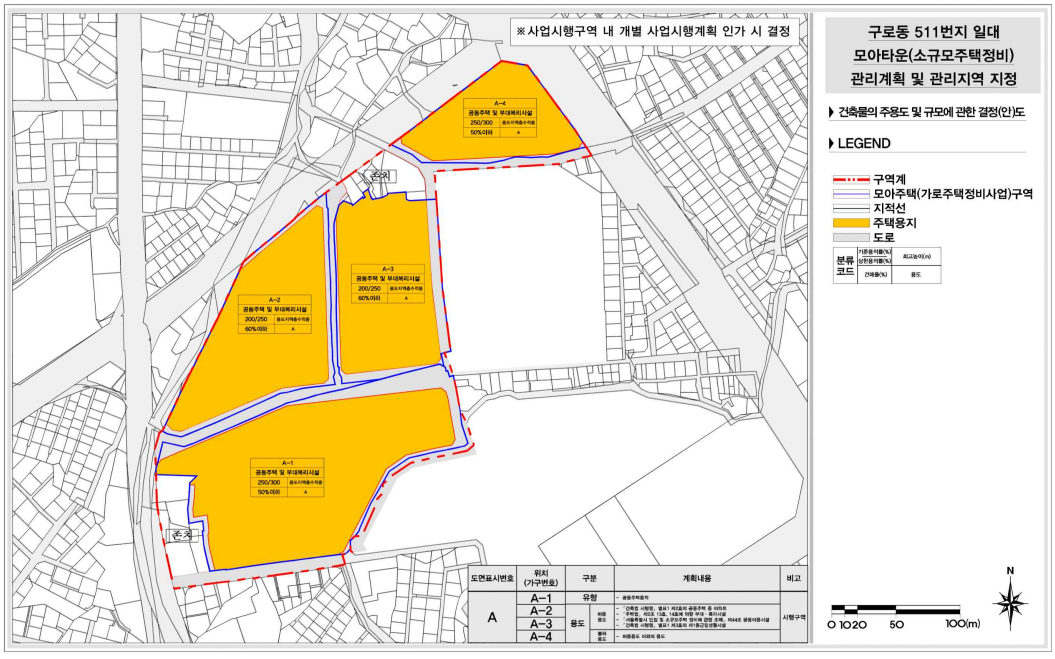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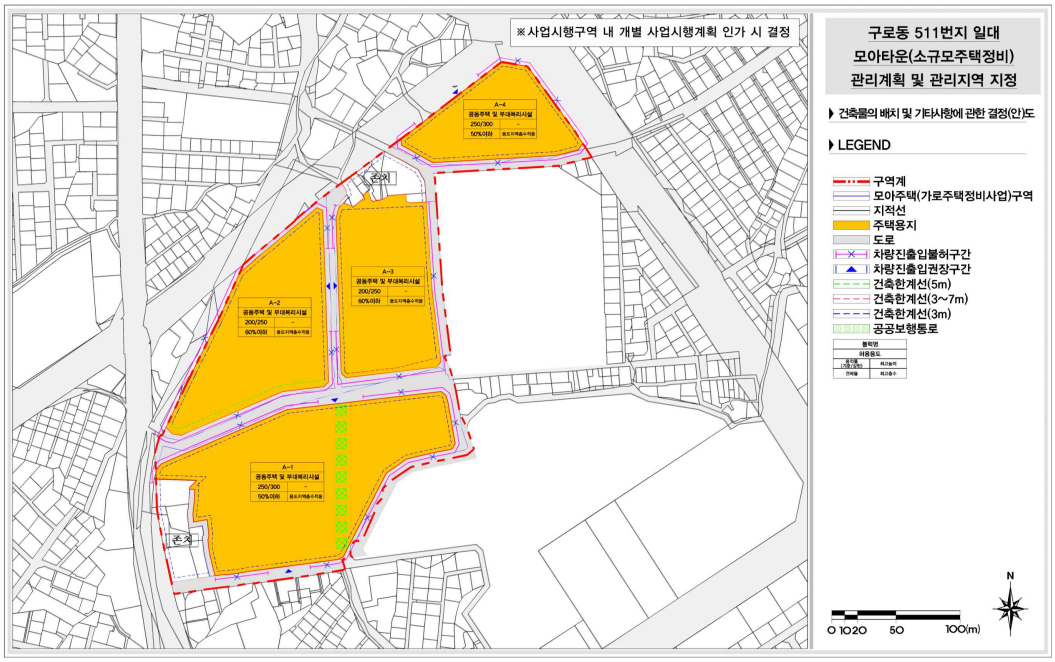


※입체결정 : A-2구역 및 A-3구역 건축협정 체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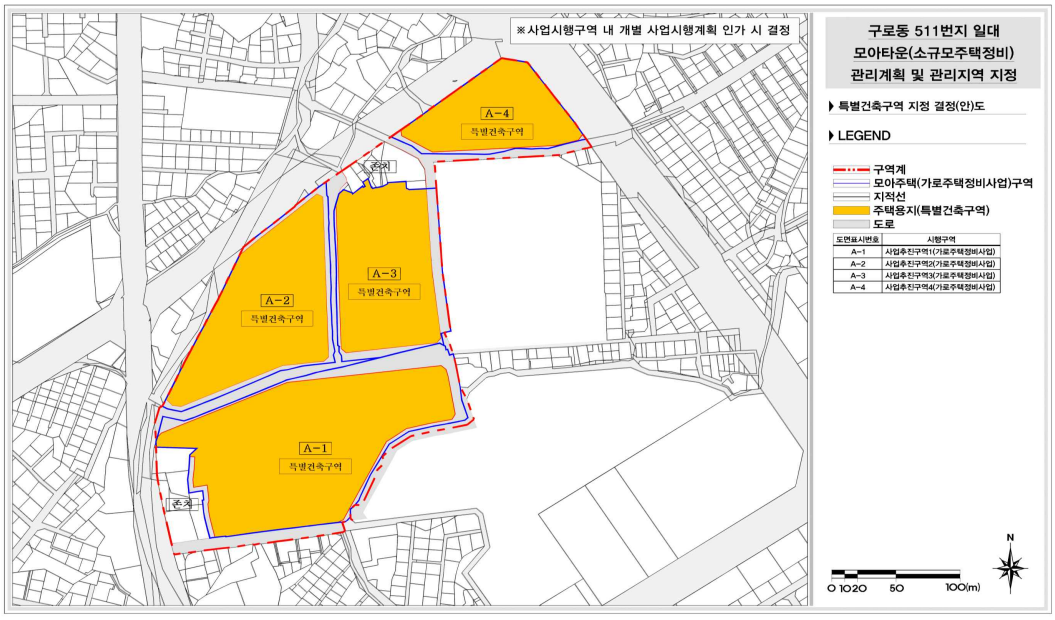
○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도



○ 건축물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 특별건축구역 지정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88호

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44호(2023.04.20.)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1) 수용인구 : 약 263인 (변경없음)
2) 주택건설계획 : 144세대 (변경)
[기정] 공공임대 22세대, SH선매입 24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98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임대	25Type	8	5.56	8.00	3.04	
	51Type	9	6.25	23.85	9.08	
	60Type	5	3.47	13.25	5.04	
	소계	22	15.28	45.10	17.16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SH선매입	25Type	24	16.67	24.00	9.13	
	소계	24	16.67	24.00	9.13	
공공지원 민간임대	25Type	22	15.28	22.00	8.37	
	30Type	18	12.50	18.00	6.85	
	44Type	36	25.00	95.40	36.30	
	51Type	9	6.25	23.85	9.08	
	60Type	13	9.03	34.45	13.11	
	소계	98	68.06	193.70	73.71	
합 계		144	100.00	262.80	100.00	

※ 청년안심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변경] 공공임대 22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79세대, 분양 43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임대	25Type	8	5.56	8.00	3.04	
	51Type	9	6.25	23.85	9.08	
	60Type	5	3.47	13.25	5.04	
	소계	22	15.28	45.10	17.16	
공공지원 민간임대	25Type	45	31.25	45.00	17.12	
	30Type	17	11.81	17.00	6.47	
	44Type	9	6.25	23.85	9.08	
	51Type	8	5.56	21.20	8.07	
	60Type	-	-	-	-	
	소계	79	54.86	107.05	40.73	
분양	25Type	1	0.69	1.00	0.38	
	30Type	1	0.69	1.00	0.38	
	44Type	27	18.75	71.55	27.23	
	51Type	1	0.69	2.65	1.01	
	60Type	13	9.03	34.45	13.11	
	소계	43	29.86	110.65	42.10	
합 계		144	100.00	262.80	100.00	

※ 청년안심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도면게재생략)

[붙임]

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1) 건축물의 용도계획 (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계획 (변경없음)

3)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변경)

[기정]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기본용적률(680%이하)	• 부지면적의 25%이상 - 1,022.0×25% = 230.63㎡	• 기본공공기여 : 232.14㎡(25.16%) - 공공임대주택 : 44.29㎡(4.80%)[6세대] - 도로기부채납 : 99.50㎡(10.79%) - 공공시설(청년센터) : 88.35㎡(9.58%) ※ 환산부지(49.49㎡) + 부속토지(38.86㎡)	기본용적률 680%, 상한용적률 89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함 (서초구 방배동 1955 청년안심주택에 한함)
	상한용적률(890%이하)	• 완화용적률(210%)의 50%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 용적률 : 105% 이상 - 연면적 : 968.63㎡ 이상	• 추가공공기여 : 12.02%[16세대]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986.27㎡(106.91%) [완화용적률 210%의 50% : 105%]	
비주거비율		• 10%이상 20%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 = 89.19% : 10.81%	
주택건설비중	주택규모	• 주택규모 : 전용면적 18㎡ ~ 60㎡ - 1인(세어형 포함) 세대 : 전용면적 18㎡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전용면적 36㎡ 이상	• 공공임대주택:SH선매입:공공지원민간임대 - 세대수 기준 = 15.28%:16.67%65.05% - 연면적 기준 = 14.84%:9.77%:59.93% • 공공임대주택 : 22세대 - 25Type(8세대), 51Type(9세대), 60Type(5세대) • SH선매입: 24세대 - 25Type(24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98세대 - 25Type(22세대), 30Type(18세대), 44Type(36세대), 51Type(9세대), 60Type(13세대)	
건축물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고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에너지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공공시설물 설치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청년주택 운영기준」 3-3-9 - 100호 이상~ 300호 미만 : 150㎡ 이상	• 152.92㎡(지상22층)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변경]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기본용적률 (680%이하)	• 부지면적의 25%이상 - 1,022.0×25% = 230.63㎡	• 기본공공기여 : 232.14㎡(25.16%) - 공공임대주택 : 44.29㎡(4.80%)[6세대] - 도로기부채납 : 99.50㎡(10.79%) - 공공시설(청년센터) : 88.35㎡(9.58%) ※ 환산부지(49.49㎡) + 부속토지(38.86㎡)	기본용적률 680%, 상한용적률 89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함 (서초구 방배동 1955 청년안심주택에 한함)
	상한용적률 (890%이하)	• 완화용적률(210%)의 50%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 용적률 : 105% 이상 - 연면적 : 968.63㎡ 이상	• 추가공공기여 : 12.02%[16세대]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986.27㎡(106.91%) [완화용적률 210%의 50% : 105%]	
비주거비율		• 10%이상 20%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 = 89.19% : 10.81%	
주택건설비중	주택규모	• 주택규모 : 전용면적 18㎡ ~ 60㎡ - 1인(셰어형 포함) 세대 : 전용면적 18㎡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전용면적 36㎡ 이상	•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분양 - 세대수 기준 = 15.28%:54.86%:29.86% - 연면적 기준 = 14.84%:38.18%:31.52% • 공공임대주택 : 22세대 - 25Type(8세대), 51Type(9세대), 60Type(5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79세대 - 25Type(45세대), 30Type(17세대), 44Type(9세대), 51Type(8세대) • 분양주택 : 43세대 - 25Type(1세대), 30Type(1세대), 44Type(27세대), 51Type(1세대), 60Type(13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공공시설물 설치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청년주택 운영기준」 3-3-9 - 100호 이상~ 300호 미만 : 150㎡ 이상	• 152.92㎡(지상22층)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Ⅲ.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Ⅳ. 방재계획 (변경없음)

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변경없음)

Ⅵ.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Ⅶ.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Ⅷ.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계획 (변경없음)

Ⅸ. 관계도면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89호

관악산근린공원(원신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369호(1980.11.19.)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72호(2025.04.03.)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관악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025년 제4차 도시공원위원회(2025.5.20.)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관악산근린공원(원신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내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공원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86-7번지 일대 [관악산근린공원(원신지구)]

3. 면 적 : 관악산근린공원(원신지구) 51,453.70㎡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6) 및 관악구 공원녹지정책과(☎ 02-879-6525), 금천구 공원녹지과(☎ 02-2627-165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1. 지구별 총괄표

구분		변경 전						구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765,534.70	494,756.13	63	32,356.84	86,481.43	882	계	1,748,160.70	498,282.55	63	32,356.84	86,481.43	883	감17,374.0㎡
시설지구	소계	1,765,534.70	494,756.13	63	32,356.84	86,481.43	882	소계	1,748,160.70	498,282.55	63	32,356.84	86,481.43	883	감17,374.0㎡
	독산지구	102,145.00	16,302.32	4	81.00	81.00	113	독산지구	102,145.00	16,302.32	4	81.00	81.00	113	
	금천체육지구	103,306.80	44,931.36	5	4,339.36	12,862.80	146	금천체육지구	103,306.80	44,931.36	5	4,339.36	12,862.80	146	
	산기슭지구	14,084.90	8,417.26	2	583.48	1,847.48	34	산기슭지구	14,084.90	8,417.26	2	583.48	1,847.48	34	
	목골지구	6,213.50	1,160.87	-	-	-	11	목골지구	6,213.50	1,160.87	-	-	-	11	
	댓골지구	2,115.00	246.25	-	-	-	13	댓골지구	2,115.00	246.25	-	-	-	13	
	삼성산지구	37,874.90	9,235.41	-	-	-	49	삼성산지구	37,874.90	9,235.41	-	-	-	49	
	금천삼각지구	47,205.30	9,100.28	-	-	-	33	금천삼각지구	47,205.30	9,100.28	-	-	-	33	
	은행숲지구	1,145.00	33.36	-	-	-	-	은행숲지구	1,145.00	33.36	-	-	-	-	
	선우지구	87,892.70	30,020.62	1	749.05	749.05	13	선우지구	87,892.70	30,020.62	1	749.05	749.05	13	
	난곡지구	23,409.00	5,548.55	-	-	-	12	난곡지구	23,409.00	5,548.55	-	-	-	12	
	난향지구	10,186.40	3,098.15	1	59.00	59.00	30	난향지구	10,186.40	3,098.15	1	59.00	59.00	30	
	목골산지구	57,402.50	4,329.67	-	-	-	4	목골산지구	57,402.50	4,329.67	-	-	-	4	
	미성지구	10,198.10	3,722.30	1	1,408.30	1,636.30	39	미성지구	10,198.10	3,722.30	1	1,408.30	1,636.30	39	
	난우지구	22,425.20	4,664.72	-	-	-	31	난우지구	22,425.20	4,664.72	-	-	-	31	
	법원단지지구	7,634.30	295.05	-	-	-	8	법원단지지구	7,634.30	295.05	-	-	-	8	
	양지지구	10,586.00	2,453.24	-	-	-	37	양지지구	10,586.00	2,453.24	-	-	-	37	
	하늘지구	21,039.90	5,578.78	1	27.80	27.80	56	하늘지구	21,039.90	5,578.78	1	27.80	27.80	56	
	난곡로지구	409.70	409.70	-	-	-	-	난곡로지구	409.70	409.70	-	-	-	-	

구 분		변경전 부지면적(㎡)	변경전 시설면적(㎡)	변경전 건축물 동수(동)	변경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구 분	변경후 부지면적(㎡)	변경후 시설면적(㎡)	변경후 건축물 동수(동)	변경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후 공작물(기)	비고
	난향숲길지구	25,838.20	534.71	-	-	-	22	난향숲길지구	25,838.20	534.71	-	-	-	22	
	원신지구	51,453.70	5,613.31	1	246.80	246.80	22	원신지구	51,453.70	9139.73	1	246.80	246.80	23	
	약수암지구	62,302.30	9,833.53	5	211.54	267.88	8	약수암지구	44,928.30	9,833.53	5	211.54	267.88	8	시고시제2025-427호(2025.7.31.) 감17,374.0㎡
	신우지구	9,401.20	-	-	-	-	-	신우지구	9,401.20	-	-	-	-	-	
	고시원지구	31,712.30	11,581.88	-	-	-	5	고시원지구	31,712.30	11,581.88	-	-	-	5	
	샘말지구	12,284.00	8,728.42	1	13.80	13.80	30	샘말지구	12,284.00	8,728.42	1	13.80	13.80	30	
	희망지구	10,119.10	780.23	-	-	-	-	희망지구	10,119.10	780.23	-	-	-	-	
	신림계곡지구	379,598.90	93,390.68	12	4,093.59	16,091.62	19	신림계곡지구	379,598.90	93,390.68	12	4,093.59	16,091.62	19	
	청룡산지구	86,287.30	17,338.82	3	2,027.32	2,662.66	34	청룡산지구	86,287.30	17,338.82	3	2,027.32	2,662.66	34	
	낙성대지구	487,033.30	193,251.43	26	18,515.80	49,935.24	81	낙성대지구	487,033.30	193,251.43	26	18,515.80	49,935.24	81	
	인헌지구	5,030.00	1,541.91	-	-	-	32	인헌지구	5,030.00	1,541.91	-	-	-	32	
	남현지구	14,446.20	-	-	-	-	-	남현지구	14,446.20	-	-	-	-	-	
	관음사지구	24,754.00	2,613.32	-	-	-	-	관음사지구	24,754.00	2,613.32	-	-	-	-	
시 설 률 (법정 40%)		(494,756.13 / 1,765,534.70) × 100 = 28.02%						(498,282.55 / 1,748,160.70) × 100 = 28.50%							
건 폐 율 (법정 10%)		(32,356.84 / 1,765,534.70) × 100 = 1.83%						(32,356.84 / 1,748,160.70) × 100 = 1.85%							

2. 총괄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765,534.70	494,756.13	63	32,356.84	86,481.43	882	1,748,160.70	498,282.55	63	32,356.84	86,481.43	883	증 3,526.42㎡ (증 1기)
기반시설	소 계	176,250.54	136,774.29	-	-	-	-	177,835.54	138,359.29	-	-	-	-	증 1,585.00㎡
	도 로	149,9 95.89	110,519.64	-	-	-	2	151,580.89	112,104.64	-	-	-	2	증 1,585.00㎡
	광 장	26,254.65	26,254.65	-	-	-	-	26,254.65	26,254.65	-	-	-	-	-
조경시설		27,606.47	27,606.47	-	-	-	21	27,820.18	27,820.18	-	-	-	21	증 213.71㎡
휴양시설		45,798.50	45,798.50	1	125	125	516	45,915.26	45,915.26	1	125	125	516	증 116.76㎡
유희시설		12,727.06	12,727.06	-	-	-	59	12,727.06	12,727.06	-	-	-	59	-
운동시설		81,184.43	81,184.43	12	8,971.43	21,926.87	225	82,623.92	82,623.92	13	8,971.43	21,926.87	225	증 1,439.49㎡
교양시설		166,976.55	166,976.55	24	20,239.12	59,792.65	10	166,976.55	166,976.55	24	20,239.12	59,792.65	10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편익시설	20,074.77	20,074.77	15	2,199.91	3,671.53	7	20,151.07	20,151.07	15	2,199.91	3,671.53	7	증 76.30㎡
관리시설	2,714.06	2,714.06	11	821.38	965.38	42	2,809.22	2,809.22	11	821.38	965.38	43	증 95.16㎡ (증 1기)
그 밖의 시설	900.00	900.00	-	-	-	-	900.00	900.00	-	-	-	-	-
녹지 및 기타	1,231,302.32	0.00	-	-	-	-	1,210,401.90	0.00	-	-	-	-	감 20,900.42㎡
시설률 (법정 40%)	(494,756.13 / 1,765,534.70) × 100 = 28.02%						(498,282.55 / 1,748,160.70) × 100 = 28.50%						
건폐율 (법정 10%)	(32,356.84 / 1,765,534.70) × 100 = 1.83%						(32,356.84 / 1,748,160.70) × 100 = 1.85%						

관악산근린공원(원신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1. 관악산근린공원(원신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85-1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1,453.70	5,613.31	1	246.80	246.80	22	51,453.70	9,139.73	1	246.80	246.80	23	증 3,526.42㎡ (증 1기)
기반시설	소 계	2,913.94	2,913.94	-	-	-	-	4,498.94	4,498.94	-	-	-	-	증 1,585.00㎡
	도 로	2,913.94	2,913.94	-	-	-	-	4,498.94	4,498.94	-	-	-	-	증 1,585.00㎡
	광장	-	-	-	-	-	-	-	-	-	-	-	-	
조경시설		1,643.60	1,643.60	-	-	-		1,857.31	1,857.31	-	-	-	-	증 213.71㎡
휴양시설		808.97	808.97	-	-	-	13	925.73	925.73	-	-	-	13	증 116.76㎡
유희시설		-	-	-	-	-	-	-	-	-	-	-	-	-
운동시설		-	-	-	-	-	9	1,439.49	1,439.49	-	-	-	9	증 1,439.49㎡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76.30	76.30	-	-	-	-	증 76.30㎡
관리시설	246.80	246.80	1	246.80	246.80	-	341.96	341.96	1	246.80	246.80	1	증 95.16㎡(증 1기)
녹지 및 기타	45,840.39	-	-	-	-	-	42,313.97	-	-	-	-	-	감 3,526.42㎡

2.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51,453.70	5,613.31		1	246.80	246.80	22			51,453.70	9,139.73		1	246.80	246.80	23	증 3,526.42㎡
기반시설	소 계			2,913.94	2,913.94								4,498.94	4,498.94						증 1,585.00㎡
	도 로			2,913.94	2,913.94								4,498.94	4,498.94						증 1,585.00㎡
조경시설	소 계			1,643.60	1,643.60								1,857.31	1,857.31						증 213.71㎡
	맞이마당	가	신림동 산86-6	534.60	534.60						가	신림동 산86-6	534.60	534.60						
	조형 파고라	나	신림동 산86-6	20.90	20.90						나	신림동 산86-6	20.90	20.90						
	파고라	다	신림동 산86-6	6.20	6.20						다	신림동 산86-6	6.20	6.20						
	초정	라	신림동 산86-6	12.50	12.50						라	신림동 산86-6	12.50	12.50						
	농기구 보관소	마	신림동 산86-7	24.00	24.00						마	신림동 산86-7	24.00	24.00						
	작업대	바	신림동 산86-7	4.80	4.80						바	신림동 산86-7	4.80	4.80						
	토양미생물 관찰시설	사	신림동 산86-7	0.80	0.80						사	신림동 산86-7	0.80	0.8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퇴비장	아	신림동 산86-7	24.00	24.00						아	신림동 산86-7	24.00	24.00						
	잔디마당	자	신림동 산86-6	515.70	515.70						자	신림동 산86-6	515.70	515.70						
	생태연못	차	신림동 산86-6	154.10	154.10						차	신림동 산86-6	154.10	154.10						
	창포원	카	신림동 산86-7	134.70	134.70						카	신림동 산86-7	134.70	134.70						
	계류	타	신림동 산86-6	115.90	115.90						타	신림동 산86-6	115.90	115.90						
	계단	파	신림동 산86-6	4.00	4.00						파	신림동 산86-6	4.00	4.00						
	양봉체험원	하	신림동 산86-7	7.00	7.00															폐지
	야생조류 관찰대	거	신림동 산86-7	11.20	11.20															폐지
	스탠드	너	신림동 산86-6	-	-								-	-						폐지
	목교	더	신림동 산86-6	24.90	24.90						더	신림동 산86-6	24.90	24.90						
	데크	러	신림동 산86-6	32.30	32.30						러	신림동 산86-6	32.30	32.30						
	토양미생물 관찰원	머	신림동 산86-7	16.00	16.00						머	신림동 산86-7	16.00	16.00						
	화단1										어	신림동 산85-19	202.23	202.23						신설
	화단2										저	신림동 산85-19	29.68	29.68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양시설	소계			808.97	808.97					13			925.73	925.73					13	증 116.76㎡
	쉼터	벼	신림동 산86-6	61.80	61.80						벼-1	신림동 산86-6	(61.80)	(61.80)						
		서	신림동 1713-6	747.17	747.17						벼-2	신림동 1713-6	(747.17)	(747.17)						
											벼-3	신림동 산85-1	(86.76)	(86.76)						신설
											벼-4	신림동 산85-1	(30.00)	(30.00)						신설
	사각 파고라	①	휴게쉼터	-	-					1	①	쉼터 벼-2	-	-					1	
	평의자	②	휴게쉼터	-	-					9	②	쉼터 벼-2	-	-					9	
	등의자	③	휴게쉼터	-	-					3	③	쉼터 벼-2	-	-					3	
운동시설	소계			-	-					9			1,439.49	1,439.49					9	증 1,439.49㎡
	체력단련시설	④	휴게쉼터	-	-					9	④	쉼터 벼-2	-	-					9	
	테니스장										처	신림동 산85-19	1,439.49	1,439.49						신설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편익시설	소계												76.30	76.30						증 76.30㎡
	주차장										커	신림동 산86-6	76.30	76.30						신설
관리시설	소 계			246.80	246.80			246.80	246.80				341.96	341.96			246.80	246.80	1	증 95.16㎡
	관리소	1	신림동 산86-6	246.80	246.80			246.80	246.80		1	신림동 산86-6	246.80	246.80			246.80	246.80		
	관리실										2	신림동 산85-19	95.16	95.16					1	신설
녹지및기타	소 계			45,840.39									42,313.97							감 3,526.42㎡
	녹지			45,840.39									42,313.97							감 3,526.42㎡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변경	합 계				(1,648.75) 2,357.32	(2,913.94) 4,498.94				
당초 변경	소 계				(110.43) 332.93	(302.62) 1,020.93				
당초	소로	3류	1	2.5	29.74	69.04	진입로	공원 경계	쉼터 버-2	
당초 변경		(3류) 3류	(2) 2	(3.0) 3.0	(80.69) 116.06	(233.58) 333.52	진입로 진입로	목교 더 목교 더	녹지대 산책로 42	
신설		3류	3	3.0	187.13	618.37	진입로	공원 경계	소로 3-2	
당초 변경	소 계				(1,538.32) 2,024.39	(2,611.32) 3,478.01				
당초 변경	산책로	- -	(1) 1	(1.2) 1.0	(248.84) 75.38	(287.78) 71.45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18	소로 3-2 산책로 11	
당초 폐지		-	(2)	(0.5)	(10.80)	(7.16)	산책로	산책로 1	녹지대	
당초 폐지		-	(3)	(0.5)	(16.29)	(10.29)	산책로	산책로 1	녹지대	
당초 폐지		-	(4)	(0.5)	(22.22)	(11.94)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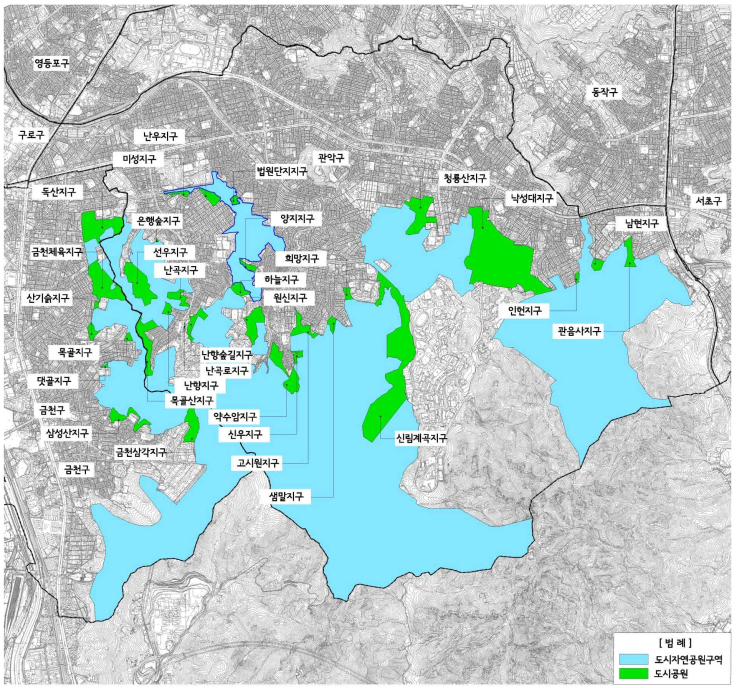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폐지	산책로	-	(5)	(1.0)	(29.11)	(31.01)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6	
당초 폐지		-	(6)	(1.2)	(48.54)	(62.33)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33	
당초 폐지		-	(7)	(1.5)	(40.20)	(64.35)	산책로	산책로 8	산책로 33	
당초 변경		- -	(8) 8	(2.0) 2.0	(67.21) 53.46	(148.02) 118.79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1 데크 러	소로 3-2 소로 3-2	
당초		-	9	0.8-2.0	95.14	86.58	산책로	산책로 9	산책로 9	
당초		-	10	0.8	28.90	21.27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34	
당초 변경		- -	(11) 11	(1.2) 1.2	(10.60) 11.21	(15.34) 14.00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1	목교 더 목교 더	
당초		-	12	0.8	8.88	7.84	산책로	산책로 1	목교 더	
당초 변경		- -	(13) 13	(1.2) 1.0	(10.96) 14.36	(12.10) 15.48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1	녹지대 계류 타	
당초		-	14	0.6-1.2	23.06	20.39	산책로	산책로 16	산책로 18	
당초		-	15	0.8	26.35	21.00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16	
당초		-	16	2.0	30.11	73.55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18	
당초		-	17	2.0	24.76	58.94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32	
당초		-	18	3.5-4.8	142.61	454.46	산책로	공원 경계	소로 3-2	
당초		-	19	3.5-6.0	39.62	150.80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18	
당초		-	20	1.4	16.84	23.48	산책로	산책로 19	산책로 1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폐지		-	(21)	(1.0)	(5.10)	(3.98)	산책로	산책로 23	산책로 18	
당초 폐지		-	(22)	(0.8)	(12.26)	(9.81)	산책로	산책로 23	산책로 18	
당초 변경		- -	(23) 23	(1.5) 1.5	(103.80) 79.15	(160.06) 117.96	산책로 산책로	녹지대 녹지대	공원 경계 산책로 18	
당초		-	24	2.0	58.92	125.13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23	
당초		-	25	1.5-2.0	36.60	52.60	산책로	산책로 24	산책로 24	
당초		-	26	1.5-2.2	108.70	187.29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23	
당초		-	27	1.2	32.20	38.72	산책로	산책로 23	산책로 23	
당초		-	28	1.5	14.90	30.20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24	
당초	산책로	-	29	1.5	28.01	53.28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32	
당초		-	30	2.0	25.87	58.57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32	
당초		-	31	1.5	22.26	42.06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32	
당초		-	32	2.5	68.26	161.91	산책로	산책로 24	소로 3-2	
당초 폐지		-	(33)	(1.2)	(61.05)	(91.58)	산책로	녹지대	공원 경계	
당초		-	34	1.5	19.35	27.50	산책로	소로 3-2	데크 러	
신설		-	35	1.2	32.67	39.21	산책로	소로 3-3	쉼터 버-2	
신설		-	36	1.2	88.84	106.60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38	
신설		-	37	1.2	134.79	161.75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신설		-	38	1.2	115.34	138.63	산책로	소로 3-3	공원경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산책로	-	39	1.2	11.65	14.12	산책로	산책로 37	산책로 9	
신설		-	40	1.5	61.43	92.17	산책로	산책로 42	산책로 42	
신설		-	41	1.3	4.56	5.93	산책로	쉼터 버-3	산책로 42	
신설		-	42	1.5~2.0	392.30	704.41	산책로	산책로 43	산책로 42	
신설		-	43	1.5~2.0	97.91	181.94	산책로	공원 경계	산책로 42	

관악산 근린공원 위치도 [변경전]

관악산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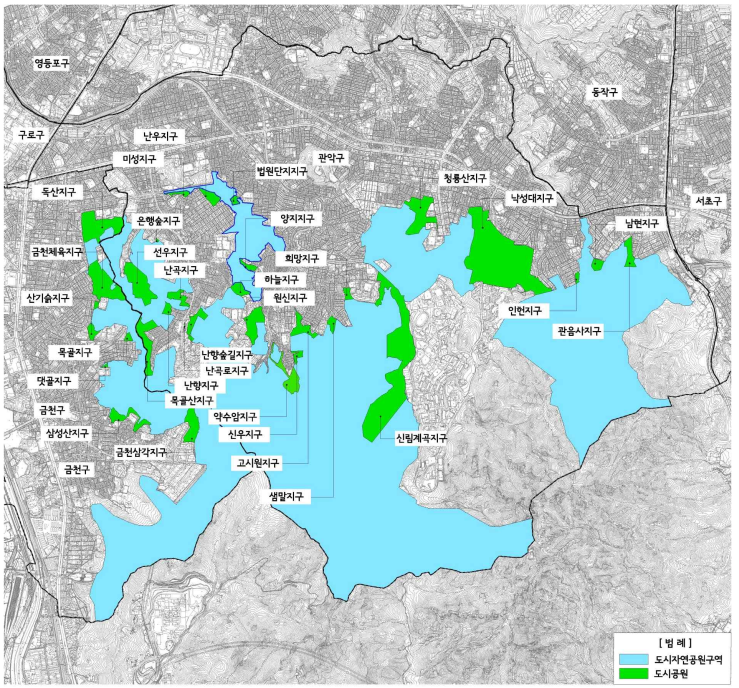
■ 개요

	구분	위치	면적(㎡)	비고
01	독산지구	금천구 독산동 산 10-2	102,145.00	
02	금천체육지구	금천구 독산동 산 118-4	103,306.80	
03	산기슭지구	금천구 시흥동 산 138-3	14,084.90	
04	목골지구	금천구 시흥동 산 132-3	6,213.50	
05	댓골지구	금천구 시흥동 산 126-28	2,115.00	
06	삼성산지구	금천구 시흥동 산 112-8	37,874.90	
07	금천삼각지구	금천구 시흥동 산 100-8	47,205.30	
08	은행숲지구	관악구 미성동 산 114-10	1,145.00	
09	선우지구	관악구 미성동 737-1	87,892.70	
10	난곡지구	관악구 난곡동 산 108-8	23,409.00	
11	난향지구	관악구 신림동 685-4	10,186.40	
12	목골산지구	관악구 난향동 산 105-25	57,402.50	
13	미성지구	관악구 미성동 산 197-3	10,198.10	
14	난우지구	관악구 미성동 산 124-6	22,425.20	
15	법원단지지구	관악구 신원동 산 159-48	7,634.30	
16	양지지구	관악구 삼성동 산 134-13	10,586.00	
17	하늘지구	관악구 삼성동 336-8	21,039.90	
18	난곡로지구	관악구 난향동 808-287	409.70	
19	난향숲길지구	관악구 난향동 산 93-2	25,838.20	
20	원신지구	관악구 삼성동 산 86-7	51,453.70	
21	약수암지구	관악구 삼성동 산 74-3	62,302.30	
22	신우지구	관악구 삼성동 산 61-4	9,401.20	
23	고시원지구	관악구 신림동 산 68-2	31,712.30	
24	샘말지구	관악구 대학동 산 63-1	12,284.00	
25	희망지구	관악구 대학동 산 24-9	10,119.10	
26	신림계곡지구	관악구 대학동 205-1	379,598.90	
27	청룡산지구	관악구 청룡동 산 175-10	86,287.30	
28	낙성대지구	관악구 낙성대동 산 48-5	487,033.30	
29	인헌지구	관악구 인헌동 산 3-8	5,030.00	
30	남현지구	관악구 남현동 산 57-54	14,446.20	
31	관음사지구	관악구 남현동 산 57-41	24,754.00	



관악산 근린공원 위치도 [변경후]

관악산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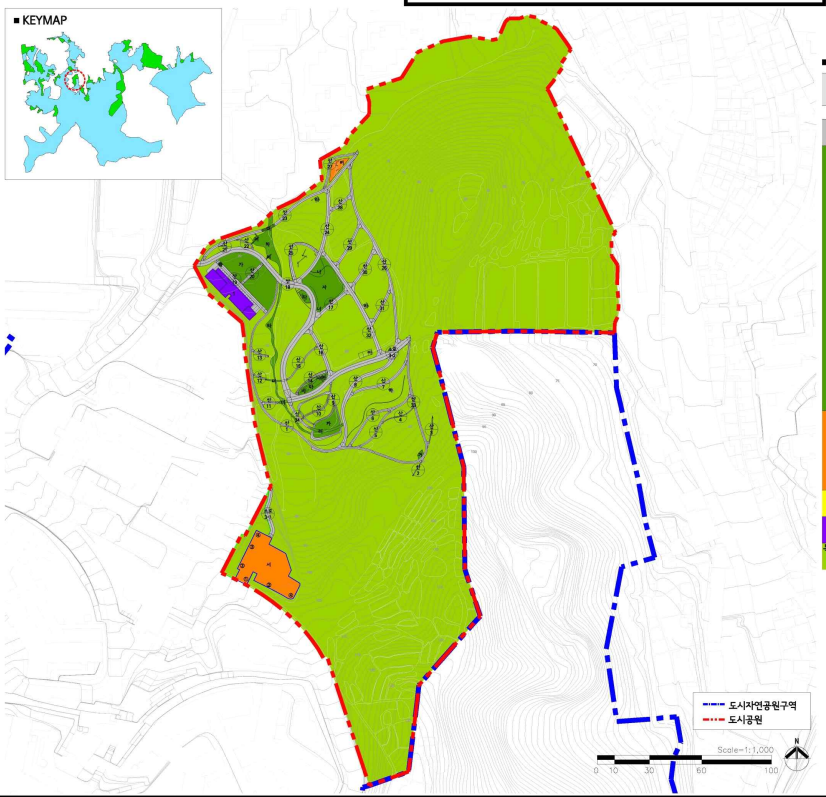
■ 개요

	구분	위치	면적(㎡)	비고
01	독산지구	금천구 독산동 산 10-2	102,145.00	
02	금천체육지구	금천구 독산동 산 118-4	103,306.80	
03	산기슭지구	금천구 시흥동 산 138-3	14,084.90	
04	목골지구	금천구 시흥동 산 132-3	6,213.50	
05	댓골지구	금천구 시흥동 산 126-28	2,115.00	
06	삼성산지구	금천구 시흥동 산 112-8	37,874.90	
07	금천삼각지구	금천구 시흥동 산 100-8	47,205.30	
08	은행숲지구	관악구 미성동 산 114-10	1,145.00	
09	선우지구	관악구 미성동 737-1	87,892.70	
10	난곡지구	관악구 난곡동 산 108-8	23,409.00	
11	난향지구	관악구 신림동 685-4	10,186.40	
12	목골산지구	관악구 난향동 산 105-25	57,402.50	
13	미성지구	관악구 미성동 산 197-3	10,198.10	
14	난우지구	관악구 미성동 산 124-6	22,425.20	
15	법원단지지구	관악구 신원동 산 159-48	7,634.30	
16	양지지구	관악구 삼성동 산 134-13	10,586.00	
17	하늘지구	관악구 삼성동 336-8	21,039.90	
18	난곡로지구	관악구 난향동 808-287	409.70	
19	난향숲길지구	관악구 난향동 산 93-2	25,838.20	
20	원신지구	관악구 삼성동 산 86-7	51,453.70	
21	약수암지구	관악구 삼성동 산 74-3	44,928.30	감17,374.0㎡
22	신우지구	관악구 삼성동 산 61-4	9,401.20	
23	고시원지구	관악구 신림동 산 68-2	31,712.30	
24	샘말지구	관악구 대학동 산 63-1	12,284.00	
25	회망지구	관악구 대학동 산 24-9	10,119.10	
26	신림계곡지구	관악구 대학동 205-1	379,598.90	
27	청룡산지구	관악구 청룡동 산 175-10	86,287.30	
28	낙성대지구	관악구 낙성대동 산 48-5	487,033.30	
29	인헌지구	관악구 인헌동 산 3-8	5,030.00	
30	남현지구	관악구 남현동 산 57-54	14,446.20	
31	관음사지구	관악구 남현동 산 57-41	24,754.00	



조성계획도 [변경전]

원신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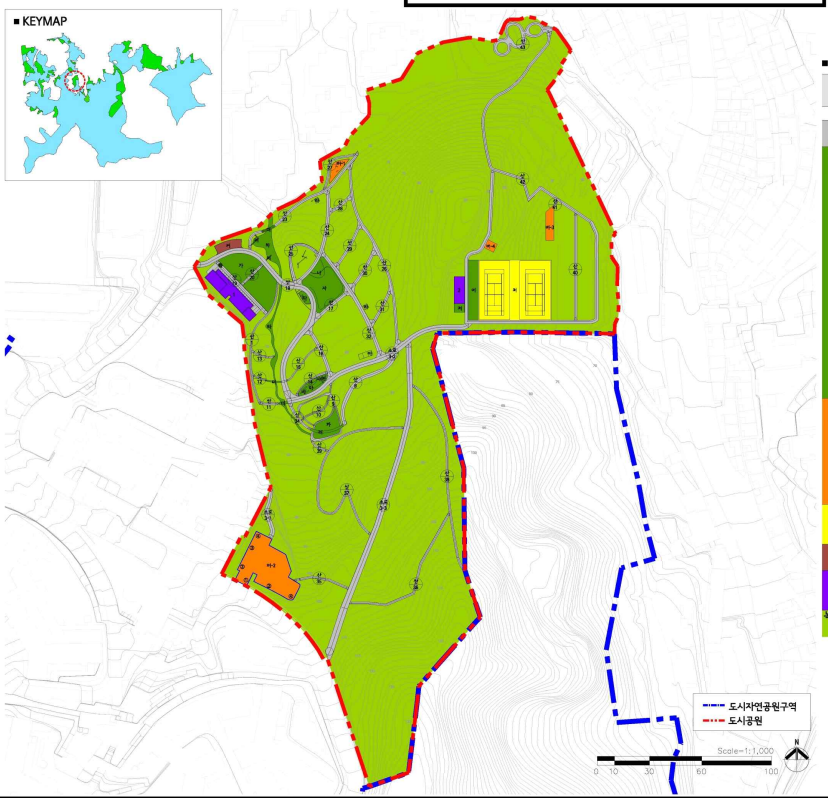


■ 범 례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51,453.70	5,613.31	-	1	246.80	246.80	22	
기반시설	소계		2,913.94	2,913.94	-	-	-	-	-	
	도로		2,913.94	2,913.94	-	-	-	-	-	
조경시설	소계		1,643.60	1,643.60	-	-	-	-	-	
	맞이마당	가	534.60	534.60	-	-	-	-	-	
	조형파고라	나	20.90	20.90	-	-	-	-	-	
	파고라	다	6.20	6.20	-	-	-	-	-	
	초정	라	12.50	12.50	-	-	-	-	-	
	농기구보관소	마	24.00	24.00	-	-	-	-	-	
	작업대	바	4.80	4.80	-	-	-	-	-	
	토양미생물분말시설	사	0.80	0.80	-	-	-	-	-	
	퇴비장	아	24.00	24.00	-	-	-	-	-	
	잔디마당	자	515.70	515.70	-	-	-	-	-	
	생태연못	차	154.10	154.10	-	-	-	-	-	
	창포원	카	134.70	134.70	-	-	-	-	-	
	계류	타	115.90	115.90	-	-	-	-	-	
	계단	파	4.00	4.00	-	-	-	-	-	
	양봉체험원	하	7.00	7.00	-	-	-	-	-	
	야생초류철대	거	11.20	11.20	-	-	-	-	-	
	스탠드	너	-	-	-	-	-	-	-	
	목교	더	24.90	24.90	-	-	-	-	-	
	데크	러	32.30	32.30	-	-	-	-	-	
	토양미생물공원원	머	16.00	16.00	-	-	-	-	-	
휴양시설	소계		808.97	808.97	-	-	-	-	13	
	쉼터	버	61.80	61.80	-	-	-	-	-	
	휴게쉼터	서	747.17	747.17	-	-	-	-	-	
	사각파고라	①	-	-	-	-	-	-	1	
	평의자	②	-	-	-	-	-	-	9	
	등의자	③	-	-	-	-	-	-	3	
운동시설	소계		-	-	-	-	-	-	9	
	체력단련시설	④	-	-	-	-	-	-	9	
관리시설	소계		246.80	246.80	-	1	246.80	246.80	-	
	관리소	1	246.80	246.80	-	1	246.80	246.80	-	
녹지 및 기타	소계		45,840.39	-	-	-	-	-	-	
	녹지		45,840.39	-	-	-	-	-	-	

조성계획도 [변경후]

원신지구



■ 범 례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51,453.70	9,139.73	-	1	246.80	246.80	23	중3,526.42㎡
기반시설	소계		4,498.94	4,498.94	-	-	-	-	-	중1,585.00㎡
	도로		4,498.94	4,498.94	-	-	-	-	-	중1,585.00㎡
조경시설	소계		1,857.31	1,857.31	-	-	-	-	-	중213.71㎡
	맞이마당	가	534.60	534.60	-	-	-	-	-	
	조형파고라	나	20.90	20.90	-	-	-	-	-	
	파고라	다	6.20	6.20	-	-	-	-	-	
	초청	라	12.50	12.50	-	-	-	-	-	
	농기구보관소	마	24.00	24.00	-	-	-	-	-	
	작업대	바	4.80	4.80	-	-	-	-	-	
	토양미생물분할시설	사	0.80	0.80	-	-	-	-	-	
	퇴비장	아	24.00	24.00	-	-	-	-	-	
	잔디마당	자	515.70	515.70	-	-	-	-	-	
	생태연못	차	154.10	154.10	-	-	-	-	-	
	창포원	카	134.70	134.70	-	-	-	-	-	
	계류	타	115.90	115.90	-	-	-	-	-	
	계단	파	4.00	4.00	-	-	-	-	-	
	목교	더	24.90	24.90	-	-	-	-	-	
	데크	러	32.30	32.30	-	-	-	-	-	
	토양미생물분할원	머	16.00	16.00	-	-	-	-	-	
	화단1	어	202.23	202.23	-	-	-	-	-	중202.23㎡
	화단2	저	29.68	29.68	-	-	-	-	-	중29.68㎡
휴양시설	소계		925.73	925.73	-	-	-	-	13	중116.76㎡
	쉼터	버-1	(61.80)	(61.80)	-	-	-	-	-	
		버-2	(747.17)	(747.17)	-	-	-	-	-	
		버-3	(86.76)	(86.76)	-	-	-	-	-	중86.76㎡
		버-4	(30.00)	(30.00)	-	-	-	-	-	중30.00㎡
	사각파고라	①	-	-	-	-	-	-	1	
	평의자	②	-	-	-	-	-	-	9	
	등의자	③	-	-	-	-	-	-	3	
운동시설	소계		1,439.49	1,439.49	-	-	-	-	9	중1,439.49㎡
	체력단련시설	④	-	-	-	-	-	-	9	
	테니스장	처	1,439.49	1,439.49	-	-	-	-	-	중1,439.49㎡
관리시설	소계		76.30	76.30	-	-	-	-	-	중76.30㎡
	주차장	커	76.30	76.30	-	-	-	-	-	중76.30㎡
관리시설	소계		341.96	341.96	-	1	246.80	246.80	1	중95.16㎡
	관리소	1	246.80	246.80	-	1	246.80	246.80	-	
	관리실	2	95.16	95.16	-	-	-	-	1	중95.16㎡
녹지 및 기타	소계		42,313.97	-	-	-	-	-	-	감3,526.42㎡
	녹지		42,313.97	-	-	-	-	-	-	감3,526.4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90호

신내4가로공원(가칭)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90호(2024.06.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68호(2025.12.0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20호(2025.04.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된 신내4가로공원(가칭)에 대하여,
2. 서울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5차) 및 지구계획변경(3차) 승인(경미한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신내역 및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진입부에 인접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신규공원을 조성하기 위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56-5

3. 공원면적(변경)
   (당초) 585.0㎡ → (변경) 567.0㎡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67) 및 중랑구 공원녹지과(☎02-2094-2356)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내4 공공주택지구 가로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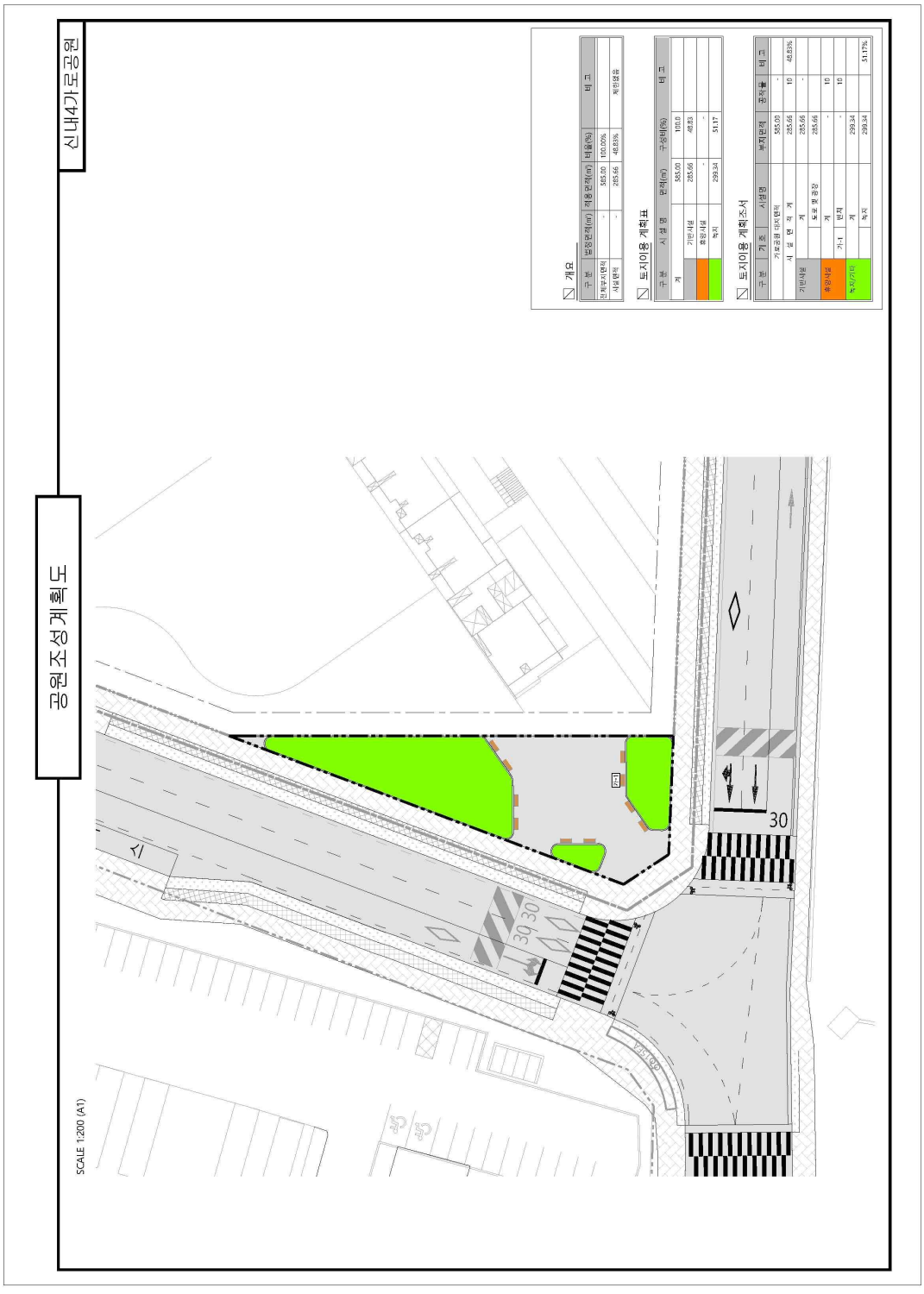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85.00	285.66	-	-	-	10	567.00	267.66	-	-	-	28	감 18㎡
기반시설	소 계	258.66	285.66	-	-	-	-	267.66	267.66	-	-	-	-	감 18㎡
	도 로	-	-	-	-	-	-	-	-	-	-	-	-	-
	광 장	285.66	285.66	-	-	-	-	267.66	267.66	-	-	-	-	감 18㎡
휴양시설		-	-	-	-	-	10	-	-	-	-	-	10	-
조경시설		-	-	-	-	-	-	-	-	-	-	-	18	증 18기
유희시설		-	-	-	-	-	-	-	-	-	-	-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	-	-	-	-	-		-	-	-	-	-	-		-
교양시설	-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299.34	-	-	-	-	-		299.34	-	-	-	-	-		-
시설물 (제한없음)	(285.66 / 585.00) × 100% = 48.83%							(267.66 / 567.00) × 100% = 47.21%							-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 면 적								바닥면적	연 면 적		
합 계				585.00	285.66					10			567.00	267.66					28	감 18㎡
기반시설	소 계			285.66	285.66								267.66	267.66						감 18㎡
	광장		신내동 56-5	285.66	285.66							신내동 56-5	267.66	267.66						감 18㎡
휴양시설	소 계									10									10	
	벤치	가-1	신내동 56-5							10	가-1	신내동 56-5							10	
유희시설	소계																			
조경시설	소계																		18	주 18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종합안내판											①	신내동 56-5							1	신설
볼라드											②	신내동 56-5							17	신설
소계	운영시설																			
소계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신내동 56-5	299.34									299.34							


신내4가로공원
공원조성계획도
SCALE 1:200 (A1)
30
30
30
개요
구 분 | 부지면적(㎡) | 녹화면적(㎡) | 녹화율(%) | 비 고
전체부지면적 | - | 565.00 | 100.00% |
녹화면적 | - | 285.66 | 48.85% | 계획생육
도시이용 계획표
구 분 | 시 설 명 | 면적(㎡) | 구성비(%) | 비 고
계 | | 565.00 | 100.0 |
기반시설 | | 285.66 | 48.85 |
용장시설 | | - | - |
녹지 | | 299.34 | 51.17 |
도시이용 계획조서
구 분 | 기 호 | 시설명 | 부지면적 | 증가율 | 비 고
기존공원 대지면적 | | | 565.00 | - |
시 설 면 적 | 계 | | 285.66 | 10 | 48.85%
기반시설 | 계 | | 285.66 | - |
| 노로 및 광장 | | 285.66 | - |
용장시설 | 계 | | - | 10 |
| 관리 | | - | 10 |
녹지/기타 | 계 | | 299.34 | |
| 녹지 | | 299.34 | | 51.17%


공원조성계획도
신내4근린공원
N
SCALE 1:200 (A1)
30
30
개요
구 분 | 법정면적(㎡) | 제출면적(㎡) | 비율(%) | 비 고
건축물 | - | 567.03 | 100.00% |
녹지 | - | 267.66 | 47.19% | 투수율
도시이용 계획표
구 분 | 시 설 명 | 면적(㎡) | 구성비(%) | 비 고
계 | | 567.03 | 100.0 |
기반시설 | | 267.66 | 47.19 |
휴양시설 | | - | - |
조경시설 | | - | - |
녹지 | | 299.34 | 52.81 |
도시이용 계획조서
구 분 | 시설명 | 규격 | 수량 | 면적(㎡) | 조성율 | 비 고
건축물 | 기존건물 | 1층 | 1 | 567.03 | | |
기반시설 | 보 행 로 | 석 재 | 210 | 267.66 | 47.19% |
휴양시설 | 놀 이 터 | 목 재 | - | 267.66 | - |
조경시설 | 경 관 녹 지 | 관 목 | 15 | - | 15 |
	교 목	15	-	15
① 종합안내판	철 재	1	-	1
② 벤 치	철 재	17	-	17
녹지기타 | 잔 디 | 녹 지 | | 299.34 | 299.34 | 52.8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93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삼선동3가 42-7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성북구	삼선동3가 42-7번지 일대	16,815.15	2025. 11. 17.	2025년 제19차 전문가 자문회의 (2025.12.03.)

2. 권리산정기준일: 2025. 11. 17.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삼선동3가 42-7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94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365번지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함께 잘사는 시장 살리기” 사업(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영등포구 “함께 잘사는 시장 살리기(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대상지는 1970년대 건립된 노후 · 불량 건축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세입자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미추진된 지역으로서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토지 지분이 없어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 간의 의견 불일치) 붕괴우려(2017년도 재난등급 E 지정)에 따른 거주민 안전 문제가 심각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상가 세입자, 주거 세입자의 생계 대책 및 이주 대책을 고려한 도시재생과 연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없음)

3.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위치, 면적, 사업비 및 사업기간(변경)

위치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영등포구 신길동 2365번지 일대	2,754㎡	65,500백만원	2020년~2026년

❍ 변경사유 : 이주 지연 및 재개발사업 절차 이행에 따른 변경(기간연장)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축 및 운영·관리 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구분	주체명	추진단계별 역할
시행주체	공기업(LH)	사업 기획, 설계, 인가, 건설 등 재개발 사업시행
운영주체	영등포구청	임시상가, 공공임대상가 및 생활SOC 운영관리

5.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변경없음)

가.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시행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우려 건축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을 보장하고 상가 및 주거 세입자 이주대책 확보를 통한 세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

나.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

- 기존 영진시장의 판매시설 면적보다 약 8배 가까이 증가된 판매시설을 통해 지역에 신규 사업체가 입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다.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 서울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과밀부담금의 50%, 타 기금 · 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 운용 기준을 마련
-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호, 재정착 지원을 통해 둥지내몰림 극복과 공공성을 회복하고자 함

6.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주요 도입기능(변경없음)

구분	이용수요	운영주체	S/W 프로그램
(임시)이주상가	영진시장 기존 상가 세입자	영등포구청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상가	영진시장 기존 상가 세입자 및 추가입주자(모집)	영등포구청	
생활SOC	주변 지역 주민	영등포구청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주민 대상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고령자, 주부 등 다양한 지역 주민 계층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 · 체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주택	영진시장 기존 주거 세입자	LH	-

7. 주민 열람(변경없음)

가. 열람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함께 잘사는 시장 살리기”(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다.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라.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게재 생략)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02-2670-3582)로 방문하여 주시거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95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11호(2024.4.25.)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다동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지 등 보상 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로 사업기간을 변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대상지는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장기미확보 공원으로 일부만 조성되고 타 용도로 이용되거나 방치되어 있으며, 향후 조성시기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낙후되어 정비가 시급함
   ○ 이에 따라 인접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역사보행네트워크 구축, 재생활성화 거점조성지와 연계한 보행 및 녹지체계 연결, 도심내 거점공원인 도시재생기반시설 조기조성 필요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중구청장
   ○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3. 도시재생 인정사업 개요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에 관한 계획(사업기간 변경)

위 치	면 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중구 다동 33-5 일대	5,726 (공원 3,936.2 + 주변도로 1,789.8)	90,153	(당초) 2022년~2025년 (변경) 2022년~2026년

   ○ 사업기간 변경 사유 : 토지 및 물건 보상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공원조성 및 운영·관리 계획의 개요(변경없음)

주요내용	합계	추진단계별 역할
시행주체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설계
	중구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로)사업
운영주체	중구	운영, 유지관리

5.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기대효과(변경없음)

○ 장기미확보 공원의 조기조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생태공간 제공, 슬럼화된 지역의 도시활성화 기대

○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한 다동공원 조성 및 주변 녹지체계구축으로 지역재생 파급효과 제고

6. 도시재생 인정사업 주요 도입기능(변경없음)

○ 다동공원의 주요시설은 빅캐노피(다양한 활동과 커뮤니티 공간), 수경시설(물순환 및 생태기능), 산책로, 휴게공간, 화장실, 도심숲 등으로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

○ 정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부족한 녹지를 다동공원 및 주변 녹지체계와 서로 연계하여 지역재생 파급효과 제고

7. 일반인 열람

○ 열람내용 : 다동공원 조성사업(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서울시 도시재창조과, 중구 공원녹지과

○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게재 생략)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 02-2133-4640), 중구 공원녹지과(☎02-3396-585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96호

대모산근린공원(일원지구)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최종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86호(2023.7.1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대모산근린공원(일원지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보상 완료된 경관 불량 훼손지(건물) 부지를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한 자연친화 녹색복지 책쉼터 및 숲속 정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434-1 일원
3. 면 적 : 229,732.7㎡
   -개포지구 : 62,813.4㎡
   -일원지구 : 149,361.3㎡
   -구룡지구 : 17,558.0㎡
4. 대모산근린공원(일원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별첨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원녹지과(☏ 02-3423-6243)

도시계획시설(대모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대모산근린공원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29,732.70	23,038.63	2	218.98	168.88	112	229,732.70	27,096.43	3	548.98	498.88	128	시설면적 증가 ㎡ 4,057.80㎡
기반시설	소 계	229,732.70	23,038.63	2	218.98	168.88	112	229,732.70	27,096.43	3	548.98	498.88	128	㎡ 4,057.80㎡
	개포지구	62,813.40	3,104.25	-	-	-	9	62,813.40	3,104.25	-	-	-	9	-
	일원지구	149,361.30	15,239.42	1	52.00	52.00	31	149,361.30	19,297.22	2	382.00	382.00	47	㎡ 4,057.80㎡
	구룡지구	17,558.00	4,694.96	1	166.98	116.88	72	17,558.00	4,694.96	1	166.98	116.88	72	-
시 설 율 (법정 40%)		23,038.63 / 229,732.70 × 100% = 10.03%						27,096.43 / 229,732.70 × 100% = 11.79%						
건 폐 율 (법정 10%)		218.98 / 229,732.70 × 100% = 0.10%						548.98 / 229,732.70 × 100% = 0.24%						

1-1. 대모산근린공원 개포지구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62,813.40	3,104.25	-	-	-	9	62,813.40	3,104.25	-	-	-	9	
기반시설	소계	2,737.75	2,737.75	-	-	-	-	2,737.75	2,737.75	-	-	-	-	
	도로	2,737.75	2,737.75	-	-	-	-	2,737.75	2,737.75	-	-	-	-	
	광장	-	-	-	-	-	-	-	-	-	-	-	-	
조경시설		-	-	-	-	-	-	-	-	-	-	-	-	
휴양시설		366.50	366.50	-	-	-	9	366.50	366.50	-	-	-	9	
유희시설		-	-	-	-	-	-	-	-	-	-	-	-	
운동시설		-	-	-	-	-	-	-	-	-	-	-	-	
교양시설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59,709.15	-	-	-	-	-	59,709.15	-	-	-	-	-	

1-2. 대모산근린공원 개포지구 시설조서(변경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	-	62,813.40	3,104.25	-	-	-	-	9	-	-	62,813.40	3,104.25	-	-	-	-	9	
기반시설	소계	-	-	2,737.75	2,737.75	-	-	-	-	-	-	-	2,737.75	2,737.75	-	-	-	-	-	
	도로	-	-	2,737.75	2,737.75	-	-	-	-	-	-	-	2,737.75	2,737.75	-	-	-	-	-	
휴양시설	소계	-	-	366.50	366.50	-	-	-	-	9	-	-	366.50	366.50	-	-	-	-	9	
	휴게소	가	개포동 산104	366.50	366.50	-	-	-	-	-	가	개포동 산104	366.50	366.50	-	-	-	-	-	
	파고라	①	휴게소	-	-	-	-	-	-	1	①	휴게소	-	-	-	-	-	-	1	
	평의자	②	휴게소	-	-	-	-	-	-	8	②	휴게소	-	-	-	-	-	-	8	
녹지 및 기타	소계	-	-	59,709.15	-	-	-	-	-	-	-	-	59,709.15	-	-	-	-	-	-	
	녹지	-	-	59,709.15	-	-	-	-	-	-	-	-	59,709.15	-	-	-	-	-	-	

1-3. 대모산근린공원 개포지구 도로조서(변경없음)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926.80	2,737.75	-	-	-	
변 경					926.80	2,737.75				
당 초	산책로	계			926.80	2,737.75	-	-	-	
변 경					926.80	2,737.75				
당 초			1	3.0	502.10	1,506.18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2	3.0	173.50	520.46	연결로	산책로 1	산책로 1	
당 초			3	3.0	208.70	626.15	진입로	공원경계	휴게소 가	
당 초			4	2.0	42.50	84.9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3	

2-1. 대모산근린공원 일원지구 총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49,361.30	15,239.42	1	52.00	52.00	31	149,361.30	19,297.22	2	382.00	382.00	47	증 4,057.80㎡
기반시설	소계	8,846.58	8,846.58	-	-	-	-	10,762.79	10,762.79	-	-	-	-	증 1,916.21㎡
	도로	8,846.58	8,846.58	-	-	-	-	10,762.79	10,762.79	-	-	-	-	증 1,916.21㎡
	광장	-	-	-	-	-	-	-	-	-	-	-	-	
조경시설		3,755.43	3,755.43	-	-	-	26	4,945.80	4,945.80	-	-	-	32	증 1,190.37㎡
휴양시설		136.21	136.21	-	-	-	3	165.35	165.35	-	-	-	13	증 29.14㎡
유희시설		-	-	-	-	-	-	-	-	-	-	-	-	
운동시설		1,250.00	1,250.00	-	-	-	-	1,250.00	1,250.00	-	-	-	-	
교양시설		600.00	600.00	-	-	-	-	1,400.25	1,400.25	1	330.00	330.00	-	증 800.25㎡
편익시설		651.20	651.20	1	52.00	52.00	2	773.03	773.03	1	52.00	52.00	2	증 121.83㎡
관리시설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134,121.88	-	-	-	-	-	130,064.08	-	-	-	-	-	감 4,057.80㎡

2-2. 대모산근린공원 일원지구 시설조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	-	149,361.30	15,239.42	-	1	52.00	52.00	31	-	-	149,361.30	19,297.22	-	2	382.00	382.00	47	증 4,057.80㎡
기반시설	소계	-	-	8,846.58	8,846.58	-	-	-	-	-	-	-	10,762.79	10,762.79	-	-	-	-	-	증 1,916.21㎡
	도로	-	-	8,846.58	8,846.58	-	-	-	-	-	-	-	10,762.79	10,762.79	-	-	-	-	-	변경
조경시설	소계	-	-	3,755.43	3,755.43	-	-	-	-	26	-	-	4,945.80	4,945.80	-	-	-	-	32	증 1,190.37㎡
	관상용 식수대	가	-	3,755.43	3,755.43	-	-	-	-	-	가	-	4,945.80	4,945.80	-	-	-	-	-	변경
	관상용 식수대	가-1	개포동 산54-1	(2,199.24)	(2,199.24)	-	-	-	-	-	가-1	개포동 산54-1	(2,199.24)	(2,199.24)	-	-	-	-	-	
	관상용 식수대	가-2	개포동 246-13	(1,556.19)	(1,556.19)	-	-	-	-	-	가-2	개포동 246-13	(1,556.19)	(1,556.19)	-	-	-	-	-	
	관상용 식수대	-	-	-	-	-	-	-	-	-	가-3	일원동 433-3	(603.70)	(603.70)	-	-	-	-	-	신설
	관상용 식수대	-	-	-	-	-	-	-	-	-	가-4	일원동 437	(586.67)	(586.67)	-	-	-	-	-	신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평의자		①	전지역	-	-	-	-	-	-	25	①	전지역	-	-	-	-	-	-	30	변경
파고라		②	관상용 식수대	-	-	-	-	-	-	1	②	관상용 식수대	-	-	-	-	-	-	1	
원형 파고라		-	-	-	-	-	-	-	-	1	③	휴게소 다-4	-	-	-	-	-	-	1	신설
휴양시설	소계	-	-	136.21	136.21	-	-	-	-	3	-	-	165.35	165.35	-	-	-	-	13	증 29.14㎡
	휴게소	다	-	63.71	63.71	-	-	-	-	-	나	-	92.85	92.85	-	-	-	-	-	변경
	휴게소	다-1	개포동 246-2	(26.08)	(26.08)	-	-	-	-	-	나-1	개포동 246-2	(26.08)	(26.08)	-	-	-	-	-	
	휴게소	다-2	개포동 산56	(17.26)	(17.26)	-	-	-	-	-	나-2	개포동 산56	(17.26)	(17.26)	-	-	-	-	-	
	휴게소	다-3	개포동 산56	(20.37)	(20.37)	-	-	-	-	-	나-3	개포동 산56	(20.37)	(20.37)	-	-	-	-	-	
	휴게소	-	-	-	-	-	-	-	-	-	나-4	일원동 433-3	(29.14)	(29.14)	-	-	-	-	-	신설
	전망 데크	라	개포동 246-3	72.50	72.50	-	-	-	-	-	다	개포동 246-3	72.50	72.50	-	-	-	-	-	
	야외 테이블	③	휴게소	-	-	-	-	-	-	3	④	전지역	-	-	-	-	-	-	13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 계	-	-	1,250.00	1,250.00	-	-	-	-	-	-	-	1,250.00	1,250.00	-	-	-	-	-	
	배드민턴장	마	개포동 산56	495.00	495.00	-	-	-	-	-	라	개포동 산56	495.00	495.00	-	-	-	-	-	
	농구장	바	개포동 산56	315.00	315.00	-	-	-	-	-	마	개포동 산56	315.00	315.00	-	-	-	-	-	
	체력단련장	사	개포동 산56	440.00	440.00	-	-	-	-	-	바	개포동 산56	440.00	440.00	-	-	-	-	-	
교양시설	소 계	-	-	600.00	600.00	-	-	-	-	-	-	-	1,400.25	1,400.25	-	-	-	-	-	지상 800.25㎡
	조경수목원	나	개포동 산56	600.00	600.00	-	-	-	-	-	사	개포동 산56	600.00	600.00	-	-	-	-	-	
	책쉼터	-	-	-	-	-	-	-	-	-	아	일원동 434-1	800.25	800.25	-	1	330.00	330.00	-	신설
편의시설	소계	-	-	651.20	651.20	-	1	52.00	52.00	2	-	-	773.03	773.03	-	1	52.00	52.00	2	지상 121.83㎡
	주차장	-	-	550.00	550.00	-	-	-	-	-	자	-	671.83	671.83	-	-	-	-	-	변경
	주차장	아	개포동 산56	(550.00)	(550.00)	-	-	-	-	-	자-1	개포동 산56	(550.00)	(550.00)	-	-	-	-	-	
	주차장	-	-	-	-	-	-	-	-	-	자-2	일원동 434-2	(121.83)	(121.83)	-	-	-	-	-	신설
	약수터	자	개포동 산56	20.00	20.00	-	-	-	-	-	차	개포동 산56	20.00	20.00	-	-	-	-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화장실	차	-	81.20	81.20	-	1	52.00	52.00	2	카	-	81.20	81.20	-	1	52.00	52.00	2	
	화장실	차-1	개포동 산56	(70.00)	(70.00)	-	(1)	(52.00)	(52.00)	(1)	카-1	개포동 산56	(70.00)	(70.00)	-	(1)	(52.00)	(52.00)	(1)	
	화장실	차-2	개포동 246-13	(11.20)	(11.20)	-	-	-	-	(1)	카-2	개포동 246-13	(11.20)	(11.20)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	-	134,121.88	-	-	-	-	-	-	-	-	130,064.08	-	-	-	-	-	-	감 4,057.80㎡
	녹지	-	-	134,121.88	-	-	-	-	-	-	-	-	130,064.08	-	-	-	-	-	-	변경

2-3. 대모산근린공원 일원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3,548.57	8,846.58	-	-	-	
변 경					4,596.39	10,762.79				
당 초	소 로	계			631.91	2,595.73	-	-	-	
변 경					631.91	2,595.73				
당 초		3	1	3.0	102.94	308.9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당 초		3	2	3.0~3.5	16.52	54.43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 초		3	3	3.5~5.0	512.45	2,232.4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산책로	계			2,916.66	6,250.85	-	-	-	
변 경					3,964.48	8,167.06				
폐지			1	2.0	283.84	567.22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설			1	2.0	286.00	574.22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2	2.0	96.55	193.50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1	
당 초			3	2.0	192.55	384.76	산책로	산책로 1	소로 3-3	
당 초			4	2.0	63.05	126.87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 초	산책로		5	2.0	47.52	97.2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6	2.0	132.56	322.39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 초			7	2.0	183.52	375.06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 초			8	1.8	73.90	149.80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 초			9	1.8	55.05	111.27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0	
당 초			10	1.8	414.89	883.01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당 초			11	1.5	137.61	219.93	진입로	산책로 12	소로 3-3	
당 초			12	1.2	183.40	225.4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1	
당 초			13	1.2	12.25	14.69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12	
당 초			14	1.5	19.86	31.55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0	
당 초			15	1.2	118.41	143.6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2	
당 초			16	3.0	78.18	227.92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3	
당 초			17	1.8	229.29	444.12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3	
당 초			18	3.0~7.0	98.89	386.18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28	
당 초			19	2.0~3.0	46.41	113.04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21	
당 초	산책로		20	2.8~12.0	43.05	280.48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18	
당 초			21	2.5~3.0	55.29	152.03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0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22	1.0	46.22	61.99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23	2.2~5.5	64.42	183.87	산책로	산책로 22	공원내	
당 초			24	2.0~3.0	17.34	48.54	산책로	산책로 23	산책로 21	
당 초			25	2.5~4.0	4.93	16.05	산책로	공원내	산책로 21	
당 초			26	2.0~2.3	65.04	145.56	산책로	산책로 20	산책로 28	
당 초			27	1.2~1.8	56.85	76.2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8	
당 초			28	2.2~4.0	95.79	268.44	산책로	산책로 20	소로 3-3	
신 설			29	1.2~1.5	173.61	229.86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32	
신 설			30	1.2	8.31	10.00	산책로	산책로 29	산책로 29	
신 설			31	1.2	13.95	16.94	산책로	산책로 29	산책로 29	
신 설			32	1.8	462.04	917.49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 1	
신 설			33	1.8	198.55	379.18	산책로	산책로 32	공원경계	
신 설			34	1.8	189.20	355.74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0	

3-1. 대모산근린공원 구룡지구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7,558.00	4,694.96	1	166.98	116.88	72	17,558.00	4,694.96	1	166.98	116.88	72	
기반시설	소계	2,790.14	2,790.14	-	-	-	1	2,790.14	2,790.14	-	-	-	1	
	도로	1,598.23	1,598.23	-	-	-	1	1,598.23	1,598.23	-	-	-	1	
	광장	1,191.91	1,191.91	-	-	-	-	1,191.91	1,191.91	-	-	-	-	
조경시설		377.39	377.39	-	-	-	-	377.39	377.39	-	-	-	-	
휴양시설		313.40	313.40	-	-	-	44	313.40	313.40	-	-	-	44	
유희시설		423.85	423.85	-	-	-	9	423.85	423.85	-	-	-	9	
운동시설		194.19	194.19	-	-	-	8	194.19	194.19	-	-	-	8	
편익시설		66.50	66.50	-	-	-	-	66.50	66.50	-	-	-	-	
관리시설		529.49	529.49	1	166.98	116.88	10	529.49	529.49	1	166.98	116.88	10	
녹지 및 기타		12,863.04	-	-	-	-	-	12,863.04	-	-	-	-	-	

3-2. 대모산근린공원 구룡지구 시설조서(변경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	-	17,558.00	4,694.96	-	-	166.98	116.88	72	-	-	17,558.00	4,694.96	-	-	166.98	116.88	72	
기반시설	소계	-	-	2,790.14	2,790.14	-	-	-	-	1	-	-	2,790.14	2,790.14	-	-	-	-	1	
	도로	-	-	1,598.23	1,598.23	-	-	-	-	-	-	-	1,598.23	1,598.23	-	-	-	-	-	
	광장	가	-	1,191.91	1,191.91	-	-	-	-	-	가	-	1,191.91	1,191.91	-	-	-	-	-	
	광장A	가-1	개포동 638-5, 산176-18	(92.70)	(92.70)	-	-	-	-	-	가-1	개포동 638-5, 산176-18	(92.70)	(92.70)	-	-	-	-	-	
	광장B	가-2	개포동 638-5	(143.22)	(143.22)	-	-	-	-	-	가-2	개포동 638-5	(143.22)	(143.22)	-	-	-	-	-	
	광장C	가-3	개포동 638-5	(69.94)	(69.94)	-	-	-	-	-	가-3	개포동 638-5	(69.94)	(69.94)	-	-	-	-	-	
	광장D	가-4	개포동 638-5	(80.69)	(80.69)	-	-	-	-	-	가-4	개포동 638-5	(80.69)	(80.69)	-	-	-	-	-	
	광장E	가-5	개포동 638-5, 산176-18	(318.14)	(318.14)	-	-	-	-	-	가-5	개포동 638-5, 산176-18	(318.14)	(318.14)	-	-	-	-	-	
	광장F	가-6	개포동 산176-18	(92.60)	(92.60)	-	-	-	-	-	가-6	개포동 산176-18	(92.60)	(92.60)	-	-	-	-	-	
	광장G	가-7	개포동 산176-18	(293.59)	(293.59)	-	-	-	-	-	가-7	개포동 산176-18	(293.59)	(293.59)	-	-	-	-	-	
	광장H	가-8	개포동 산176-18	(101.03)	(101.03)	-	-	-	-	-	가-8	개포동 산176-18	(101.03)	(101.03)	-	-	-	-	-	
	데크로드	①	-	-	-	-	-	-	-	1	①	-	-	-	-	-	-	-	1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소계	-	-	377.39	377.39	-	-	-	-	-	-	-	377.39	377.39	-	-	-	-	-	
	잔디마당	나	개포동 산176-18	377.39	377.39	-	-	-	-	-	나	개포동 산176-18	377.39	377.39	-	-	-	-	-	
휴양시설	소계	-	-	313.40	313.40	-	-	-	-	44	-	-	313.40	313.40	-	-	-	-	44	
	휴게마당	다	-	313.40	313.40	-	-	-	-	-	다	-	313.40	313.40	-	-	-	-	-	
	휴게마당A	다-1	개포동 산176-18	(109.82)	(109.82)	-	-	-	-	-	다-1	개포동 산176-18	(109.82)	(109.82)	-	-	-	-	-	
	휴게마당B	다-2	개포동 산176-18	(101.56)	(101.56)	-	-	-	-	-	다-2	개포동 산176-18	(101.56)	(101.56)	-	-	-	-	-	
	휴게마당C	다-3	개포동 산176-18	(102.02)	(102.02)	-	-	-	-	-	다-3	개포동 산176-18	(102.02)	(102.02)	-	-	-	-	-	
	휴게데크A	②	-	-	-	-	-	-	-	1	②	-	-	-	-	-	-	-	1	
	휴게데크B	③	-	-	-	-	-	-	-	1	③	-	-	-	-	-	-	-	1	
	전망파고라	④	-	-	-	-	-	-	-	2	④	-	-	-	-	-	-	-	2	
	휴게파고라	⑤	-	-	-	-	-	-	-	1	⑤	-	-	-	-	-	-	-	1	
	야외테이블	⑥	-	-	-	-	-	-	-	6	⑥	-	-	-	-	-	-	-	6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놀이시설	평상	⑦	-	-	-	-	-	-	-	4	⑦	-	-	-	-	-	-	-	4	
	선베드	⑧	-	-	-	-	-	-	-	6	⑧	-	-	-	-	-	-	-	6	
	등벤치	⑨	-	-	-	-	-	-	-	4	⑨	-	-	-	-	-	-	-	4	
	사각벤치	⑩	-	-	-	-	-	-	-	13	⑩	-	-	-	-	-	-	-	13	
	앉음벽	⑪	-	-	-	-	-	-	-	6	⑪	-	-	-	-	-	-	-	6	
야외시설	소계	-	-	423.85	423.85	-	-	-	-	9	-	-	423.85	423.85	-	-	-	-	9	
	지형놀이마당	라	개포동 638-5, 산176-18	423.85	423.85	-	-	-	-	-	라	개포동 638-5, 산176-18	423.85	423.85	-	-	-	-	-	
	미끄럼틀 A	⑫	-	-	-	-	-	-	-	1	⑫	-	-	-	-	-	-	-	1	
	미끄럼틀 B	⑬	-	-	-	-	-	-	-	1	⑬	-	-	-	-	-	-	-	1	
	다리 건너기	⑭	-	-	-	-	-	-	-	1	⑭	-	-	-	-	-	-	-	1	
	통나무 건너기	⑮	-	-	-	-	-	-	-	2	⑮	-	-	-	-	-	-	-	2	
	지형 오르기	⑯	-	-	-	-	-	-	-	3	⑯	-	-	-	-	-	-	-	3	
	모험놀이	⑰	-	-	-	-	-	-	-	1	⑰	-	-	-	-	-	-	-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안내시설	소계	-	-	194.19	194.19	-	-	-	-	8	-	-	194.19	194.19	-	-	-	-	8	
	힘뜰 마당	마	-	194.19	194.19	-	-	-	-	-	마	-	194.19	194.19	-	-	-	-	-	
	힘뜰 마당A	마-1	개포동 638-5, 산176-18	(122.31)	(122.31)	-	-	-	-	-	마-1	개포동 638-5, 산176-18	(122.31)	(122.31)	-	-	-	-	-	
	힘뜰 마당B	마-2	개포동 산176-18	(71.88)	(71.88)	-	-	-	-	-	마-2	개포동 산176-18	(71.88)	(71.88)	-	-	-	-	-	
	체력단련 시설	⑱	-	-	-	-	-	-	-	8	⑱	-	-	-	-	-	-	-	8	
편의시설	소계	-	-	66.50	66.50	-	-	-	-	-	-	-	66.50	66.50	-	-	-	-	-	
	주차장	바	개포동 638-5, 638-8	66.50	66.50	-	-	-	-	-	바	개포동 638-5, 638-8	66.50	66.50	-	-	-	-	-	
관리시설	소계	-	-	529.49	529.49	-	-	166.98	116.88	10	-	-	529.49	529.49	-	-	166.98	116.88	10	
	관리 사무소	사	개포동 638-5	529.49	529.49	-	-	166.98	116.88	-	사	개포동 638-5	529.49	529.49	-	-	166.98	116.88	-	
	볼라드	⑲	-	-	-	-	-	-	-	4	⑲	-	-	-	-	-	-	-	4	
	종합 안내판	⑳	-	-	-	-	-	-	-	1	⑳	-	-	-	-	-	-	-	1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녹지 및 기타	시설안내판	㉑	-	-	-	-	-	-	-	1		㉑	-	-	-	-	-	-	-	1		
	방향안내판	㉒	-	-	-	-	-	-	-	4		㉒	-	-	-	-	-	-	-	4		
	소계	-	-	12,863.04	-	-	-	-	-	-		-	-	12,863.04		-	-	-	-	-		
	녹지	-	-	12,863.04	-	-	-	-	-	-		-	-	12,863.04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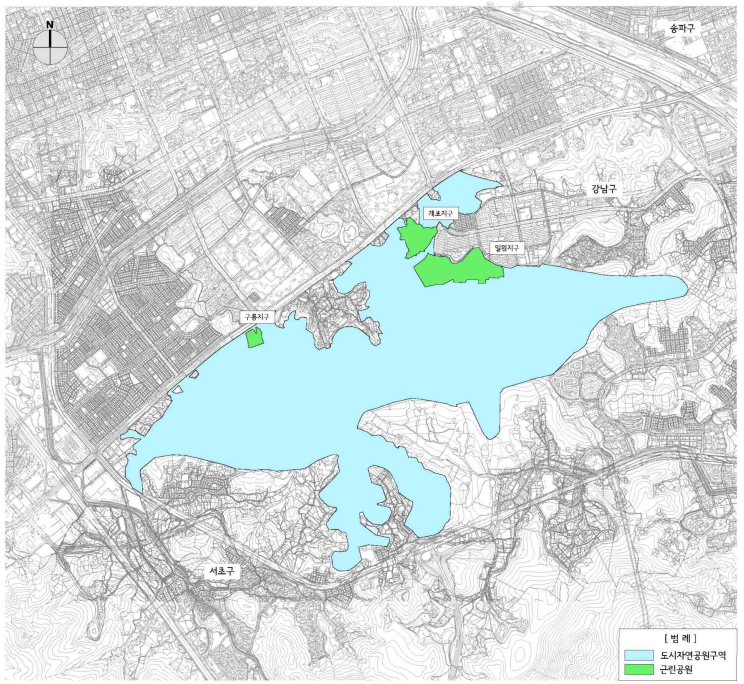
3-3. 대모산근린공원 구룡지구 도로조서(변경없음)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432.11	1,598.23	-	-	-	
변 경					432.11	1,598.23				
당 초	소 로	계			132.57	795.42	-	-	-	
변 경					132.57	795.42				
당 초		3	1	6.0	97.47	584.82	진입로	공원경계 (진입부)	공원경계 (등산로)	
당 초		3	2	6.0	35.10	210.60	부진입로	소로3-1	사	
당 초	산책로	계			299.54	802.81	-	-	-	
변 경					299.54	802.81				
당 초			1	2.5	44.40	111.00	부진입로	공원경계 (E/V연결로)	가-1(광장)	
당 초			2	2.5	11.61	29.03	부진입로	가-1(광장)	공원경계 (생태통로)	
당 초			3	2.5	17.97	44.93	산책로	가-1(광장)	가-3(광장)	
당 초			4	2.5	7.27	18.18	산책로	가-3(광장)	가-4(광장)	
당 초			5	2.5	19.39	48.48	산책로	가-4(광장)	가-5(광장)	
당 초			6	2.5	17.32	43.30	산책로	가-5(광장)	가-6(광장)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산책로		7	2.5	18.07	45.18	산책로	가-6(광장)	가-7(광장)	
당 초			8	2.5	14.10	35.25	산책로	가-7(광장)	가-8(광장)	
당 초			9	2.5	32.00	80.00	산책로	가-8(광장)	산책로10	
당 초			10	2.0	48.68	97.36	산책로	가-7(광장)	공원경계 (등산로)	
당 초			11	2.5	13.93	34.83	산책로	가-5(광장)	가-7(광장)	
당 초			12	3.5	7.80	27.30	부진입로	소로3-1	산책로13	
당 초			13	4.0	47.00	188.00	부진입로	소로3-1	사(관리사무소)	

위 치 도

대모산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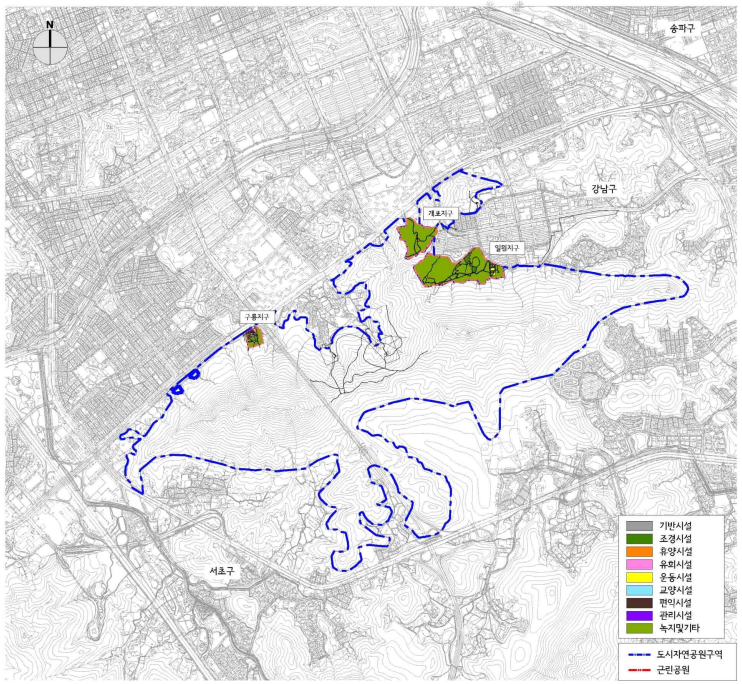
■ 개요

구분		위치	면적(㎡)	비고
대모산 근린공원		-	229,732.70	
01	개포지구	강남구 개포동 산 60 일대	62,813.40	
02	일원지구	강남구 일원동 산56 일대	148,361.30	
03	구룡지구	강남구 개포동 638-5 일대	17,558.00	

Scale=1:15,000

0 150 300 600 1,500

대모산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도(기정)



■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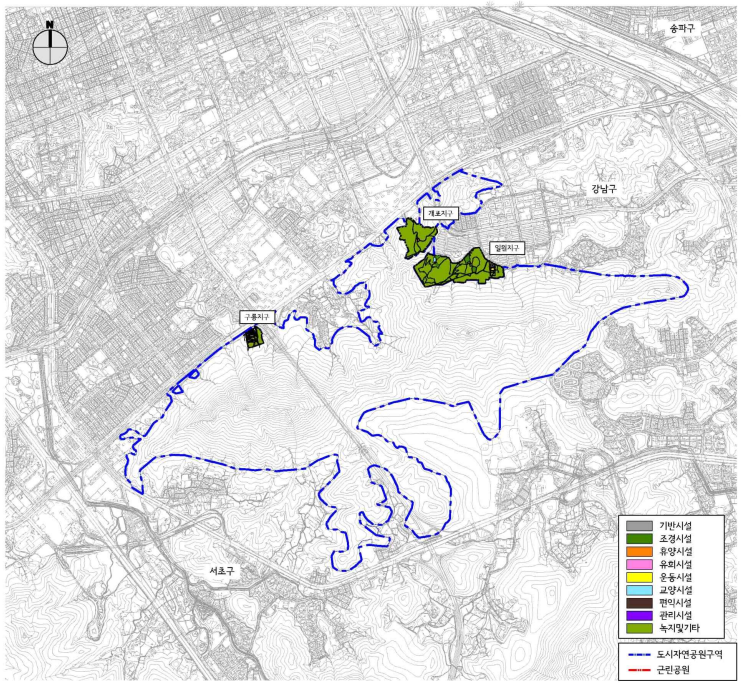
구분		총계	개포지구	일원지구	구룡지구
부지 총 면적		229,732.70	62,813.40	148,361.30	17,558.00
시설 총 면적		23,038.63	3,104.25	15,239.42	4,694.96
기반시설	소계	14,374.47	2,737.75	8,846.58	2,790.14
	도로	13,182.56	2,737.75	8,846.58	1,598.23
	광장	1,191.91	-	-	1,191.91
조경시설		4,132.82	-	3,755.43	377.39
유양시설		816.11	366.50	136.21	313.40
유희시설		423.85	-	-	423.85
운동시설		1,444.19	-	1,250.00	194.19
교양시설		600.00	-	600.00	-
편익시설		717.70	-	651.20	66.50
관리시설		529.49	-	-	529.49
녹지 및 기타		206,694.07	58,709.15	134,121.88	12,863.04
건축물	동수(동)	2	-	1	1
	바닥면적	218.98	-	52.00	166.98
	연면적	168.88	-	52.00	116.88
공작물(기)		112	9	31	72
비고					

* 공원시설율 : 23,038.63 / 229,732.70 x 100% = 10.03%
* 건폐율 : 218.98 / 229,732.70 x 100% = 0.10%
* 특정시설물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운동시설물) : 0%

Scale=1:15,000

0 150 300 600 1,500

대모산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도(변경)



■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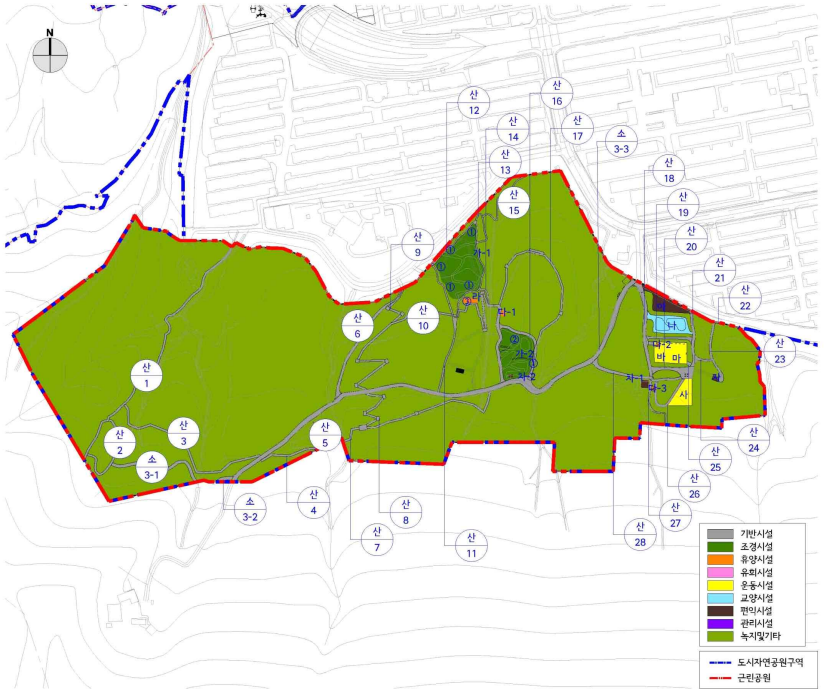
구분		총계	개포지구	일원지구	구룡지구
부지 총 면적		229,732.70	62,813.40	149,361.30	17,558.00
시설 총 면적		27,095.43	3,104.25	19,297.22	4,694.96
기반시설	소계	16,290.68	2,737.75	10,762.78	2,790.14
	도로	15,098.77	2,737.75	10,762.78	1,598.23
	광장	1,191.91	-	-	1,191.91
조경시설		5,323.19	-	4,945.80	377.39
유양시설		845.25	366.50	165.35	313.40
유희시설		423.85	-	-	423.85
운동시설		1,444.19	-	1,250.00	194.19
교양시설		1,400.25	-	1,400.25	-
편익시설		839.53	-	773.03	66.50
관리시설		529.49	-	-	529.49
녹지 및 기타		202,636.27	59,709.15	130,064.08	12,863.04
건축물	동수(동)	3	-	2	1
	바닥면적	548.98	-	382.00	166.98
	연면적	498.86	-	382.00	116.88
공작물(기)		128	9	47	72
비고					

* 공원시설율 : 27,110.02 / 229,732.70 x 100% = 11.80%
* 건폐율 : 548.98 / 229,732.70 x 100% = 0.24%
* 특정시설물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운동시설물) : 0%

Scale=1:15,000
0 150 300 600 1,500

조 성 계 획 도 (기정)

대모산 근린공원 일원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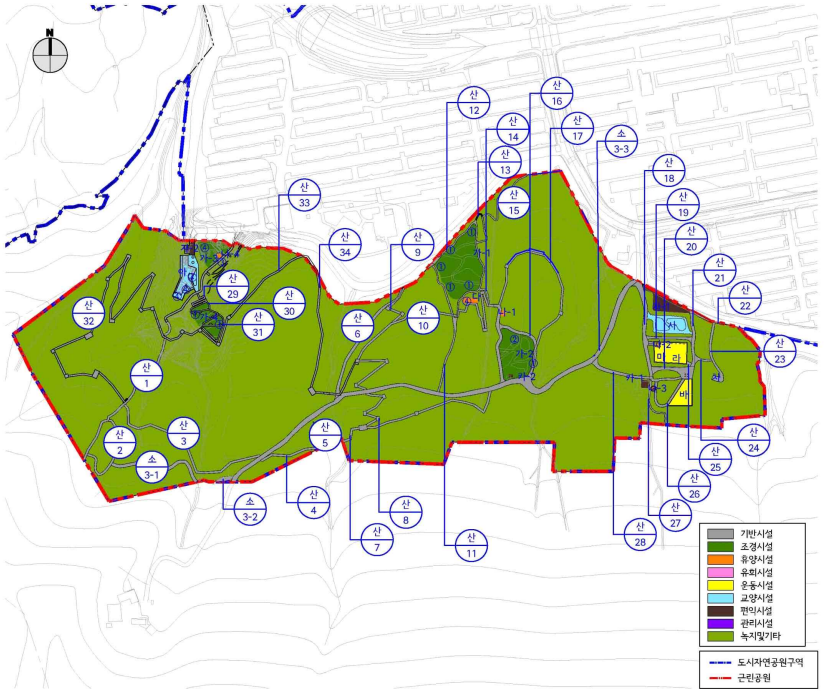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개)	비고
합계			148,361.30	15,238.42	-	1	52.00	52.00	31	
기반시설	소계		8,846.58	8,846.58	-	-	-	-	-	
	도로		8,846.58	8,846.58	-	-	-	-	-	
조경시설	소계		3,755.43	3,755.43	-	-	-	-	26	
유양시설	관상용식수대	가	3,755.43	3,755.43	-	-	-	-	-	
		가-1	(2,199.24)	(2,199.24)	-	-	-	-	-	
		가-2	(1,556.19)	(1,556.19)	-	-	-	-	-	
	명의자	①	-	-	-	-	-	-	25	
	파고라	②	-	-	-	-	-	-	1	
휴양시설	소계		136.21	136.21	-	-	-	-	3	
	휴게소	다	63.71	63.71	-	-	-	-	-	
		다-1	(26.08)	(26.08)	-	-	-	-	-	
		다-2	(17.26)	(17.26)	-	-	-	-	-	
		다-3	(20.37)	(20.37)	-	-	-	-	-	
	전망데크	라	72.50	72.50	-	-	-	-	-	
	야외테이블	③	-	-	-	-	-	-	3	
운동시설	소계		1,250.00	1,250.00	-	-	-	-	-	
	배드민턴장	마	495.00	495.00	-	-	-	-	-	
	농구장	바	315.00	315.00	-	-	-	-	-	
	체력단련장	사	440.00	440.00	-	-	-	-	-	
교양시설	소계		600.00	600.00	-	-	-	-	-	
	조경수목원	나	600.00	600.00	-	-	-	-	-	
편익시설	소계		651.20	651.20	-	1	52.00	52.00	2	
	주차장	아	550.00	550.00	-	-	-	-	-	
	양수터	자	20.00	20.00	-	-	-	-	-	
	화장실	차	81.20	81.20	-	1	52.00	52.00	2	
		차-1	(70.00)	(70.00)	-	(1)	(52.00)	(52.00)	(1)	
		차-2	(11.20)	(11.20)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134,121.88	-	-	-	-	-	-	
	녹지		134,121.88	-	-	-	-	-	-	

Scale=1:1,800
0 15 30 60 180

조 성 계 획 도 (변경)

대모산 근린공원 일원지구



■ 시설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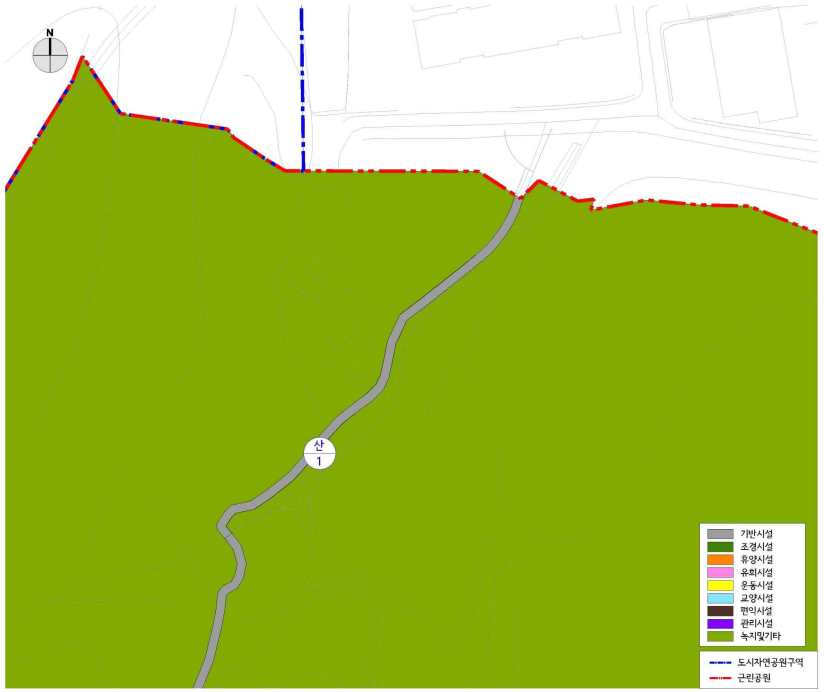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개)	비고
합계			148,361.30	19,297.22	-	2	382.00	382.00	47	
기반시설	소계		10,762.79	10,762.79	-	-	-	-	-	
	도로		10,762.79	10,762.79	-	-	-	-	-	
조경시설	소계		4,945.80	4,945.80	-	-	-	-	32	
	관상용식수대	가	4,945.80	4,945.80	-	-	-	-	-	
		가-1	(2,199.24)	(2,199.24)	-	-	-	-	-	
		가-2	(1,556.19)	(1,556.19)	-	-	-	-	-	
		가-3	(603.70)	(603.70)	-	-	-	-	-	
		가-4	(586.67)	(586.67)	-	-	-	-	-	
	명의자	①	-	-	-	-	-	-	30	
	학교라	②	-	-	-	-	-	-	1	
	원형학교라	③	-	-	-	-	-	-	1	
휴양시설	소계		165.35	165.35	-	-	-	-	13	
	휴게소	나	92.85	92.85	-	-	-	-	-	
		나-1	(26.08)	(26.08)	-	-	-	-	-	
		나-2	(17.26)	(17.26)	-	-	-	-	-	
		나-3	(20.37)	(20.37)	-	-	-	-	-	
		나-4	(29.14)	(29.14)	-	-	-	-	-	
	전망데크	다	72.50	72.50	-	-	-	-	-	
	야외테이블	④	-	-	-	-	-	-	13	
운동시설	소계		1,250.00	1,250.00	-	-	-	-	-	
	배드민턴장	라	485.00	485.00	-	-	-	-	-	
	농구장	마	315.00	315.00	-	-	-	-	-	
	체력단련장	바	440.00	440.00	-	-	-	-	-	
교양시설	소계		1,400.25	1,400.25	-	1	330.00	330.00	-	
	조경수목원	사	600.00	600.00	-	-	-	-	-	
	책쉼터	아	800.25	800.25	-	1	330.00	330.00	-	
편익시설	소계		773.03	773.03	-	1	52.00	52.00	2	
	주차장	차	671.83	671.83	-	-	-	-	-	
		차-1	(550.00)	(550.00)	-	-	-	-	-	
		차-2	(121.83)	(121.83)	-	-	-	-	-	
	약수터	차	20.00	20.00	-	-	-	-	-	
	화장실	카	81.20	81.20	-	1	52.00	52.00	2	
		카-1	(70.00)	(70.00)	-	(1)	(52.00)	(52.00)	(1)	
		카-2	(11.20)	(11.20)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130,064.08	-	-	-	-	-	-	
	녹지		130,064.08	-	-	-	-	-	-	

Scale=1:1,800

0 15 30 60 180

부분조성계획도 (기정)

대모산 근린공원 일원지구



시설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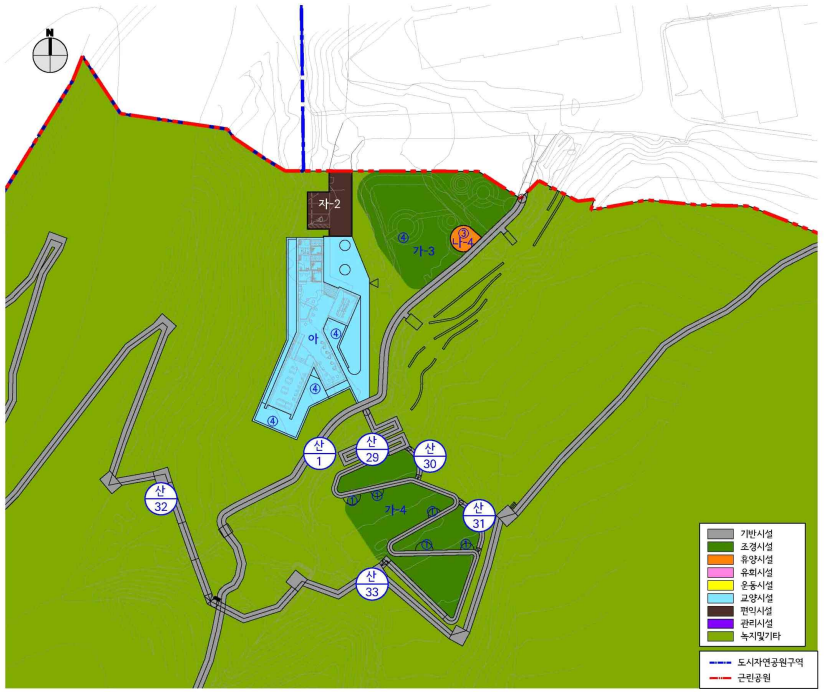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48,361.30	15,238.42	-	1	52.00	52.00	31	
기반시설	소계		8,846.58	8,846.58	-	-	-	-	-	
	도로		8,846.58	8,846.58	-	-	-	-	-	
조경시설	소계		3,755.43	3,755.43	-	-	-	-	26	
유양시설	관상용식수대	가	3,755.43	3,755.43	-	-	-	-	-	
		가-1	(2,199.24)	(2,199.24)	-	-	-	-	-	
		가-2	(1,556.19)	(1,556.19)	-	-	-	-	-	
	명의자	①	-	-	-	-	-	-	25	
	파고라	②	-	-	-	-	-	-	1	
유희시설	소계		136.21	136.21	-	-	-	-	3	
유양시설	휴게소	다	63.71	63.71	-	-	-	-	-	
		다-1	(26.08)	(26.08)	-	-	-	-	-	
		다-2	(17.26)	(17.26)	-	-	-	-	-	
		다-3	(20.37)	(20.37)	-	-	-	-	-	
	전망데크	라	72.50	72.50	-	-	-	-	-	
	아외테이블	③	-	-	-	-	-	-	3	
운동시설	소계		1,250.00	1,250.00	-	-	-	-	-	
	배드민턴장	마	495.00	495.00	-	-	-	-	-	
	농구장	바	315.00	315.00	-	-	-	-	-	
	체력단련장	사	440.00	440.00	-	-	-	-	-	
교양시설	소계		600.00	600.00	-	-	-	-	-	
	조경수목원	나	600.00	600.00	-	-	-	-	-	
편익시설	소계		651.20	651.20	-	1	52.00	52.00	2	
	주차장	아	550.00	550.00	-	-	-	-	-	
	양수터	자	20.00	20.00	-	-	-	-	-	
	화장실	차	81.20	81.20	-	1	52.00	52.00	2	
		차-1	(70.00)	(70.00)	-	(1)	(52.00)	(52.00)	(1)	
		차-2	(11.20)	(11.20)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134,121.88	-	-	-	-	-	-	
	녹지		134,121.88	-	-	-	-	-	-	

Scale=1:400

0 20 60 120 400

부분조성계획도 (변경)

대모산 근린공원 일원지구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개)	비고
합계			148,361.30	19,297.22	-	2	382.00	382.00	47	
기반시설	소계		10,762.79	10,762.79	-	-	-	-	-	
	도로		10,762.79	10,762.79	-	-	-	-	-	
조경시설	소계		4,945.80	4,945.80	-	-	-	-	32	
	관상용식수대	가	4,945.80	4,945.80	-	-	-	-	-	
		가-1	(2,199.24)	(2,199.24)	-	-	-	-	-	
		가-2	(1,556.19)	(1,556.19)	-	-	-	-	-	
		가-3	(603.70)	(603.70)	-	-	-	-	-	
		가-4	(586.67)	(586.67)	-	-	-	-	-	
	명의자	①	-	-	-	-	-	-	30	
	학교라	②	-	-	-	-	-	-	1	
	원형피고라	③	-	-	-	-	-	-	1	
휴양시설	소계		165.35	165.35	-	-	-	-	13	
	휴게소	나	92.85	92.85	-	-	-	-	-	
		나-1	(26.08)	(26.08)	-	-	-	-	-	
		나-2	(17.26)	(17.26)	-	-	-	-	-	
		나-3	(20.37)	(20.37)	-	-	-	-	-	
		나-4	(29.14)	(29.14)	-	-	-	-	-	
	전망데크	다	72.50	72.50	-	-	-	-	-	
	야외테이블	④	-	-	-	-	-	-	13	
운동시설	소계		1,250.00	1,250.00	-	-	-	-	-	
	배드민턴장	라	485.00	485.00	-	-	-	-	-	
	농구장	마	315.00	315.00	-	-	-	-	-	
	체력단련장	바	440.00	440.00	-	-	-	-	-	
교양시설	소계		1,400.25	1,400.25	-	1	330.00	330.00	-	
	조경수목원	사	600.00	600.00	-	-	-	-	-	
	책쉼터	아	800.25	800.25	-	1	330.00	330.00	-	
편익시설	소계		773.03	773.03	-	1	52.00	52.00	2	
	주차장	차	671.83	671.83	-	-	-	-	-	
		차-1	(550.00)	(550.00)	-	-	-	-	-	
		차-2	(121.83)	(121.83)	-	-	-	-	-	
	약수터	차	20.00	20.00	-	-	-	-	-	
	화장실	카	81.20	81.20	-	1	52.00	52.00	2	
		카-1	(70.00)	(70.00)	-	(1)	(52.00)	(52.00)	(1)	
		카-2	(11.20)	(11.20)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130,064.08	-	-	-	-	-	-	
	녹지		130,064.08	-	-	-	-	-	-	

Scale=1:400

0 20 60 120 4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97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대상 : 보행자우선도로 3개소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8.5~11.5	280
2	종로구	삼일대로19길	8	150
3	종로구	종로14길	6	190

2. 위치도(축척 없음) : 따로 붙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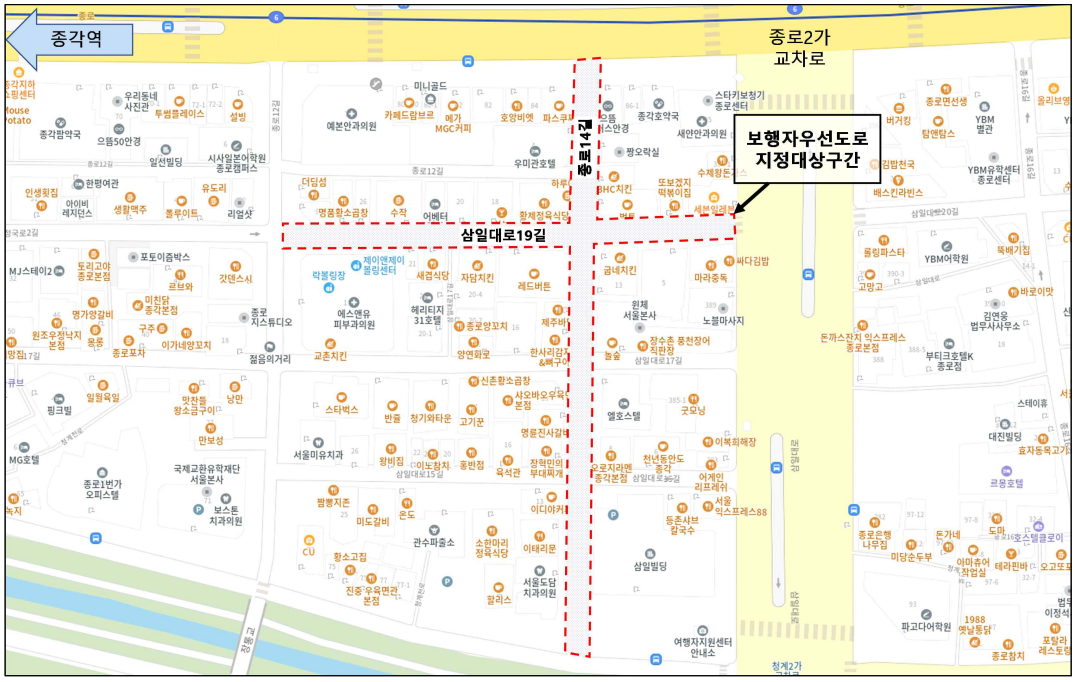
붙 임 : 보행자우선도로 위치도

▢ 보행자우선도로 위치도

1)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2) 종로구 삼일대로19길, 종로14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98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91호(2021.06.24.)로 승인되고, 제2022-397호(2022.09.29.), 제2023-61호(2023.02.23.), 제2023-237호(2023.06.29.) 변경승인 고시된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에 대하여 변경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시행자 명칭 : 서울특별시
   나. 대표자 성명 : 오 세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조성되는 다양한 시설들 간의 효율적 공간배치와 통합,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된 공간조성,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 건설
   나. 사업의 개요
      1) 사업규모(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시설	지하연속벽(D/W) 1,060m, 시컨트파일 542m (694본), 시트파일 344m, 측벽파일 890본, 중앙파일 856본, 복공설치 1식 등	(변 경 없 음)	
지장물	하수도, 송전관로, 통신분기구, 전력구 이설 등 1식	(변 경 없 음)	
가설공	현장사무실, 가설울타리, 공사중 교통처리안전시설, 공사중 환경관리 등 1식	(변 경 없 음)	
구조물공	구체 콘크리트타설, 방수 및 배수공 등 1식	(변 경 없 음)	
도로공	도로포장, 도로배수 등 1식	(변 경 없 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터널공	터널굴착 및 라이닝타설, 방수 및 배수공 등 1식	(변 경 없 음)	
환승센터 시설면적	214,532㎡	221,326㎡	

2) 사 업 비(변경없음) : 1,992,902백만원

※ 위 금액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총 사업비 기준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시설별(철도/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비 구분 예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원

나. 면 적 : 52,974㎡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승인일 ~ 2028년 10월 31일까지

6.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91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시 사항)

가. 결정취지(변경없음)

○ 교통수단간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 구축, 교통 결절점으로서 지역성장과 발전의 거점 조성,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 복합개발로 교통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복합환승센터)을 결정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2)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 : (변경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원(20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복합환승센터) 사업

○ 명 칭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면 적 : 52,974㎡

○ 사업규모(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시설	지하연속벽(D/W) 1,060m, 시컨트파일 542m (694본), 시트파일 344m, 측벽파일 890본, 중앙파일 856본, 복공설치 1식 등	(변 경 없 음)	
지장물	하수도, 송전관로, 통신분기구, 전력구 이설 등 1식	(변 경 없 음)	
가설공	현장사무실, 가설울타리, 공사중 교통처리안전시설, 공사중 환경관리 등 1식	(변 경 없 음)	
구조물공	구체 콘크리트타설, 방수 및 배수공 등 1식	(변 경 없 음)	
도로공	도로포장, 도로배수 등 1식	(변 경 없 음)	
터널공	터널굴착 및 라이닝타설, 방수 및 배수공 등 1식	(변 경 없 음)	
환승센터 시설면적	214,532㎡	221,32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승인일 ~ 2028년 10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기정)

구 분			면 적 (㎡)		소유자	비고 (임시사용)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원면적	수용/사용		
강남구 삼성동	111-8	도	94,806	43,617	서울특별시	1,188
	159	대	87,534	354	사단법인한국무역협회	110
	159-1	대	7,614	291	사단법인한국무역협회	211
	159-9	대	53,636	559	사단법인한국무역협회	352
	160	대	2,649	205	에이치디씨주식회사	205
	167	대	79,342	1,71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외2인	928
	168	대	703	40	재령강씨종친회	40
	168-1	대	690	46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4호전문	46
	168-2	대	621	41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4호전문	41
	168-3	대	666	44	주식회사 하나은행	44
	168-4	대	462	13	주식회사 하나은행	13
	172	도	16,596	109	서울특별시	109
	172-7	도	2,869	3	강남구	3
	172-21	도	754	621	강남구	15
	172-22	도	395	202	강남구	34
	172-40	도	1,213	236	강남구	116
	172-61	도	699	311	강남구	152
	172-66	도	43,712	4,912	서울특별시	21
강남구 대치동	995	도	97,930	1,242	서울특별시	32
	1011	도	43,853	2,078	서울특별시	0
합 계	당초 : 4필지 변경 : 20필지		354,404	56,634		3,660

* 임시사용(3,660㎡)는 가시설공사 등 공사중 임시 점용임.

(변경)

일련번호	토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공부	영구 사용	임시 사용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최저 심도	최고 심도			
합계		20필지		536,744							
1	강남구 삼성동	111-8	도	94,806	42,429	1,188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지상권)	
2	강남구 삼성동	172-21	도	754	606	15			강남구	-	
3	강남구 삼성동	172-66	도	43,712	4,891	21			서울특별시	-	
4	강남구 대치동	1011	도	43,853	2,078				서울특별시	-	
5	강남구 대치동	995	도	97,930	1,210	32			서울특별시	-	
6	강남구 삼성동	159	대	87,534	804.22	420.36 (24.1.1.~24.8.15.) 254.57 (26.06~28.09) 462.08 (26.10~28.08)	107.31	117.82	한국무역협회	서울특별시(지상권)	
7	강남구 삼성동	159-1	대	7,614	220.22	290.5 (26.10~28.08)	107.29	117.29	한국무역협회	-	
8	강남구 삼성동	159-9	대	53,636	743.68	148.90 (26.10~28.08) 517.88 (26.10~28.08)	99.75	117.60	한국무역협회	-	
9	강남구 삼성동	167	대	79,342	782.24	765.82 (25.01~28.10) 311.80 (26.01~28.07) 1,021.83 (26.01~28.10)	97.39	119.54	현대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기아자동차(주)	한국전력공사 (임차권,지상권)	
10	강남구 삼성동	172-22	도	395	168	34			강남구	-	
11	강남구 삼성동	172-40	도	1,213	120	116			강남구	-	

일련번호	토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공부	영구 사용	임시 사용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최저 심도	최고 심도			
12	강남구 삼성동	172-61	도	699	159	152			강남구	-	
13	강남구 삼성동	172	도	16,596	-	109			서울특별시	-	
14	강남구 삼성동	172-7	도	2,869	-	3			강남구	-	
15	강남구 삼성동	160	대	2,649	-	269.64 (26.08~28.03)			에이치디씨㈜	서울특별시(지상권) 메트라이프생명보험㈜(근저당) ㈜대구은행(근저당) 하이투자증권(주)(근저당) 비알코리아(주)(근저당) ㈜엠에프지코리아(근저당) ㈜케이비손해보험(근저당) ㈜브라이튼자산운용(근저당) 에스티팜㈜(근저당)	
16	강남구 삼성동	168	대	703	-	38.85 (26.10~26.12) 12.96 (27.01~28.05) 38.85 (28.06~28.08)			재령강씨종친회	-	
17	강남구 삼성동	168-1	대	690	-	45.27 (26.10~26.12) 15.52 (27.01~28.05) 45.27 (28.06~28.08)			두나무㈜		

일련번호	토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공부	영구 사용	임시 사용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최저 심도	최고 심도			
18	강남구 삼성동	168-2	대	621	-	40.31 (26.10~26.12) 12.59 (27.01~28.05) 40.31 (28.06~28.08)			두나무투자일임㈜		
19	강남구 삼성동	168-3	대	666	-	42.75 (26.10~26.12) 14.22 (27.01~28.05) 42.75 (28.06~28.08)			㈜하나은행	㈜유니온테크(위탁) ㈜신라스테이(전세권)	
20	강남구 삼성동	168-4	대	462	-	12.63 (26.10~26.12) 2.89 (27.01~28.05) 12.63 (28.06~28.08)			㈜하나은행	㈜유니온테크(위탁) ㈜신라스테이(전세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지형도면 :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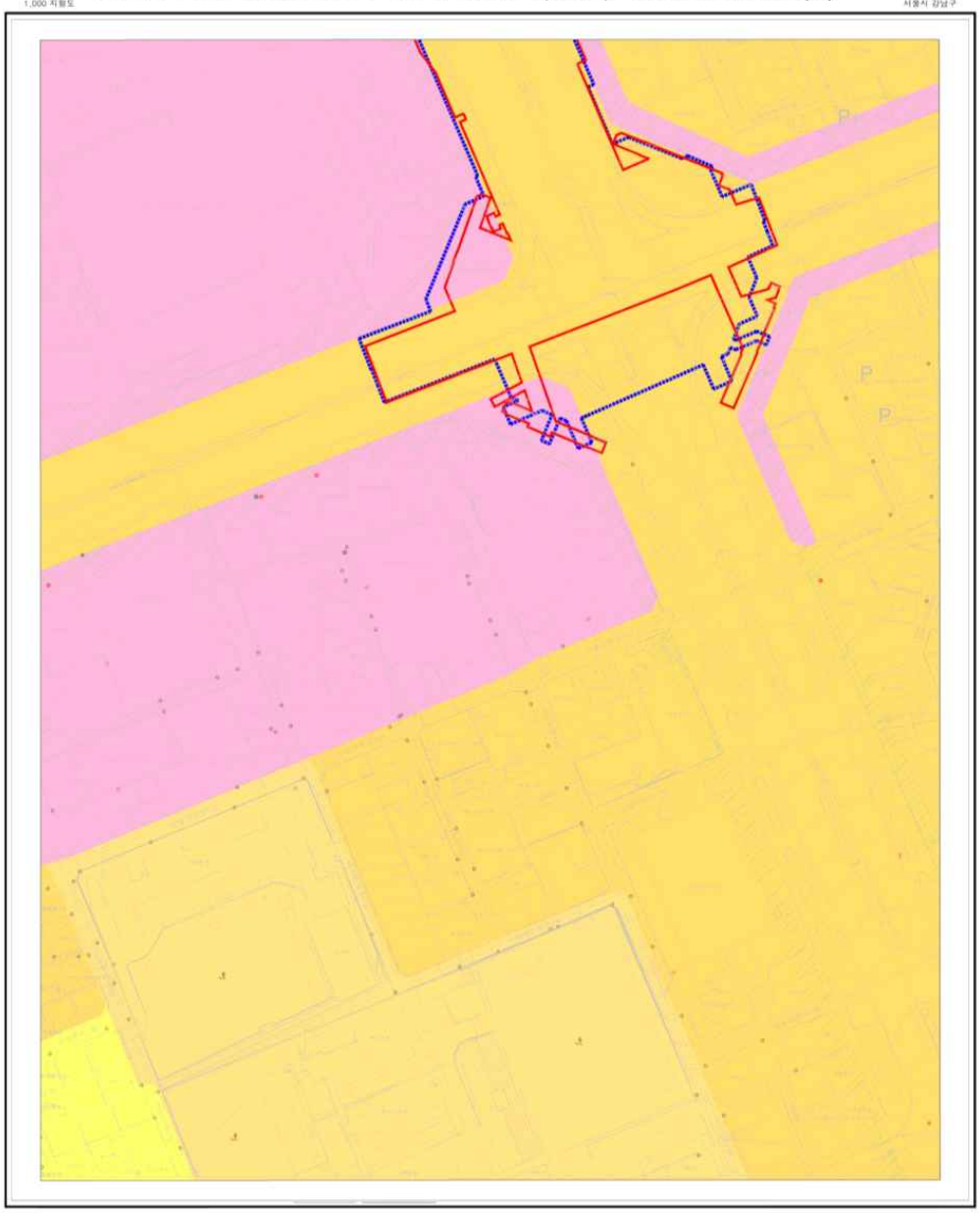
8. 기타사항 :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과(02-2133-8245), 강남구청 공간개발과(02-3423-688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붙임<지형도면고시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고시도(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고시도(2)



SCALE 1 : 1,000

도 시 계 획 범 례

제1종전용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고 도 지 구	광 로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대 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경 관 지 구	중 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 공 업 지 역	중심지미관지구	개발제한구역	기정도시계획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타도시계획시설	역사문화미관지구	도시계획구역계	변경도시계획			
준 주 거 지 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미관지구	학 교				
중심상업지역	공 원	보 존 지 구	유 원 지				
일반상업지역	녹 지	학교시설보호지구	유통업무설비				

INDEX

377052262	377052263	377052264
377052272	377052273	377052274
377052282	377052283	37705228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99호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4조,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 면 적 : 5,644.0㎡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5년 12월 00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 밀리언골프클럽

○ 대표자 성명 : 양재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2, 62-1, 62-2, 62-229

○ 법인등록번호 : 110111-0848907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본번	부번						
1	고척동	62		대	1,041.0	1,041.0	주식회사 밀리언골프클럽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로537길 56(고척동)	-
2	고척동	62	1	대	1,908.0	1,908.0			
3	고척동	62	2	대	458.0	458.0			
4	고척동	62	229	대	2,237.0	2,237.0			
합계					5,644.0	5,644.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소유자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본번	부번			
1	고척동	62		주식회사 밀리언골프클럽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로 537길 56(고척동)	-
2	고척동	62	1			
3	고척동	62	2			
4	고척동	62	229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644.0	-	5,644.0	100.0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644.0	감) 5,644.0	-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644.0	5,644.0	100.0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신설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	증) 5,644.0	5,644.0	-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38)와 구로구 주택과(02-860-29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 면 적 : 5,644.0㎡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어르신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을 제안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 밀리언골프클럽

○ 대표자 성명 : 양재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2, 62-1, 62-2, 62-229

○ 법인등록번호 : 110111-0848907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촉진지구 지정일 ~ 2028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금융기관 조달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유형	주택유형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5,644.0	100.0	-
	소계	5,644.0	100.0	-
합계		5,644.0	100.0	-

5.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266인

2) 주택건설계획 : 230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가구당 인구수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임대 주택	24TYPE	42	18.26	1	42.00	15.79	-
	37TYPE	44	19.13	1	44.00	16.54	-
	51ATYPE	6	2.61	1.75	10.50	3.95	-
	소계	92	40.00	-	0.00	36.28	-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24TYPE	6	2.61	1	6.00	2.26	-
	33TYPE	10	4.35	1	10.00	3.76	-
	37TYPE	80	34.78	1	80.00	30.08	-
	51ATYPE	26	11.30	1.75	45.50	17.11	-
	51BTYPE	16	6.96	1.75	28.00	10.53	-
	소계	138	60.00	6.5	169.50	63.72	-
합 계		230	100.00	-	266.00	100.00	-

※ 대상지의 인구수 산정 시 2인 이상 세대(전용면적 44㎡는 이상)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비오톱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 및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실시하여 생태환경 향상 도모
- 대상지내 건축물은 골프연습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 조성을 통해 오픈스페이스 마련 및 녹지체계 구축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계획 및 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 이행

다) 물순환 및 수질 저감계획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과 식재를 적용한 결과 생태면적률은 38.37%로 계획하였으며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수면식재

- 건축물의 부지정지 및 터파기 작업에 의한 일시적인 토사 유출은 공사 중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사전에 예방

2)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대상지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사업대상지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예정
- 자전거 보관소, 나눔카, PM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충분한 녹지조성, 투수성포장재료의 사용 및 자연지반의 확대 등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을최대한 억제하고, 에너지 효율관리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용 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조성
- 운영 시 에너지 소비 절약형 건물의 유도를 위하여 열부하감소, 에너지 기기의 효율증대, 에너지 수송시스템에 대한 동력부하감소 등과 에너지 공급설비의 경우 건물 자동제어 시스템 채택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제한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계획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붙임]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	증) 5,644.0	5,644.0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644.0	-	5,644.0	100.0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644.0	감) 5,644.0	-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644.0	5,644.0	100.0	-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5,644.0	-

■ 획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정내용	결정사유
-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5,644.0	• 획지 지정	• 어르신 주거안정을 위한 안심주택 건립을 위해 획지 지정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계획내용	비 고
용도	지정용도	1	• 공동주택(주거복합)	
	불허용도	가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숙박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야영장 시설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의 안심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결정사유
-	•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신설	• 어르신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를 결정(신설)하고자 함

2)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 제4호
용적률	• 기본용적률 : 200%이하 • 상한용적률 : 250% 이하	•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이하] - 완화용적률의 50% 범위 공공임대주택 제공
높 이	• 50m 이하	-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결정사유
용적률	• 기본용적률 : 200% 이하 • 상한용적률 : 250% 이하	• 어르신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 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적용함
최고높이	• 50m 이하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에 따른 계획높이 산정

3)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 안양천로537길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참고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축한계선 지정 - 안양천로537길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보행자도로 및 차도 확보를 위해 도로변 3m 폭원 건축한계선 결정

4) 공공기여계획

구 분		용적률	적용기준	적용내용	비 고
공공임대주택	기본 용적률 (부지 면적)	200% 이하	부지면적의 30% 이상 - 기준 : 1,693.2㎡이상	• 부지면적 기준 : 1,695.32㎡(30.04%) - 공공임대주택 : 1,695.32㎡(30.04%, 70세대)	총 230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92세대 계획 • 세대수 - 기본 70세대(30.43%)/ 상한 22세대(9.57%) - 총 공공기여 세대수 : 92세대(40.00%) • 부속토지 - 기본 : 1,695.32㎡(30.04%) - 상한 : 565.11㎡(10.01%) - 총 부속토지 면적 : 2,260.43㎡(40.05%)
	상한 용적률 (연면적)	250% 이하	완화용적률의 50%이상 = 50% / 2 = 25.0% 이상 - 기준 : 1,411.0㎡이상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1,412.21㎡(25.02%, 22세대)	

5) 용적률 적용[의무사항]

구 분		기 준	적용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30%이상 □ - 대지환산면적 = 부지면적 × 기본공공기여율 : 5,644.0㎡ x 30.00% = 1,693.20㎡이상(부지면적기준)	• 기본공공기여 : 30.04%(1,695.32㎡) 〉 1,693.20㎡ 이상 - 공공임대주택 : 1,695.32㎡(30.04%) [70세대]	기본용적률 200% 상한용적률 25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 증가용적률(50%)의 50% 이상 추가 공공기여 - 용적률 : (250%-200%)/2=25% 이상 - 연면적 : 25% x 5,644.0㎡ = 1,411.0㎡ 이상	• 추가공공기여 : 1,412.21㎡〉 1,411.0㎡이상 - 공공임대주택 : 1,412.21㎡(25.02%) [22세대]	
주택 건설 기준	주택 규모	•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23㎡ ~ 60㎡ - 1인 세대 : 전용면적 23㎡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전용면적 44㎡ 이상(2룸 이상) 권장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세대수기준: 40.00% : 60.00% - 주택 연면적 기준 : 34.64% : 65.36% • 공공임대 : 92세대 - 24TYPE(42세대), 37TYPE(44세대), 51ATYPE(6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138세대 - 24TYPE(6세대), 33TYPE(10세대), 37TYPE(80세대), 51ATYPE(26세대), 51BTYPE(16세대)	
건축물 형태	미래형 지향적 주거환경 조성	•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 상생형 임차시설 설치 - 공공시설물 설치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 상생형 임차시설 설치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4 - 100호 이상 300호 미만 : 150㎡ 이상	• 462.29㎡ 계획(전체 230세대)	
건축계획		• 무장애 설계 : 무장애 설계 가이드라인 준수 • 첨단 특화설계 : 스마트기기와 연결한 IoT서비스, 침실 및 화장실 등 비상벨 • 필요 시설 설치 : 5,000㎡이상 보건지소 또는 복지시설 등 우선검토, 150호 이상 식사지원을 위한 식당 설치	•무장애 설계 가이드라인 준수 •첨단 특화설계 •지하 1층 식당 설치	

※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전면공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3m - 안양천로537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참조

※ 단,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중 일부구간(16m)은 기존 운동시설 및 현황상 공원 계획과 중복되어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보행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산책로 등 대체 보행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3m - 안양천로537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대상지가 접한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지정 부분의 보도형 전면공지 확보

5.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받는 사항

구분	완화내용	대상지 적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 최고높이 계획기준 완화	해당없음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최고높이	• 최고높이 계획기준 완화	해당없음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	해당없음
비주거용도 위치 및 비율	•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비주거 비율은 기존 건물을 존치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비주거 용도 비율 완화	해당없음

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Ⅲ. 방재계획

1. 하천재해 : 안양천 좌안 제방고가 계획홍수위보다높음
2. 사면재해 : 옹벽 안정성검토를 실시하여 불안정한 경우 보강공법 적용
3. 토사재해 : 사업지구 경계부에 집수정과 산마루 측구 계획하고 개발 중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1개소 지정
4. 바람재해 : 「국가건설기준 KSD 41 10 05 : 2019, 국토교통부의 내풍설계기준적용

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본번	부번						
1	고척동	62		대	1,041.0	1,041.0	주식회사 밀리언골프클럽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로537길 56(고척동)	-
2	고척동	62	1	대	1,908.0	1,908.0			
3	고척동	62	2	대	458.0	458.0			
4	고척동	62	229	대	2,237.0	2,237.0			
합계					5,644.0	5,644.0	-		

2. 물건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구분	지분	성명	주소	
합 계				5,644.0	5,644.0	-	-	-	-	-
1	고척동	62	대	1,041.0	1,041.0	-	-	주식회사 밀리언골프클럽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로537길 56(고척동)	-
2	고척동	62-1	대	1,908.0	1,908.0	-	-	주식회사 밀리언골프클럽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로537길 56(고척동)	-
3	고척동	62-2	대	458.0	458.0	-	-	주식회사 밀리언골프클럽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로537길 56(고척동)	-
4	고척동	62-229	대	2,237.0	2,237.0	-	-	주식회사 밀리언골프클럽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로537길 56(고척동)	-

3. 토지취득방법 : 사업대상지 전체(4필지)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현재 입지한 1동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공동주택(어르신 안심주택) 건설 예정

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Ⅵ.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구로구청 주택과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예정

Ⅶ.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계획

■ 조성토지 공급계획

구 분	내 용
조성토지 위치 및 면적	• 위치 :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 면적 : 5,644.0㎡
조성토지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 공공임대주택 : 구분지상권 및 부속토지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기타시설 : 사업시행자 자체 사용
공급시기 및 방법	• 준공 후 사업시행자 및 관계시설 인수자에게 공급
공급가격 결정방법	• 공공임대주택 : 조성원가 • 근린생활시설 : 준공 후 일반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조성원가 100% 기준으로 공급가격 결정

■ 편입토지 현황

1) 편입 토지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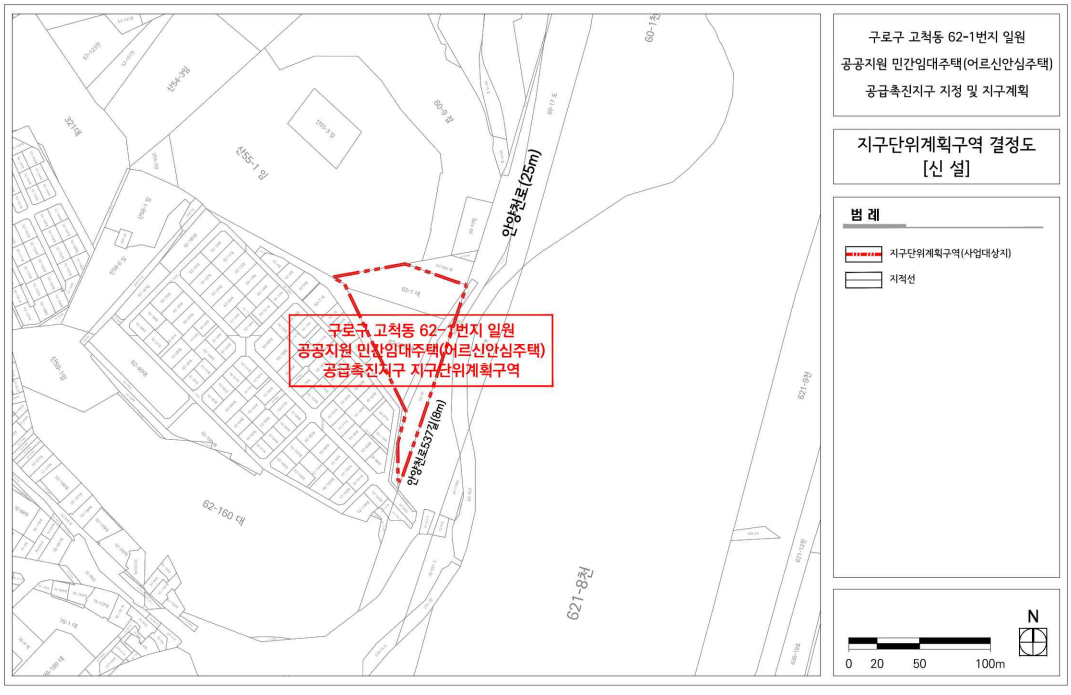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구분	지분	성명	주소	
합 계				5,644.0	5,644.0	-	-	-	-	-
1	고척동	62	대	1,041.0	1,041.0	-	-	주식회사 밀리언골프클럽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로537길 56(고척동)	-
2	고척동	62-1	대	1,908.0	1,908.0	-	-	주식회사 밀리언골프클럽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로537길 56(고척동)	-
3	고척동	62-2	대	458.0	458.0	-	-	주식회사 밀리언골프클럽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로537길 56(고척동)	-
4	고척동	62-229	대	2,237.0	2,237.0	-	-	주식회사 밀리언골프클럽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로537길 56(고척동)	-

Ⅶ. 관계도면

■ 공급촉진지구 구역에 관한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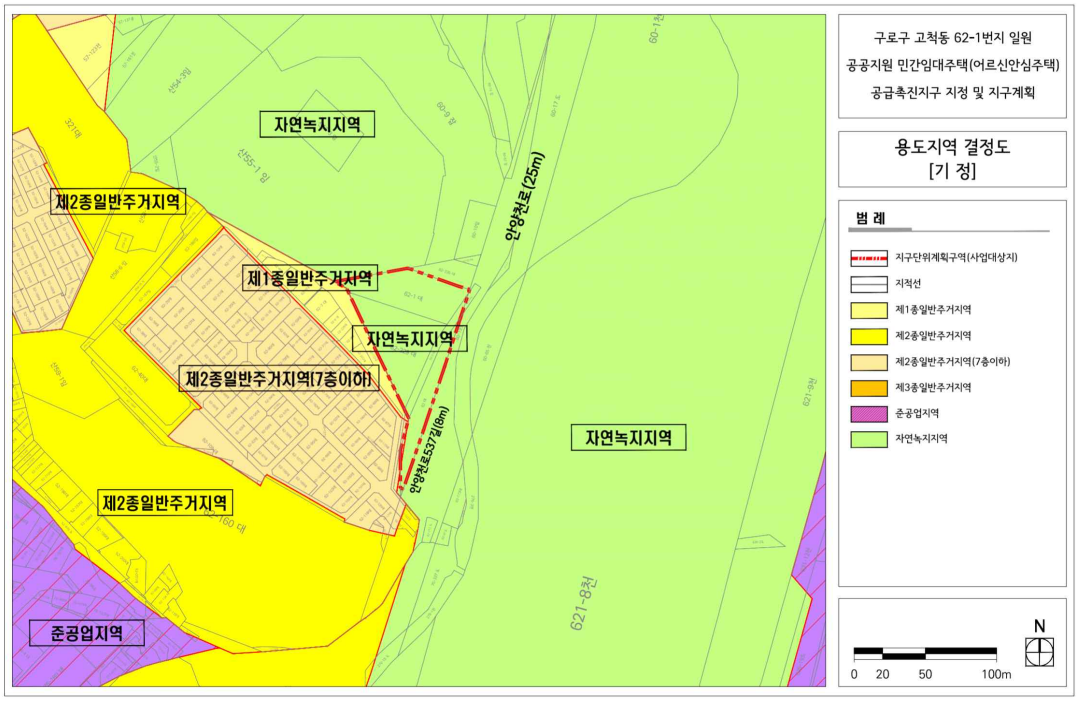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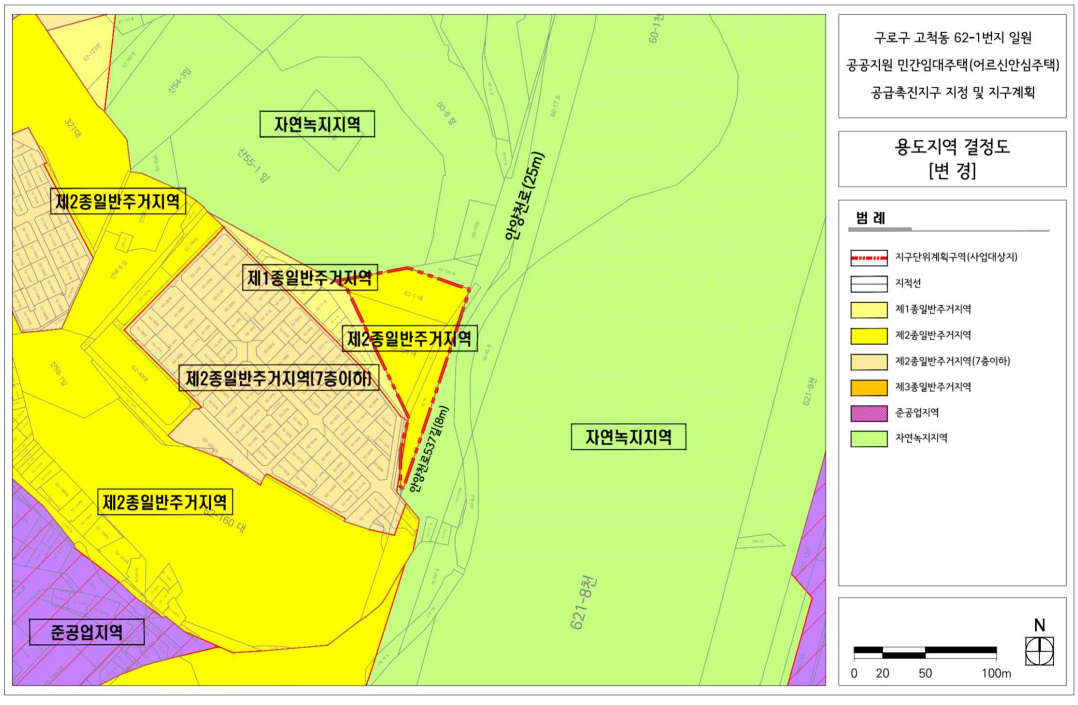


Ⅶ.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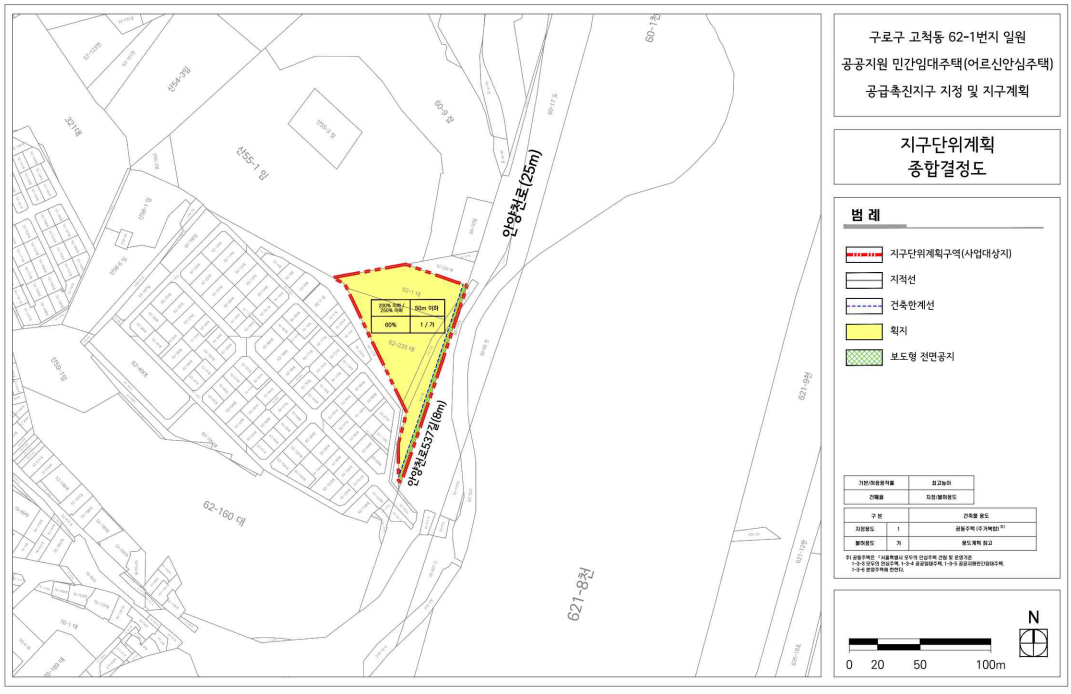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0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 안심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 밀리언골프클럽	양재양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2, 62-1, 62-2, 62-229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 2028년
5.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5,644.0㎡
 다. 건 폐 율 : 43.77% (건축면적 : 2,470.35㎡)
 라. 용 적 률 : 249.90%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14,104.36㎡)
 마. 용 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92세대/민간임대 138세대), 근린생활시설
 바. 규 모 : 1개동, 지하3층/지상13층, 연면적 22,855.97㎡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상수도공급신청, 배수설비설치신고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 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 결정 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01호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9호(2005.12.15.)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9호(2022.6.23.)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송파구고시 제2022-184호(2022.11.10.)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32호(2024.9.5.)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7호(2025.5.22.)로 결정된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사업명 :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잠실동 27번지 일원	358,077.0	-	358,077.0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58,077.0	-	358,077.0	100.0	-
획지	소계	276,411.2	감) 3.0	276,408.2	77.2	-
	주택용지	211,397.4	증) 1.4	211,398.8	59.0	입체도로 면적 포함 (7,847.2㎡)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복합용지	61,791.8	감) 4.4	61,787.4	17.3	입체도로 면적 포함 (3,217.1㎡)
	종교용지	2,642.0	-	2,642.0	0.7	-
	근린생활시설-1	330.0	-	330.0	0.1	우체국
	근린생활시설-2	250.0	-	250.0	0.1	파출소
정비기반시설등	소계	81,665.8	증) 3.0	81,668.8	22.8	-
	도로	38,174.3	증) 264.5	38,438.8	10.7	입체도로 면적 제외
	공원	19,528.9	감) 264.2	19,264.7	5.4	-
	학교	14,414.1	-	14,414.1	4.0	신천초 존치
	공공청사	1,000.0	-	1,000.0	0.3	주민센터
	공공공지	8,548.5	증) 2.7	8,551.2	2.4	-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

추정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추산액-매출부가세)-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추산액 X 100% • 추정비례율 : 86.15% = [(19,995,981,604천원 - 264,600,916천원) - 5,776,040,356천원] ÷ 16,198,024,692천원 X 100% ※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추산액 : 19,995,981,604천원 (19조 9,959억원) ※ 총 사업비: 5,776,040,356천원 (5조 7,760억원)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등 총추산액 : 16,198,024,692천원 (16조 1,980억원) ※ 매출부가세 : 264,600,916천원 (2,646억원)

종전 토지 및 건축물 등 총추산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현재 정비구역 변경 준비 단계로서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하였음
• 아파트는 대상 아파트 및 인근 아파트 등의 최근 실거래가격 및 부동산 시세조회(KB부동산, 한국 부동산원 – 2025 09월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 근린생활시설 등은 잠실주공5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의 최근 거래사례를 조사한 후 위치별 · 층별 효용비율 및 토지지분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음
• 27-11번지의 토지 건물은 인근지역 토지의 거래사례, 공시지가 지가수준, 건물의 가치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단위 : 천원)

구분	(통칭) 평형	건물면적(㎡) 공급	건물면적(㎡) 전용	세대수	종전자산 (세대평균)	종전자산추산액
아파트	34	110.81	103.47	2,280	3,800,000	8,664,000,000
		110.82	103.61			
		114.02	106.15			
		114.02	106.28			
	35	116.5	107.51	300	3,900,000	1,170,000,000
	36	118.58	110.75	1,350	4,100,000	5,535,000,000
		118.58	110.88			
		117.92	110.05			
		117.92	110.19			
	합계			3,930	-	15,369,000,000

	지번	토지면적 (㎡)	층수	건물연면적 (㎡)	등기형태	종전자산총액
아파트外	27-1	998.4	-1/3	1,155.75	집합건물	41,986,435
	27-2	1,088.98	-1/2	1,478.88	집합건물	45,364,608
	27-6	8,553.04	-1/3	10,864.13	집합건물	565,772,621
	27-8	1,234.4	-1/3	2,292.6	집합건물	47,871,714
	27-9	371.06	-/2	401.23	집합건물	14,628,406
	27-11	2,263	-1/3	2,613.63	토지/건물	113,400,908
	합계					829,024,692
종전자산 총계						16,198,024,692

추정 분담금 산출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권리자(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추정 권리가액	추정분담
주택 용지 (3종 주거)	전용39A㎡	14.1억	복합 용지 (준주거)	전용39B㎡	13.7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86.15%)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45A㎡	16.3억		전용45B㎡	16.4억		
	전용59A㎡	21.6억		전용59C㎡	21.2억		
	전용59B㎡	21.4억		전용59D㎡	21.2억		
	전용84A㎡	27.5억		전용84B㎡	28.3억		
	전용94A㎡	32.3억		전용84C㎡	30.1억		
	전용94B㎡	32.3억		전용84D㎡	30.1억		
	전용94C㎡	32.1억		전용100M㎡	34.5억		
	전용100A㎡	34.3억		전용100N㎡	34.5억		
	전용100B㎡	34.3억		전용100O㎡	34.4억		
	전용100C㎡	34.1억		전용100P㎡	34.7억		
	전용100D㎡	34.6억		전용107M㎡	37.0억		
	전용100E㎡	34.7억		전용107N㎡	36.8억		
	전용100F㎡	34.7억		전용107O㎡	36.8억		
	전용100G㎡	33.3억		전용107P㎡	36.6억		
	전용100H㎡	33.1억		전용134D㎡	44.6억		
	전용100I㎡	33.1억		전용152D㎡	54.8억		
	전용100J㎡	34.4억		전용176D㎡	83.4억		
	전용100K㎡	34.3억		전용176E㎡	83.6억		
	전용100L㎡	34.2억		전용236A㎡	122.8억		
	전용107A㎡	38.5억		전용244C㎡	127.8억		
	전용107B㎡	38.4억		판매시설 지하1층	12.9억		
	전용107C㎡	38.3억		판매시설 1층	19.8억		
	전용107D㎡	36.3억		판매시설 2층	9.9억		
	전용107E㎡	36.4억		문화및집회시설 지하1층	6.4억		
	전용107F㎡	36.2억					
	전용107G㎡	36.6억					
	전용107H㎡	36.5억					
	전용107I㎡	36.6억					
	전용107J㎡	35.7억					
	전용107K㎡	35.7억					
	전용107L㎡	35.7억					
	전용126A㎡	45.7억					
	전용126B㎡	45.7억					
	전용126C㎡	45.4억					
	전용134A㎡	48.0억					
	전용134B㎡	47.9억					
	전용134C㎡	47.9억					
	전용152A㎡	54.0억					
	전용152B㎡	53.8억					
	전용152C㎡	53.7억					
	전용176A㎡	84.1억					
	전용176B㎡	83.7억					
	전용176C㎡	81.0억					
	전용200A㎡	99.5억					
	전용244A㎡	121.2억					
	전용244B㎡	120.4억					
	A동 1층	11.8억					
	B동 1층	11.8억					
	C동 1층	13.9억					

※ 잠실5단지아파트 추정분담금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산정한 개략적인 추산액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담금 추산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작성시점 현재의 정비계획 사항과 설계 개요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예시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분담금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통하여 확정됨

※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에 따른 분양수입은 현재 주택형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의견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비 추산액은 정비계획 변경사항과 개략적인 설계 개요에 기반한 개략적인 사업비로서 향후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속도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될 예정임

5. 용도지역·지구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58,077.0	-	358,077.0	100.0	-
주거지역	소계	354,797.0	-	354,797.0	99.1	-
	제1종일반주거지역	19,528.9	감) 264.2	19,264.7	5.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2,962.6	증) 2.7	22,965.3	6.4	-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513.7	증) 265.9	250,779.6	70.0	-
	준주거지역	61,791.8	감) 4.4	61,787.4	17.3	-
자연녹지지역		3,280.0	-	3,280.0	0.9	-

■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잠실동 27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264.7 (감 264.2)	•도시계획시설(공원) 용도지역 일원화
-	잠실동 27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22,965.3 (증 2.7)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잠실동 27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779.6 (증 265.9)	•측량성과 반영 및 주택용지 용도지역 일원화
-	잠실동 27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1,787.4 (감 4.4)	•측량성과 반영 및 복합용지 용도지역 일원화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20	58~62 (2~6)	주간선도로	7,780 (635)	올림픽로	올림픽로	일반도로	건설부고시 제198호 (1971.04.07)	올림픽로 (일부 변경)
변경	광로	2	20	58~62 (2~5)	주간선도로	7,780 (635)	올림픽로	올림픽로	일반도로		
기정	광로	2	29	50~58 (8~15)	주간선도로	8,000 (746)	잠실대교	성남시계	일반도로	건설부고시 제198호 (1971.04.07)	송파대로 (일부 변경)
변경	광로	2	29	50~58 (8~15)	주간선도로	8,000 (746)	잠실대교	성남시계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104	30 (3~6)	국지도로	552.5	잠실동 26	잠실동 26-1	일반도로	-	잠실로 (가각부 일부 조정)
변경	대로	3	104	30 (3~6)	국지도로	552.5	잠실동 26	잠실동 26-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414	20~24 (3~8)	간선도로	1,587.7 (405)	올림픽하단로	올림픽하단로	일반도로	-	한가람로 (확폭)
변경	중로	1	414	19~24 (4~9)	간선도로	1,587.7 (405)	올림픽하단로	올림픽하단로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430	11.5	집산도로	319	올림픽대로하단로 (잠실동 27)	올림픽대로하단로 (잠실동 27)	일반도로	-	한가람로 (확폭)
변경	중로	3	430	12.5	집산도로	319	올림픽대로하단로 (잠실동 27)	올림픽대로하단로 (잠실동 2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b	18~56	보행자	222	잠실동 1-1	잠실동 27	보행자	서울시고시	근린공원B,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전용도로				전용도로	제279호 (2022.06.23)	중 3-430, 광2-32, 올림픽대로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a	22	집산도로	564	잠실동 31	잠실동 26-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노선분리
변경	중로	1	a	22	집산도로	114	광로 2-29	중로 1-b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b	22	집산도로	410	중로 1-a	중로 1-c	일반도로		입체적 결정 (중로1-a 노선분리)
변경	중로	1	c	22	집산도로	41	중로 1-b	대로 3-104	일반도로		중로1-a 노선분리
기정	중로	1	b	22	집산도로	199	올림픽로	중 1-a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노선분리 및 번호 변경
변경	중로	1	d	22	집산도로	114	광로 2-20	중로 1-e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e	22	집산도로	84	중로 1-d	중로 1-b	일반도로		입체적 결정 (당초 중로1-b 노선분리)
기정	소로	3	a	6	국지도로	137	잠실동 27	잠실동 27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확폭
변경	소로	2	a	9	국지도로	137	잠실동 27	잠실동 27	일반도로		

※ ( )는 정비구역에 해당함
※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서고 제2025-277호) 반영 : 광로2-20, 광로 2-29(당초 광로1-32), 대로 3-104, 중로 1-414
※ 중로2-b는 중복결정 도시계획시설 기재
※ 당초 중로1-a 노선분리(중로 1-a, 중로 1-b, 중로 1-c), 당초 중로 1-b 노선분리(중로 1-d, 중로1-e)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2-20	광로 2-20	•선형 변경	•교통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선형 일부 조정
광로 2-29	광로 2-29	•선형 변경	•교통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선형 일부 조정
대로 3-104	대로 3-104	•선형 변경	•가각부 선형 일부 변경
중로 1-414	중로 1-414	•폭원 변경 - 폭 3~8m → 4~9m	•통합심의 심의의견에 따른 도로 확폭
중로 3-430	중로 3-430	•폭원 변경 - 폭 11.5m → 12.5m	•통합심의 심의의견에 따른 도로 확폭
중로 1-a	중로 1-a	•연장 변경 - 연장 564m → 114m	•노선 분리에 따른 연장 축소
중로 1-a	중로 1-b	•중로 1-a 노선분리 - 연장 : 410m - 폭원 : 22m	•중로 1-a 노선 분리
중로 1-a	중로 1-c	•중로 1-a 노선분리 - 연장 : 41m - 폭원 : 22m	•중로 1-a 노선 분리
중로 1-b	중로 1-d	•연장 변경 - 연장 : 199m → 114m	•노선 분리 및 입체적 도로 구간 확대에 따른 연장 축소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b	중로 1-e	•중로 1-b 노선분리 - 연장 : 84m - 폭원 : 22m	•당초 중로 1-b 노선 분리
소로 3-a	소로 2-a	•규모 변경 - 3류 → 2류 - 폭 : 6m → 9m	•통합심의 심의의견에 따른 도로 확폭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도로	잠실동 27 일원	길이	149m	증) 261m	410m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입체적 결정구간은 도로 구배 선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폭	22m	-	22m		
변경	중(집) 1-b	도로		높이	(시점) 지상~지하1m, (종점) 지상~지하7m	증) [지상도로구간] 지상~지하1m, [경사로 구간] (시점) 지상~지하1m, (종점) 지상~지하7m, [지하도로구간] 지하1m~지하7m	[지상도로구간] 지상~지하1m [경사로 구간] (시점) 지상~지하1m, (종점) 지상~지하7m [지하도로구간] 지하1m~지하7m		
				면적	3,268.0㎡	증) 5,930.2㎡	9,198.2㎡		
기정	2	도로	잠실동 27 일원	길이	211m	감) 127m	84m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입체적 결정구간은 도로 구배 선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폭	22m	-	22m		
변경	중(집) 1-e	도로		높이	(시점) 지하1m~지하7m, (종점) 지하1m~지하7m	증) [경사로 구간] (시점) 지상~지하1m, (종점) 지상~지하7m	[지하도로구간] 지하1m~지하7m [경사로 구간] (시점) 지상~지하1m, (종점) 지상~지하7m		
				면적	4,392.1㎡	감) 2,526.0㎡	1,866.1㎡		
폐지	3	도로	잠실동 27 일원	길이	82m	감) 82m	-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중(집)1-b 내 편입으로 단순 기재사항 변경(폐지)
				폭	22m	감) 22m	-		
				높이	(시점) 지상~지하1m, (종점) 지상~지하7m	감) (시점) 지상~지하1m, (종점) 지상~지하7m	-		
				면적	1,795.8㎡	감) 1,795.8㎡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집) 1-b	도로	• 선형 변경 및 기재사항 변경 - 길이 : 증) 261m - 높이 : 증) [지상도로구간] 지상~지하1m, [경사로 구간] (시점) 지상~지하1m, (종점) 지상~지하7m, [지하도로구간] 지하1m~지하7m - 면적 : 증) 5,930.2㎡	• 지하도로 내 원형교차로 구간 및 동서구간 편입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중(집) 1-e	도로	• 선형 변경 및 기재사항 변경 - 길이 : 감) 127m - 높이 : 증) [경사로 구간] (시점) 지상~지하1m, (종점) 지상~지하7m - 면적 : 감) 2,526.0㎡	• 경사로구간 및 남북구간 편입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3	도로	• 시설 폐지 - 길이 : 감) 82m - 폭 : 감) 22m - 높이 : 감) (시점) 지상~지하1m, (종점) 지상 ~ 지하7m - 면적 : 감) 1,795.8㎡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중(집) 1-b 내 편입으로 단순 기재사항 변경(폐지)

나. 공간시설

1)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A	-	근린공원	잠실동 27일원	11,225.0	감) 909.6	10,315.4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
기정	A	-	소공원	잠실동 27일원	8,303.9	증) 645.4	8,949.3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
변경	B	-	근린공원						

■ 공원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A	-	• 면적 변경 - 면적 : 감) 909.6㎡	• 선형 및 면적 변경
변경	B	-	•세분 변경 및 면적 변경 - 세분 : 소공원 → 근린공원 - 면적 : 증) 645.4㎡	• 통합심의 심의의견 반영에 따른 세분 변경 • 선형 및 면적 변경

2) 공공공지

가)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A	공공공지	잠실동 27일원	8,548.5	증) 2.7	8,551.2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A	공공공지	•면적 변경 - 면적 : 증) 2.7㎡	•측량성과 반영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학교

가)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초등학교	잠실동 27-5	14,414.1	-	14,414.1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

■ 학교 건축범위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①	초등학교	잠실동 27-5	14,414.1	관련 규정에 따름			-

2)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A	공공청사	-	잠실동 27일원	1,000.0	-	1,000.0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

■ 공공청사 건축범위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A	-	잠실동 27일원	1,000.0	관련 규정에 따름			-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주택용지

구 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부대 시설	관리사무소	잠실동 27번지 일원	713.0	증) 498.1	1,211.1	-
	경비실		120.0	감) 37.7	82.3	-
복리 시설	합계		45,637.6	증) 25,312.9	70,950.5	-
	경로당		1,348.5	증) 166.6	1,515.1	개방
	어린이집		2,033.5	증) 179.7	2,213.2	개방
	작은도서관		1,420.9	증) 885.0	2,305.9	개방
	다함께돌봄센터		966.0	증) 94.8	1,060.8	개방
	실내형어린이놀이터		1,664.0	증) 148.4	1,812.4	개방
	주민공동시설		33,732.7	증) 21,547.8	55,280.5	-
	어린이놀이터		4,050.0	감) 89.5	3,960.5	옥외
	주민운동시설		422.0	증) 777.1	1,199.1	옥외
	공공개방 주민공동시설		-	증) 1,603.0	1,603.0	개방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주민공동시설 확보 부합 여부 =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 {500㎡ + (4,942세대 X 2㎡)} X 1.25 = 12,980.0㎡ < 계획면적 70,950.5㎡으로 적합

※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나. 복합용지

구 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부대 시설	관리사무소	잠실동 27번지 일원	390.0	증) 167.5	557.5	-
	경비실		40.0	감) 3.6	36.4	-
복리 시설	합계		19,880.1	증) 3,633.7	23,513.8	-
	경 로 당		645.3	감) 122.7	522.6	개방
	어린이집		891.8	증) 464.4	1,356.2	개방
	작은도서관		465.5	증) 696.3	1,161.8	개방
	다함께돌봄센터		720.0	증) 156.9	876.9	개방
	주민공동시설		15,482.5	증) 2,442.8	17,925.3	-
	어린이놀이터		1,550.0	감) 4.0	1,546.0	옥외
	주민운동시설		125.0	-	125.0	옥외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주민공동시설 확보 부합 여부 =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 {500㎡ + (1,469세대 X 2㎡)} X 1.25 = 4,297.5㎡ < 계획면적 23,513.8㎡으로 적합

※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8.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358,077.0	소계	291,825.3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원	41	-	-	41	-	-
			A-1	211,397.4							
			A-2	61,791.8							
			A-3	1,320.0							
			A-4	1,322.0							
			A-5	330.0							
			A-6	1,000.0							
			A-7	250.0							
			A-8	14,414.1							
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358,077.0	소계	291,822.3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원	41	-	-	41	-	-
			A-1	211,398.8							
			A-2	61,787.4							
			A-3	1,320.0							
			A-4	1,322.0							
			A-5	330.0							
			A-6	1,000.0							
			A-7	250.0							
			A-8	14,414.1							

9. 건축시설계획(변경)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층수)
	명칭	면적(㎡)				기준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A-1	211,397.4	잠실동 2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230	270.10	300.00	195m이하 (49층)
	A-2	61,791.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업무·문화 및 집회시설	60	230	298.32	400.00	280m이하 (70층)
	A-3	1,320.0		종교·근린생활시설	관련 규정에 따름				
	A-4	1,322.0		종교·근린생활시설	관련 규정에 따름				
	A-5	330.0		우체국·근린생활시설	관련 규정에 따름				
	A-6	1,000.0		공공청사(주민센터)	관련 규정에 따름				
	A-7	250.0		파출소	관련 규정에 따름				
	A-8	14,414.1		초등학교	관련 규정에 따름				
변경	A-1	211,398.8	잠실동 2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230	262.85	300.00	195m이하 (49층)
	A-2	61,787.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업무·문화 및 집회시설	60	230	323.28	400.00	280m이하 (70층)
	A-3	1,320.0		종교·근린생활시설	관련 규정에 따름				
	A-4	1,322.0		종교·근린생활시설	관련 규정에 따름				
	A-5	330.0		우체국·근린생활시설	관련 규정에 따름				
	A-6	1,000.0		공공청사(주민센터)	관련 규정에 따름				
	A-7	250.0		파출소	관련 규정에 따름				
	A-8	14,414.1		초등학교	관련 규정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주택공급계획 : 6,411세대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d><td rowspan="2">위치</td><td rowspan="2">주된 용도</td><td rowspan="2">건폐율
(%)</td><td colspan="3">용적률(%)</td><td rowspan="2">높이
(층수)</td></tr>
<tr><td>명칭</td><td>면적(㎡)</td><td>기준</td><td>정비계획</td><td>법적상한</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8">
<table>
<tr><td rowspan="2">건립 규모</td><td colspan="3">세대수(세대)</td><td rowspan="2">비율(%)</td><td rowspan="2">비고</td></tr>
<tr><td>기정</td><td>증감</td><td>변경</td></tr>
<tr><td>계</td><td>6,491</td><td>감) 80</td><td>6,411</td><td>100.0</td><td>공공주택 831세대</td></tr>
<tr><td>60㎡ 미만</td><td>1,251</td><td>증) 397</td><td>1,648</td><td>25.7</td><td>공공주택 831세대</td></tr>
<tr><td>60㎡ ~ 85㎡ 이하</td><td>2,054</td><td>감) 477</td><td>1,577</td><td>24.6</td><td>-</td></tr>
<tr><td>85㎡ 초과</td><td>3,186</td><td>-</td><td>3,186</td><td>49.7</td><td>-</td></tr>
</table>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름
•본 고시문의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함
-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름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td></tr>
<tr><td colspan="2">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8">•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 (주택용지) 300.00% 이하, (복합용지) 400.00% 이하</td></tr>
<tr><td row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기정</td><td colspan="8">•건축한계선
- 간선변(송파대로, 올림픽로), 내부도로변 : 6m 이상 확보
- 기타 : 3m 이상 확보</td></tr>
<tr><td>변경</td><td colspan="8">•건축한계선
- 송파대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올림픽로변, 내부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기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td></tr>
<tr><td rowspan="2">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기정</td><td colspan="8">•공공보행통로
- 주택용지 : 복합용지 가각부 ~ 한강변 (폭원 10m)
- 복합용지 : 잠실역 ~ 북서측 가각부 (폭원 10m)
•공개공지 위치 지정
- 복합용지 내 잠실역변 1개소
•통경축 확보구간 (20m이상) (도면참조)</td></tr>
<tr><td>변경</td><td colspan="8">•공공보행통로(지역권 설정)
- 주택용지 : 송파대로변 (폭원 11m)
- 복합용지 : 송파대로변 (폭원 6m)
•공개공지 위치 지정
- 복합용지 내 잠실역변 1개소
•통경축 확보구간 (30m이상) (도면참조)</td></tr>
</table>

■ 용적률 계획(변경)

○ 기정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8">산정 내용</th></tr>
<tr><td rowspan="2" colspan="2">토지이용
계획</td><td rowspan="2">구역면적
(㎡)</td><td colspan="3">획지면적(㎡)</td><td colspan="2">계획 정비기반시설(㎡)</td><td rowspan="2">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td><td rowspan="2">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주택용지</td><td>복합용지</td><td>기타용지</td><td>토지면적</td><td>공공시설 제공
환산부지 면적</td></tr>
<tr><td colspan="2"></td><td>358,077.0</td><td>211,397.4</td><td>61,791.8</td><td>3,222.0</td><td>81,665.8</td><td>1,116.5</td><td>32,843.6</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3">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전체</td><td colspan="8">• 순부담 면적 : 49,938.7㎡(순부담률 15.35%)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81,665.8 + 1,116.5) - 32,843.6 - 0
= 49,938.7㎡</td></tr>
<tr><td>주택용지</td><td colspan="8">• 순부담 면적 : 31,913.7㎡(순부담률 13.00%)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63,640.8 + 1,116.5) - 32,843.6 - 0
= 31,913.7㎡</td></tr>
<tr><td>복합용지</td><td colspan="8">•순부담 면적 : 18,025.0㎡(순부담률 22.58%)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18,025.0 - 0 - 0
= 18,025.0㎡</td></tr>
<tr><td rowspan="4"></td><td rowspan="2">주택
용지</td><td>공공시설등
부지(토지) 면적</td><td colspan="8">•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63,640.8㎡
- 도로(31,374.3㎡), 공원(8,303.9㎡), 공공청사(1,000.0㎡), 학교(14,414.1㎡), 공공공지(8,548.5㎡)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32,843.6㎡</td></tr>
<tr><td>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td><td colspan="8">•건축물 기부채납(공공기여) 환산부지면적 = 공공청사 + 한강보행교
= 266.9㎡ + 849.6㎡ = 1,116.5㎡
① 공공청사 환산부지면적 = 266.9㎡(연면적 2,500.0㎡)
-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X 설치비용 기준(주1) = 2,500.0㎡ X 3,267,273원 = 8,168,200,000원
※ ㉯ : 공시지가(주3) X 2 = 15,304,326원 X 2 = 30,608,652원
② 한강보행교 환산부지면적 = 849.6㎡(연면적 2,500.0㎡)
-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X 설치비용 기준(주2) = 2,500.0㎡ X 10,402,000원 = 26,005,000,000원
※ ㉯ : 공시지가(주3) X 2 = 15,304,326원 X 2 = 30,608,652원
주1)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동청사) : 3,267,273원(부가세 제외)
주2) 한강전망보행데크조성(성수,가양,서빙고 보행교, 2011년도) 사업비 평균값 X 2011년 12월 ~ 2023년 12월 건설공사비 상승률
- 6,428,571원 X 161.8% = 10,402,000원
주3) 대상지 개별공시지가 평균(2023년 기준)</td></tr>
<tr><td rowspan="2">복합
용지</td><td>공공시설등
부지(토지) 면적</td><td colspan="8">•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18,025.0㎡
- 도로(6,800.0㎡), 공원(11,225.0㎡)</td></tr>
<tr><td>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td><td colspan="8">•건축물 기부채납 없음</td></tr>
<tr><td colspan="2">상한
용적률</td><td>주택용지</td><td colspan="8">•기준용적률X (1 + 1.3 X 가중치 X α + 0.7 X β)
= 230% X (1 + 1.3 X 0.9477 X 0.1385 + 0.7 X 0.0053) = 270.10%</td></tr>
</table>

구분	산정 내용	
		가중치 = 공공시설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17.98% / 230.00% = 0.9477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9,280.9 / 211,397.4 = 0.1385 β = 공공시설설치비용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116.5 / 211,397.4 = 0.0053 ※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서울시 공고 제2023-2821호)에 따라 주거용도 전환면적(1,516.3㎡)은 상한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복합용지	•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 0.7 × β) = 230% × (1 + 1.3 × 0.7834 × 0.2917 + 0.7 × 0) = 298.32% 가중치 = 공공시설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180.18% / 230.00% = 0.7834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8,025.0 / 61,791.8 = 0.2917 β = 공공시설설치비용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0 / 61,791.8 = 0

○ 변경

구분		산정 내용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	획지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계획 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주택용지	복합용지	기타용지	토지면적	공공시설 제공 환산부지 면적		
	358,077.0	211,398.8	61,787.4	3,222.0	81,668.8	1,116.5	32,843.6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전체	• 순부담 면적 : 49,941.7㎡(순부담률 15.36%) =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계획 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81,668.8㎡ + 1,116.5㎡) - 32,843.6㎡ - 0㎡ = 49,941.7㎡						
	주택용지	• 순부담 면적 : 27,076.3㎡(순부담률 11.25%) =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계획 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58,803.4㎡ + 1,116.5㎡) - 32,843.6㎡ - 0㎡ = 27,076.3㎡						
	복합용지	• 순부담 면적 : 22,865.4㎡(순부담률 27.01%) =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계획 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22,865.4㎡ - 0㎡ - 0㎡ = 22,865.4㎡						
주택용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58,803.4㎡ - 도로(25,888.8㎡), 근린공원B(8,949.3㎡), 공공청사(1,000.0㎡), 학교(14,414.1㎡), 공공공지(8,551.2㎡) • 계획 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32,843.6㎡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기여) 환산부지면적 = 공공청사 + 한강보행교 = 266.9㎡ + 849.6㎡ = 1,116.5㎡ ① 공공청사 환산부지면적 = 266.9㎡(연면적 2,500.0㎡) -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1) = 2,500.0㎡ × 3,267,273원 = 8,168,200,000원 ※ ㉯ : 공시지가(주3) × 2 = 15,304,326원 × 2 = 30,608,652원 ② 한강보행교 환산부지면적 = 849.6㎡(연면적 2,500.0㎡) -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2) = 2,500.0㎡ × 10,402,000원 = 26,005,000,000원 ※ ㉯ : 공시지가(주3) × 2 = 15,304,326원 × 2 = 30,608,652원						

구분			산정 내용
			주1)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동청사) : 3,267,273원(부가세 제외) 주2) 한강전망보행데크조성(성수,가양,서빙고 보행교, 2011년도) 사업비 평균값 × 2011년 12월 ~ 2023년 12월 건설공사비 상승률 - 6,428,571원 × 161.8% = 10,402,000원 주3) 대상지 개별공시지가 평균(2023년 기준)
	복합용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22,865.4㎡ - 도로(12,550.0㎡), 근린공원A(10,315.4㎡)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없음
상한 용적률		주택용지	• 기준용적률× (1 + 1.3 × 가중치 × α + 0.7 × β) = 230% × (1 + 1.3 × 0.9258 × 0.1156 + 0.7 × 0.0053) = 262.85% 가중치 = 공공시설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12.94% / 230.00% = 0.9258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4,443.5 / 211,398.8 = 0.1156 β = 공공시설설치비용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116.5 / 211,398.8 = 0.0053 ※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7호)에 따라 주거용도 전환면적 (1,516.3㎡)은 상한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복합용지	• 기준용적률× (1 + 1.3 × 가중치 × α + 0.7 × β) = 230% × (1 + 1.3 × 0.8431 × 0.3701 + 0.7 × 0) = 323.28% 가중치 = 공공시설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193.91% / 230.00% = 0.8431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2,865.4 / 61,787.4 = 0.3701 β = 공공시설설치비용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0 / 61,787.4 = 0

■ 허용용적률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계획

○ 기정

구분	인센티브량	획지	
		주택용지	복합용지
공공 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설정)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주택용지 : 230% × (4,332.5㎡/211,397.4㎡) × 1 = 4.71% ⇒ 복합용지 : 230% × (3,293.3㎡/61,791.8㎡) × 1 = 12.26%	4.7%	10%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 주택용지 : [500㎡+4,931세대×2]×1.25]×20% =2,590.5㎡<2,630.0㎡	5%	-
열린단지	•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로 조성	5%	5%
방재안전	• 화재 · 소방 · 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개선	5%	5%
우수디자인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시 인정	1%	-
합계		20.7% → 20% 적용	20% 적용

○ 변경

구분	인센티브량	획지	
		주택용지	복합용지
공공 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설정)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주택용지 : 230% × (2,738.2㎡/211,398.8㎡) × 1 = 2.98% ⇒ 복합용지 : 230% × (1,526.0㎡/61,787.4㎡) × 1 = 5.68%	2.9%	5.6%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 주택용지 : [500㎡+4,942세대×2]×1.25]×20% =2,596.0㎡<2,873.2㎡	5%	-
열린단지	•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로 조성	5%	5%
방재안전	• 화재 · 소방 · 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개선	5%	5%
우수디자인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시 인정	1%	-
친환경 건축물	•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인증 - 에너지효율 1++(3%) 인증 예정 • 녹색건축 인증 : 우수등급 (1.5%) 인증 예정	4.5%	4.5%
합계		23.4% →20% 적용	20.1% →20% 적용

10.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 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 최소화 •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 공간 확보	-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재난 방지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계획	• 계획구역의 입지상 한강변에 위치하나 기존 제방시설로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음. 그러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산사태	• 해당사항 없음	-
	화재	•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환경	생태 면적율	30%	○	• 기 시가화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 대상지내 충분한 자연지반 녹지, 인공지반 녹지 조성하여 생태 면적률 30% 이상 확보 만족	-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경녹지 계획	• 조경계획 등을 반영하여 녹지공간 확보	-
	비오톱 및 동식물상	4등급	○	• 비오톱유형평가 2, 3, 4등급, 개별비오톱 3등급,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 생태자연도 3등급지역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향상	-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지형변화 및 토공량 발생	•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 발생 사토처리 대책 수립	-
생활환경	일조	-	-	• 상업지역, 주거지역 • 북측지역 도로로 구성 일조영향권 내 주거시설 없음	•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 계획	-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 건축물 계획시 주풍향 (서북서풍) 고려 계획	-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
	경관	Skyline보전	○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 라인 계획 수립	-
		가로녹시율	○	• 상업시설로 조성되어 있음	• 건축물 외곽 조경식재 계획 → 가로녹시율 증가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공원, 오픈스페이스에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전용 도로계획수립	○	• 순환생활가로를 중심으로 보행도로 계획	• 주변지역과 연계 도모할 수 있는 동선계획 수립	-
		자전거전용 도로계획수립	○		-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	-
추가	폐기물	폐기물 성상별 분리처리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송파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	• 공사시 소음·진동영향 예상 • 운영시 도로소음영향 예상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현장여건에 적합한 도로소음 저감시설 설치(방음창 등)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 대상지 내 신천초등학교 (현황 존치) 위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 검토 시 신천초등학교 및 잠실중학교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건축배치 시 일조영향 등을 고려한 층수계획 • 향후, 동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의거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시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겠음	-

12. 정비구역을 분할 ·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증가예상 세대수		
			기정	증 감	변 경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재건축사업)	구역지정(변경)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잠실5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 3,930세대 (증) 2,561세대) 계획 : 6,491세대	감) 80세대	현황 : 3,930세대 (증) 2,481세대) 계획 : 6,411세대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가.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변경없음)

1)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41	30	11	41	41	-

2)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3,930	3,930	1,344	2,586	9,000	3,078	5,922	-
단독주택	-	-	-	-	-	-	-	-
공동주택	3,930	3,930	1,344	2,586	9,000	3,078	5,922	-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 거주인구는 세대당 2.29 적용(송파구 인구통계 2023. 08.)

3)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 계		3,930	-	-	-	-	3,930	3,930	-	-	-
60㎡ 이하	소계	-	-	-	-	-	-	-	-	-	-
	30㎡ 이하	-	-	-	-	-	-	-	-	-	-
	30㎡초과~50㎡이하	-	-	-	-	-	-	-	-	-	-
	50㎡초과~60㎡이하	-	-	-	-	-	-	-	-	-	-
60㎡초과~85㎡이하		-	-	-	-	-	-	-	-	-	-
85㎡ 초과	소계	3,930	-	-	-	-	3,930	3,930	-	-	-
	85㎡초과~135㎡이하	3,930	-	-	-	-	3,930	3,930	-	-	-
	135㎡초과	-	-	-	-	-	-	-	-	-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계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계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합 계		6,491	5,680	811	6,411	5,580	831	-
60㎡ 이하	소 계	1,251	440	811	1,648	817	831	-
	30㎡ 이하	-	-	-	-	-	-	-
	30㎡초과~50㎡이하	413	156	257	792	392	400	-
	50㎡초과~60㎡이하	838	284	554	856	425	431	-
60㎡초과~85㎡이하		2,054	2,054	-	1,577	1,577	-	-
85㎡ 초과	소 계	3,186	3,186	-	3,186	3,186	-	-
	85㎡초과~135㎡이하	3,146	3,146	-	3,146	3,146	-	-
	135㎡초과	40	40	-	40	40	-	-

15.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착공전	착공 ~ 공사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 추진중으로 주민들 거주중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법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A	-	1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원	211,397.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61,791.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업무·문화 및 집회시설
			3		1,320.0	종교·근린생활시설
			4		1,322.0	종교·근린생활시설
			5		330.0	우체국·근린생활시설
			6		1,000.0	공공청사(주민센터)
			7		250.0	파출소
			8		14,414.1	초등학교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변경	A	-	1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원	211,398.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61,787.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업무·문화 및 집회시설
			3		1,320.0	종교·근린생활시설
			4		1,322.0	종교·근린생활시설
			5		330.0	우체국·근린생활시설
			6		1,000.0	공공청사(주민센터)
			7		250.0	파출소
			8		14,414.1	초등학교

18.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가.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라.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 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마.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주택용지

■ 기정

구분		주요내용
계획기준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270.10% 이하(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법적상한용적률		• 300.00% 이하(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공공주택	용적률 증가분	•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300.00% - 270.10% = 29.90%
	건립용적률	• 29.90% × 50% = 14.95%
	의무연면적 (지상층)	• 211,397.4㎡ × 14.95% = 31,603.91㎡이상

구분	주요내용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확보계획	세대규모(㎡)		세대수	지상층연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계		424	31,674.61	31,674.61㎡ 〉31,603.91㎡
	45.96	63.18	170	10,740.79	
	59.23	82.42	254	20,933.82	

■ 변경

구분		주요내용				
계획기준		•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262.85%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 300.00% 이하				
공공주택	용적률 증가분	•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300.00% - 262.85% = 37.15%				
	건립용적률	• 37.15% X 50% = 18.575%				
	의무연면적 (지상층)	• 211,398.8㎡ X 18.575% = 39,267.33㎡이상				
공공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세대규모(㎡)		세대수	지상층연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계		543	39,268.52	39,268.52㎡ 〉39,267.33㎡
		39.96	57.63	149	8,587.59	
		45.84	65.92	165	10,876.26	
		59.83	86.50	50	4,324.85	
		59.99	86.48	179	15,479.79	

2) 복합용지

■ 기정

구분		주요내용
계획기준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298.32% 이하(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법적상한용적률		• 400.00% 이하(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공공주택	용적률 증가분	•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400.00% - 298.32% = 101.68%
	건립용적률	• 101.68% X 50% = 50.84%
	의무연면적 (지상층)	• 61,791.8㎡ X 50.84% = 31,414.95㎡이상

구분	주요내용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확보계획	세대규모(㎡)		세대수	지상층연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계		387	31,420.52	31,420.52㎡ 〉31,414.95㎡
	39.97	58.54	43	2,517.15	
	45.96	66.43	44	2,922.86	
	59.23	86.60	300	25,980.51	

■ 변경

구분		주요내용				
계획기준		•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323.28%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 400.00% 이하				
공공주택	용적률 증가분	•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400.00% - 323.28% = 76.72%				
	건립용적률	• 76.72% X 50% = 38.36%				
	의무연면적 (지상층)	• 61,787.4㎡ X 38.36% = 23,701.65㎡이상				
공공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세대규모(㎡)		세대수	지상층연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계		288	23,703.54	23,703.54㎡ 〉23,701.65㎡
		39.93	59.45	43	2,556.18	
		45.94	69.59	43	2,992.40	
		59.99	89.88	202	18,154.95	

바. 공공주택 혼합계획

■ 기정

구분	건립규모 (전용면적 기준)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세대수 (법적상한완화)	공공주택 비율 (%)
합계		6,491	100.0	5,680	811	12.5
주택용지	소계	5,001	77.0	4,577	424	6.5
	60㎡이하	793	12.2	369	424	6.5
	60㎡초과 ~ 85㎡이하	1,676	25.8	1,676	-	-
	85㎡초과	2,532	39.0	2,532	-	-
복합용지	소계	1,490	23.0	1,103	387	6.0
	60㎡이하	458	7.1	71	387	6.0
	60㎡초과 ~ 85㎡이하	378	5.8	378	-	-
	85㎡초과	654	10.1	654	-	-

■ 변경

구분	건립규모 (전용면적 기준)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세대수 (국민주택주택 규모)	공공주택 비율 (%)
합계		6,411	100.0	5,580	831	13.0
주택용지	소계	4,942	77.1	4,399	543	8.5
	60㎡이하	1,097	17.1	554	543	8.5
	60㎡초과 ~ 85㎡이하	1,302	20.3	1,302	-	-
	85㎡초과	2,543	39.7	2,543	-	-
복합용지	소계	1,469	22.9	1,181	288	4.5
	60㎡이하	551	8.6	263	288	4.5
	60㎡초과 ~ 85㎡이하	275	4.3	275	-	-
	85㎡초과	643	10.0	643	-	-

19.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 계획(변경없음)

■ 향후 대상지 내 분포하는 이식대상 수목을 조사하여 향후 정비구역 내 조성되는 공원(계획) 내 이식하도록 하겠음

20.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변경)

구 분	세대수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총계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총계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합 계	6,491	5,680	811	6,411	5,580	831	100.0	-
60㎡이하	1,251	440	811	1,648	817	831	25.7	-
60㎡초과 ~ 85㎡이하	2,054	2,054	-	1,577	1,577	-	24.6	-
85㎡초과	3,186	3,186	-	3,186	3,186	-	49.7	-

21.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Ⅱ.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신천동, 잠실동, 풍납동 일대	2,482,662.3 (358,077.0)	-	2,482,662.3 (358,077.0)	서울시고시 제277호 (2025.05.22)	-

※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한가람로 연결 지하차도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구역계 변경 가능
※ ( )은 특별계획구역1 면적임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482,662.3	-	2,482,662.3	100.0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9,952.7	감) 264.2	119,688.5	4.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53,154.7	증) 2.7	253,157.4	10.2	-
	제2종일반주거지역	378.6	-	378.6	-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19,574.7	증) 265.9	2,019,840.6	81.3	-
	준주거지역	61,791.8	감) 4.4	61,787.4	2.5	-
자연녹지지역		27,809.8	-	27,809.8	1.1	-

■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잠실동 27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9,688.5 (감 264.2)	•도시계획시설(공원) 용도지역 일원화
-	잠실동 27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253,157.4 (증 2.7)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잠실동 27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019,840.6 (증 265.9)	•측량성과 반영 및 주택용지 용도지역 일원화
-	잠실동 27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1,787.4 (감 4.4)	•측량성과 반영 및 복합용지 용도지역 일원화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Ⅰ.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참고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 설정기준 : 변경없음

나. 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지					비고
		획지번호(도면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계획면적(㎡)		
					기정	변경	
변경	E	E1	잠실동 27대	296,846.1	211,397.4	211,398.8	특별계획구역1 (잠실 주공5단지)
			잠실동 27-1대	998.4			
			잠실동 27-2대	1,149.7			
			잠실동 27-6대	8,691.4			
			잠실동 27-7공	6,637.9			
			잠실동 27-8종	1,234.4			
			잠실동 27-9대	2,366.7			
		E2	잠실동 27대	296,846.1	61,791.8	61,787.4	
			잠실동 27-10대	3,929.4			
		E3	잠실동 27대	296,846.1	1,320.0	1,320.0	
		E4	잠실동 27대	296,846.1	1,322.0	1,322.0	
		E5	잠실동 27대	296,846.1	330.0	330.0	
		E6	잠실동 27대	296,846.1	1,000.0	1,000.0	
		E7	잠실동 27대	296,846.1	250.0	250.0	
		E8	잠실동 27-5학	14,414.1	14,414.1	14,414.1	

※ 특별계획구역1 부분만 기재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3. 건축물 배치 · 형태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1	잠실동 27번지 일원	358,077.0	-	358,077.0	잠실주공5

※ 특별계획구역1 부분만 기재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유형 Ⅰ : 정비계획 수립 완료형

■ 특별계획구역 1 (잠실주공5 APT)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위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좌동	-
면적			•358,077.0㎡	좌동	-
용도지역·지구			•제1종일반·제2종일반·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좌동	-
공공시설 등 계획			•서울특별시 서울시고시 제2024-432호(2024.9.5.)에 따라 결정된 공공시설계획 준용 - 공동주택용지 : 도로, 공원, 학교, 공공공지, 공공청사, 한강보행교 설치 (64,757.3㎡) - 복합용지 : 도로, 공원 설치(18,025.0㎡) •한가람로 연결(주공5단지~장미아파트) 지하차도 설치 및 비용 분담 ※ 향후 한가람로 미개설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범위, 방식,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계획과와 협의 필요	•주택용지 : 도로, 공원, 학교, 공공공지, 공공청사, 한강보행교 설치 (59,919.9㎡) •복합용지 : 도로, 공원 설치(22,865.4㎡) •한가람로 연결(주공5단지~장미아파트) 지하차도 설치 및 비용 분담 ※ 향후 한가람로 미개설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범위, 방식,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계획과와 협의 필요	지침도에 따름
획지계획	획지 E1		211,397.4㎡	211,398.8㎡	-
	획지 E2		61,791.8㎡	61,787.4㎡	-
	획지 E3		1,320.0㎡	좌동	-
	획지 E4		1,322.0㎡	좌동	-
	획지 E5		330.0㎡	좌동	-
	획지 E6		1,000.0㎡	좌동	-
	획지 E7		250.0㎡	좌동	-
	획지 E8		14,414.1㎡	좌동	-
허용용도	E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E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업무·문화 및 집회시설	좌동	-
	E3,E4		•종교·근린생활시설	좌동	-
	E5		•우체국·근린생활시설	좌동	-
	E6		•주민센터	좌동	-
	E7		•파출소	좌동	-
	E8		•초등학교	좌동	-
밀도계획	건폐율	E1,E3,E4,E5,E6,E7	•50% 이하	좌동	-
		E2,E8	•60% 이하	좌동	-
	용적률	E1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허용용적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상한용적률 : 300% 이하	좌동	-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E2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허용용적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상한용적률 : 400% 이하	좌동	-
		E3,E4, E5,E7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 2배이하	좌동	-
		E6	•250% 이하	좌동	-
		E8	•200% 이하	좌동	-
밀도계획	높이	E1	•주택용지 : 195m이하(49층)	좌동	-
		E2	•복합용지 : 280m이하(70층)	좌동	-
		E3,E4,E5, E6,E7	•기준높이 32m 이하 •최고높이 40m 이하	좌동	-
건축선	건축한계선		•간선변(송파대로,올림픽로), 내부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기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송파대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올림픽로변, 내부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기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공공보행통로		•복합용지 가각부 ~ 한강변(주택용지), 잠실역 ~ 북서측 가각부(복합용지) - 대지내 공공보행통로 10m	•주택용지 : 송파대로변 - 대지내 공공보행통로 11m •복합용지 : 송파대로변 - 대지내 공공보행통로 6m	
	공개공지		•복합용지(잠실역 사거리 인근) 1개소 위치지정	좌동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좌동	
기타사항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전 정비계획이 결정고시 되거나,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된 구역은 해당 고시 된 사항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세부개발계획 변경 시 본 지침을 따름 -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제2024-432호(2024.9.5.))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이 수립된 단지가 경미한 변경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속통합기획 추진시 신속통합기획(자문)을 우선하여 적용 가능함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이 수립된 단지가 경미한 변경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속통합기획 추진시 신속통합기획(자문)을 우선하여 적용 가능함	-

■ 특별계획구역 3(미성·크로바 APT), 4(진주 APT) : 변경없음

2) 유형 Ⅱ : 재건축 추진형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제9호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지의 분할 · 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 대지안의 공지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4. 대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의 성격, 설치계획(위치변경 및 신규설치에 한함)의 변경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법령이나 지침의 제 ·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지침의 변경 또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Ⅲ.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수립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1	잠실동 27번지 일원	358,077.0	-	358,077.0	잠실주공5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Ⅰ.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참고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 Ⅰ.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참고

4.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1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위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좌동	-
면적		•358,077.0㎡	좌동	-
용도지역 · 지구		•제1종일반 · 제2종일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좌동	-
공공시설 등 계획		•주택용지 : 도로, 공원, 학교, 공공공지, 공공청사, 한강보행교 설치 (59,919.9㎡) •복합용지 : 도로, 공원 설치(22,865.4㎡) •한가람로 연결(주공5단지~장미아파트) 지하차도 설치 및 비용 분담 ※ 향후 한가람로 미개설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범위, 방식,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계획과와 협의 필요	좌동	지침도에 따름
획지계획	획지 E1	211,398.8㎡	좌동	-
	획지 E2	61,787.4㎡	좌동	-
	획지 E3	1,320.0㎡	좌동	-
	획지 E4	1,322.0㎡	좌동	-
	획지 E5	330.0㎡	좌동	-
	획지 E6	1,000.0㎡	좌동	-
	획지 E7	250.0㎡	좌동	-
	획지 E8	14,414.1㎡	좌동	-
허용용도	E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E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 · 업무 · 문화 및 집회시설	좌동	-
	E3,E4	•종교 · 근린생활시설	좌동	-
	E5	•우체국 · 근린생활시설	좌동	-
	E6	•주민센터	좌동	-
	E7	•파출소	좌동	-

구분			특별계획구역1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E8		•초등학교	좌동	-
밀도계획	건폐율	E1,E3,E4,E5,E6,E7	•50% 이하	좌동	-
		E2,E8	•60% 이하	좌동	-
밀도계획	용적률	E1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 (2022.11)」에 따라 허용용적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상한용적률 : 300% 이하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허용용적률 2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의무) •상한용적률 : 262.85%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 300% 이하	-
		E2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 (2022.11)」에 따라 허용용적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상한용적률 : 400% 이하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허용용적률 2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의무) •상한용적률 : 323.28%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 400% 이하	-
		E3,E4,E5,E7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 2배이하	좌동	-
		E6	•250% 이하	좌동	-
		E8	•200% 이하	좌동	-
밀도계획	높이	E1	•주택용지 : 195m이하(49층)	좌동	-
		E2	•복합용지 : 280m이하(70층)	좌동	-
		E3,E4,E5,E6,E7	•기준높이 32m 이하 •최고높이 40m 이하	좌동	-
건축선	건축한계선		•송파대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올림픽로변, 내부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기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좌동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공공보행통로		•주택용지 : 송파대로변 - 대지내 공공보행통로 11m •복합용지 : 송파대로변 - 대지내 공공보행통로 6m	좌동	
	공개공지		•복합용지(잠실역 사거리 인근) 1개소 위치지정	좌동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유지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구분지상권 구간 설정)	
기타사항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이 수립된 단지가 경미한 변경사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속통합기획 추진시 신속통합기획(자문)을 우선하여 적용 가능함	좌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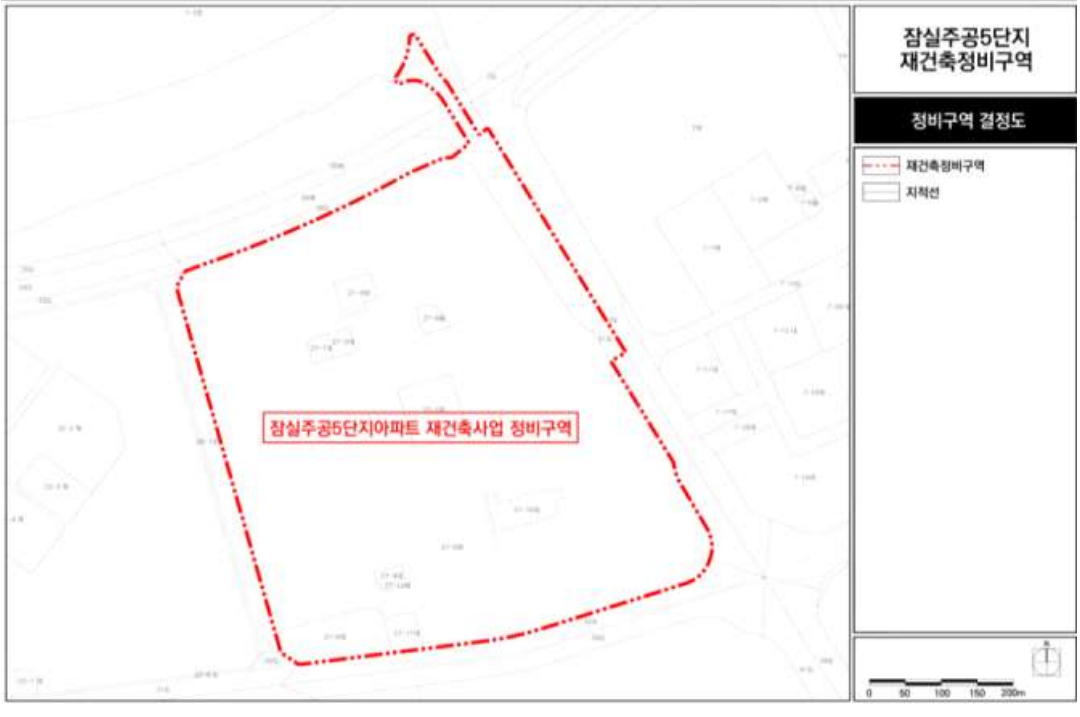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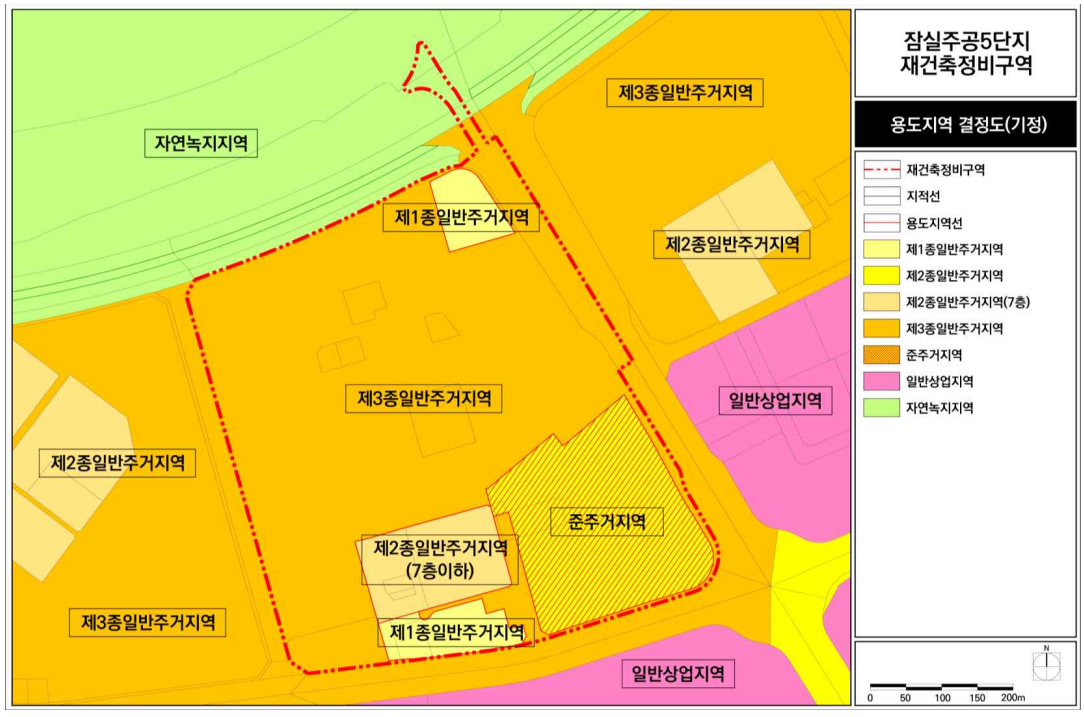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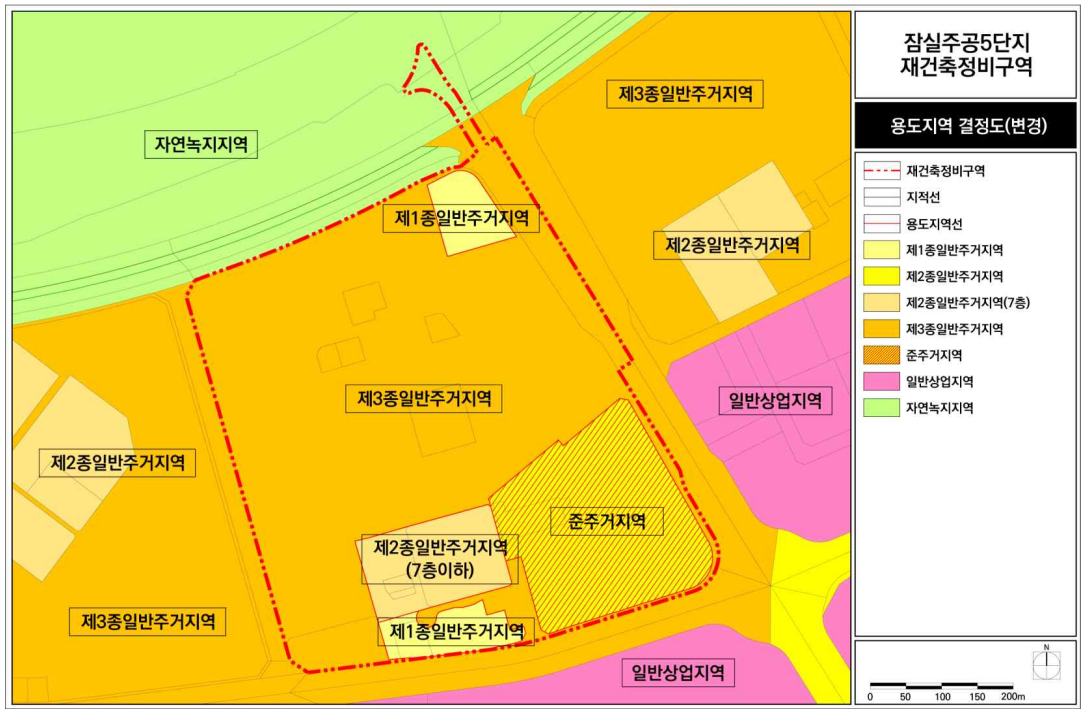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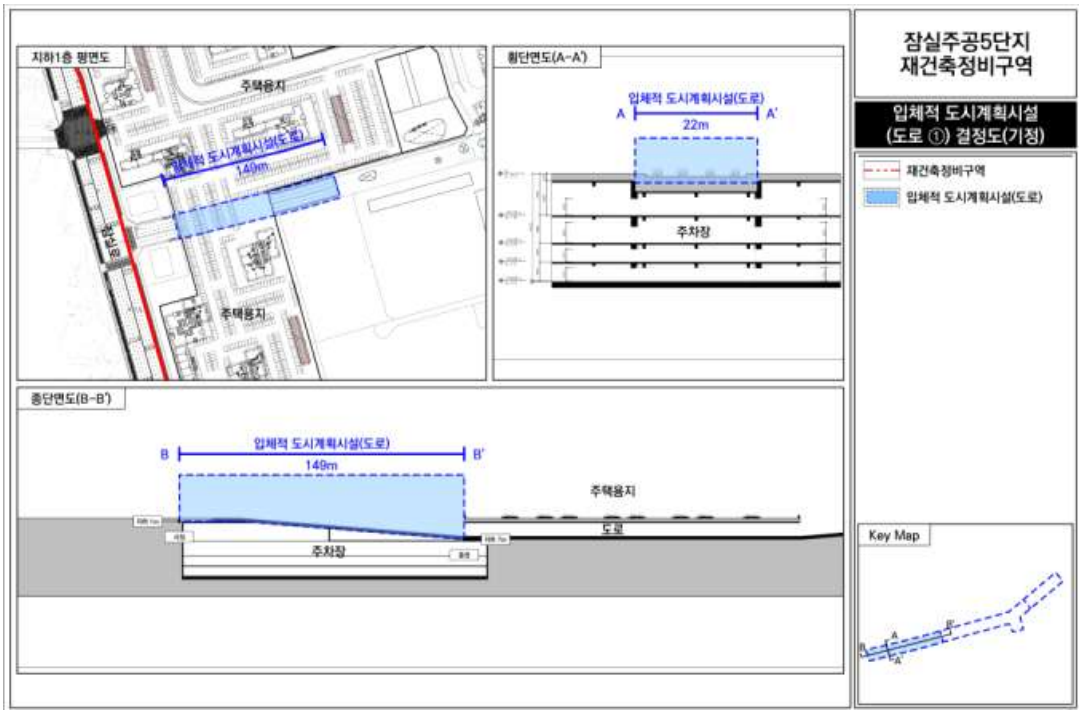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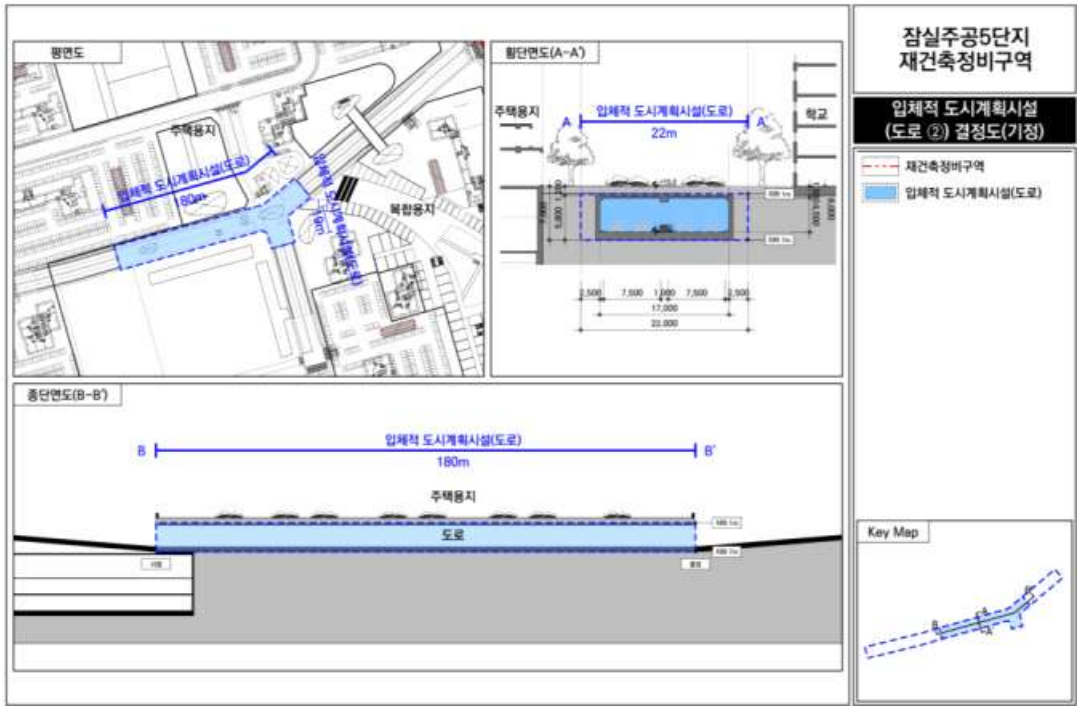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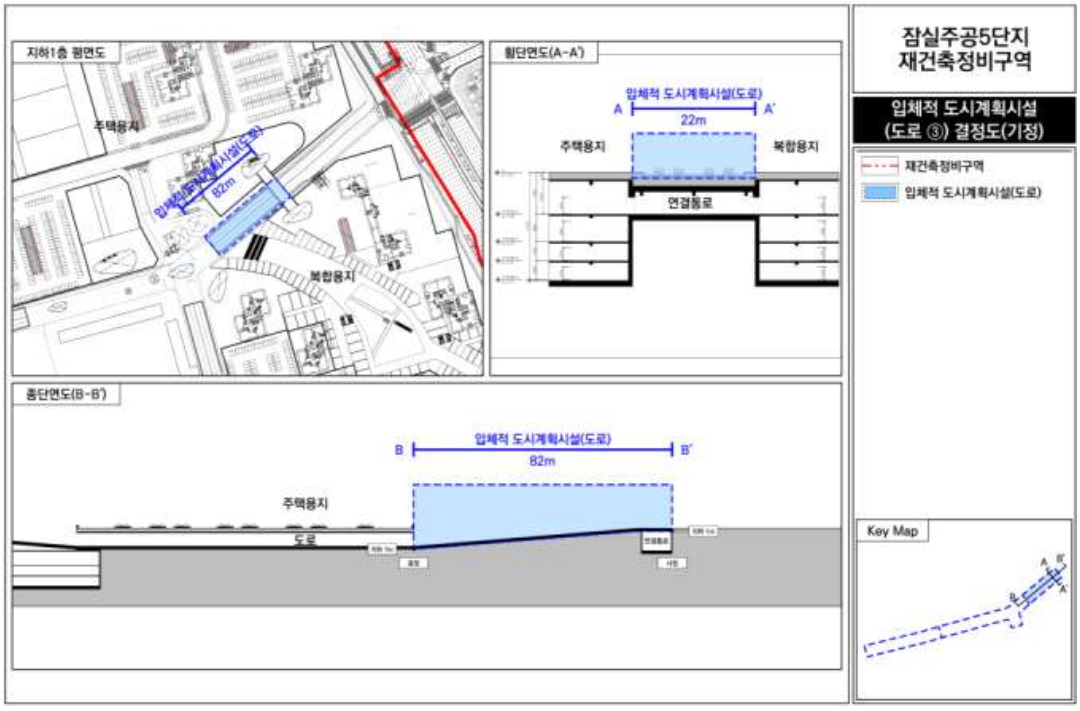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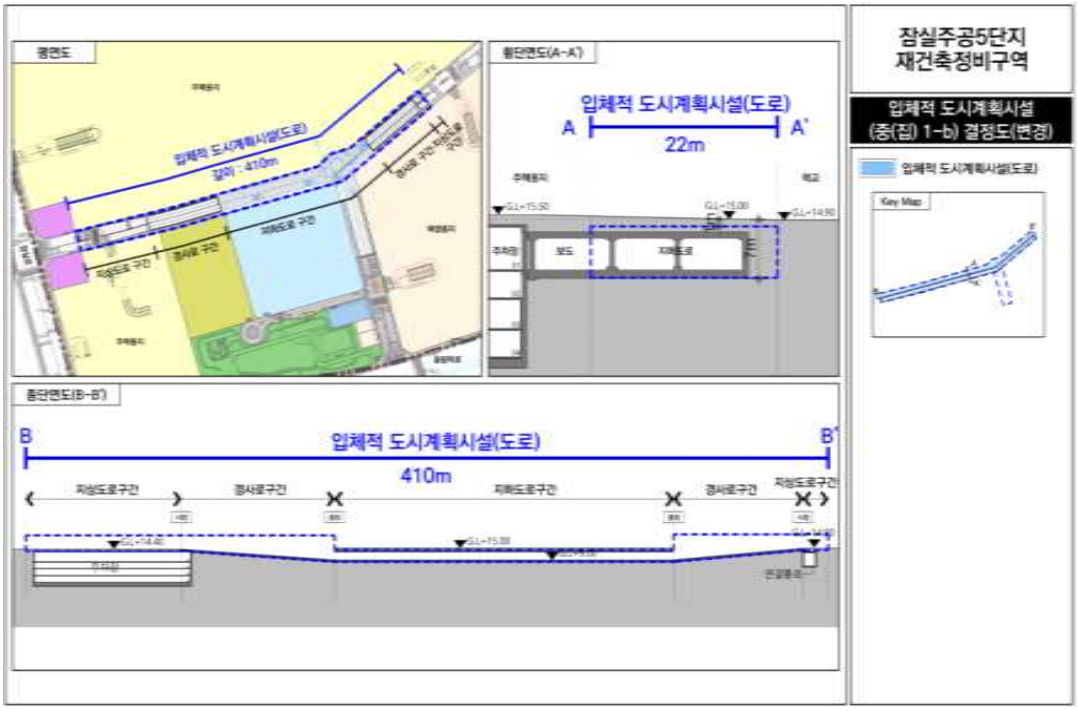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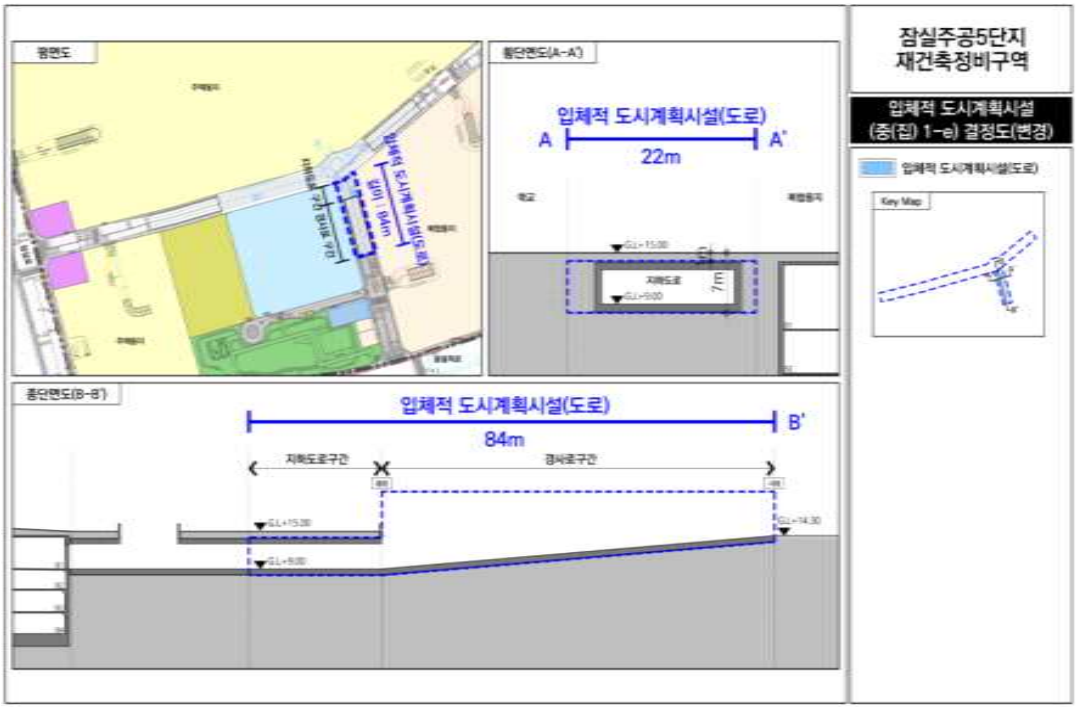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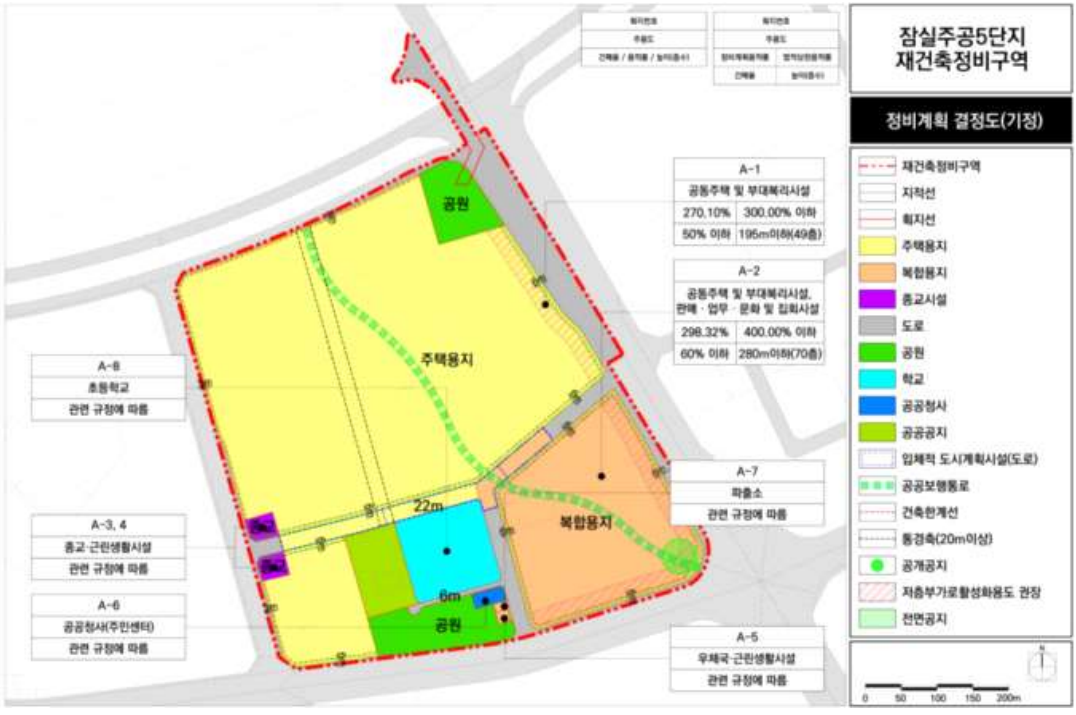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구역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도로 ③) 결정도(기정)
재건축정비구역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1층 평면도
주택용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82m
복합용지
횡단면도(A-A')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A
A'
22m
주택용지
복합용지
연결통로
종단면도(B-B')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B
B'
82m
주택용지
도로
Key Map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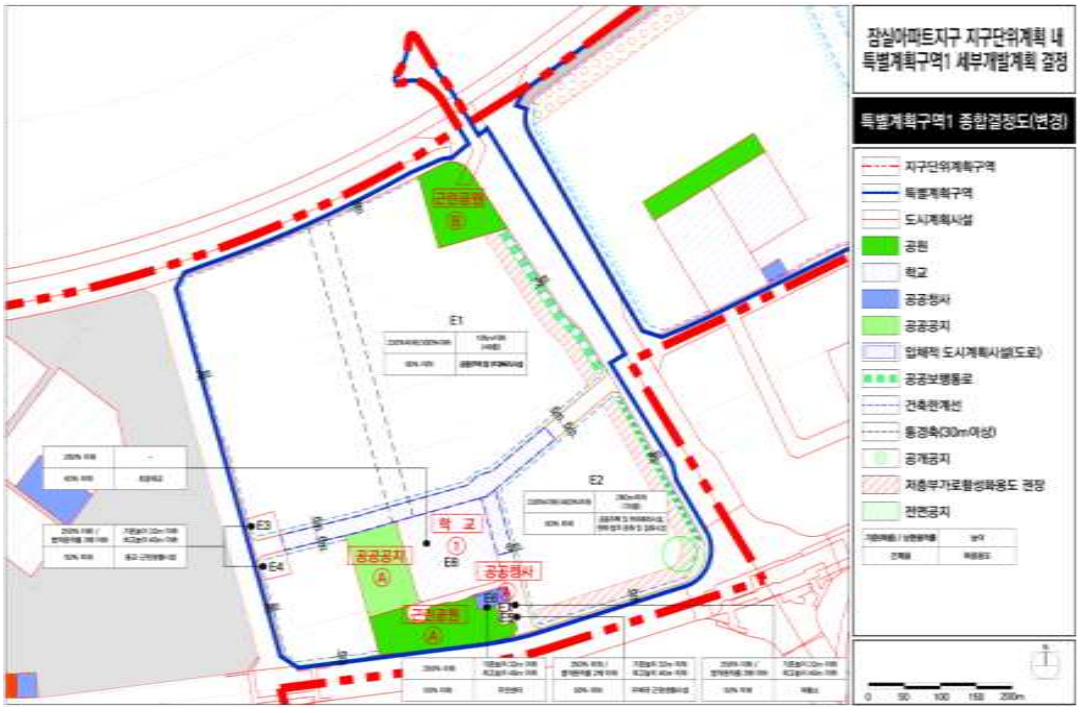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1 종합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03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54호('19.10.31.)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고시되고 제2021-136호(' 21.3.18.), 제2023-227호('23.6.8.), 제2024-449호(' 24.9.19.), 제2025-326호('25.6.19.), 제2025-452호(' 25.8.14.)로 변경 지정 고시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대해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지정 내용을 (경미한)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칭 :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유형: 광역복합환승센터)
   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1번지 8호 일대
   다. 사업면적 : 52,974㎡
   라. 시설면적 (변경)
      - 당초 : 214,532㎡(본선포함 238,772㎡)
      - 변경 : 219,974㎡(본선포함 238,772㎡)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변경 없음)
   가. 교통수단간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 구축
   나. 교통 결절점으로서 지역성장과 발전의 거점 조성
   다.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 복합개발로 교통이용자 편의 향상
   라. 삼성역 일대에 계획된 다양한 철도노선 통합개발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가. 시행자 명칭 : 서울특별시
   나. 대표자 성명 : 오세훈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 : 착공일로부터 86개월
   나. 개발방법 : 공공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복합환승센터용지	계	56,207	100	
	복합환승센터	56,207	100	

나. 기반시설계획

시설명	위치	설치유형	설치내역
도로 (진입램프)	사업지 내	신규	복합환승센터내(주차장), 진입램프 322m
상수도	사업지 내	기존시설 활용	삼성동160번지 앞 인도방향 근처 공급
하수도	사업지 내	기존시설 활용	기존관로 이설
전 기	사업지 내	신규	한국전력에서 복합환승센터로 공급 복합환승센터 변전소에서 각 시설별 분리공급
통 신	사업지 내	신규	기간망 사업자가 복합환승센터에 회선공급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없음)

주요 유치 업종			배치계획
업종 구분	세부 용도		
환승시설	보행이동시설	보행통로, 에스컬레이터 등	지하1 ~ 5층
	환승편의시설	매표소, 대합실 등	지하1,2,3층
	연계교통시설	승강장, 버스환승정류장	지하1층, 지하2층, 지하4층, 지하5층
	정보안내시설	안내표지판, 키오스크 등	지하1 ~ 5층
환승지원 시설	근린생활시설	F&B 등	지하1 ~ 지하2층
	문화시설	다목적홀 등	
	판매시설	상점 등	

7.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8.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9.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과(02-2133-8245), 강남구청 공간개발과(02-3423-688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11.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변경 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권리자 등 현황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04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7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3호(2005.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74호(2007.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4호(2008.10.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50호(2009.1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8호(2009.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5호(2009.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0호(2010.1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호(2011.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2호(2011.6.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4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3호(2012.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1호(2012.5.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4호(2012.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0호(2012.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6호(2013.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5호(2014.1.1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5호(2014.4.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9호(2014.5.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31호(2014.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5호(2015.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6호(2015.10.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8호(2015.12.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3호(2016.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5호(2016.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호(2017.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1호(2017.6.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62호(2019.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37호(2019.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3호(2019.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78호(2020.2.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3호(202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4호(2021.5.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84호(2024.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7호(2024.12.27.)으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주거 지형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일대	1,079,489.19	-	1,079,489.19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북가좌동·남가좌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79,489.19	-	1,079,489.19	100.00	
주택 건설용지	소 계	772,558.39	감)76.0	772,482.39	71.57	
	단독주택	12,601.0	-	12,601.0	1.17	
	공동주택	691,347.89	-	691,347.89	64.04	
	근린생활	68,609.5	감)76.0	68,533.5	6.36	
상업 업무용지	소 계	95,029.6	-	95,029.6	8.80	
	상업업무복합	95,029.6	-	95,029.6	8.80	
공공 시설용지	소 계	211,901.2	증)76.0	211,977.2	19.63	
	도 로	102,428.3	-	102,428.3	9.49	
	공공청사	3,009.1	-	3,009.1	0.28	
	공원녹지	64,128.1	증)76.0	64,204.1	5.94	
	학 교	25,811.6	-	25,811.6	2.39	
	도 서 관	3,486.8	-	3,486.8	0.32	
	사회복지	2,616.0	-	2,616.0	0.24	
	청소년수련	600.2	-	600.2	0.06	
	공공공지	8,619.1	-	8,619.1	0.80	
	주차장	1,202.0	-	1,202.0	0.11	
	폐기물처리시설	(5,108.5)	-	(5,108.5)	(0.47)	

※ ( ) 부분은 근린공원지하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면적임
※ 변경사유 : 가재울7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

2) 인구 · 주택수용계획 : (기정)47,440인/19,909세대 → (변경)47,270인/19,838세대

구 분		면적(㎡)	인구수(인)	가구수	분양	임대
총 계	기정	1,079,489.19	47,440	19,909	16,585	3,324
	변경	1,079,489.19	47,270	19,838	16,524	3,314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19,782.09	892	362	272	90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26,116.50	1,138	473	373	10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242,710.00	7,871	3,293	2,664	629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284,307.50	10,277	4,300	3,550	750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53,028.30	2,383	997	827	170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48,287.90	2,419	1,047	869	178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79,240.20	3,614	1,506	1,297	209
	변경	79,240.20	3,444	1,435	1,236	199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13,180.00	654	283	237	46
가재울9 재정비촉진구역		3,007.00	519	239	166	73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55,644.00	2,941	1,245	1,121	124
존 치		254,185.70	14,732	6,164	5,209	955

※ 변경사유 : 가재울7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

3) 교육시설, 공공문화 ·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4,128.10	증)76.0	64,204.10	
생활권 공원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 계	52,359.80	증)76.0	52,435.80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105-8 일원	15,465.70	-	15,465.7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75-5 일원	11,315.40	-	11,315.40	존치지역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168-32 일원	6,652.80	-	6,652.8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379-3 일원	1,175.50	-	1,175.5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23 일원	9,508.00	-	9,508.00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75-126 일원	5,355.00	증)76.0	5,431.0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274-26 일원	1,766.30	-	1,766.30	
	공원	소공원	남가좌동 152-19 일원	1,006.10	-	1,006.10	
	공원	소공원	남가좌동 152-24 일원	115.00	-	115.00	
녹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 계	11,768.30	-	11,768.30	
	녹지	완충녹지	북가좌동 149-60 일원	4,480.60	-	4,480.60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24-215 일원	1,292.50	-	1,292.50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15-34 일원	411.60	-	411.60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76-145 일원	1,142.00	-	1,142.00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362-3 일원	1,318.30	-	1,318.30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100-45 일원	1,221.90	-	1,221.9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37-250 일원	681.40	-	681.4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41-49 일원	308.00	-	308.0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380-1 일원	912.00	-	912.00	

※ 변경사유 : 가재울7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

5)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변경 없음)

6) 경관계획 (변경 없음)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

구 역 명		주 용 도	용적률(%)		건폐율 (%)	높이계획	
			기준	상한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m)
기정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6층이하 / 20층이하	62이하
기정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6층이하 / 20층이하	62이하
기정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6층이하 / 35층이하	105.8이하
기정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7층이하 / 33층이하	102이하
기정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	50	18층이하 / 25층이하	75이하

구 역 명		주 용 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기준	상한		평균층수/최고층수	최고높이(m)
기정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	50	18층이하 / 25층이하	75이하
기정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265.6	50	- / 40층이하	130이하
변경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266.0	50	- / 40층이하	130이하
기정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 오피스텔 / 판매시설	300 (허용 340)	400	60	- / 27층이하	85이하
기정	가재울9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 오피스텔 / 판매시설	500	600 (법적상한 800)	60	- / 34층이하	120이하

※ 변경사유 : 가재울7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1) 기반시설 확보율 (변경)

구역명	면적(㎡)	기반시설면적(㎡)					비고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	
가재울1재정비촉진구역	19,782.09	5,043.90	-	-	-	5,043.90 (25.50)	
가재울2재정비촉진구역	26,116.50	5,373.20	-	-	-	5,373.20 (20.57)	
가재울3재정비촉진구역	242,710.00	74,800.30	23,172.10	14,469.40	-	37,158.80 (15.31)	
가재울4재정비촉진구역	284,307.50	73,468.90	-	-	-	73,468.90 (25.81)	
가재울5재정비촉진구역	52,867.70	10,902.50	2,336.60	1,562.90	599.00	6,404.00 (12.11)	

구역명		면적(㎡)	기반시설면적(㎡)					비고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	
가재울6재정비촉진구역		48,084.40	9,994.90	1,062.00	870.00	-	8,062.90 (16.77)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기정	79,240.20	20,071.20	2,923.20	5,757.70	-	주1)12,050.20 (15.20)	
	변경	79,240.20	20,147.20	2,923.20	5,757.70	-	주1)12,126.20 (15.30)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13,180.00	3,356.00	1,852.00	-	-	1,504.00 (11.41)	
가재울9재정비촉진구역		3,007.00	4.60 (건축시설:349.30)	-	-	-	353.90 (11.76)	
총 계	기정	769,659.49	202,938.10 (건축시설:349.30)	31,345.90	22,660.00	599.00	150,540.40 (19.56)	
	변경	769,659.49	203,014.10 (건축시설:349.30)	31,345.90	22,660.00	599.00	150,616.40 (19.57)	

※ 상기 내역 중 “( )” 건축시설면적은 기부채납 체육시설 건축물 바닥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면적과 대지지분을 합한 면적임
주1) 순부담면적에는 기부채납 임대주택(전용84형 9세대) 토지환산면적(대지지분 389.3㎡, 환산부지 270.6㎡) 659.9㎡포함
※ 건축물기부채납 면적은 서울시고시 제2024-647호(2024.12.27.)에 따른 기부채납 면적을 유지하였으며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재조정

(2)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설명			개소	규모	위치	비고
도로	대로3류		1	폭 : 25m , 연장 : 444m	성산동2-20~홍은동3-17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구내
	중로1류		3	폭 : 20~27m , 연장 : 5,270m	모래내~응암로	
	중로2류		6	폭 : 15~21m , 연장 : 2,290m	수색로~북가좌동115-103	
	중로3류		5	폭 : 12~19m , 연장 : 986m	중로2류5~수색로	
	소로1류		3	폭 : 10~13m , 연장 : 330m	중로1류-1~남가좌동377-5	
	소로2류		12	폭 : 8~11m , 연장 : 1,873m	남가좌동152-58~남가좌동152-59	
	소로3류		12	폭 : 4~8m , 연장 : 824m	중로1류-3~소로2류-7	
주차장	주차장		1	1,202.2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원 · 녹지	근린공원	기정	2	20,820.7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변경	2	20,896.70㎡		
	어린이공원		5	30,418.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소공원		2	1,121.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경관녹지		5	4,441.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완충녹지		4	7,326.7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	초등학교		1	11,066.9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중학교		1	7,256.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고등학교		1	7,488.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시설	공공청사복합화 (동사무소)		2	1,939.5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1	1,069.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서관		1	3,486.8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사회복지시설		3	2,616.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청소년수련시설		1	600.2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체육시설		1	- (건축시설 : 349.3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가재울9구역 건축물 내 공공시설)	
	공공공지		4	8,949.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 상기 내역 중 "( )" 건축시설면적은 기부채납 체육시설 건축물 바닥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면적과 대지지분을 합한 면적임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 (Ⅲ-15 임대주택 건설 등)에 명시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 (Ⅲ-16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에 명시

14) 기타계획 (변경 없음)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 (Ⅲ-17 기타계획)에 명시

15)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 없음)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 (Ⅲ-18 광고물관리계획)에 명시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 (Ⅲ-19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가.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외 기타 촉진계획은 변경 없음

나.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9,240.2	-	79,24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4호 (2012.6.7.) 최초결정

(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9,240.2	-	79,240.2	100.0	-
정비기반 시설	소 계	20,071.2	증)76.0	20,147.2	25.4	-
	도 로	7,211.2	-	7,211.2	9.1	-
	공 원	5,355.0	증)76.0	5,431.0	6.8	-
	공공공지	7,505.0	-	7,505.0	9.5	
택지 (획지)	소 계	59,169.0	감)76.0	59,093.0	74.6	-
	택지 1	31,419.0	-	31,419.0	39.7	공동주택
	택지 2	25,748.0	-	25,748.0	32.5	공동주택
	택지 3	1,273.0	-	1,273.0	1.6	-
	택지 4	619.0	-	619.0	0.8	근린생활시설
	택지 5	34.0	-	34.0	0.0	경계부 대토부지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택지 6	76.0	감)76.0	-	-	문화재

나)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9,240.2	-	79,240.2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643.7	-	7,643.7	9.6	
제3종일반주거지역	71,596.5	-	71,596.5	90.4	

다) 용도지구계획 (해당 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506 (263)	북가좌동 108-1	북가좌동 82-1	일반도로	-	서고2005-243 (2005.8.11)	
기정	소로	2	6	6~10	국지도로	191	북가좌동 75-89	북가좌동 361-9	일반도로	-	서고3 (1969.1.18)	
기정	소로	2		8	국지도로	314	북가좌동 305-16	북가좌동 82-5	일반도로	-	서고2012-144 (2012.6.7.)	
기정	소로	2	57	8	국지도로	340 (56)	북가좌동 84-11	북가좌동 74-119	일반도로	-	서고3 (1969.1.18)	
기정	소로	3	242	6	국지도로	80	북가좌동 100-336	북가좌동 303-4	일반도로	-	서고3 (1969.1.18)	

※ ( )안의 사항은 가재울7구역 내 사항이며 임시번호임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75-126 일대	5,355	증)76.0	5,431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공원	• 변경 - 면적 : 증)76㎡	· 가재울 7구역 존치되는 시유형문화재 41호 (화산군 이연 신도비)를 근린공원으로 포함

다)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④	공공공지	공공공지	북가좌동 80-36일대	7,505	-	7,505	

※ 공공공지는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용도는 추후 공공에서 결정)
※ 공공공지의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은 결정 도서에 합의서 첨부
※ 추후 학교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통과 시 공공공지에서 학교용지로 변경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기정)

구분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위치	법적근거	면적(㎡)	비고
기정	주민공동시설	의무시설	경로당	가재울7 재정비 촉진 구역내	• 1,500~2,000세대 미만 : 725㎡ 이상	750.0	옥내
			어린이집		• 1,500~2,000세대 미만 : 725㎡ 이상	750.0	옥내
			작은도서관		• 1,500~2,000세대 미만 : 298㎡ 이상	320.0	옥내
			다함께돌봄센터		• 66.0㎡이상	270.0	옥내
			어린이놀이터		-	1,200.0	옥외
			주민운동시설		-	1,050.0	옥내(800)+옥외(250)
		추가시설	다목적실 (회의/취미)		-	400.0	옥내
			북카페		-	100.0	옥내
			휴게소		-	400.0	옥외
			실내놀이터		-	400.0	
		총 계				5,640	
	기타부대복리	근린생활시설			-	1,036.0	옥내
		관리사무소 총 계			• 10㎡ + (세대수 - 50) × 0.05㎡ = 10㎡ + (1,506 - 50) × 0.05㎡ = 82.8㎡ 이상	380.0	옥내

※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 1,000세대 이상: 500㎡ + (세대수 * 2.0㎡) * 1.25
※ 의무시설(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분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위치	법적근거	면적(㎡)	비 고
변경	주민공동시설	의무시설	경로당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내	660㎡ 이상	839.00	옥내
			어린이집		660㎡ 이상	815.24	옥내
			작은도서관		316㎡ 이상	368.10	옥내
			다함께돌봄센터		66㎡ 이상	358.83	옥내
			어린이놀이터		1,835㎡ 이상	1,905.88	옥외
			주민운동시설		-	3,456.11	옥내(2,441.04)+옥외(1,015.07)
		추가시설	맘스스테이션		-	50.00	옥내
			북카페		-	251.88	옥내
			실내놀이터		-	283.64	옥내
			입주민회의실		-	101.63	옥내
			게스트하우스		-	559.99	옥내
			카페테리아		-	202.56	옥내
			스카이라운지		-	545.00	옥내
			공용공간(복도)		-	400.00	옥내
		총 계				10,137.85	
	기타부대복리	근린생활시설			-	1,279.56	옥내
		관리사무소 총 계			• 10㎡ + (세대수 - 50) × 0.05㎡ = 10㎡ + (1435 - 50) × 0.05㎡ = 86.75㎡ 이상	110.00	옥내

※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 1,000세대 이상: 500㎡ + (세대수 * 2.0㎡) * 1.25
※ 의무시설(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없음)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79,240.2	-	-	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394	-	-	394	-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건축계획				
	명칭	면적(㎡)	획지구분	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상한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연면적 (㎡)
기정	가재울7 재정비 촉진구역	79,240.2	소계	57,167	북가좌동 80-154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65.6이하	130m이하 (40층 이하)	-
			획지1	31,419						
			획지2	25,748						
			획지3	1,273	북가좌동 73-32 일대	불허용도 외 시설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적용			
			획지4	619	북가좌동 80-69 일대	불허용도 외 시설	〃			
			획지5	34	북가좌동 74-3	대토부지	〃			
			획지6	76	북가좌동 75-122	문화재	〃 (존치)			
			-	7,505	북가좌동 80-36 일대	공공공지	〃			
변경	가재울7 재정비 촉진구역	79,240.2	소계	57,167	북가좌동 80-154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66.0이하	130m이하 (40층 이하)	-
			획지1	31,419						
			획지2	25,748						
			획지3	1,273	북가좌동 73-32 일대	불허용도 외 시설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적용			
			획지4	619	북가좌동 80-69 일대	불허용도 외 시설	〃			
			획지5	34	북가좌동 74-3	대토부지	〃			
			-	7,505	북가좌동 80-36 일대	공공공지	〃			

<표계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획지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colspan="5">건축계획</th></tr>
<tr><th>명칭</th><th>면적(㎡)</th><th>획지구분</th><th>면적(㎡)</th><th>주된 용도</th><th>건폐율 (%)</th><th>상한용적률 (%)</th><th>높이(m) (최고층수)</th><th>연면적 (㎡)</th></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8">기정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80% 이상 : 91.9% 적용
<table>
<tr><th>구분(전용면적)</th><th>총 세대수</th><th>분양세대</th><th>임대세대</th></tr>
<tr><td>합계</td><td>1,506</td><td>1,297</td><td>209</td></tr>
<tr><td>40㎡미만</td><td>123</td><td>60</td><td>63</td></tr>
<tr><td>40㎡~50㎡미만</td><td>70</td><td>43</td><td>27</td></tr>
<tr><td>50㎡~60㎡미만</td><td>399</td><td>324</td><td>75</td></tr>
<tr><td>60㎡~85㎡미만</td><td>792</td><td>748</td><td>44(기부채납 9포함)</td></tr>
<tr><td>85㎡이상</td><td>122</td><td>122</td><td>-</td></tr>
</table>
-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10.02% 확보

변경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80% 이상 : 91.4% 적용
<table>
<tr><th>구분(전용면적)</th><th>총 세대수</th><th>분양세대</th><th>임대세대</th></tr>
<tr><td>합계</td><td>1,435</td><td>1,236</td><td>199</td></tr>
<tr><td>40㎡미만</td><td>132</td><td>68</td><td>64</td></tr>
<tr><td>40㎡~50㎡미만</td><td>19</td><td>9</td><td>10</td></tr>
<tr><td>50㎡~60㎡미만</td><td>378</td><td>301</td><td>77</td></tr>
<tr><td>60㎡~85㎡미만</td><td>762</td><td>714</td><td>48(기부채납9포함)</td></tr>
<tr><td>85㎡이상</td><td>144</td><td>144</td><td>-</td></tr>
</table>
-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10.00% 확보</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8">• 획지1, 획지2 경계부 3m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제외 3m 확보)
• 주1) 보차혼용통로구간은 9m
• 공공공지 동측도로변 3m
• 공공공지 남측 소로 3-242호선변 2m
• 획지3, 획지4 경계부 1m</td></tr>
<tr><td>불허용도</td><td colspan="8">• 획지3, 획지4(근린생활시설)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제17호의 공장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td></tr>
</table>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건축계획				
	명칭	면적(㎡)	획지구분	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상한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연면적 (㎡)
			-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비 고			• 상가건축계획(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사항이므로, 그 효력은 사업시행인가 후 발효됨							

※ 주1) 서울시고시 제2024-674호(2024.12.27.)으로 결정된 사항중 착오된 사항 정정

다)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변경)

(당초)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대지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 외 신설 공공시설 등 면적		
						소계	토지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79,240.2㎡	59,169.0㎡	20,071.2㎡	2,923.2㎡	5,757.7㎡	659.9㎡	389.3㎡	270.6㎡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률 : 15.20% • 순부담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정비기반시설 외 신설 공공시설등 면적 = 20,071.2㎡ - 2,923.2㎡ - 5,757.7㎡ + 659.9㎡ = 12,050.2㎡							
건축물 기부채납	• 기부채납 임대주택 환산부지면적 : 270.6㎡ (환산부지면적 = 표준건축비(원/㎡)×계약면적(㎡) / 부지가액(원/㎡) = 1,142,575원/㎡× 10/11(부가세제외) × 1,725.56㎡ / 6,622,180원/㎡ = 270.6㎡					• 기부채납 임대주택 토지지분면적 : 389.3㎡ (토지지분면적 = 기부채납 임대주택 계약면적 ÷ 전체연면적 × 공동주택 부지면적) = 1,725.56㎡÷ 253,380.54㎡ × 57,167㎡ = 389.3㎡		
	표준건축비	1,142,575원/㎡	▹2023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60㎡초과 평균)					
	계약면적	1,725.56㎡	▹84㎡형(계약면적 191.73㎡) 9세대					
	부지가액	6,622,180원/㎡	▹구역내 토지 평균공시지가(3,311,090원/㎡, 2024년 기준)×2					
기준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변경없음) (당초 기준용적률 + 소형주택 추가확보 완화 적용 = 190% + 20% = 210%)							

구 분	산정내용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α토지×가중치) + (1.0×α건축물)) = 210 × (1 + (1.3×0.2004×1) + (1.0×0.0046)) = 265.67% • 265.6% 이하 적용	▸α토지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α토지 : 0.2004 [= (12,050.2-270.6) / (59,169-389.3)] ▸α건축물 : 공공시설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α건축물 : 0.0046 [= 270.6 / (59,169-389.3)] ▸가중치 : 1 (= 190 / 190)

※ 공공시설등 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름

(금회 변경)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8">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 rowspan="2">구역면적</td><td rowspan="2">대지면적</td><td rowspan="2">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td><td rowspan="2">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td><td rowspan="2">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d colspan="3">정비기반시설 외 신설 공공시설 등 면적</td></tr>
<tr><td>소계</td><td>토지</td><td>건축물 환산부지면적</td></tr>
<tr><td></td><td>79,240.2㎡</td><td>59,093.0㎡</td><td>20,147.2㎡</td><td>2,923.2㎡</td><td>5,757.7㎡</td><td>659.9㎡</td><td>389.3㎡</td><td>270.6㎡</td></tr>
<tr><td>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8">• 순부담률 : 15.20%
• 순부담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정비기반시설 외 신설 공공시설등 면적
= 20,147.2㎡ - 2,923.2㎡ - 5,757.7㎡ + 659.9㎡ = 12,126.2㎡</td></tr>
<tr><td>건축물 기부채납</td><td colspan="5">• 기부채납 임대주택 환산부지면적 : 270.6㎡
(환산부지면적 = 표준건축비(원/㎡)×계약면적(㎡) / 부지가액(원/㎡)
= 1,142,575원/㎡× 10/11(부가세제외) × 1,725.56㎡ / 6,622,180원/㎡
= 270.6㎡
표준건축비 | 1,142,575원/㎡ | ▹2023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60㎡초과 평균)
계약면적 | 1,725.56㎡ | ▹84㎡형(계약면적 191.73㎡) 9세대
부지가액 | 6,622,180원/㎡ | ▹구역내 토지 평균공시지가(3,311,090원/㎡, 2024년 기준)×2</td><td colspan="3">• 기부채납 임대주택 토지지분면적 : 389.3㎡
(토지지분면적 = 기부채납 임대주택 계약면적 ÷ 전체연면적 × 공동주택 부지면적)
= 1,725.56㎡÷ 253,380.54㎡ × 57,167㎡ = 389.3㎡</td></tr>
<tr><td>기준 용적률</td><td colspan="8">• 기준용적률 : 210%(변경없음)
(당초 기준용적률 + 소형주택 추가확보 완화 적용 = 190% + 20% = 210%)</td></tr>
</table>

구 분	산정내용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X (1 + (1.3×α토지×가중치) + (1.0×α건축물)) = 210 X (1 + (1.3×0.2019×1) + (1.0×0.0046)) = 266.08% • 266.0% 이하 적용	‣α토지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α토지 : 0.2019 [= (12,126.2-270.6) / (59,093-389.3)] ‣α건축물 : 공공시설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α건축물 : 0.0046 [= 270.6 / (59,093-389.3)] ‣가중치 : 1 (= 190 / 190)

※ 공공시설등 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름
※ 기부채납 임대주택 면적은 서울시고시 제2024-674호(2024.12.27.)에 따른 기부채납 면적을 유지하였으며,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재조정

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변경없음)

- 추정비례율 산출근거

추정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6.63% (=1,275,655,923 천원 - 804,591,554 천원) ÷ 441,739,121 천원)
- 총수입 추정 : 1,275,655,923 천원
- 총지출 추정 : 804,591,554 천원
- 종전자산 총액 추정 : 441,739,121 천원

개별종전 자산추정액

- 해당 금액은 약식 감정평가 금액임(평가 업체명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종전자산 = 인근지역 내 거래사례, 평가사례 반영하여 공시가격 대비 보정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토지 추정액(천원)	건물 추정액(천원)	국공유지 추정액(천원)	현금청산자 추정액(천원)	종전자산 추정액(천원)
502,470,832	22,209,973	57,110,969	25,830,715	441,739,121

※ 당 사업지의 개별 자산 가액의 수준, 조합원 수, 사업지 규모,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정률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최종 종전자산 추정액은 토지 추정액 및 건물 추정액 합산액에서 국공유지 추정액, 현금 청산액을 제외한 가액임.
※ 종전자산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2개 이상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될 예정임.

추정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 39㎡ 형	478,000 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106.63%)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44㎡ 형	530,000 천원		
전용 59㎡ 형	713,000 천원		
전용 74㎡ 형	859,000 천원		
전용 84㎡ 형	935,000 천원		
전용 114㎡ 형	1,161,000 천원		
근린생활시설	447,700 천원		

※ 추정분담금은 2023.12.11. 서대문구에서 실시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제7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재산정한 사항이며, 추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공사비(천원)				
			-10%	-5%	0%	5%	10%
변동률		평균단가 (천원/3.3㎡)	7,110	7,505	7,900	8,295	8,690
분양가 (일반분양기준) (천원)	10%	34,760	147.58%	140.64%	133.69%	126.75%	119.81%
	5%	33,180	133.99%	127.04%	120.10%	113.16%	106.22%
	0%	31,600	120.52%	113.58%	106.63%	99.69%	92.75%
	-5%	30,020	106.95%	100.01%	93.07%	86.12%	79.18%
	-10%	28,440	93.49%	86.55%	79.61%	72.66%	65.72%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계획

검 토 항 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생태 환경	1.1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O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 개별 비오톱 평가제외지역	• 공원 조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로 도시 생태 기능 강화 도모
	1.2 생태네트워크	녹지 연결성 확보	O	• 시가화지역으로 산림식생 등 미분포	• 대지내 공원(5,355㎡) 및 자연 지반녹지(6,044.56㎡) 계획
	1.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X	• 해당사항 없음	-
	1.4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보전	X	• 주변 보호지역 없음	-
생활 환경	2.1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	O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2.2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O	• 공사시 토양오염 발생 예상	• 토양오염 방지대책 수립
	2.3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O	• 지형 변동 예상	• 저감방안 준수
	3.1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O	• 생태면적률 계획 확인 • 자연지반녹지율 및 인공지반 녹지 확인	• 생태면적률 37.00% (당초 35.11%)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적용
	3.2 수질(지표, 지하)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O	• 공사시 우수, 오수량 산정 • 운영시 우수, 오수량 산정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 • 운영시 공급계획 수립
	4.1 바람	바람길 확보	O	• 기상현황 분석	• 바람기능 공간유형도 변화없음
	4.2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O	• 열환경 취약지역	• 열환경 공간유형도 개선
	4.3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X	• 대기환경 조사	• 주기적인 살수, 방진망 설치 등 저감방안 수립

검 토 항 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4.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O	• 온실가스 현황 조사	• 계획대상지 내 친환경절감설비 설치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4.5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수립	O	• 향후 에너지 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5.1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O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서대문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5.2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O	• 공사시 소음진동 예측	• 가설방음판넬 등 저감방안 수립
	5.3 경관	조망권 확보	O	• 건축물 계획으로 인한 주변경관 변화 발생	• 주변지역과 연계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5.4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여가공간 확보	O	• 휴식·여가공간 현황조사	• 녹지 및 공원 계획
	5.5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O	• 일조현황 분석	• 건축물 높이 규정을 준수하여 일조영향 최소화
	5.6 보행친화공간	공공보행통로 계획수립	O	• 사업대상지 내 보행로 없음	• 보행 및 차량 통행로 개선
사회 경제 환경	6.1 인구	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	O	• 서울시 인구 현황 조사	-
	6.2 주거	산업 고려한 계획수립	O	• 서울시 주거 현황 조사	-

나)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7)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변경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기존 : 674세대 계획 : 1,506세대 증) 832세대	기존 : 674세대 계획 : 1,435세대 증) 761세대	-

(8)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가구	면적(㎡)	획지			
			획지번호	위치	용도	면적(㎡)
기정	1	79,240.2	1	북가좌동 80-15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1,419
			2	북가좌동 75-15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748

구분	가구	면적(㎡)	획지			
			획지번호	위치	용도	면적(㎡)
			3	북가좌동 73-32번지 일대	불허용도 외 시설	1,273
			4	북가좌동 80-69번지 일대	불허용도 외 시설	619
			5	북가좌동 74-3번지 일대	대토부지	34
			6	북가좌동 75-122번지 일대	문화재	76
			-	북가좌동 80-36번지 일대	공공공지	7,505
변경	1	79,240.2	1	북가좌동 80-15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1,419
			2	북가좌동 75-15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748
			3	북가좌동 73-32번지 일대	불허용도 외 시설	1,273
			4	북가좌동 80-69번지 일대	불허용도 외 시설	619
			5	북가좌동 74-3번지 일대	대토부지	34
			-	북가좌동 80-36번지 일대	공공공지	7,505

(9)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게 분산되도록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임대주택 건설 계획

–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table>
<tr><th colspan="2">건 립 위 치</th><th>부지면적(㎡)</th><th>동수</th><th>세 대 수</th><th>세대규모(전용)</th><th>비 고(전체연면적)</th></tr>
<tr><td rowspan="10">가재울 7구역내</td><td rowspan="5">기정</td><td rowspan="5">57,167</td><td rowspan="5">23</td><td>63세대</td><td>40㎡이하(39.96㎡)</td><td rowspan="5">25,290.37㎡</td></tr>
<tr><td>27세대</td><td>40~50㎡이하(44.78㎡)</td></tr>
<tr><td>75세대</td><td>50~60㎡이하(59.98㎡)</td></tr>
<tr><td>35세대</td><td>60~85㎡미만(84.99㎡)</td></tr>
<tr><td colspan="2">200세대(기부채납 9세대 미포함)</td></tr>
<tr><td rowspan="5">변경</td><td rowspan="5">57,167</td><td rowspan="5">13</td><td>64세대</td><td>40㎡이하(39.98㎡)</td><td rowspan="5">27,026.5412㎡</td></tr>
<tr><td>10세대</td><td>40~50㎡이하(44.99㎡)</td></tr>
<tr><td>77세대</td><td>50~60㎡이하(59.98㎡)</td></tr>
<tr><td>39세대</td><td>60~85㎡미만(84.99㎡)</td></tr>
<tr><td colspan="2">190세대(기부채납 9세대 미포함)</td></tr>
<tr><td colspan="2">계획기준</td><td colspan="5">①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확보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이상
②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전용 40㎡ 이하 건설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93호, 2022.12.12.) 적용</td></tr>
<tr><td rowspan="2">산출 근거</td><td>기정</td><td colspan="5">①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확보 : 전체연면적의 1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15%이상
• 주택 전체 연면적 : 252,344.54㎡(상한용적률 265.5%)
•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건설계획 : 200세대
– 252,344.54㎡ × 10%이상 = 25,234.46㎡이상
– 25,234.46㎡(기준) ≤ 25,290.37㎡(계획 200세대, 10.02%)
② 전용40㎡이하 임대주택 확보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적용
• 전용40㎡이하 임대주택 건설계획 : 63세대(31.5%)
– 200세대 × 30%이상 = 60세대 이상</td></tr>
<tr><td>변경</td><td colspan="5">①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확보 : 전체연면적의 1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15%이상
• 주택 전체 연면적 : 270,146.9045㎡(상한용적률 265.5%)
•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건설계획 : 190세대
– 270,146.9045㎡ × 10%이상 = 27,014.70㎡이상
– 27,014.70㎡(기준) ≤ 27,026.5412㎡(계획 190세대, 10.00%)
② 전용40㎡이하 임대주택 확보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적용
• 전용40㎡이하 임대주택 건설계획 : 64세대(33.7%)
– 190세대 × 30%이상 = 57세대 이상</td></tr>
</table>

구분	전용면적(㎡)	계약면적(㎡)	세대수	전체연면적(㎡)	비고
재개발 의무임대	39.96	90.53	63	5,703.34	31.5%
	44.78	100.82	27	2,722.18	
	59.98	135.39	75	10,154.35	
	84.99	191.73	35	6,710.50	
	계		200	25,290.37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동수	세 대 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전체연면적)

구분	전용면적(㎡)	계약면적(㎡)	세대수	전체연면적(㎡)	비고
재개발 의무임대	39.9788	99.1263	64	6,344.0832	33.7%
	44.9987	110.9796	10	1,109.7960	
	59.9955	148.3054	60	8,898.3240	
	59.9648	148.0347	17	2,516.5899	
	84.9758	209.1418	20	4,182.8360	
	84.9945	209.2059	19	3,974.9121	
	계		190	27,026.5412	

– 공공기여(기부채납) 임대주택(변경)

구분		전용면적 (㎡)	공급면적 (㎡)	계약면적 (㎡)	세대수	기부채납 면적(㎡)	
						대지지분	건축물 환산토지
기부채납임대	기정	84.99	115.11	191.73	9	389.3	270.6
	변경	84.9758	116.8425	209.1418	9	396.4	295.2

※ 기부채납 임대주택 면적은 서울시고시 제2024-674호(2024.12.27.)에 따른 기부채납 면적을 유지하였으며,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재조정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 없음)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시설명			개소	규모	위치	비고
도로	대로3류		1	폭 : 25m , 연장 : 444m	성산동2-20~홍은동3-17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구내
	중로1류		3	폭 : 20~27m , 연장 : 5,270m	모래내~응암로	
	중로2류		6	폭 : 15~21m , 연장 : 2,290m	수색로~북가좌동115-103	
	중로3류		5	폭 : 12~19m , 연장 : 986m	중로2류5~수색로	
	소로1류		3	폭 : 10~13m , 연장 : 330m	중로1류-1~남가좌동377-5	
	소로2류		12	폭 : 8~11m , 연장 : 1,873m	남가좌동152-58~남가좌동152-59	
	소로3류		12	폭 : 4~8m , 연장 : 824m	중로1류-3~소로2류-7	
주차장	주차장		1	1,202.2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원 · 녹지	근린공원	기정	2	20,820.7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변경	2	20,896.70㎡		
	어린이공원		5	30,418.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소공원		2	1,121.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경관녹지		5	4,441.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시설명		개소	규모	위치	비고
	완충녹지	4	7,326.7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	초등학교	1	11,066.9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중학교	1	7,256.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고등학교	1	7,488.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시설	공공청사복합화 (동사무소)	2	1,939.5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1	1,069.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서관	1	3,486.8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사회복지시설	3	2,616.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청소년수련시설	1	600.2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체육시설	1	- (건축시설 : 349.3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가재울9구역 건축물 내 공공시설)	
	공공공지	4	8,949.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 상기 내역 중 "( )" 건축시설면적은 기부채납 체육시설 건축물 바닥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면적과 대지지분을 합한 면적임

(1) 교통시설 (변경 없음)

(2) 공간시설 (변경)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105-8 일원	15,465.70	-	15,465.7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10,357.2㎡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 5,108.5㎡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5,108.5㎡)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75-5 일원	11,315.40	-	11,315.40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 114.0㎡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 3,047.4㎡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 5,704.2㎡ 존치구역(삼성APT기부체납) : 1,543.8㎡ 존치지역(소로2-1해제부분) : 906㎡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168-32 일원	6,652.80	-	6,652.8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379-3 일원	1,175.50	-	1,175.5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274.6㎡ 삼성레미안APT(존치) : 900.9㎡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23 일원	9,508.00	-	9,508.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274-26 일원	1,766.30	-	1,766.3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변경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75-126 일원	5,355.00	증)76.0	5,431.00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원	소공원		남가좌동 152-19 일원	1,006.10	-	1,006.1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원	소공원		남가좌동 152-24 일원	115.00	-	115.00	가재울 존치구역 내 완전편입

나) 녹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다)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3) 공공문화 · 체육시설 (변경 없음)

(4)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9,240.2	-	79,240.2	서고 제2012-144호 (2012.6.7.)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9,240.2	-	79,240.2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643.7	-	7,643.7	9.6	
제3종일반주거지역	71,596.5	-	71,596.5	90.4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506 (263)	북가좌동 108-1	북가좌동 82-1	일반도로	-	서고2005-243 (2005.8.11)	-
기정	소로	2	6	6~10	국지도로	191	북가좌동 75-89	북가좌동 361-9	일반도로	-	서고3 (69.1.18)	-
기정	소로	2		8	국지도로	314	북가좌동 305-16	북가좌동 82-5	일반도로	-	서고2012-144 (2012.6.7.)	-
기정	소로	2	57	8	국지도로	340 (56)	북가좌동 84-11	북가좌동 74-119	일반도로	-	서고3 (69.1.18)	-
기정	소로	3	242	6	국지도로	80	북가좌동 100-336	북가좌동 303-4	일반도로	-	서고3 (69.1.18)	-

※ 괄호 내 연장은 촉진지구 내 수치임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75-126 일대	5,355	증)76.0	5,431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공원	• 변경 - 면적 : 증)76㎡	· 가재울 7구역 존치되는 시유형문화재 41호 (화산군 이연 신도비)를 근린공원으로 포함

(3)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④	공공공지	공공공지	북가좌동 80-36일대	7,505	-	7,505	시장방침127호 (`23.10.11)적용

※ 공공공지는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용도는 추후 공공에서 결정)
※ 공공공지의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은 결정 도서에 합의서 첨부
※ 추후 학교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통과 시 공공공지에서 학교용지로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가구	면적(㎡)	획지			
			획지번호	위치	용도	면적(㎡)
기정	1	79,240.2	1	북가좌동 80-15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1,419
			2	북가좌동 75-15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748
			3	북가좌동 73-32번지 일대	불허용도 외 시설	1,273
			4	북가좌동 80-69번지 일대	불허용도 외 시설	619
			5	북가좌동 74-3번지 일대	대토부지	34
			6	북가좌동 75-122번지 일대	문화재	76
			-	북가좌동 80-36번지 일대	공공공지	7,505
변경	1	79,240.2	1	북가좌동 80-15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1,419
			2	북가좌동 75-15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748
			3	북가좌동 73-32번지 일대	불허용도 외 시설	1,273
			4	북가좌동 80-69번지 일대	불허용도 외 시설	619
			5	북가좌동 74-3번지 일대	대토부지	34
			-	북가좌동 80-36번지 일대	공공공지	7,505

2) 건축물 용도 · 용적률 · 높이 ·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가구	허용용도	불허용도
기정	획지1, 획지2 (공동주택)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획지3, 획지4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외 시설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아래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제17호의 공장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 · 군사시설

(2) 건폐율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지 역	건 폐 율	비 고
기정	획지1, 획지2 (공동주택)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기정	획지3, 획지4 (근린생활시설 등)	•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건폐율 적용		

(3) 용적률 계획 (변경)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기정	획지1, 획지2 (공동주택)	210	265.6 이하	-	
변경	획지1, 획지2 (공동주택)	210	266.0 이하	-	
기정	획지3, 획지4(근린생활시설 등)	•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용적율 적용			

(4) 높이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지 역	높 이 기 준	비 고
기정	획지1, 획지2 (공동주택)	제3종일반주거지역	최고 40층이하(130m이하)	
기정	획지3, 획지4(근린생활시설 등)	•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높이 적용		

(5)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획지1, 획지2 경계부 및 공공공지 동측도로변	3m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제외 3m확보
	보차혼용통로변	9m	주1)
	공공공지 남측 소로 3-242호선변	2m	
	획지3, 획지4 경계부변	1m	

※ 주1) 서울시고시 제2024-674호(2024.12.27.)으로 결정된 사항중 착오된 사항 정정

4. 경관계획 (변경 없음)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 배치	공동주택	• 역사문화환경보전을 위한 문화재보호구역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계획 수립
건물 진출입구	공동주택	• 서측 8m도로에 면한 주출입구 방향은 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15m도로에 면한 주출입구 방향은 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 외부형태	공동주택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계획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친 색채 사용 금지 • 주변 자연과 조화를 유지
저층부 외관	공동주택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질서있는 입면 계획 권장 • 장대한 입면 및 및 돌출경관 지양 • 야간조명 설치
재료/색채	공동주택	•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 넓은 면에 원색계열 재료 및 도료 사용 금지
진입구 처리	공동주택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 접근로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계획

3) 경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개방감	공동주택	• 문화재보호구역 높이를 준수하여 공원 연접한 도로변의 개방감 확보
조명계획	공동주택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조명 설치 계획 •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반영한 야간조명 계획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 연접구역과 연계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계획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기정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획지2 (공동주택)	• 소로2-57호선~증가로 연계를 위해 현황도로 폭원 6m 운영계획 수립(폭원2m)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참고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획지1 (공동주택)	• 획지1 서측 소로2- 호선 ~ 중앙부 15m도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확보(폭2m)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참고
		획지2 (공동주택)	• 소로2-57 ~ 증가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확보(폭2m)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참고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기정	보차혼용통로	획지2 (공동주택)	• 보행 및 차량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차혼용통로 확보 (폭원 6m) - 획지2 남측경계부로 조성하되, 지형극복 필요시 일부 이격하여 설치 ※ 보차혼용통로에 대해서는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 서대문구청장)

3)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게 분산되도록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기정)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세대수 대비		연면적대비	
			세대수	면적(㎡)	전체비율	임대 비율	전체비율	임대 비율
합 계	1,506	100.0	209 (의무200)	27,015.93 (의무25,290.37)	13.87 (의무13.28)	100.0	10.70 (의무10.02)	100.0
40㎡이하	123	8.2	63	5,703.34	4.18	30.14	2.26	21.11
40~50㎡이하	70	4.6	27	2,722.18	1.79	12.92	1.08	10.08
50~60㎡이하	399	26.5	75	10,154.35	4.98	35.89	4.02	37.59
60~85㎡이하	792	52.6	44(기부9포함)	8,436.06	2.92	21.05	3.34	31.22
85㎡초과	122	8.1	-	-	-	-	-	-

※ 공동주택 전체연면적 : 252,344.44㎡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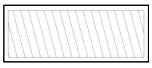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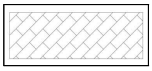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세대수 대비		연면적대비	
			세대수	면적(㎡)	전체비율	임대 비율	전체비율	임대 비율
합 계	1,435	100.0	199 (의무190)	28,908.8174 (의무27,014.70)	13.87 (의무13.24)	100.00	10.70 (의무10.00)	100.0
40㎡이하	132	9.2	64	6,344.0832	4.46	32.16	2.35	21.94
40~50㎡이하	19	1.3	10	1,109.7960	0.70	5.03	0.41	3.84
50~60㎡이하	378	26.4	77	11,414.9139	5.37	38.69	4.23	39.49
60~85㎡이하	762	53.1	48 (기부9포함)	10,040.0243	3.34	24.12	3.72	34.73
85㎡초과	144	10.0	-	-	-	-	-	-

※ 공동주택 전체연면적 : 270,146.9045㎡

6. 환경관리계획 (변경 없음)

검 토 항 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생태환경	1.1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O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 개별 비오톱 평가제외지역	• 공원 조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강화 도모
	1.2 생태네트워크	녹지 연결성 확보	O	• 시가화지역으로 산림식생 등 미분포	• 대지내 공원(5,355㎡) 및 자연 지반녹지(6,044.56㎡) 계획
	1.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X	• 해당사항 없음	-
	1.4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보전	X	• 주변 보호지역 없음	-
생활환경	2.1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	O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2.2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O	• 공사시 토양오염 발생 예상	• 토양오염 방지대책 수립
	2.3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O	• 지형 변동 예상	• 저감방안 준수
	3.1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O	• 생태면적률 계획 확인 • 자연지반녹지율 및 인공지반 녹지 확인	• 생태면적률 37.00%(당초 35.11%)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적용
	3.2 수질 (지표, 지하)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O	• 공사시 우수, 오수량 산정 • 운영시 우수, 오수량 산정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 • 운영시 공급계획 수립
	4.1 바람	바람길 확보	O	• 기상현황 분석	• 바람기능 공간유형도 변화없음
	4.2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O	• 열환경 취약지역	• 열환경 공간유형도 개선
	4.3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X	• 대기환경 조사	• 주기적인 살수, 방진망 설치 등 저감방안 수립
	4.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O	• 온실가스 현황 조사	• 계획대상지 내 친환경절감설비 설치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4.5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수립	O	• 향후 에너지 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5.1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O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서대문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5.2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O	• 공사시 소음진동 예측	• 가설방음판넬 등 저감방안 수립
	5.3 경관	조망권 확보	O	• 건축물 계획으로 인한 주변경관 변화 발생	• 주변지역과 연계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5.4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여가공간 확보	O	• 휴식·여가공간 현황조사	• 녹지 및 공원 계획
	5.5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O	• 일조현황 분석	• 건축물 높이 규정을 준수하여 일조영향 최소화
	5.6 보행친화공간	공공보행통로 계획수립	O	• 사업대상지 내 보행로 없음	• 보행 및 차량 통행로 개선
사회경제환경	6.1 인구	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	O	• 서울시 인구 현황 조사	-
	6.2 주거	산업 고려한 계획수립	O	• 서울시 주거 현황 조사	-

7.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변경없음)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 지표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은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일정한 수직면을 넘어서 돌출되지 못하도록 정한 건축선을 말한다. • '건축한계선'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되는 공지는 도시계획도로 내 보도와 연계하여 조성한다.	-
 보차혼용통로	• '보차혼용통로' 란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어 보행 및 차량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 '보차혼용통로' 는 획지2동측 막다른 도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획지2 남동측에 설치를 권장한다. • '보차혼용통로'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보도부속형전면공지' 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의 대지 내 공지 중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조성되는 공지로 연접도로 및 차도부속형전면공지와 연계하여 보도 등으로 조성 • '보도부속형전면공지'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차도부속형전면공지' 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의 대지 내 공지 중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조성되는 공지로 연접도로와 연계하여 차도 등으로 조성 • '차도부속형전면공지'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Ⅲ. 기타사항

1. 2024년 제7차('24.09.09.)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 '수정가결'

구 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제7차 도시재정비 위원회	• 대상지 주변 가로 경관 및 지형 고저차 등을 고려하여 구역 경계부 단차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지조성계획의 적정성 검토	• 대상지 서측 경계부단차 구간을 도로와 동일레벨로 하향 조정하여 단차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대지조성계획을 재수립하였음	반영

구 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 획지별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내·외 보행동선, 진입부 인지성, 공원과의 연계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공공보행통로 중 획지1 동선은 이면가로에서 공원을 연결하기 위함이나 이면도로 중앙부에서 진입으로 인한 진입부 인지성이 낮고 시종점 간 시야확보가 어려우며, 획지2 동선은 주 이용 대상이 동측 아파트 1개 단지로써 공공성이 낮으므로, 지형특성상 외부계단·EV 등의 설치를 필수로 하는 공공보행통로는 백지화하되, 실효성 있는 동선계획을 고려 획지2 내 막다른 도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통로를 확보하였음	반영
	• 응암로와 거북골로18길 사이 이면도로는 폭이 좁고 양방통행이 용이하지 않아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아파트 진출입부 설치 계획과 교통처리 계획의 적정성 검토	•거북골로18길상 계획된 획지1 진출입구는 신규 교차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3지 교차로 운영 중인 교차지점에 접속 계획하여 진출입구 위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출입구 개설 계획과 관련하여 2023년 5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음 •응암로와 거북골로18길 사이 이면도로는 폭원 6.5m 도로로 양방통행이 가능한 도로이나, 일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용량 저하가 발생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및 원활한 차량 소통을 고려하여 주변 지역 일방통행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한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겠음	추후 반영
	• 통경축은 주민 통행이 가장 많은 주요 가로변에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정	•통경축은 주민 통행이 가장 많은 단지 중앙부 15M 도로와 북측 단독주택지 가로에서 개방감이 확보 가능한 위치로 조정하여 열린 단지로 재계획하였음	반영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사회혼합(소셜믹스)될 수 있도록 할 것	•임대주택은 경계부에 편중돼 있던 것을 획지1,2 전반에 걸쳐 분양주택과 사회혼합될 수 있도록 건축배치계획을 조정하였음	반영
	• 단독주택과 맞닿은 공원 경사는 자연형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북측 단독주택지와 맞닿은 공원부는 구조물이 없는 경사면 녹지로 처리토록 조성방안을 마련하였음	반영
	• 공공공지는 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대한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학교 신설이 확정될 경우, 학교로 시설 변경 및 면적 조정 검토	•공공공지는 추후 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대한 투자심사 등 신설 계획을 확정한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Ⅳ. 관계도면 : 붙임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계 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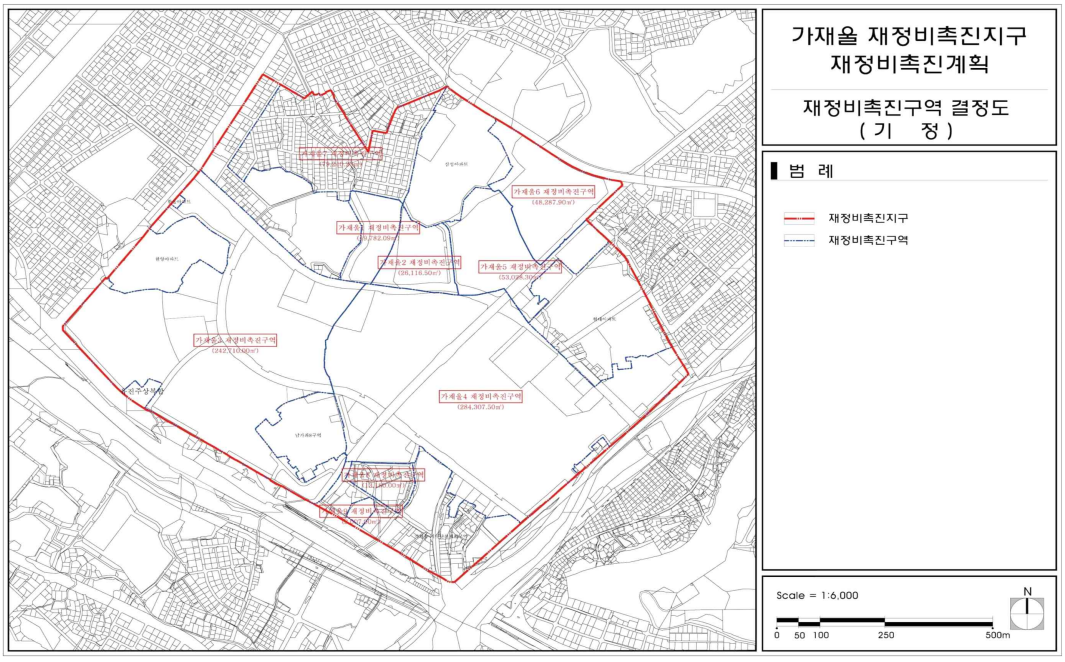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관계도서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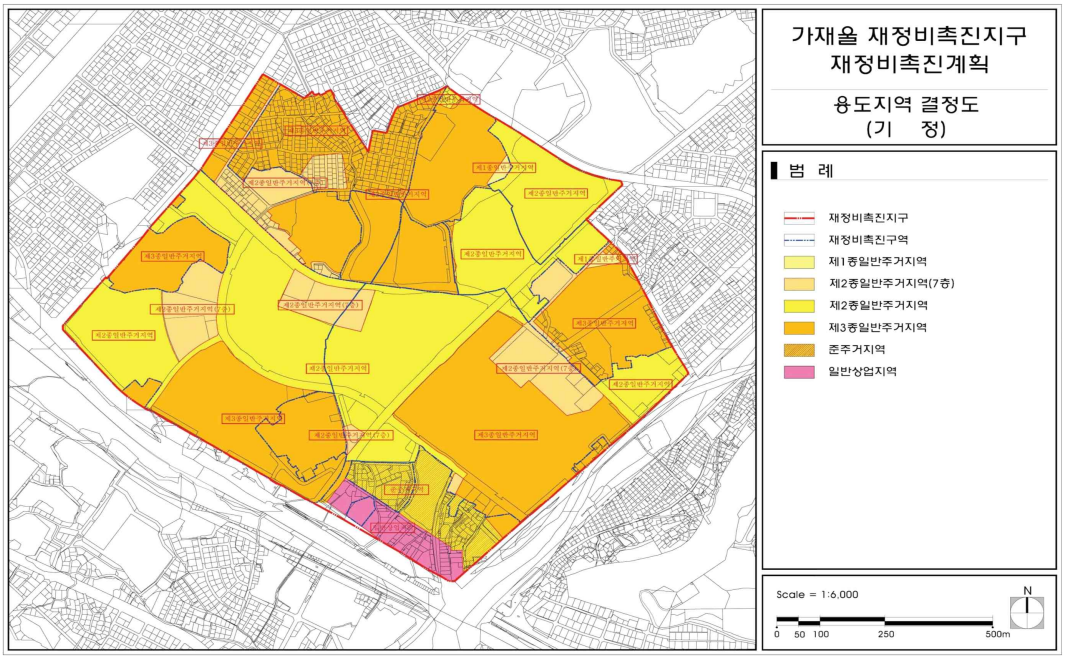
○ 고시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02-2133-7213) 및 서대문구 주거정비과(☎02-330-1945)에 관계도서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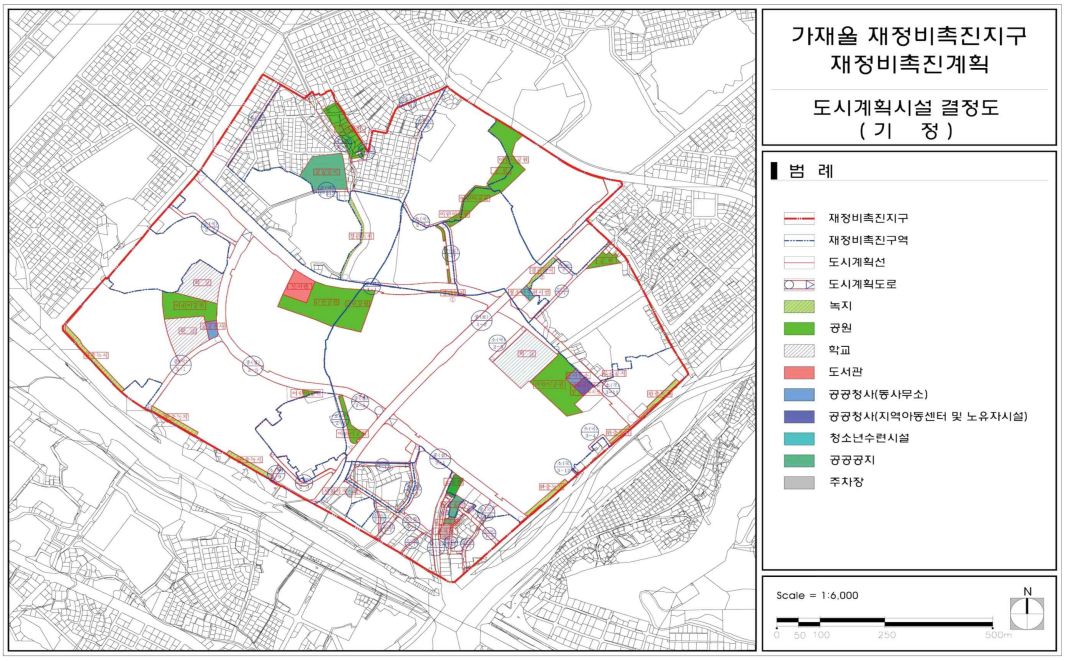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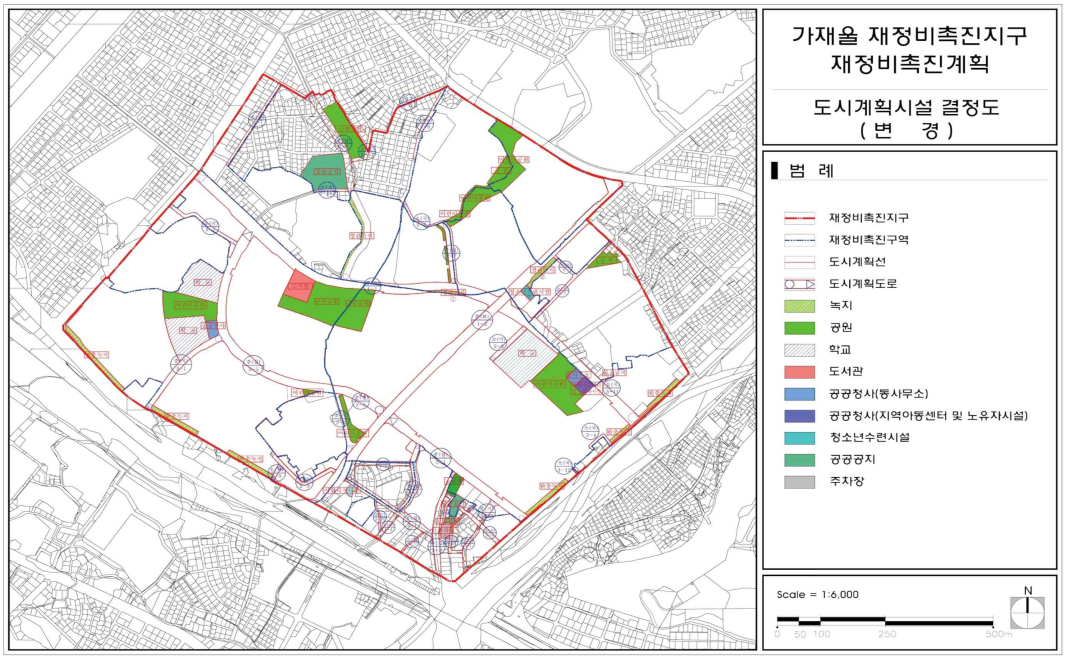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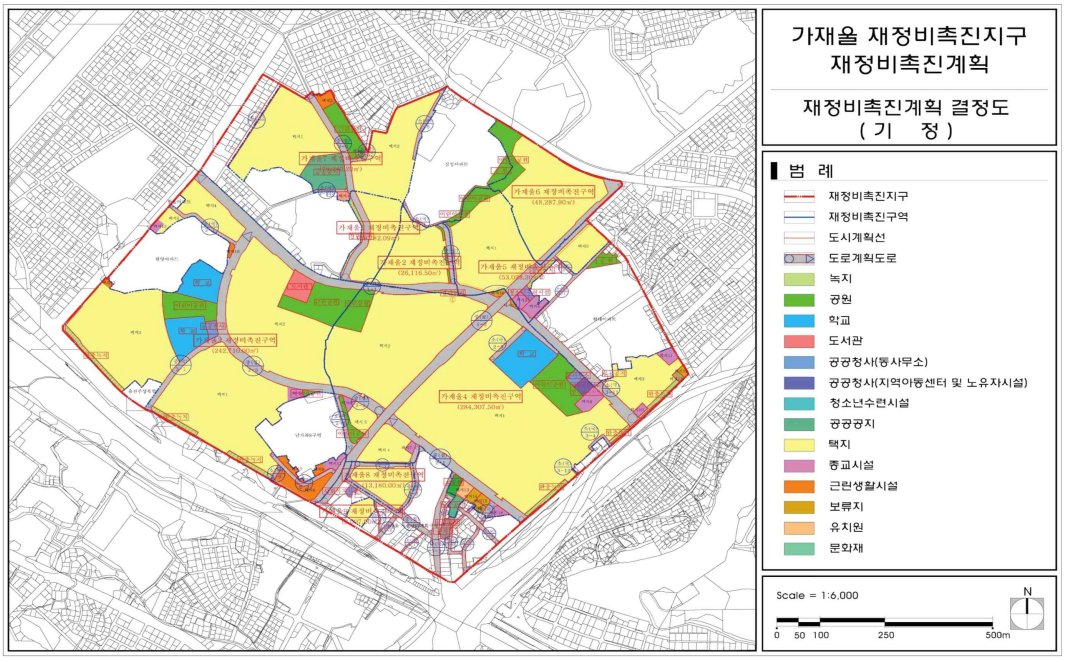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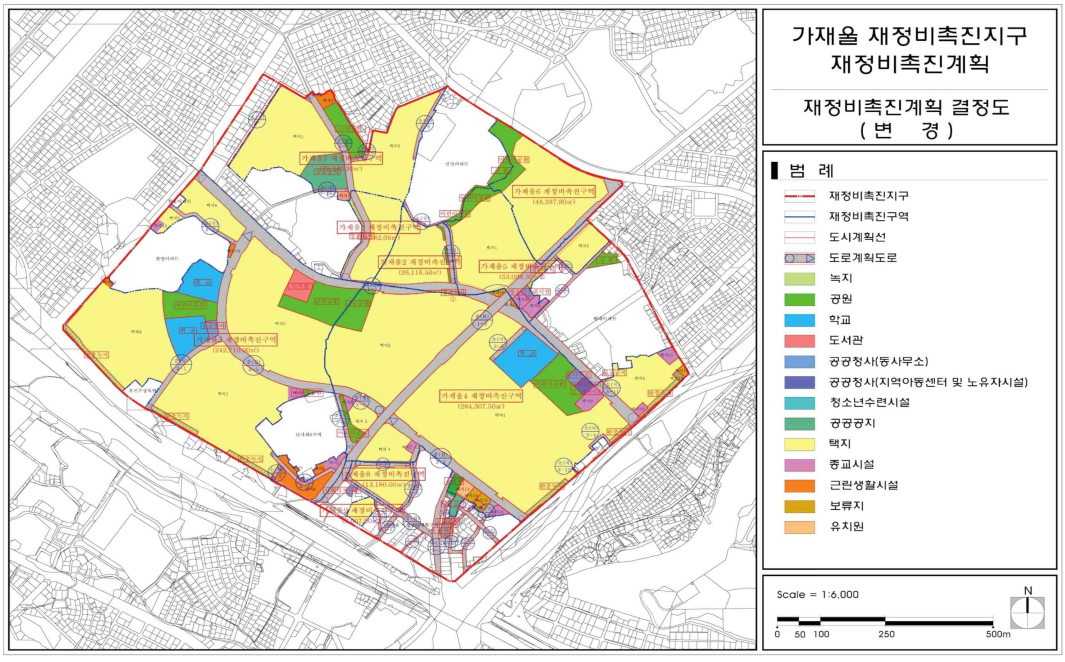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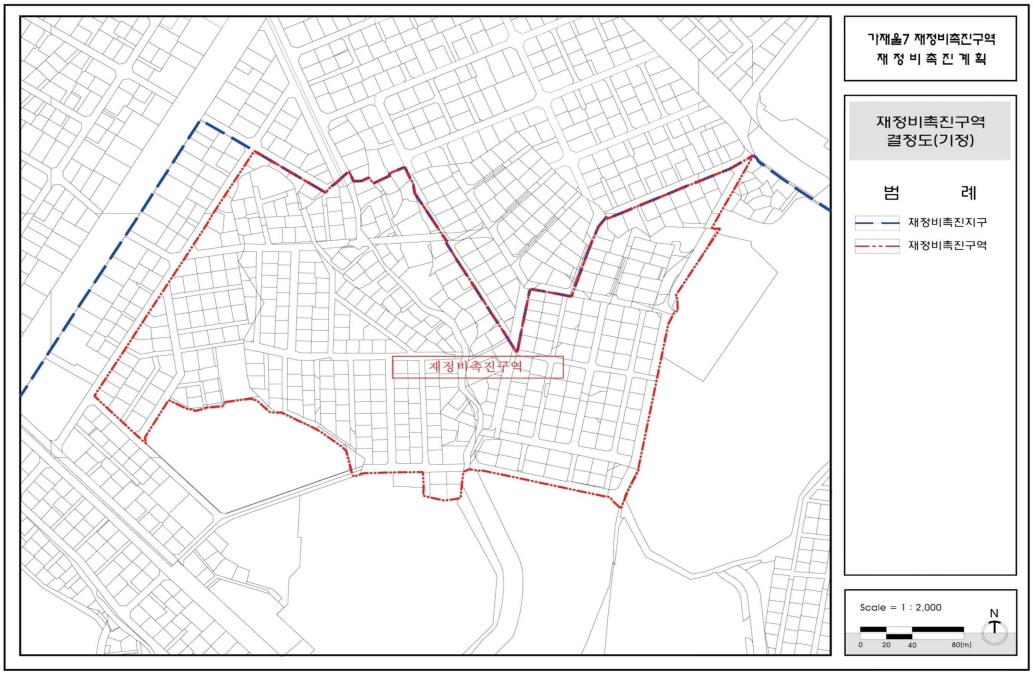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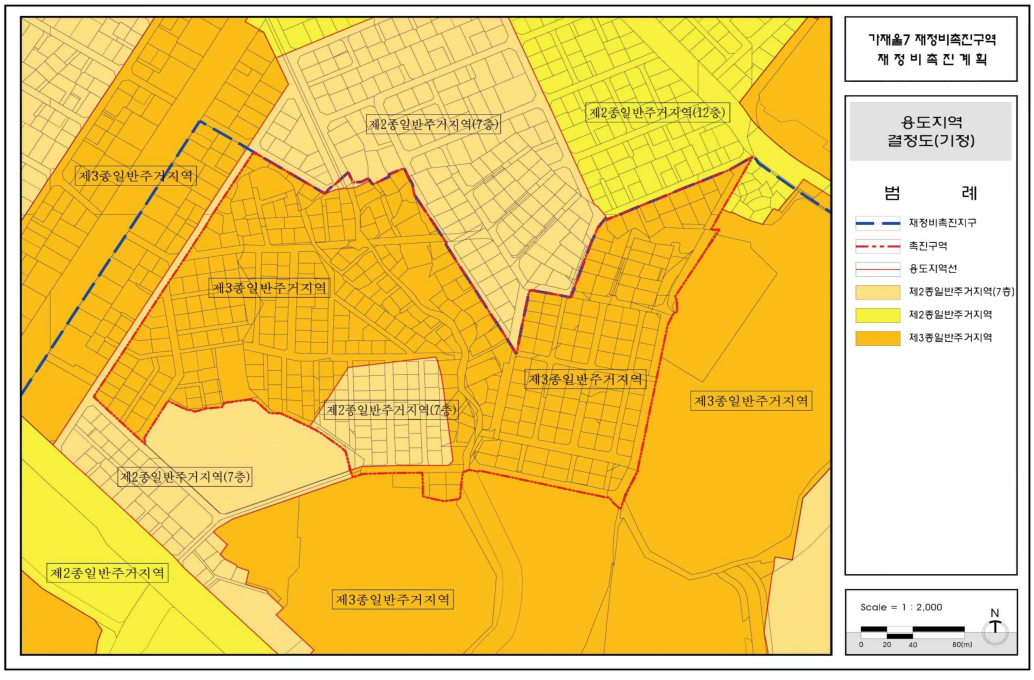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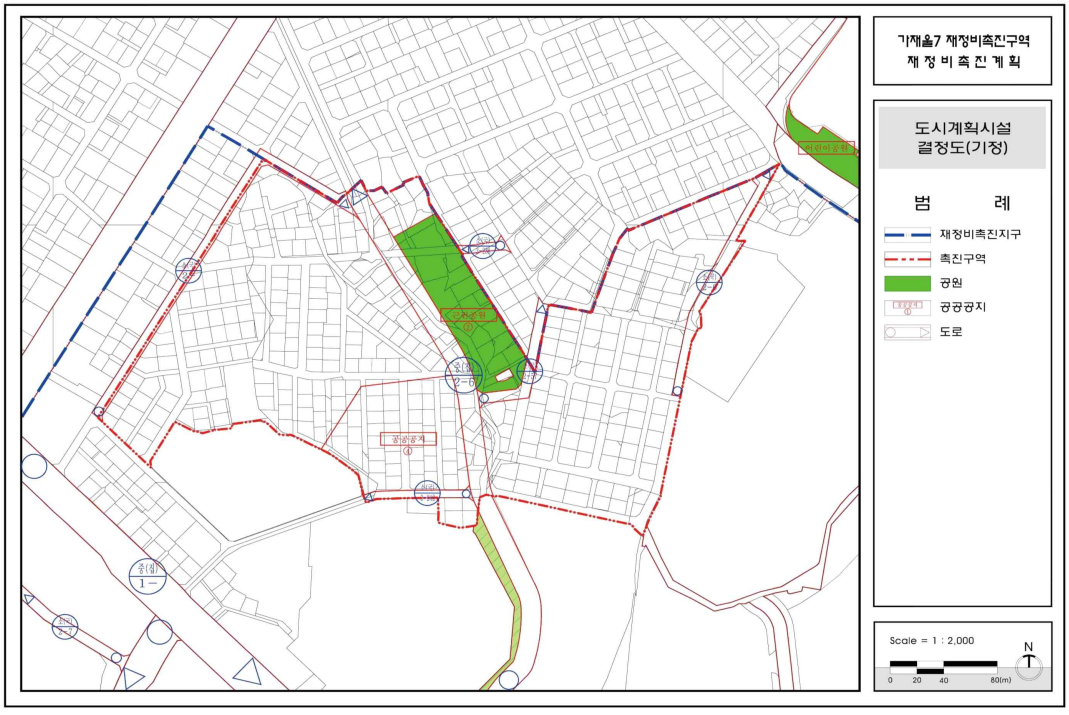
■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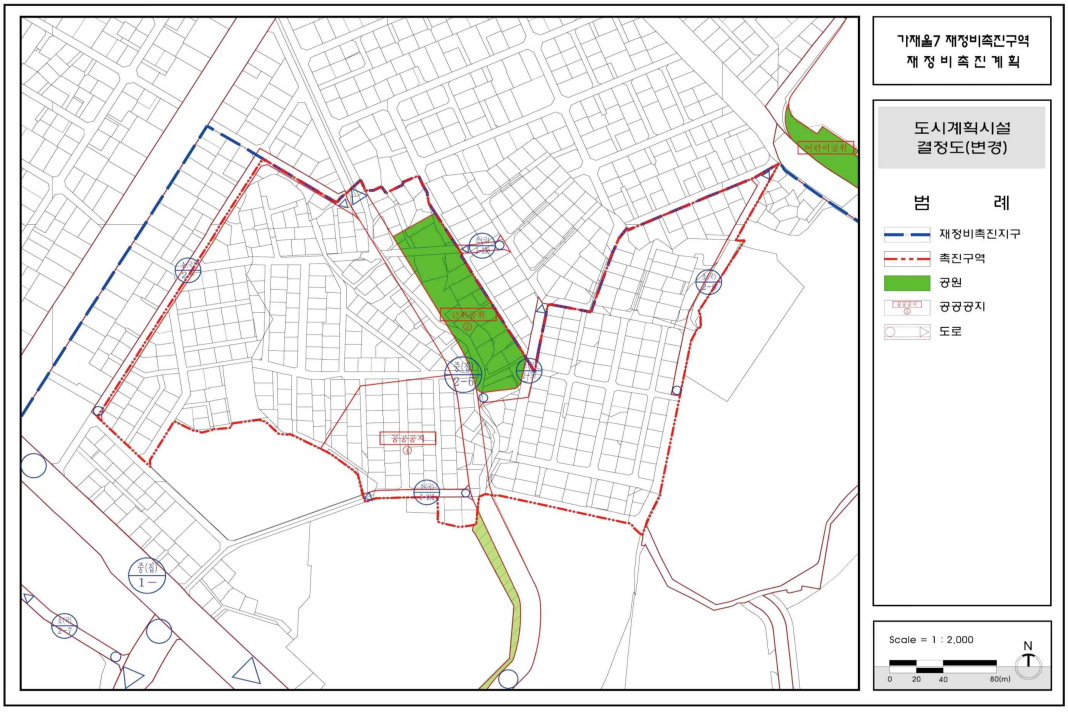
■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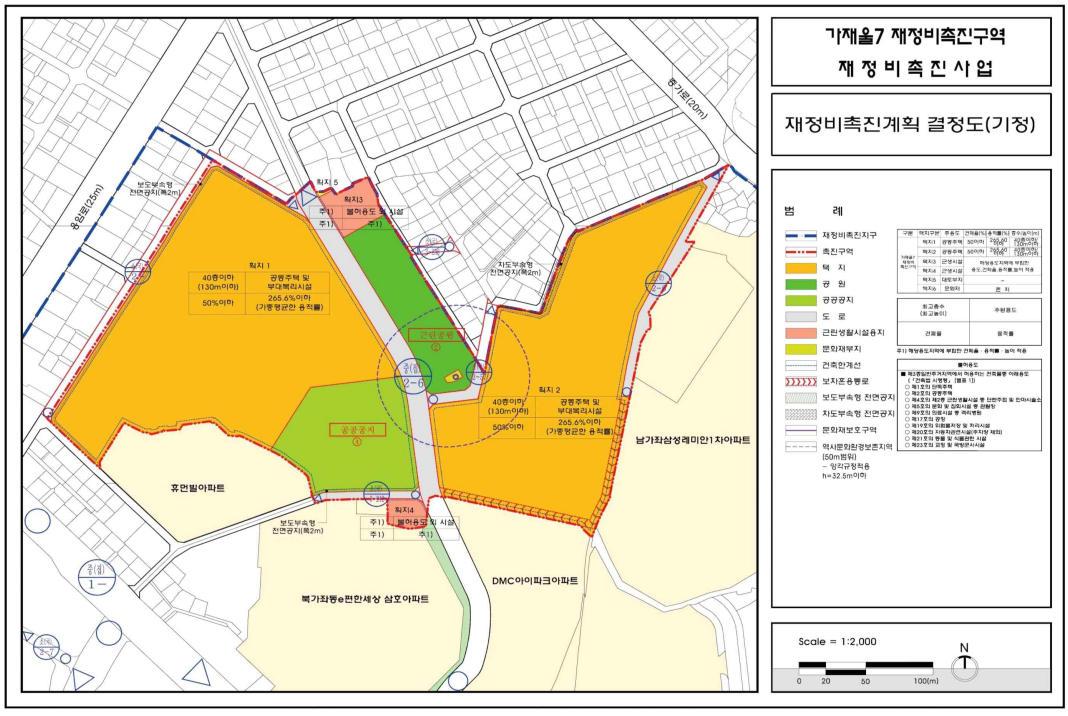
■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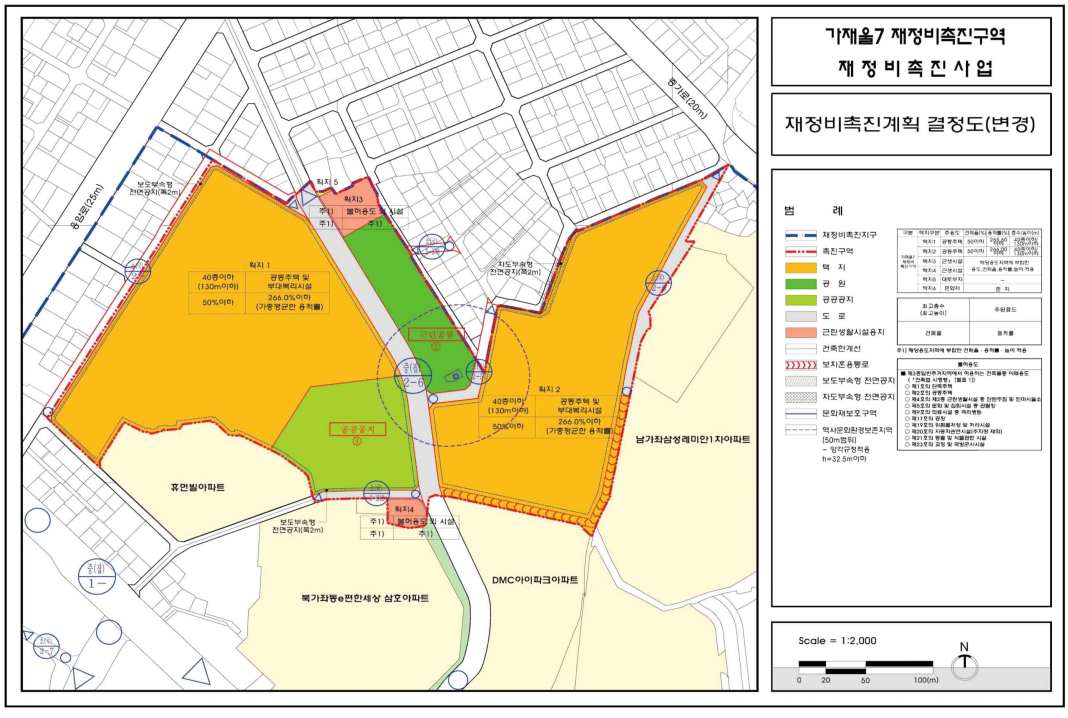
■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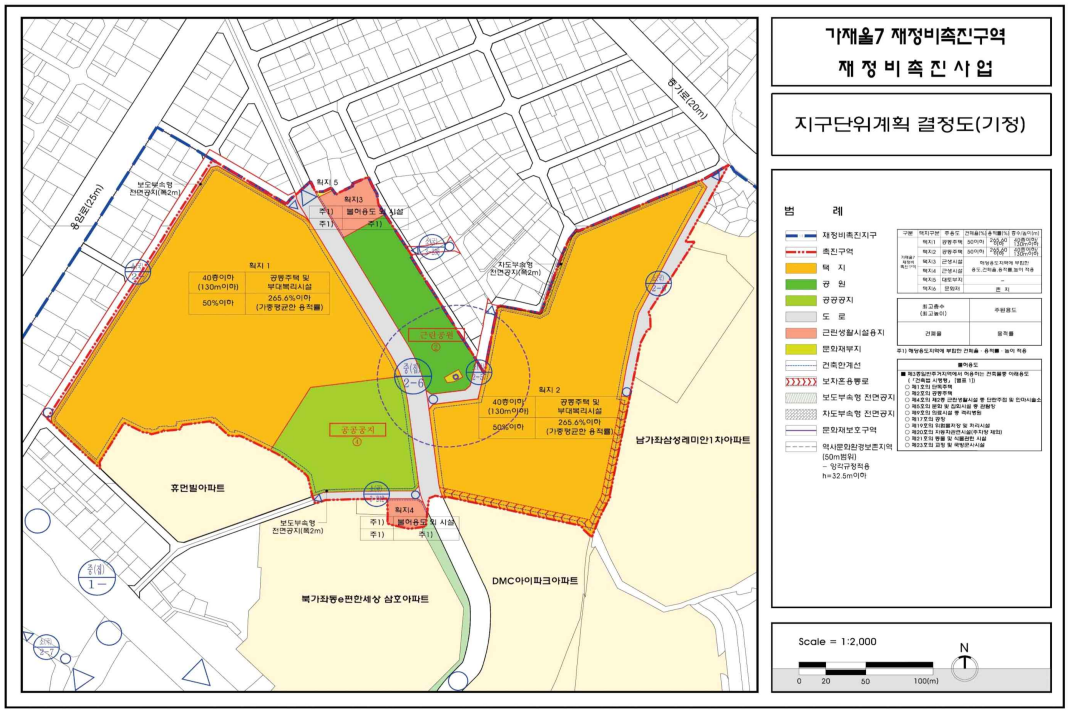
■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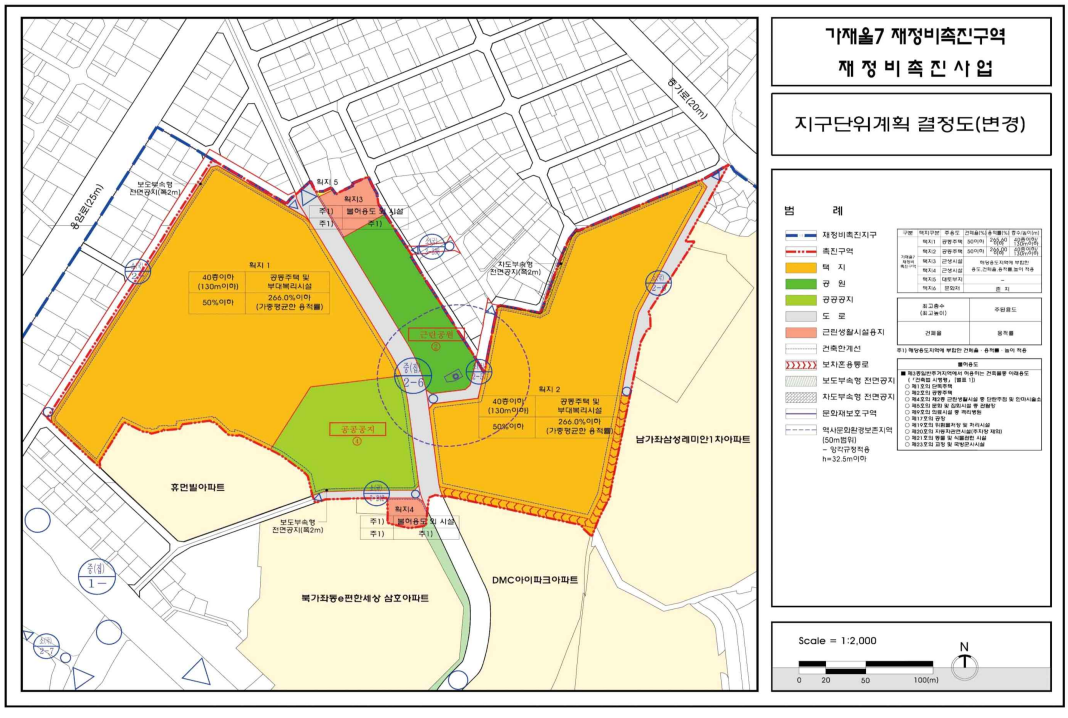
■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 가재울7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 가재울7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310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5. 12. 11. ~ 2025. 12. 25.(14일간)

2. 송달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제이엘공영 (김명권)	건축공사업 01-3032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1길 22, 제비01호(황학동, 신당블루카 운티)	2023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자료(2022년 자본금) 미제출하여 시정명령하였으나 미이행	법 제81조 제9호	영업정지 1개월 (2025.12.29. ~ 2026.1.28.)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인보종합 건설(주) (박춘건)	건축공사업 01-4598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27, 4층(사당동)	2023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자료(2022년 자본금) 미제출하여 시정명령하였으나 미이행	법 제81조 제9호	영업정지 1개월 (2025.12.29. ~ 2026.1.28.)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주)제이엔에이치종합건설 (김지누)	건축공사업 01-0644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6 (한남동)	2023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자료(2022년 자본금, 기술인력) 미제출하여 시정명령하였으나 미이행	법 제81조 제9호	영업정지 1개월 (2025.12.29. ~ 2026.1.28.)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4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24.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273070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96, 612동 512호(하계동, 장미)	상하수도요금	2023. 9월~ 2025. 5월	11회	249,39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73 장미아파트 제612동 제5층 제512호	김*승	920721-1******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96, 612동 512호	249,390원	2025. 9. 12.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백청간(☎02-3146-33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42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 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9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01모1993	㈜*엔에스씨오알피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10-02 13:10	강서02_개화역 1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2	02소8914	이*형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10-01 13:07	은평07_증산로(DMC)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3	09고7942	박*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10-23 15:30	광진01_동일로(군자교 지하차도)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4	11더7210	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0-09 21:17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5	18너3409	주식회사 *통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10-31 10:27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6	22루4936	우*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10-24 15:53	금천05_금천교(범안로)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7	52너2197	김*덕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10-07 20:1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13-5 안성방면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8	70소2893	안*순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10-24 12:35	동작01_노량진역(노량진로)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9	92나2379	㈜*추럴하모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10-19 11:32	마포03_성산로(연희IC) 1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5년 12월 31일(수)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 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장재희(Tel 02-2133-3664)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핸드폰번호 :(010-9615-3659)로 사진파일을 문자 접수하셔도 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43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25.(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공감종합건설 (김현재)	건축공사업 01-42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96 , 602호(길동) (길동)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 공사명 : 신림동 1432-23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 하도급사 : (주)세웅 - 하도공종 : 시스템비계 - 하도계약일 : 20241029 - 하도금액 : 99,000,000원	영업정지 및 과징금	2025.12.26.(금) 09: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담당 사무관 김문수	제82조 제1항제8호
㈜공감종합건설 (김현재)	건축공사업 01-42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96 , 602호(길동) (길동)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 공사명 : 신림동 1432-23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 하도급사 : 신양하이텍금속산업(주) - 하도공종 : 창호,금속 - 하도계약일 : 20241213 - 하도금액 : 567,733,565원	영업정지 및 과징금	2025.12.26.(금) 10: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담당 사무관 김문수	제82조 제1항제8호
㈜작은도시 (최진호)	건축공사업 01-3821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98길 43, 지하1층(암사동, 작은도시 노마드)	○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일: 2025. 3. 17. - 위반사항: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내역: 영업정지 5개월 [2025. 5. 2.~2025. 10. 1.]	등록말소	2025.12.26.(금) 15: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담당 사무관 김문수	제83조 제3의2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광야건설㈜ (신정은)	건축공사업 01-5346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5길 24 102호 (일원동)	○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일: 2025. 3. 17. - 위반사항: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내역: 영업정지 5개월 [2025. 5. 2.~2025. 10. 1.]	등록말소	2025.12.26.(금) 15:3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담당 사무관 김문수	제83조 제3의2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44호

도시계획시설 사업(낙산근린공원 전망대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낙산근린공원은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27호(2025.7.31.)로 최종 변경 결정되었으며,

2. 공원의 조성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1989-493호(1989.11.20.)로 최초 고시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7호(2021.5.27.)로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69호(2024. 4. 4.)로 실시계획 인가된 낙산근린공원 전망대 조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02-3783-5922)에 비치하고 있으며,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불가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438번지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낙산근린공원 전망대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1) 사업면적: 266.1㎡
  2) 주요내용: 지장건물 보상 및 공원조성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바.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당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

사.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붙임

자.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02-3783-5922)

차.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명: 낙산근린공원 전망대 조성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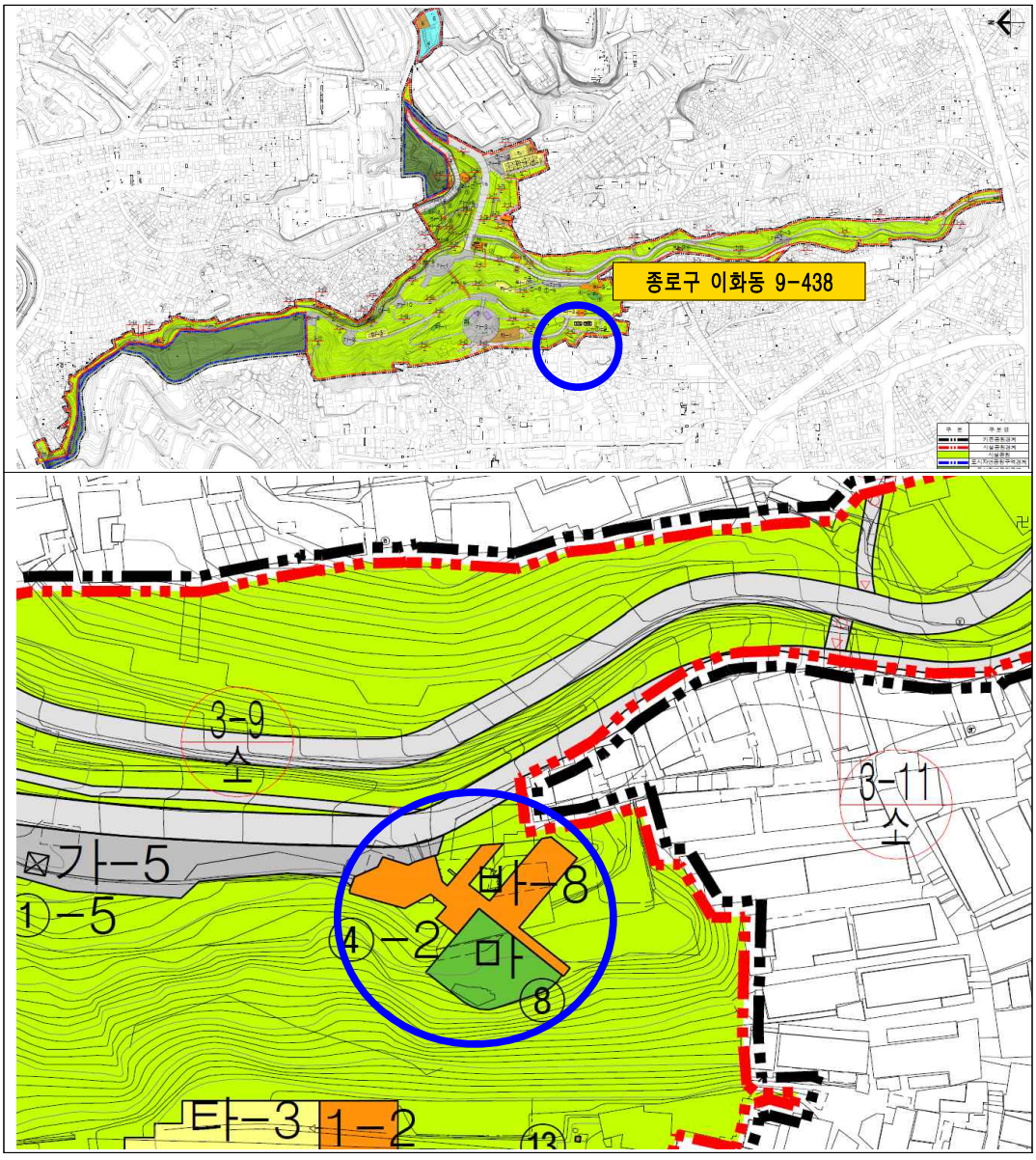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사업명: 낙산근린공원 전망대 조성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수량 (면적)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외의 권리	
1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9-438	무허가건물 (주거용)	시멘트블럭	1동 (50.8㎡)	대	유○정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9-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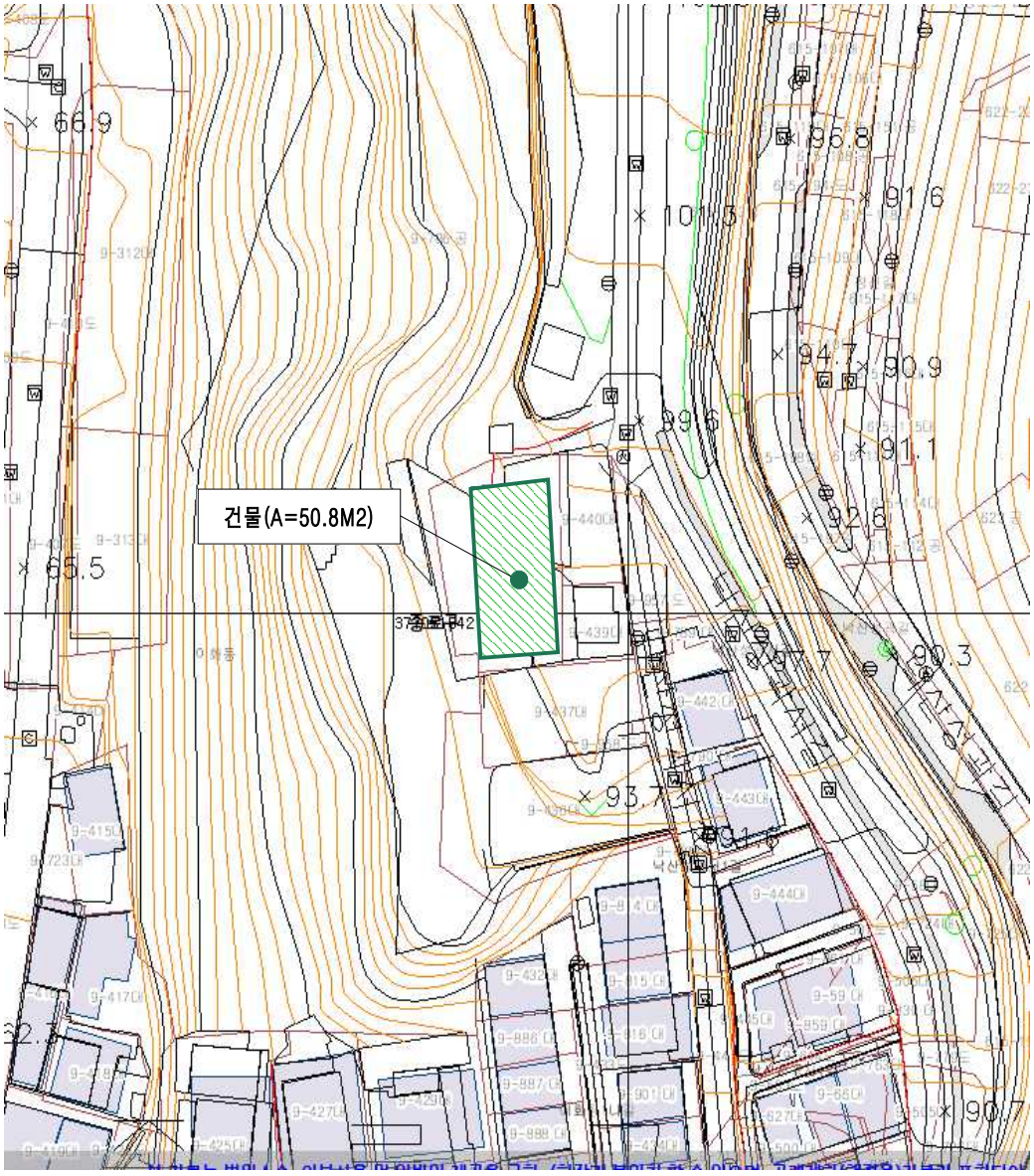
사업시행지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낙산근린공원 전망대 조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438



보상 지장건물 및 공사계획도서

□ 낙산근린공원 전망대 조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438



공사계획도(철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4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예고서를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반송으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2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예고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20844370	강서구 양천로6*길 1*	수도요금	2024. 10 외 6납기	7회	8,298,840원	압류예고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길 1* (등촌동 6*0-*0)	이*열	671130-******* (등기번호 1126814004111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길 *4	8,298,840원	2025. 12.26.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박미숙(☎02-3146-11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4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예고서를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반송으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2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예고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3183162	구로구 구로*로*6길 7*	수도 요금	2022. 12 외 17납기	18회	7,316,990원	압류예고
023183171	구로구 구로*로*6길 7*	수도 요금	2023. 04 외 15납기	16회	9,887,140원	압류예고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로*6길 7* (구로동 *27-*9)	수*	280211-******* (등기번호 1126814003251폐문부재)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화*로*4번길 *0	7,316,990원 9,887,140원	2025. 12.26.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박미숙(☎02-3146-11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4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예고서를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반송으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2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예고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2675057	구로구 중앙로*길 *8-1*	수도 요금	2023. 09 외 6납기	7회	45,200,040원	압류예고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길 *8-1* (고척동 3*4)	김*복	880416-******* (등기번호 112681400325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1*4번길 *4 10*동 **02호	45,200,040원	2025. 12.26.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박미숙(☎02-3146-11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53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자택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25.(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테트라움건설(주) (대표 이춘호)	건축공사업 01-426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2길 4-5, 401호 (문정동, 가문빌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2024.11.7.~2025.4.6.)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함	법 제10조 제2호	등록말소 (2026. 1. 9.)	법 제83조 제3의2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62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25.(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위반 법규	의견제출통지 기한	처분 근거
대륙종합건설㈜ (전영일)	건축공사업 01-3584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7층 오메이-709호 (마곡동, 두산더랜드타워)	○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2025. 9. 23. 담보권실행(출자좌수일부취득)	영업정지 6개월	법 제10조제 4호	2025. 12. 26.(금)	법 제83조 제3호
㈜킴스종합건설 (김판열)	건축공사업 01-395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92길 35, 에이동 202호(면목동, 킴스빌)	○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2025. 9. 23. 담보권실행(출자좌수일부취득)	영업정지 6개월	법 제10조제 4호	2025. 12. 26.(금)	법 제83조 제3호
㈜호안종합건설 (손명광)	건축공사업 01-4709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길 18-1, 3층(역촌동)	○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2025. 10. 13. 담보권실행(출자좌수일부취득)	영업정지 6개월	법 제10조제 4호	2025. 12. 26.(금)	법 제83조 제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63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25.(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대한산업건설㈜ (신택호)	건축공사업 01 - 397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7나길 15 1층 (공항동)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로 영업정지(2025.2.7.) 후 영업정지 종료일(2025.8.20.)까지 미보완	법 제10조	등록말소 (2025.12.26.)	법 제83조 제8호의2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6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25.

2. 공시송달 내역(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29651450	금천구 시흥대로80길 9 (금천구 독산동 1076-43)	수도요금	2023. 05. 31. 외 15납기	16회	1,114,180원	해당 내역은 2025. 12. 0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금천구 시흥대로80길 9 (금천구 독산동 1076-43)	고*순	370728-2****** (등기번호1102234002353, 폐문부재)	금천구 시흥대로 80길 9		1,114,180	2025. 12. 26. (예정)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41194950	금천구 독산로58길 8, 405호 (금천구 독산동 378-405, 405호)	수도요금	2023. 05. 31. 외 15납기	16회	1,229,660원	해당 내역은 2025. 12. 0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금천구 독산로58길 8, 405호 (금천구 독산동 378-405, 405호)	김*원	921023-1****** (등기번호5102236000183, 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97, 226동 3101호		1,229,660원	2025. 12. 26. (예정)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40664279	금천구 독산로62길 30, 403호 (금천구 독산동 381-39, 403호)	수도요금	2022. 11. 30. 외 18납기	19회	349,770원	해당 내역은 2025. 12. 0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금천구 독산로62길 30, 403호 (금천구 독산동 381-39, 403호)	사*택	620607-1****** (등기번호1102234002351, 폐문부재)	서초구 서초중앙로 65, 1705호		349,770원	2025. 12. 26.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수한 주무관(☎ 02-3146-450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66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12.11.~2025.12.25.(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위 공고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5.12.11.~2026.1.10.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의견제출처 및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 첩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621~4622
   (의견제출 방법)
   - 팩스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6. 유의사항
   가. 사전의견제출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

도단속반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에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과태료 자진 납부

- 납부기한 : 2026.1.10.
- 납부방법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의견제출,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1부.

연번	과태료	납세자명	차량번호	주소		본세금액	발송일자	납부기한	단속일자	단속장소
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하*스	89다70**	경기도	용인시	160000	2025-10-02	2025-11-02	2025-10-01 15:38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정*엔프라이즈(주)	92가30**	서울특별시	마포구	80000	2025-10-02	2025-11-02	2025-09-30 07:27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신*순	80두10**	경기도	동두천시	160000	2025-10-02	2025-10-30	2025-09-30 06:3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하*스	89다70**	경기도	용인시	160000	2025-10-02	2025-11-02	2025-09-29 13:04	경희궁(새문안로)
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신*순	80두10**	경기도	동두천시	160000	2025-10-02	2025-10-29	2025-09-29 06:1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신*순	80두10**	경기도	동두천시	160000	2025-10-02	2025-10-26	2025-09-26 06:55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에*스디	95무26**	경상북도	경주시	80000	2025-10-14	2025-11-10	2025-10-10 09:15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갑	46마35**	경기도	고양시	80000	2025-10-14	2025-11-14	2025-09-18 07:07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서*건설 주식회사	92나48**	경기도	파주시	80000	2025-10-14	2025-11-14	2025-09-19 08:35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기*이엔씨	01너75**	서울특별시	관악구	160000	2025-10-14	2025-11-14	2025-09-20 06:54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홍	87노82**	경상남도	양산시	80000	2025-10-14	2025-11-14	2025-09-20 15:08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문*철	10거72**	부산광역시	사상구	80000	2025-10-14	2025-11-14	2025-09-20 16:35	흥인지문(청계천로, 진입)
1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백*	97고95**	서울특별시	용산구	80000	2025-10-14	2025-11-14	2025-09-21 12:54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연	52두94**	경기도	화성시	80000	2025-10-14	2025-11-14	2025-09-21 13:54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예*이엔지	83구63**	서울특별시	서초구	160000	2025-10-14	2025-11-14	2025-09-22 08:29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연번	과태료	납세자명	차량번호	주소		본세금액	발송일자	납부기한	단속일자	단속장소
1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예*이엔지	83구63**	서울특별시	서초구	160000	2025-10-14	2025-11-14	2025-09-24 09:13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1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윤*	94라43**	충청남도	천안시	80000	2025-10-14	2025-11-14	2025-09-17 09:09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박*봉	89구39**	경기도	남양주시	160000	2025-10-14	2025-11-14	2025-09-16 07:39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하*스	89다70**	경기도	용인시	160000	2025-10-14	2025-11-14	2025-09-12 15:29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80000	2025-10-10	2025-11-01	2025-10-02 06:42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2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강*한성	80누79**	서울특별시	강동구	160000	2025-10-10	2025-11-10	2025-10-02 12:59	회현역(퇴계로)
2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한*희	95두98**	충청남도	천안시	160000	2025-10-14	2025-11-12	2025-10-13 06:54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2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160000	2025-10-14	2025-11-12	2025-10-13 06:18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2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자*스마트	70고81**	서울특별시	구로구	80000	2025-10-14	2025-11-14	2025-10-11 11:08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자*스마트	70고81**	서울특별시	구로구	160000	2025-10-14	2025-11-14	2025-10-13 13:11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정*호	89다3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160000	2025-10-10	2025-11-02	2025-10-03 09:05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2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명	62더34**	경기도	성남시	80000	2025-10-10	2025-11-09	2025-10-05 10:32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2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자*스마트	70고81**	서울특별시	구로구	80000	2025-10-10	2025-11-10	2025-10-05 13:12	경희궁(새문안로)
2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철	서울72구11**	서울특별시	강동구	80000	2025-10-10	2025-11-05	2025-10-06 11:54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연번	과태료	납세자명	차량번호	주소		본세금액	발송일자	납부기한	단속일자	단속장소
3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정*호	89다3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160000	2025-10-10	2025-11-09	2025-10-07 16:57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3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임*소	43다64**	경기도	광명시	80000	2025-10-10	2025-11-07	2025-10-08 06:32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국	87우36**	부산광역시	사상구	160000	2025-10-10	2025-11-07	2025-10-08 07:42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민	73가46**	대구광역시	남구	80000	2025-10-10	2025-11-08	2025-10-09 11:03	흥인지문(종로, 진입)
3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선*원	28버12**	서울특별시	성북구	80000	2025-10-14	2025-11-14	2025-09-10 10:03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3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160000	2025-10-16	2025-11-14	2025-10-15 08:5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국	87우36**	부산광역시	사상구	160000	2025-10-16	2025-11-14	2025-10-15 07:16	한양도성박물관(율곡로)
3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전*우	88어34**	대구광역시	달서구	160000	2025-10-16	2025-11-13	2025-10-14 14:05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3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우	74너65**	경기도	포천시	80000	2025-10-16	2025-11-13	2025-10-14 13:49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3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160000	2025-10-16	2025-11-13	2025-10-14 06:16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4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160000	2025-10-17	2025-11-15	2025-10-16 06:16	한양도성박물관(율곡로)
4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하*디앤엘	경기80거15**	경기도	수원시	160000	2025-10-21	2025-11-21	2025-10-16 12:35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4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160000	2025-10-21	2025-11-16	2025-10-17 06:22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4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160000	2025-10-21	2025-11-17	2025-10-18 06:28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연번	과태료	납세자명	차량번호	주소		본세금액	발송일자	납부기한	단속일자	단속장소
4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국	87우36**	부산광역시	사상구	160000	2025-10-21	2025-11-17	2025-10-18 08:08	경희궁(새문안로)
4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유*일	10구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0000	2025-10-21	2025-11-17	2025-10-18 09:05	흥인지문(종로, 진입)
4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홍	87노82**	경상남도	양산시	160000	2025-10-21	2025-11-20	2025-10-18 12:54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4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국	87우36**	부산광역시	사상구	160000	2025-10-21	2025-11-18	2025-10-19 06:58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4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160000	2025-10-21	2025-11-19	2025-10-20 06:27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4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범*기	86소68**	충청북도	괴산군	160000	2025-10-21	2025-11-19	2025-10-20 10:03	회현역(퇴계로)
5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자*스마트	70고81**	서울특별시	구로구	160000	2025-10-21	2025-11-17	2025-10-17 11:01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5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애*코리아	97두49**	충청남도	천안시	80000	2025-10-23	2025-11-22	2025-10-20 08:45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5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160000	2025-10-23	2025-11-20	2025-10-21 06:22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5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160000	2025-10-23	2025-11-21	2025-10-22 06:2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5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160000	2025-10-27	2025-11-25	2025-10-26 06:2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5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진*영	서울80배10**	서울특별시	용산구	160000	2025-10-27	2025-11-24	2025-10-25 10:29	단암타워(소월로)
5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160000	2025-10-27	2025-11-24	2025-10-25 06:2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5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160000	2025-10-27	2025-11-23	2025-10-24 06:2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5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범*기	86소68**	충청북도	괴산군	160000	2025-10-27	2025-11-22	2025-10-23 17:28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연번	과태료	납세자명	차량번호	주소		본세금액	발송일자	납부기한	단속일자	단속장소
5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160000	2025-10-27	2025-11-22	2025-10-23 10:3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6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	92러45**	경기도	고양시	160000	2025-10-29	2025-11-26	2025-10-27 17:2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6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160000	2025-10-29	2025-11-26	2025-10-27 07:09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6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160000	2025-10-31	2025-11-29	2025-10-30 06:2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6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160000	2025-10-31	2025-11-28	2025-10-29 06:2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6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만	84너76**	충청남도	아산시	160000	2025-11-03	2025-11-30	2025-10-31 06:27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6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진	80서77**	서울특별시	마포구	160000	2025-11-03	2025-12-01	2025-11-01 12:08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 주요 의견제출 대상(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준거)

구 분	증빙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인증시험 확인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관련법령에 따른 증명서(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국가유공자사용자동차 표지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2019.10.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2020.6.30일까지 적용 보류) ※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라 함은 각 지자체의 저공해 사업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완료를 통보받은 차량을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와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2020.12.31.일까지 적용보류(단,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보류하지 않는다.) ※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 이라 함은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의견제출서 작성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20 년 월 일 시 분	
제출의견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		
※의견제출방법 1. 팩스 2133-1446 2. 이메일 green5@seoul.go.kr		
제 출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 제출일 :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67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고지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건 명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5.12.11. ~ 2025.12.25.
5. 공고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5.12.31.
   나.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다.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공고 확인 및 안내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순번	고지구분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자	단속장소
1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49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07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50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09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3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51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10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4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52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11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5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53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12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6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54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1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7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55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14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8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56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16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9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57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18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0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58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17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1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59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19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2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60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20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순번	고지구분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자	단속장소
13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61	81주78**	50,000	2025-07-03	2025-11-30	2020-04-03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4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62	81주78**	50,000	2025-07-03	2025-11-30	2020-04-06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5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63	81주78**	50,000	2025-07-03	2025-11-30	2020-03-30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6	독촉고지	오*욱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77	84다58**	50,000	2025-07-03	2025-11-30	2022-02-13	흥인지문(종로, 진입)
17	독촉고지	홍*숙외1인(권*진)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419	34너77**	100,000	2025-07-03	2025-11-30	2025-05-20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18	독촉고지	윤*상	경기도	하남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64	51저67**	50,000	2025-07-03	2025-11-30	2020-04-13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9	독촉고지	이*하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65	89다85**	50,000	2025-07-03	2025-11-30	2020-01-18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0	독촉고지	오*욱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67	84다58**	100,000	2025-07-03	2025-11-30	2021-07-2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21	독촉고지	오*욱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68	84다58**	50,000	2025-07-03	2025-11-30	2021-09-1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22	독촉고지	오*욱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69	84다58**	50,000	2025-07-03	2025-11-30	2021-10-02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3	독촉고지	오*욱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70	84다58**	50,000	2025-07-03	2025-11-30	2021-10-31	흥인지문(종로, 진입)
24	독촉고지	오*욱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73	84다58**	50,000	2025-07-03	2025-11-30	2022-01-23	흥인지문(종로, 진입)

순번	고지구분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자	단속장소
25	독촉고지	오*욱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75	84다58**	50,000	2025-07-03	2025-11-30	2022-01-31	흥인지문(종로, 진입)
26	독촉고지	오*욱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76	84다58**	50,000	2025-07-03	2025-11-30	2022-02-06	흥인지문(종로, 진입)
27	독촉고지	오*욱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74	84다58**	50,000	2025-07-03	2025-11-30	2022-01-30	흥인지문(종로, 진입)
28	독촉고지	오*욱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78	84다58**	50,000	2025-07-03	2025-11-30	2022-02-19	흥인지문(종로, 진입)
29	독촉고지	오*욱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79	84다58**	50,000	2025-07-03	2025-11-30	2022-02-27	흥인지문(종로, 진입)
30	독촉고지	오*욱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80	84다58**	50,000	2025-07-03	2025-11-30	2022-03-06	흥인지문(종로, 진입)
31	독촉고지	오*욱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81	84다58**	50,000	2025-07-03	2025-11-30	2022-03-26	흥인지문(종로, 진입)
32	독촉고지	김*순	대전광역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82	92어29**	50,000	2025-07-03	2025-11-30	2023-07-18	회현역(퇴계로)
33	독촉고지	김*순	대전광역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83	92어29**	50,000	2025-07-03	2025-11-30	2023-07-1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34	독촉고지	(*)하*스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84	89다70**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2-28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5	독촉고지	이*섭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85	11러51**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01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36	독촉고지	우*구	경상북도	봉화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88	83너32**	1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02	회현역(퇴계로)

순번	고지구분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자	단속장소
37	독촉고지	이*섭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89	11러51**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03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38	독촉고지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90	04우68**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05	흥인지문(종로, 진입)
39	독촉고지	(*)하*스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91	89다70**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07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40	독촉고지	(*)비*에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92	83러62**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08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41	독촉고지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93	04우68**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08	흥인지문(종로, 진입)
42	독촉고지	(*)강*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94	80누79**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15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43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31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2-18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44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32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4-01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45	독촉고지	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97	80서77**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16	흥인지문(종로, 진입)
46	독촉고지	(*)하*스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98	89다70**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17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47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33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2-22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48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34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2-20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순번	고지구분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자	단속장소
49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35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31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50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36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4-02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51	독촉고지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400	04우68**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22	경희궁(새문안로)
52	독촉고지	정*공	광주광역시	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402	10구76**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22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53	독촉고지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403	95두98**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24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54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37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2-24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55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38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2-25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56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39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2-21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57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40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2-26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58	독촉고지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404	95두98**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25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59	독촉고지	주*회사선*이엔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405	80거57**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25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60	독촉고지	(*)강*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408	80누79**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28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순번	고지구분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자	단속장소
61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41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2-27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62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42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01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63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43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2-28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64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44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02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65	독촉고지	명*옥외1(강*욱)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410	서울33너91**	1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29	흥인지문(청계천로, 진입)
66	독촉고지	최*희	경상남도	창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413	92모29**	100,000	2025-07-03	2025-11-30	2025-04-02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67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45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03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68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46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04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69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47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06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70	독촉고지	주*회사 마*백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48	81주78**	45,000	2025-07-03	2025-11-30	2020-03-05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71	독촉고지	유*현	광주광역시	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414	95모74**	100,000	2025-07-03	2025-11-30	2025-05-09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72	독촉고지	김*우	경상북도	영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86	28버29**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01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순번	고지구분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자	단속장소
73	독촉고지	박*석	경기도	파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96	경기91노73**	1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15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74	독촉고지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399	01나44**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22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75	독촉고지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407	01나44**	200,000	2025-07-03	2025-11-30	2025-03-27	경향신문사(정동길)
76	독촉고지	Y*LMAZ S*DAT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7	수시분	000412	81부86**	100,000	2025-07-03	2025-11-30	2025-04-02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68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12.11.~2025.12.25.

5. 공고내용
가. 이의제기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나. 이의제기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이의제기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이의제기 접수처 및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621~4622
(이의제기 방법)
- 팩스 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에 대한 압류 등)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납부기한 : 2026.1.31.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납부기한, 체납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이의제기 대상 및 이의제기 작성서식 1부.

순번	상태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항목2
1	부과	김*일	경상북도	청도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77	17더52**	100,000	2025-10-01	2025-11-30	2025-05-29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	부과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78	01나44**	200,000	2025-10-01	2025-11-30	2025-05-31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	부과	박*곤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80	80라47**	100,000	2025-10-01	2025-11-30	2025-06-02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4	부과	(*)예*이*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82	83구63**	200,000	2025-10-01	2025-11-30	2025-06-05	경희궁(새문안로)
5	부과	김*완	경기도	양평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90	60더18**	200,000	2025-10-01	2025-11-30	2025-06-10	회현역(퇴계로)
6	부과	(*)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81	80누79**	200,000	2025-10-01	2025-11-30	2025-06-02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7	부과	김*광	경기도	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76	80다80**	100,000	2025-10-01	2025-11-30	2025-05-29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8	부과	(*)기*이*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79	01너75**	200,000	2025-10-01	2025-11-30	2025-05-31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9	부과	(*) 에*엘*스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87	71누55**	200,000	2025-10-01	2025-11-30	2025-06-09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10	부과	가* 디*씨(*)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88	10주29**	200,000	2025-10-01	2025-11-30	2025-06-10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11	부과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83	95두98**	200,000	2025-10-01	2025-11-30	2025-06-06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2	부과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86	95두98**	200,000	2025-10-01	2025-11-30	2025-06-08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3	부과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89	95두98**	200,000	2025-10-01	2025-11-30	2025-06-1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순번	상태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항목2
14	부과	M*A*M*R*U*E*P*R*V*A*T*R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95	94마54**	100,000	2025-10-01	2025-11-30	2025-06-24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5	부과	(*)수*사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97	서울31더12**	200,000	2025-10-01	2025-11-30	2025-06-28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16	부과	한*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98	경기85나84**	100,000	2025-10-01	2025-11-30	2025-06-29	경희궁(새문안로)
17	부과	김*민	경기도	오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92	08조41**	200,000	2025-10-01	2025-11-30	2025-06-13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8	부과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94	01나44**	200,000	2025-10-01	2025-11-30	2025-06-16	경희궁(새문안로)
19	부과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96	01나44**	200,000	2025-10-01	2025-11-30	2025-06-28	경희궁(새문안로)
20	부과	권*균	경기도	양평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503	14너83**	200,000	2025-10-01	2025-11-30	2025-08-02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1	부과	권*균	경기도	양평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504	14너83**	200,000	2025-10-01	2025-11-30	2025-08-04	흥인지문(종로, 진입)
22	부과	김*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493	11고99**	100,000	2025-10-01	2025-11-30	2025-06-14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23	부과	권*균	경기도	양평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501	14너83**	100,000	2025-10-01	2025-11-30	2025-07-29	흥인지문(청계천로, 진입)
24	부과	권*균	경기도	양평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10	수시분	000502	14너83**	200,000	2025-10-01	2025-11-30	2025-08-01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안내

□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행정청(서울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서는 당사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며, 관련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에 의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그 처리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아래붙임), 과태료고지서, 이의제기 관련 적법·타당성을 증명할만한 자료

□ 제출방법

○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과태료과징팀)
- 팩스번호 : 02-2133-1446, 전화번호 : 02-2133-4621~2
- Email 주소 : green5@seoul.go.kr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table>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또는 사업자명</td><td></td><td>주 민 번 호
※ 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Email)</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2">위반차량</td><td>차량번호</td><td></td><td>차 종</td><td colspan="2"></td></tr>
<tr><td>소 유 자</td><td colspan="4">(신청인과의 관계)</td></tr>
<tr><td rowspan="3">과 태 료
처 분</td><td>처분근거</td><td colspan="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8호(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td></tr>
<tr><td>납부번호
(부과일자)</td><td>(년 월 일)</td><td>과태료 금액</td><td colspan="2"></td></tr>
<tr><td>위반일시</td><td></td><td>처분사유</td><td colspan="2">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td></tr>
<tr><td>과 태 료
처 분
불복사유</td><td colspan="5">※ 내용이 많을 경우 요약 기재후 별지에 작성

※ 증빙자료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자료 등</td></tr>
</table>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73호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및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제1항에 의거,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25.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및 제64조 제1항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별첨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사항: 서울시청 도시정비과 공공개발팀(☎ 02-2133-8643)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부서	납부자	반환기일	보관액(원)
원천공제액	2017-07-10	뉴딜일자리 청년크리에이터 임금지급(2017.6)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2017-08-10	14,350
원천공제액	2018-03-13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환급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2018-03-05	203,620
원천공제액	2018-03-1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 환급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2018-03-05	13,440
원천공제액	2018-03-1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2018-03-06	92,990
원천공제액	2018-03-1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 환급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2018-03-06	6,260
원천공제액	2018-05-08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수당 지급(2018년 3월분-원천징수 반납분)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2018-06-10	80,52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79호

2025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2025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심의 일시: 2025. 12. 2.(화), 14:00

2. 심의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회의실

3. 심의 대상: 일반안건 5건(9작품)

4. 심의 결과:
   - 일반안건: 승인 5작품, 부결 3건 조건부 승인 1작품

5. 작품별 심의 결과: 붙임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 02-2133-9335)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 안건 심의 결과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1-1	중랑구 상봉동 116-49번지 외 4필지	회화	별 헤는 길의 낙타		○	
		부결사유 - 조형성 예술성 미흡 - 두 개 패널로 나누어진 형식이 부적합함 - 작품의 보관(도난 방지) 및 유지에 문제가 없게 설치계획 필요				
1-2		회화	청마의 꿈		○	
		부결사유 - 조형성 예술성 미흡 - 청마의 꿈이라는 제목 의도와 표현이 상이함 - 청마의 상징성과 실제 그림의 시각적 표현 간 연관성 모호				
2-1	강남구 역삼동 832-21외 5필지	회화	Inside Iceberg blue	○		

2025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 안건 심의 결과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2-2		조각	Navigating Stars	○		
3-1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외 1필지	조각	균형과 호응	○		
3-2		조각	HERE to THERE	○		
4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일원	조각	피어나다		○	
		부결사유 - 정면성이 너무 강해 공공 입체 조형물로서의 역할이 다소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조형성 미흡 - 꽃잎 형태 특히 하단부 꽃잎은 구조상 물이나 부산물이 쉽게 쌓일 수 있어 유지관리에 문제가 됨				

2025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 안건 심의 결과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5-1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원	조각	Luminious Ripple	○ (조건부)		
		조건 : (1) 규모 증대 필요 (2) 모듈 구조 및 시공, 설치도서(전기도면, 점검구 등)에 대한 내용 및 랜더링 이미지 보완 필요				
5-2		조각	소로(a path)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80호

『상암 택지개발지구내』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사업용지 공급 공고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DMC : Digital Media City)내 사업용지를 공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급대상용지 : 1필지(D2-1) 7,526.3㎡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10-1번지
   ○ 용지현황

필지 번호	면적 (㎡)	단가 (원/㎡)	기준가격(원)	용지기능	용지용도	비 고 (필지 지번)
D2-1	7,526.3	27,480,000	206,822,724,000	중점유치	교육첨단	마포구 상암동 1610-1

2. 공급(입찰) 신청자격
   ○ 사업신청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 자격이 제한된 자를 제외한 국내·외의 개인, 기존법인 또는 설립 예정 법인이어야 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명의, 설립 예정 법인 또는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최대 출자자(출자사)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접수일시에 대표입찰자가 소정의 공동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용지 공급(입찰) 방법
   ○ 사업계획서 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용지현황

필지	면적(㎡)	기준가격(원)	용지기능	용지용도	지정용도 비 율	건축관련		
						건폐율	용적률	건축가능높이
D2-1	7,526.3	206,822,724,000	중점유치	교육첨단	70%이상	60%이하	800%이하	120m이하

   ○ 유치시설
   -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유치시설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용지공급지침서 참조

○ 용지공급 가격

– 용지공급가격은 기준가격(토지감정가격)으로 합니다.

※ 지정용도준수 비율별 예정가격은 용지공급지침서 참고

4.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용지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DMC실무위원회 평가, DMC기획위원회의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심사과정 및 그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급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공급(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5. 공급신청 일정(장소) 등

구 분	일 정	장 소	비고
공급공고 및 공급지침서 게재	2025.12.11.(목)	서울시보,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economy/)	공급지침서 게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2026.3.30.(월) 09:00~18:00	서울특별시 산업입지과 (산업입지정책팀, 서소문2청사 17층)	입찰보증금 납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2026. 4월 중(예정)	서울특별시	별도통보

※ 사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공급신청(입찰)의 무효

○ (제안)입찰가격을 공급대상지의 기준가격 미만으로 제출시

○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 미만일 경우

○ 입찰참가(공급) 신청 및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입찰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7. 매매대금 납부조건

○ 대금 납부조건

구 분	계약금	잔금
매매대금 중 납부비율	제안입찰 금액의 10%	제안입찰 금액의 90%
납부기한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일괄 대체 처리함

※ 입찰보증금 지급보증서(전자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을 1년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

※ 매각용지의 매매대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음

8. 토지사용 승낙 및 소유권 이전

○ 토지사용 승낙

-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전이라도 대상용지의 개발을 위해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음
- 매매계약자가 매각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대상용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대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서울시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함
- 토지사용 승낙 이후에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관리책임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함

※ 매수인의 토지사용으로 인해 기반시설에 훼손이 생기거나 매매된 토지내의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및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책임임

○ 소유권 이전

- 해당 용지의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였을 시에 소유권을 이전함

9.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입찰참가자)는 해당「용지공급지침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용지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 등은 정정 및 취소가 불가하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급신청(입찰참가)과 관련한 제반 소요비용(사업계획서 작성 등)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총매매대금의 10%)을 서울시에 귀속합니다.

○ 사업신청자(입찰참가자)와 계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하고, 2인 이상 공동명의로 입찰할 경우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납부 등의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용지매수인은 DMC지구단위계획, DMS조성기본계획, DMC택지공급지침 및 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에 따라 위약금 부과, 계약해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용지공급 관련하여 관계법령 중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용지별「용지공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DMC사업의 제반사항 안내는 서울시청 페이지(https://news.seoul.go.kr/economy)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처 안내

○ 서울특별시 산업입지과 산업입지정책팀(☎ 02-2133-846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8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26.

2. 공시송달 내역(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28016363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5길 57, 301호(봉천동, 흥일빌라)	수도요금	2022년 11월 등 18납기	18회	675,330원	해당 내역은 2025. 12. 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5길 57, 301호(봉천동, 흥일빌라)	유*용	490428-1****** (등기번호1102236002084, 1102234005386 폐문부재)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건동2길 17		675,330원	2025. 12. 29. (예정)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2800832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5나길 30	수도요금	2023년 9월 등 7납기	7회	405,840원	해당 내역은 2025. 12. 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5나길 30	강*성	630420-1****** (등기번호1102236002093, 1102234005389 폐문부재)	금천구 독산로24길 54		405,840원	2025. 12. 29. (예정)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34941732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5길 12, B동 401호	수도요금	2023년 11월 등 12납기	12회	370,870원	해당 내역은 2025. 12. 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5길 12, B동 401호	김*만	381114-2****** (등기번호1102236002094, 110223400539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5길 12, B동 401호		370,870원	2025. 12. 29. (예정)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상열(☎ 02-3146-45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88호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및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제1항에 따라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 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25.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및 제64조 제1항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2-2133-5450)

붙임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 요	부서	납부자	반환기일	보관액(원)
원천공제액	2015-10-16	2014년도 시민일자리설계사 건강보험료 환급금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2015-10-10	41,450
원천공제액	2015-10-16	2014년도 시민일자리설계사 요양보험료 환급금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2015-11-30	13,060
원천공제액	2015-12-24	2015 시민일자리설계사 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2015-11-30	6,840
원천공제액	2015-12-28	2015 시민일자리설계사 실업보험료 과납금 환급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2015-12-31	9,860
원천공제액	2015-12-28	2015년 국민연금 환급금(시민일자리설계사)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2015-12-31	65,390
원천공제액	2015-12-28	2015년 국민연금 환급금(대체인력)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2015-12-31	45,130
원천공제액	2016-01-08	2015 시민일자리설계사 고용안정금 과납금 환급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2015-12-31	6,470
원천공제액	2017-01-25	2016 설계사 건강보험료 환급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2015-12-31	65,490
원천공제액	2017-01-25	2016 설계사 장기요양 보험료 환급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2017-03-31	4,170
원천공제액	2017-07-10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STO청년관광전문가양성) 임금지급(6월분)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2017-03-31	5,430
원천공제액	2017-12-29	일자리해커톤 우수팀 상금 지급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2017-08-10	220,000
원천공제액	2018-04-11	2018년 3월 청년일자리센터 공공근로자 건강보험료(이자) 환급금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2018-02-10	174,180
원천공제액	2018-06-01	2017년 공공근로자 산재보험료 환급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2018-04-30	3,020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 요	부서	납부자	반환기일	보관액(원)
원천공제액	2018-06-07	2017년 공공근로자 고용실업보험료 환급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2018-06-20	4,900
원천공제액	2018-06-14	2017년 공공근로자 고용안정보험료 환급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2018-06-20	3,210
원천공제액	2019-08-27	8월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료 원천징수액 납부 소급처리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2018-06-20	33,75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917호(2015.10.29.)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77호(2015. 1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 40호(2016. 2.1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 -76호(2023. 3. 9.)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 -570호(2025. 10. 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 평탄화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개봉동 416-2 ~ 74-46(변경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남부순환로(개봉1사거리주변) 평탄화 사업
다. 사업의 규모(변경 없음)
  1) 사업내용 : 도로구조개선
  2) 규 모 : L = 1.10km, B = 42~46m (면적 63,62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바. 변경사유 : 사업기간 변경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8)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6438-2125)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8),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6438-2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91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81호(2025.10.23.)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남구 역삼동(역삼무궁화공원) ~ 서초구 반포동(반포유수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2) 명 칭 :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1) 빗물배수터널 : 연장 5.8km(본선 L=4,5km, 지선 L=1,3km)
  2) 주요시설물 : 수직구 8개소(유입 5, 유출 1, 환기 1, 유지관리 1)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30년 2월 28일
바.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아. 열람도서 : 사업계획서,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조서 등(열람 장소에 비치)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02-2133-4387)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02-6438-2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9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및 본점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25.(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재산압류 통지

※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00259521	중구 동호로17길 143-1	수도 요금	2023-11 ~2025-05	11회	24,380원	2025.9.11 ~ 2025.09.23 2025. 9.25~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13004321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1324	김*수	530315-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손기정로4안길 15 지하층1호	24,38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00378803	중구 동호로15가길 37	수도 요금	2022-09 ~2025-07	18회	39,960원	2025.9.11 ~ 2025.09.23 2025. 9.25~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13004319 ‣반송사유 : 수취인 불명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263	고*림	540206-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5길 44-4	39,96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41464004	중구 동호로11마길 20-3, 102호	수도 요금	2023-09 ~2025-07	12회	26,740원	2025.9.11 ~ 2025.09.23 2025. 9.25~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13004322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501 102호	이*원	610408-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6번길 25-22 203	26,74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41464013	중구 동호로11마길 20-3, 101호	수도 요금	2024-03 ~2025-07	9회	18,030원	2025.9.11 ~ 2025.09.23 2025. 9.25~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521130043322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501 101호	이*원	610408-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6번길 25-22 203	18,03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41464031	중구 동호로11마길 20-3, 201호	수도 요금	2022-07 ~2025-07	19회	199,130원	2025.9.11 ~ 2025.09.23 2025. 9.25~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521130043 22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501 201호	이*원	610408-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6번길 25-22 203	199,13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41464068	중구 동호로11마길 20-3, 402호	수도 요금	2027-07 ~2025-07	19회	185,350원	2025.9.11 ~ 2025.09.23 2025. 9.25~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13004322 ‣반송사유 : 수취인 불명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501 402호	이*원	610408-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6번길 25-22 203	538,93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285455	용산구 신흥로27길 6-9	수도 요금	2023-07 ~2025-05	13회	538,93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13004324 ‣반송사유 : 주소불명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1165	최*석	801208-1******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2길 27-4	538,93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287188	용산구 신흥로32길 33	수도 요금	2022-07 ~2025-07	19회	42,18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13004320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355	임*희	640825-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216번길 50 301호	42,18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294402	용산구 신흥로 80-4	수도 요금	2027-07 ~2025-07	19회	41,17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13004488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5-17	사회적협동조합에이치에이치**해방촌	27015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80-4, 지층	41,17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294411	용산구 신흥로 80-4	수도 요금	2027-07 ~2025-07	19회	147,41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13004488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5-17	사회적협동조합에이치에이치**해방촌	27015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80-4, 지층	147,41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297660	용산구 신흥로11길 43-4	수도 요금	2023-05 ~2025-07	14회	64,07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152113004487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20-5	사회적협동조합***과함께	210151-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맏내로 158-11 203호	64,07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298324	용산구 신흥로11나길 19,	수도 요금	2023-07 ~2025-07	13회	163,67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152113004486 ‣반송사유 : 수취인 불명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33-18	사회적협동조합**	27015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11나길 19	163,67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303713	용산구 신흥로 43	수도 요금	2022-07 ~2025-07	19회	365,41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152113004318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토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38-10	오*근	470106-1*****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43	365,41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306786	용산구 소월로30길 53-3	수도 요금	2022-11 ~2025-07	17회	35,78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13004323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토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5-1503	김*정	821210-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47가길 27	35,78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40357014	용산구 신흥로29길 18, 301호	수도 요금	2024-05 ~2025-07	8회	132,56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13004333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9-7 301호	이*영	991018-2*****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29길 18 301호	132,56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00345470	중구 동호로11길 110-1	수도 요금	2023-01 ~2025-07	8회	1,339,930원	2025.9.26 ~ 2025.10.10 2025.10.13~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13004485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1233	최*금	741001-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4길 55-3 212동 501호	1,339,930	2025-11-16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32105693	중구 동호로11바길 35-10	수도 요금	2022-07 ~2025-07	19회	876,020원	2025.9.15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320 44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1792 목화아트빌 제2층 제204호	황*이	650126-2******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바길 35-10, 204호	876,020	2025-11-10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0030951	용산구 한강대로 379	수도 요금	2022-08 ~2025-04	17회	257,300원	2025.08.11 ~ 2025.08.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152112001439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42	남*현 조*희	710910-1***** 690621-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44 103동 602호	257,300	2025-10-10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0030951	용산구 한강대로 379	수도 요금	2022-08 ~2025-04	17회	257,300원	2025.08.11 ~ 2025.08.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152112001439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42	조*정	760321-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44 105동 802호	257,300	2025-10-10

3.「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재산압류통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체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으실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신용현 주무관(☎ 02-3146-211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96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김*귀 등 523명
4.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31.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5. 12. 11. ~ 2025. 12. 31.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181마74**	김*귀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9-08 17:2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	242다89**	안*선	경기도 용인시	2025-10-10 12:2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	130호64**	주*회*벳*	경기도 안양시	2025-10-30 09:43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4	26노38**	김*관	경기도 김포시	2025-09-22 08:39	개화동(개화교, 개화사거리 방향)	50,000
5	23오41**	오*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1-05 18:2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6	93소07**	노*섭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11-05 07:2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7	222허91**	이*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0-27 16: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	153모22**	L*X*Y*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11-05 07: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9	122모94**	최*숙	경기도 성남시	2025-10-09 21:0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0	서울31사85**	김*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10-08 23:5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1	153하96**	(*)*일*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11-01 11:2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2	132다83**	Z*A*G*U*N	경기도 부천시	2025-11-01 21:46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13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1-03 10:50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14	28다79**	Q*N*E*H*A*	충청북도 청주시	2025-11-01 16:2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5	33고12**	김*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1-03 17:1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6	26도69**	C*S*A*E*A*Y*S*O*Y*I*H*E*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1-05 17:3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7	62서07**	이*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11-05 18:0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8	827고34**	주*회*유*원*엔*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1-03 08:4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9	16부19**	김*호	경기도 여주시	2025-11-01 15:3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0	189라37**	L*U*A*	경기도 평택시	2025-11-04 13:2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1	72오80**	(*)*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1-03 18:06	개화동 영신PVC 상사	60,000
22	74서22**	유*수	경기도 화성시	2025-11-05 10:3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60,000
23	서울31자45**	최*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11-07 20:1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4	147거73**	윤*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1-03 20:3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5	81로79**	선*수	전라남도 보성군	2025-11-03 11:5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26	52거18**	조*원	경기도 용인시	2025-11-04 09:0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7	서울31아66**	문*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1-04 12:5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8	인천98아78**	(*)*산*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11-04 17:19	개화동 영신PVC 상사	60,000
29	313보68**	B*T*U*H*L*A*U*Z*ㅣ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11-04 20:1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0	12러22**	주*회*제*비*스*퍼*	경기도 고양시	2025-11-04 12:2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1	65구04**	신*승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1-05 13:2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2	135머65**	하*호	경기도 김포시	2025-11-05 09:4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3	141부28**	남*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9-23 07:40	고촌IC~ 개화교	50,000
34	150다83**	유*순	경기도 남양주시	2025-11-06 00:1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5	06거45**	주*회*세*디*스	충청남도 천안시	2025-11-07 19:0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6	82두37**	남*봉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11-07 08:1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37	서울31사57**	박*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10-31 20:4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8	129버70**	오*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1-04 17:5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9	120수57**	이*택	인천광역시 서구	2025-11-03 09:3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40	140더66**	박*남	경기도 성남시	2025-09-23 08:03	내곡ic~염곡ic	50,000
41	236수48**	이*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05 09:59	화랑대사거리~화랑대역	50,000
42	152누84**	이*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1-06 08:3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3	167다34**	안*호	경기도 성남시	2025-11-06 09:1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4	82누25**	김*자	경기도 의정부시	2025-11-06 20:1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5	경기86아57**	L*U*I*N*G*N	경기도 안산시	2025-11-07 07: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6	242구88**	주*회*별*이*씨	경기도 남양주시	2025-11-07 07:2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47	827고34**	주*회*유*원*엔*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1-07 08:4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8	289더96**	(*)*트*	경기도 의정부시	2025-11-07 19:4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9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11-05 20:1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50	58누54**	한*근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1-09 14:3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1	377어14**	주*회*지*이*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11-08 19:0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52	92어04**	박*진	경기도 부천시	2025-11-07 13:2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3	09부35**	이*찬	경기도 성남시	2025-11-07 07:5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54	경기35바58**	방*근	경기도 안산시	2025-11-07 09:3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55	284조99**	주*회*그*디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10-09 23:3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6	54너54**	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1-06 14:2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7	101하89**	황*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27 07:1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8	172허25**	정*진	경기도 오산시	2025-10-06 00:2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59	68오19**	Y*L*O*H*V*D*H*M*O*I*R*K*I*U*L*	충청남도 아산시	2025-11-01 17:3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60	85고05**	신*범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1-05 17:1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61	20모42**	최*훈	경기도 용인시	2025-11-07 19:45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62	32로34**	김*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10-31 08: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63	151더50**	(*)*한*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1-07 20:3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64	57소51**	이*운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31 07:5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65	53더55**	함*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11-05 11: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6	37로25**	B*K*O*I*K*O*O*A*R*R*H*N*U*K*O*J*N*G	경상남도 김해시	2025-11-05 09:3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67	14부90**	김*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5-11-08 18:47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50,000
68	50로49**	이*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10-25 11:18	녹번역교차로~홍은사거리	50,000
69	98버67**	(*)*울*너*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11-04 08:3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60,000
70	104허79**	㈜*터*라*즈*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11-09 19:1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71	45조89**	송*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11-07 20:3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2	124어39**	이*근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11-03 10:0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3	348머39**	윤*석	경기도 양주시	2025-11-03 09:4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74	189라37**	L*U*A*	경기도 평택시	2025-11-04 13:2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5	서울31사54**	이*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11-05 07: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6	96마85**	주*나*비*타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1-07 17:1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77	31오18**	이*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11-07 09:3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78	83어02**	임*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11-07 08:43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79	231부10**	전*숙	경기도 광주시	2025-11-03 07: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0	119도89**	최*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12 15:4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81	경기92자72**	콜*온*주*	경기도 성남시	2025-11-09 20:4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2	101하89**	황*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23 07:1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83	66무27**	T*E*K*M*U*G	충청남도 천안시	2025-11-07 14:2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4	21가90**	K*M*A*E*T*N*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11-08 12:0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85	172나55**	C*I*I*N*F*N	경기도 화성시	2025-11-06 12:4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86	19나27**	강*	경기도 부천시	2025-11-07 19: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7	80거93**	최*규	경기도 시흥시	2025-11-07 15:5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88	156조68**	주*희*후*	경기도 성남시	2025-11-07 09: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9	814주84**	윤*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0-31 17:4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90	서울31자71**	고*남	경기도 의정부시	2025-10-31 19:2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91	서울32자20**	권*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11-03 09:2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92	30소09**	최*정	충청남도 천안시	2025-11-04 18:5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93	13고01**	P*K*H*N*I*	경기도 안산시	2025-11-04 14:0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94	86부69**	주*회*세*프*건*	경기도 남양주시	2025-11-05 20: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5	57서31**	임*수	경기도 광주시	2025-11-05 17: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6	97더07**	주*회*도*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1-05 13:1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7	109호23**	김*희	인천광역시 중구	2025-10-24 17:01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98	87나29**	Q*A*X*A*Z*E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11-03 08:0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9	351서74**	남*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11-05 18: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00	54버09**	이*숙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11-05 19:1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01	220호70**	윤*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5-10-09 21:19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02	38다24**	N*M*G*R	충청남도 천안시	2025-11-07 10:0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03	159호28**	윤*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5-10-28 07:3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04	56나58**	오*미	경기도 성남시	2025-10-31 17: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5	51마66**	방*배	경기도 광주시	2025-11-03 08: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06	경기70아61**	주*회*케*라*투*	경기도 김포시	2025-10-30 18: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	60,000
107	82두43**	주*회*오*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10-30 11: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50,000
108	92우39**	황*활	대구광역시 서구	2025-11-04 14:3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09	서울38아89**	김*식	경기도 부천시	2025-11-06 18:1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10	23누33**	(*)*위*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1-03 09:4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11	48부56**	이*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31 09:0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12	서울32아11**	김*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1-06 11:0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13	231허37**	우*개*(*)	충청북도 청주시	2025-10-16 18:3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14	143호42**	양*우	충청남도 천안시	2025-10-10 19:5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15	67로63**	김*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11-06 07: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6	46더02**	박*표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11-07 17:2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17	05조43**	이*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6 15:44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50,000
118	190오96**	김*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11-05 08:17	봉림교~난곡사거리	50,000
119	95가42**	주*회*리*디*	서울특별시 중구	2025-11-05 16:3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20	23루34**	임*주	경기도 남양주시	2025-10-06 23:44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21	92모36**	배*호	경기도 이천시	2025-11-07 08:0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22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1-06 10:15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123	185무71**	김*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1-01 11:0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24	46노88**	윤*수	경기도 용인시	2025-11-01 11:1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25	246보70**	황*선	경기도 안양시	2025-09-26 15:39	압구정역교차로~가로수길교차로	50,000
126	서울31바88**	한*웅	서울특별시 중구	2025-09-26 15:43	압구정역교차로~가로수길교차로	50,000
127	59두01**	조*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8-29 08:18	고촌IC~개화교	50,000
128	384더80**	손*자	경기도 성남시	2025-10-14 08:40	복정역~장지교교차로	50,000
129	177허73**	(*)*앤*리*치*정*성*	서울특별시 중구	2025-09-30 20:35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130	03소03**	H*S*A*N*M*M	경기도 파주시	2025-11-07 08:3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31	경기88사41**	김*태	경기도 남양주시	2025-11-07 10:0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2	50고57**	서*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11-07 08:4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33	34소81**	이*용	경기도 고양시	2025-11-07 18:3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34	213거33**	허*이치옹	서울특별시 중구	2025-09-29 23:38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35	815로41**	현*철	경기도 양평군	2025-11-04 13:3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36	40도70**	H*N*W*N*I	경기도 부천시	2025-11-05 15:14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137	63모09**	이*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0-30 08:25	개화교~ 개화사거리	50,000
138	20소28**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11-02 12:37	청량리역~ 경동시장교차로	50,000
139	228호62**	오*연	경기도 성남시	2025-10-09 20:2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40	서울32사65**	김*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1-03 16:32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41	133더97**	P*K*V*T*A*A	경기도 안산시	2025-11-03 11:5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42	154주27**	T*V*H*N*A*A*G*S*R	충청남도 홍성군	2025-11-04 18:4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43	206도65**	L*X*E*E*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11-06 16:5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44	255오39**	주*회*바*이*티	경기도 이천시	2025-11-08 13:03	북가좌동 DMC래미안이편한세상아파트	50,000
145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1-09 10:39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146	123노77**	김*현	충청남도 논산시	2025-10-31 20:4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47	175노75**	이*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5-11-06 08:3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48	05도09**	변*호	인천광역시 중구	2025-11-06 08:3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49	83보16**	이*원	경기도 용인시	2025-11-02 14:4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50	221다58**	이*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1-03 09:1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51	서울82배19**	박*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1-03 07:5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2	서울80배43**	박*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1-03 17:3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53	336로99**	장*준	경기도 고양시	2025-11-03 19:5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54	13고01**	P*K*H*N*I*	경기도 안산시	2025-11-04 17:4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55	227더39**	이*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11-04 09:4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6	21다61**	볼*디*(*)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11-04 19:1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57	353노18**	이*호	인천광역시 서구	2025-11-04 19:5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58	24노69**	주*회*지*컴*니	경기도 의정부시	2025-11-06 17:1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59	서울중타94**	심*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26 17:43	종로4가교차로~종로5가교차로	40,000
160	96소92**	신*산*개*주*회*	경기도 화성시	2025-11-06 09:2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61	252어22**	민*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1-07 14: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62	서울영등포카21**	J*N*I*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8-10 18:32	수정아파트앞교차로~여의도선착장교차로	40,000
163	275수72**	주*회*알*	경기도 양평군	2025-11-04 17:3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64	371모63**	박*진	충청북도 청주시	2025-10-31 15:1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65	38다82**	남*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5-11-02 19:26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66	48우56**	김*진	서울특별시 중구	2025-11-04 18:4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67	111도81**	정*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11-05 09:3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68	174루19**	김*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01 20:1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69	21로05**	이*현	경기도 남양주시	2025-11-03 09: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70	83버60**	임*민	경기도 고양시	2025-11-03 17:46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71	53노15**	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11-06 08:1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72	179소75**	주*회*제*에*지	경기도 시흥시	2025-11-01 18:5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73	23버73**	T*R*E*A*I*H*R*U*A*G*I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5-11-02 17:2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74	63보43**	M*T*Y*M*K*T*U*O*H*	경기도 남양주시	2025-11-06 16:07	수색동 경의중앙선 수색역1번출구 공영주차장	50,000
175	45더24**	J*A*G*O*G*I*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11-06 18:2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76	320부72**	반*현	경기도 의왕시	2025-11-08 14:1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77	95가42**	주*회*리*디*	서울특별시 중구	2025-11-05 16:3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78	177호44**	L*Y*N*G*N*	경기도 시흥시	2025-10-01 17:28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79	104호16**	(*)*몰*노	서울특별시 중구	2025-10-14 07: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80	48부56**	이*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1-03 08:2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81	340러60**	김*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11-02 14:3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82	32모96**	김*주	경기도 하남시	2025-11-05 17:3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83	29저17**	M*K*S*D*L*E*Y*K*Y*B*K*H*Y*U*L*J*N*G	경기도 용인시	2025-11-05 19:1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4	334버61**	이*익	경기도 부천시	2025-11-07 18:1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85	179하34**	L*X*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0-09 23:1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86	232다18**	김*숙	충청남도 논산시	2025-11-02 14:2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87	222버22**	이*훈	경기도 파주시	2025-11-05 18:1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88	193허67**	주*회*씨*트*이*	경기도 구리시	2025-10-10 13:16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189	277구13**	주*회*리*스*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28 19:2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90	228호62**	오*연	경기도 성남시	2025-10-09 18:2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91	330소16**	최*천	경기도 남양주시	2025-11-03 08:0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92	02가17**	S*T*O*O*S*N*T*L*O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5-11-02 17:1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93	35부50**	Y*N*I*N*Z*E	경기도 평택시	2025-11-02 18:4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94	122버59**	김*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1-03 08:3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95	16부19**	김*호	경기도 여주시	2025-11-01 15:3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96	51더88**	장*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11-04 07:1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97	서울36바19**	이*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10-31 12:2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98	290보35**	(*)*추*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11-03 17: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99	27주52**	신*진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11-01 12:0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00	28수07**	안*	경기도 남양주시	2025-11-07 07:3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01	249로26**	김*기	대전광역시 서구	2025-11-02 10:3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02	314고87**	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11-09 17:22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03	203소83**	양*주	경기도 안산시	2025-11-07 19:1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04	320부72**	반*현	경기도 의왕시	2025-11-08 14:2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05	95가42**	주*회*리*디*	서울특별시 중구	2025-11-08 16:4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06	51부59**	조*정	충청북도 충주시	2025-10-31 11:4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07	231허11**	장*승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0-31 17: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08	160호37**	정*희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10-31 19:2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09	08마79**	서*진	경기도 성남시	2025-10-31 07: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10	006더62**	임*을	경기도 성남시	2025-11-05 09:0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6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1	20러25**	이*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11-01 05:48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212	191조76**	남*우	경기도 성남시	2025-11-05 09:0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13	290수80**	윤*삼	경기도 남양주시	2025-11-05 20:0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14	95가42**	주*회*리*디*	서울특별시 중구	2025-11-05 16:3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15	경기83사87**	서*성	경기도 부천시	2025-11-05 17:2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16	157너77**	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1-03 08:10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217	212러28**	오*진	경기도 성남시	2025-10-21 17:1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18	73누88**	Y*O*C*A*G*O*	인천광역시 서구	2025-11-01 11:27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219	71거78**	방*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11-03 13:2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60,000
220	24보66**	C*I*O*G	인천광역시 서구	2025-11-05 18: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21	75오49**	유*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11-07 18:5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60,000
222	서울31사44**	전*일	경기도 남양주시	2025-11-07 18:58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23	339어71**	백*옥	충청남도 아산시	2025-11-04 09:3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24	35주40**	J*N*H*N*J*N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11-09 02:37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50,000
225	369마65**	조*태	경기도 안양시	2025-11-07 17:3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26	48조51**	주*회*마*홀*스	경기도 고양시	2025-11-05 12:5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27	서울31사76**	송*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11-07 17:4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28	51우41**	농*회*법*주*회*엘*야	경기도 안성시	2025-11-08 11:4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29	190너94**	이*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9-25 09:49	은천삼거리~봉천로사거리	50,000
230	28더70**	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17 11:58	영등포역교차로~청과시장입구교차로	50,000
231	90우83**	김*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9-26 08:15	상계백병원교차로~중계역	50,000
232	146다42**	정*호	경기도 광주시	2025-09-25 13:46	사천교~사천교교차로	50,000
233	177하96**	주*회*우*시*템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0-09 21:2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4	서울31자31**	권*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31 09:3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35	804다39**	최*욱	경기도 양주시	2025-11-01 17:4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6	23우21**	안*주	경기도 성남시	2025-11-03 08:4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37	128저46**	박*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1-03 20:2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38	241노10**	A*I*O*O*S*N*A*B*K*O*I*O*I*H	경기도 평택시	2025-11-01 19:3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39	335어87**	강*구	경기도 고양시	2025-10-31 18:5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40	812머37**	주*회*오*킹	경기도 남양주시	2025-11-03 19:2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41	18루33**	오*환	광주광역시 북구	2025-11-01 15:29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42	40서85**	L*X*E*H*N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5-11-01 18:2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43	214서92**	김*정	경기도 용인시	2025-10-09 23:4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44	395너52**	민*규	경기도 안성시	2025-11-04 19:3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45	31모37**	장*란	충청남도 천안시	2025-11-02 14:2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46	서울31사52**	이*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1-05 20:3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47	700노79**	정*학	경기도 부천시	2025-11-01 15:34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60,000
248	21다76**	김*겸	경기도 시흥시	2025-10-31 07:1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49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11-04 17:3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50	354수51**	정*호	경기도 화성시	2025-10-18 11:0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51	34저27**	김*선	경기도 남양주시	2025-11-06 20:46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252	103루75**	탑*룹*식*사	경기도 평택시	2025-11-07 10:4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53	80루09**	(*)*어*스*리*	경기도 성남시	2025-11-07 09:3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54	36고26**	K*N*P*V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11-08 15:0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55	164두38**	조*식	경기도 남양주시	2025-11-05 09:12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56	46노88**	윤*수	경기도 용인시	2025-11-01 11:1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57	서울32바86**	이*만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1-01 01:06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58	115하98**	주*회*알*렌*카	충청북도 괴산군	2025-11-02 01:02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59	73누88**	Y*O*C*A*G*O*	인천광역시 서구	2025-11-01 19:50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260	31모37**	장*란	충청남도 천안시	2025-11-02 14:2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61	서울32아41**	김*원	경기도 동두천시	2025-09-12 09:55	연희ic~연세대교차로	50,000
262	01무87**	블*펄*라*빗*쿼*유*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9-22 07:02	운중중학교(여의동로3길)~운중중학교앞교차로	50,000
263	인천30바35**	H*P*T*R*N*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9-22 20:48	여의대로2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4	03라22**	박*영	인천광역시 서구	2025-11-03 17:2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65	24어38**	김*학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31 09:34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66	168머50**	유*열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1-03 19:4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67	157조92**	안*광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5-11-09 12:1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68	231허37**	우*개*(*)	충청북도 청주시	2025-10-29 18:3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69	13누96**	김*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5-11-04 20:2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70	91나42**	김*봉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0-31 09:2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71	31모37**	장*란	충청남도 천안시	2025-11-02 14:2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72	19노17**	정*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01 18:26	태릉~화랑대사거리	50,000
273	243조51**	정*광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0-23 18:57	태릉~화랑대사거리	50,000
274	18누34**	이*희	경기도 광주시	2025-10-31 09:2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75	179거58**	김*현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5-11-05 20: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76	16나59**	유*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11-05 20:01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77	106구29**	송*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11-05 09:43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278	265오94**	신*숙	경기도 의정부시	2025-11-05 08:13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79	266너11**	이*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11-07 15:4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80	102조18**	신*중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11-07 17:5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81	237너60**	신*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11-06 18:2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82	71구23**	주*회*보*매*도*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11-06 18:3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60,000
283	340보60**	주*회*자*이*디	부산광역시 사하구	2025-11-08 20:0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84	36고26**	K*N*P*V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11-08 15:0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85	249로26**	김*기	대전광역시 서구	2025-11-08 11:2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86	서울32사89**	임*철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1-07 20: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87	174보45**	S*N*J*N*Y*N*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10-31 08:0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88	24보34**	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11-04 18:2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89	344라20**	민*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9-28 19:4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290	69버54**	이*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10-01 16:55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91	346너76**	사*-*광*교*화*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14 17:1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92	82두37**	남*봉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11-07 08:2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93	29수20**	(*)*해*속*광	경기도 이천시	2025-11-08 16:3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94	서울31아80**	김*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5-10-28 18:54	태릉~화랑대사거리	50,000
295	146하94**	홍*배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30 18: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6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31 10:29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297	193하93**	임*범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9-27 19:2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98	서울32자41**	주*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10-31 19: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99	서울32사68**	이*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10-31 09:2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00	서울31사85**	박*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0-31 10:5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01	248도49**	J*N*U*F*N*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10-31 13:3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02	304버85**	이*경	전라남도 순천시	2025-11-03 17: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03	372오21**	이*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11-01 13:39	무학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04	201로13**	임*원	경기도 화성시	2025-11-03 07: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05	서울31바21**	정*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11-03 18:3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06	257더48**	이*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5-11-03 09:2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07	15모07**	박*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10-31 17:0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08	93무05**	박*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11-03 08:1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09	357러52**	주*회*자*테*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9-30 17:4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10	179루34**	B*I*U*N*N*	경상북도 영주시	2025-11-01 15:1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11	47주69**	주*회*매*벅*	경기도 김포시	2025-11-01 18:3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12	13보43**	홍*성	경상남도 김해시	2025-10-31 11:0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13	824누28**	김*열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5-10-31 09:04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314	77고85**	임*신	경기도 포천시	2025-11-03 09:01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60,000
315	10구47**	주*회*영*디*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1-03 10:3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16	358무62**	J*N*O*G*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11-03 18:0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17	258러75**	T*L*K*E*M*S*J*A*H*S*A*N*H*N	경기도 시흥시	2025-11-01 20:03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18	114오55**	김*환	경기도 시흥시	2025-11-03 06:21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19	221하74**	천*린	충청남도 천안시	2025-10-29 09:11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320	서울31아15**	한*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1-04 20:2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21	140도39**	(*)*성*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11-04 14:5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22	87수27**	이*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11-04 18:5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23	006라63**	박*자	인천광역시 동구	2025-11-04 04:4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60,000
324	서울32자19**	김*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1-05 19:5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25	95조08**	논*산*(*)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11-05 08:5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326	55나26**	이*규	경기도 파주시	2025-11-05 09:4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27	372누58**	유*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10-27 11:4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28	94주27**	주*회*하*디*축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1-06 07:51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329	서울06거75**	박*애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11-06 08:06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60,000
330	서울31사38**	강*성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11-06 18:18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331	205마33**	천*일	인천광역시 서구	2025-11-06 09:4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32	805수43**	윤*한	경기도 부천시	2025-11-06 18:5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33	49도35**	주*회*예*라*팅	서울특별시 중구	2025-11-06 17:0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34	15더88**	A*M*N*A*E*M*H*M*E*A*D*L*A*E*M*Y*D*	충청남도 서산시	2025-11-07 15:2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35	95가42**	주*회*리*디*	서울특별시 중구	2025-11-07 17:4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36	384주98**	김*근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11-06 20: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37	66거49**	안*근	경기도 남양주시	2025-11-06 13:4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38	47서53**	이*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1-07 17:3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39	301로59**	김*주	경기도 광주시	2025-11-07 20:3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40	20모42**	최*훈	경기도 용인시	2025-11-07 19:5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41	21무13**	배*효	경기도 광주시	2025-11-07 09:3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42	196저69**	박*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1-07 19:17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343	177하96**	주*회*우*시*템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0-09 21:2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44	51주50**	노*탁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10-24 07:39	국립현충원~흑석역	50,000
345	143머25**	민*현	경기도 군포시	2025-10-24 07:39	국립현충원~흑석역	50,000
346	서울31사29**	김*운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9-30 07:38	국립현충원~흑석역	50,000
347	33주74**	이*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0-29 17:06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348	161저78**	F*N*J*N*C*N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11-07 18:3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49	서울89자82**	이*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1-07 19:0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50	61노07**	박*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1-06 19:2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51	95가42**	주*회*리*디*	서울특별시 중구	2025-11-08 16:4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52	51나20**	고*상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1-08 14:5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53	157조92**	안*광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5-11-09 12:1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54	31서15**	S*A*U*A*O*S*U*H*A*	대구광역시 서구	2025-11-09 15:1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55	88더56**	김*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11-07 08: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56	04마29**	최*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1-07 18: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57	839조11**	이*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11-07 08: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58	810러97**	성*오	경기도 광주시	2025-11-07 08:1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59	228호62**	오*연	경기도 성남시	2025-10-09 18:2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60	146호10**	정*구	경기도 부천시	2025-10-22 09:1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361	224호81**	장*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16 10: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62	301로59**	김*주	경기도 광주시	2025-11-07 20:3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63	59버53**	김*형	경기도 수원시	2025-11-01 10:2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64	236수88**	이*석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11-01 19:3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65	17우47**	박*석	경상남도 진주시	2025-11-03 17: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66	89조81**	(*)*광*획*성*점	충청북도 음성군	2025-10-31 07:1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67	65가09**	조*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10-31 17:3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68	180다90**	김*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5-11-04 07:5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69	02저62**	어*민*식*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11-05 09:1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70	90마01**	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11-05 08:2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71	307부26**	주*영	경기도 포천시	2025-11-06 10:4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72	34부78**	이*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5-11-08 10:0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73	96너29**	정*현	인천광역시 서구	2025-11-06 18:49	상계동 상계백병원	60,000
374	10서51**	L*G*I*U*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11-06 08:2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375	83부55**	이*구	경기도 구리시	2025-11-03 08:3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76	28다79**	Q*N*E*H*A*	충청북도 청주시	2025-11-01 16:1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77	11로72**	한*례	경기도 성남시	2025-11-03 19: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78	85저59**	김*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0-31 18:1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79	서울32아30**	손*목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11-03 18:4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80	10구47**	주*회*영*디*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1-03 10:3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81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31 17:36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382	231허37**	우*개*(*)	충청북도 청주시	2025-10-23 18:4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83	57우07**	김*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10-31 17:5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84	331어14**	김*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10-31 09:1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85	서울31사19**	이*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11-03 07: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86	220호40**	육*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10-27 13:26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387	241노10**	A*I*O*O*S*N*A* B*K*O*I*O*I*H	경기도 평택시	2025-11-01 19:4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88	272노28**	서*길	경기도 부천시	2025-11-05 17:3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89	36부51**	Q*A*X*U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11-06 21:3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90	259마84**	이*진	경기도 화성시	2025-11-08 18:3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91	148너62**	장*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11-08 18:4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92	126어16**	박*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03 14:1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93	36우38**	황*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11-03 18:3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94	42머84**	김*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11-02 06:37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95	서울31자73**	노*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11-05 11:11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396	263거23**	유*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11-03 07:34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397	176하47**	ㅂ*ㅌ*ㅅ*(*)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10-04 14:1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6-2 (여의도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98	68오18**	(*)*로*포*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1-03 11: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99	125하43**	주*회*천*렌*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11-07 15:0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00	86러79**	주*회*스*디*엑*	경기도 파주시	2025-11-07 17:3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01	05도87**	엄*용	충청남도 서산시	2025-11-03 08:0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02	395너52**	민*규	경기도 안성시	2025-11-04 19:3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03	24무35**	임*경	경기도 안양시	2025-11-04 08:0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04	104호22**	에*워*앤*트*스*리*유*책*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10-06 22:4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05	165허78**	남*윤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28 09:16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06	83보16**	이*원	경기도 용인시	2025-11-02 14:4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07	57누65**	김*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31 13:5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08	11주25**	이*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1-05 20: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09	27모72**	(*)*레*즈*트*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1-05 18:0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10	172허25**	정*진	경기도 오산시	2025-10-06 00:2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11	123부61**	J*N*H*N*D*	서울특별시 중구	2025-10-31 17:2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12	222호52**	박*희	경기도 김포시	2025-10-20 17:3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13	272수90**	최*모	경기도 수원시	2025-10-31 07:3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14	37모33**	정*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5-10-31 03:2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15	05도63**	이*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1-08 23:11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416	23오43**	김*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11-07 18:2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17	17더11**	신*목	경기도 하남시	2025-11-03 19: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18	59라09**	사*법*대*아*추*골*협*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11-06 08: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19	251노34**	주*회*아*돔	경기도 하남시	2025-11-06 08: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20	301로59**	김*주	경기도 광주시	2025-11-07 20:38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21	231허37**	우*개*(*)	충청북도 청주시	2025-10-30 17:5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22	50머10**	구*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10-31 18:1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23	서울31아50**	김*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1-06 09:3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24	254로91**	김*윤	경기도 김포시	2025-11-02 15:09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425	157조92**	안*광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5-11-09 12:1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26	77우09**	김*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1-04 18:30	개화동 영신PVC 상사	60,000
427	65가09**	조*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11-04 18:0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28	327가65**	심*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1-04 20:4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29	37부76**	주*회*서*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1-03 09:3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30	289주74**	김*숙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11-03 09:4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431	05루08**	이*철	경기도 의정부시	2025-11-05 20:3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32	57서31**	임*수	경기도 광주시	2025-11-06 17: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33	80무80**	박*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11-06 15:5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34	04저93**	김*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1-09 10:4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35	342로18**	김*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11-04 02:32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436	47도13**	(*)*은	경기도 남양주시	2025-11-07 20: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37	320부72**	반*현	경기도 의왕시	2025-11-08 14:1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38	95가42**	주*회*리*디*	서울특별시 중구	2025-11-08 16:4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39	59버53**	김*형	경기도 수원시	2025-11-01 10:2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40	06누34**	주*회*보*스*보*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10-31 14:57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441	28다79**	Q*N*E*H*A*	충청북도 청주시	2025-11-01 16:1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42	152부35**	조*희	경기도 의정부시	2025-11-05 20:23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43	370가24**	송*식	경기도 고양시	2025-11-05 19:2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444	31소76**	주*회*스*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1-03 07:5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45	57소46**	건*종*건*주*회*	경기도 김포시	2025-10-30 07:27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5 (여의도동)	50,000
446	12주82**	신*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5-11-06 08:42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447	서울31자11**	김*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11-06 07:47	삼성교교차로~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448	82도29**	김*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11-04 05:10	녹번역교차로~홍은사거리	50,000
449	23수93**	(*)*오*란*크*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9 15:40	종로4가교차로~종로5가교차로	50,000
450	47고62**	김*자	경기도 수원시	2025-11-08 17:5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51	222하74**	조*성	경기도 용인시	2025-10-30 09: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52	80모91**	연*농*농*회*법*주*회*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5-11-03 09:2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53	34저66**	양*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1-04 09:1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54	196하92**	김*희	경기도 시흥시	2025-10-18 17:0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55	30오26**	주*회*애*산*개*	대전광역시 서구	2025-11-04 18:3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56	43부07**	김*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0-31 17:3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57	816누59**	김*수	충청남도 천안시	2025-10-31 09:0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58	231어71**	주*회*브*아*솔*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10-31 20: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59	110하88**	이*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0-15 18: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60	135머65**	하*호	경기도 김포시	2025-10-31 17:1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61	24무35**	임*경	경기도 안양시	2025-11-05 08:0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62	53조39**	L*C*E*G*H*N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11-05 08:1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63	서울31자12**	강*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1-07 17:5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64	20모12**	(*)*스*코*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1-07 07:3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65	204너29**	주*회*신*은*육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11-08 08:0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466	228호16**	최*성	경기도 하남시	2025-10-01 10: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67	45어70**	A*H*E*O*J*V*K*I*A*D*V*L*U*L*	전라남도 영암군	2025-11-09 14:01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468	157조92**	안*광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5-11-09 14:2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69	371모38**	주*회*장*벽*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10-21 10:1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70	295루82**	손*경	경기도 고양시	2025-10-31 16:2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71	220호70**	윤*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5-10-09 21:1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72	109더88**	이*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10-11 15:42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473	66무27**	T*E*K*M*U*G	충청남도 천안시	2025-11-07 14:2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74	220하86**	이*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9-29 17: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75	24오60**	Z*E*G*H*N*H*	경기도 시흥시	2025-10-31 17:4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76	116거98**	조*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5-11-05 18:4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77	서울82바37**	황*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1-03 08: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78	서울32사89**	최*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1-07 14: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79	231노93**	임*필	경상남도 양산시	2025-11-07 08:45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80	154오47**	이*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1-08 07:4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81	17고18**	김*균	경기도 수원시	2025-11-08 09:09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82	172호43**	(*)*유*크*러*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5-10-18 10:4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83	231허37**	우*개*(*)	충청북도 청주시	2025-10-18 15:4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84	88더94**	이*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1-03 08: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85	816도74**	김*일	경기도 안산시	2025-11-03 08:1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86	69버09**	주*다*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31 20:3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487	83보16**	이*원	경기도 용인시	2025-11-02 14:4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88	서울31아32**	이*범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11-06 19:3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89	36고26**	K*N*P*V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11-08 15:0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90	84도78**	서*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11-07 13:1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91	290보68**	R*S*A*U*L*B*K*Y*A*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11-02 16:1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92	경기32바56**	장*현	경기도 광주시	2025-11-04 09:56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93	37조42**	최*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1-04 20:2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94	11저22**	한*규	경기도 수원시	2025-11-05 17:1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95	169하38**	김*원	경기도 성남시	2025-10-23 10:5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96	06소45**	박*서	경기도 의정부시	2025-11-06 17: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97	196호71**	기*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10-24 16:2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98	220호70**	윤*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5-10-09 21:1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99	39다20**	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11-04 09:2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00	65우04**	H*I*K*K*A*N*	경기도 부천시	2025-10-31 19:2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01	32러67**	최*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11-04 07:15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502	147너53**	서*근	경기도 연천군	2025-11-06 19:4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03	301누33**	S*I*H*U*Y*U*G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27 18:0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04	399부67**	양*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11-05 18:5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05	14구36**	김*래	경기도 남양주시	2025-11-07 14:1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506	12저92**	이*선	경상남도 김해시	2025-11-07 14:18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507	21로05**	이*현	경기도 남양주시	2025-10-31 09: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08	824루36**	양*경	경기도 고양시	2025-10-31 18:4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509	23버73**	T*R*E*A*I*H*R*U*A*G*I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5-11-02 17: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10	359너92**	최*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22 10:2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11	72허28**	방*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10-26 11: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60,000
512	14노76**	이*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1-01 23:27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513	270소81**	(*)*오*사	경기도 고양시	2025-11-06 18:3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14	141가18**	황*일	경기도 포천시	2025-11-06 19:4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515	354수51**	정*호	경기도 화성시	2025-10-18 11:0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16	81보12**	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11-07 18:5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17	48나41**	이*은	경기도 고양시	2025-11-03 18: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18	373고63**	정*석	경기도 의정부시	2025-10-31 18:4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519	24오60**	Z*E*G*H*N*H*	경기도 시흥시	2025-10-31 17:4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20	70허88**	홍*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0-17 17:32	개화동 영신PVC 상사	60,000
521	175허19**	(*)*일*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11-07 18:0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522	59구01**	송*금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10-31 17: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23	811누80**	도*엘*베*터*주*	경기도 화성시	2025-09-29 18: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 빙 서 류
범죄의 예방 ·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방문 없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가○○○○	○○○○년 ○○월 ○○일 ○○시 ○○분	○○로 ○○길 ○○주변 ○○○○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 - 제출자 주소 : ○○시 ○○구 ○○로 ○○,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앞면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종	이 륜 자 동 차	승 용 자 동 차	승 합 자 동 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진술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505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11월)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	204223	'25. 11. 07.	주식회사 앰진(AMGINE Inc.) 조양현 (110111-4889692)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8길 13, 수성위너스 5층 (문정동)
2	204224	'25. 11. 07.	주식회사 씨아이테크 (CITECH CO.,LTD.) 김대영 (110111-0074479)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업무동_동관 11층(가락동)
3	204225	'25. 11. 07.	주식회사 연은테크 전태욱 (110111-6921335)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23, 가산모비우스타워 1401-7호 (가산동)
4	204226	'25. 11. 07.	주식회사 아이온시큐리티 (Eye On Security Co., Ltd.) 조명래 (110111-4882068)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5, 고덕빌딩 2층 (서초동)
5	204227	'25. 11. 07.	주식회사 에이치앤엠 (H&M Co.,Ltd) 강윤구 (131111-024365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41길 17, 해수빌딩 201호 (서초동)
6	204228	'25. 11. 07.	주식회사 클라비(Clabi Co.,Ltd) 안인구 (110111-8363345)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1108호 (문정동)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7	204229	'25. 11. 07.	주식회사 동우유니온 이석화, 김준언 (110111-0684096)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68길 24 (신사동)
8	204230	'25. 11. 12.	디엔에이텍 주식회사 김대진 (110111-579672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96길 6, 엘지트윈텔 2010호 (삼성동)
9	204231	'25. 11. 12.	주식회사 휴먼플러스 유운영, 신호철 (110111-443218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에스케이브이1센터, 더블유 1302,1303호 (당산동4가)
10	204232	'25. 11. 12.	주식회사 흥해전설 최운경 (110111-5261188)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52, 303-1호 (장안동)
11	204233	'25. 11. 13.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앤씨 김병수 (134511-0227725)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빌딩 1233~1235호 (수서동)
12	204234	'25. 11. 17.	주식회사 아이나래컴퍼니 임서정 (110111-6743557)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88, 아이온스퀘어 620호 (장지동)
13	204235	'25. 11. 17.	씨에이치엠서비스 주식회사 양민수, 이용석 (110111-5333656)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111길 5, 씨에이치엠빌딩 (삼성동)
14	204236	'25. 11. 19.	주식회사 지오이스트 이병찬 (110111-8646874)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5길 28, 영등포디스테이트 1109,1110호 (양평동2가)
15	204237	'25. 11. 21.	주식회사 푸른기술플러스 연규문 (110111-0939867)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로4길 68, 리젠트오피스텔 308호 (구의동)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6	204238	'25. 11. 26.	주식회사 참마루건설 박인우, 박준홍 (110111-2998825)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빌딩 10층 (여의도동)
17	204239	'25. 11. 28.	타운보드중앙 주식회사 (Townboard Joongang Corporation) 박장희, 김종윤 (110111-0933566)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중앙일보빌딩 20층 (상암동)
18	204240	'25. 11. 28.	주식회사 태승전기 차일권, 김현희 (110111-6110558)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생각공장당산 비1303호 (당산동1가)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28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506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내역(11월)

연번	등 록 번 호 (처 리 일 자)	구분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	112865 ('25. 11. 07.)	분할된 법인	(주)동화이엔지 조혜진 [124411-0042276]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윗다락골길 2-3
			주식회사 동천전력 이영두 [134411-0008565]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128길 53, 삼익파크상가 1층 3호 (길동)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동천전력 이영두 [134411-0008565]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128길 53, 삼익파크상가 1층 3호 (길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2880
양도 · 양수(법인합병) 신고가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520호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9호(2018.9.5.) 사업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3호(2019.6.7.) 사업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5호(2020.3.25.) 사업계획변경 정정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9호(2020.07.14., 2020.07.17.) 사업계획변경 승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1-2호(2021.02.18.) 사업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4호(2021.09.27.) 사업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74호(2022.09.02.) 사업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25호(2023.06.08.) 사업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2호(2023.11.20.) 사업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11호(2024.12.20.)로 사업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87호(2025.10.28.)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된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결정, 「도시철도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통지받을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불능 등으로 미수령 한 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변경없음)
 가.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40-4번지 일원, 별내동 일원
 나. 규모

당 초	변 경	비 고
도시계획시설 면적 388,806.15㎡ - 차량기지 면적 197,400㎡ - 인입선 연장 4.9㎞ - 비상대피선 및 장비유치선 0.608㎞	변경없음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변경없음)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나. 성명 : 서울특별시장

4. 사업시행기간 : 변경(기간연장)
 가. 당초 : 사업계획승인일~2025년12월31일
 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일~2026년12월31일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
 가. 결정취지 :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철 도
    □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인입선)	진접읍 금곡리 853-2	진접읍 금곡리 산50-12	-	4,768	71,416.15	변경없음
기정	나	철도	일반철도 (차량기지)	진접읍 금곡리 산50-12	진접읍 금곡리 산37-4	-	1,329	305,063	변경없음
기정	다	철도	도시철도 (유치선)	별내동 산207-25	별내동 산327-12	-	608	9,661	변경없음
기정	라	철도	도시철도 (관리소)	별내동 산255	별내동 산255	-	41	2,666.0	변경없음

□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가	일반철도 (인입선)	- 변경없음 ·면적 : 71,416.15㎡ ·연장 : 4,768m	· 변경없음
나	일반철도 (차량기지)	- 변경없음 ·면적 : 305,063㎡ ·연장 : 1,329m	· 변경없음
다	도시철도 (유치선)	- 변경없음 ·면적 : 9,661㎡ ·연장 : 608m	· 변경없음
라	도시철도 (관리소)	- 변경없음 ·면적 : 2,666.0㎡ ·연장 : 41m	· 변경없음

(나) 도 로

□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68	중로2-14	별내동 산238-53임	일반도로		건고514호 (06.12.7)	

2) 공간시설

□ 도시·군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별내동 805-3공	1,855,.5	-	-	국고5호 (15.01.12)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S=1:1,000) : 게재생략

라.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음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변경없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사업명 :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 소재지 :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0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공용차량의 정수”를 “공무용 차량의 정수”로, “공용차량의 관리”를 “공무용차량의 관리”로 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같은 조 제11호 중 “업무용”을 각각 “일반 업무용”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승용·승합용·화물용”을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승합용·화물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별표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업무 승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업무용”을 “일반 업무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승용·승합용·화물용”을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승합용·화물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 시책상의 이유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보험가입 및 자동차 검사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무용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공용차량관리대장”을 “공무용 차량관리대장”으로 한다.

제24조제5호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용차량의 직접 운행”을 “공무용 차량의 직접 운행”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차량의 차종 · 차형 · 배정대상 · 기준정수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제3조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기준정수	최단운행 기준연한
승 용 (전 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교육감 ○ 부교육감	각 1대	· 최단운행연한 :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 이상
		○ 교육장	1대	
승 용 (의전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본청	1대	· 최단운행연한 :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 이상
승 용 (**일 반** 업무용)	중형·소형·경형 및 다목적형	○ 본청 ○ 각급기관	기능·업무량·조직규모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최소대수	· 최단운행연한 :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 이상(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승합용 (**일 반** 업무용)	대형·중형·소형			
화물용 (**일 반** 업무용)	대형·중형·소형			
특수용 (**일 반** 업무용)	특수작업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특수자동차)			

비고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전기·수소)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차형은 배기량(cc)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각급 교육기관이 승용 차량 중 일반업무 대형 차량으로 관리·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을 일반업무 승용 차량으로 전환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공 무 용 차 량 관 리 대 장

기관(학교)명 :

등록번호 등 록 일	승인 구분	승인문서번호 승인 번호 (승인일자)	차종	차형	차 명 배기량	연식	차 대 번 호	취득 구분	용 도	비 고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상위 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명칭 및 별표 정비 등 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통일성 제고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의무화) 조문 신설을 통한 공무용 차량의 운영 · 관리 방식 개선

다. 사고 시 차량 교체 요건 중 차량 수리와 관련된 절차 강화 · 보완

2. 주요내용

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제명 및 제1조, 제2조의2, 제7조, 제8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5장 제목, 별지제8호 서식)

- 용어의 명확화 및 혼동 방지(‘공용차량’ 을 ‘공무용 차량’ 으로)
- 차량 용도의 구분 명확화(‘업무용’ 을 ‘일반 업무용’ 으로, ‘승용’ 을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 으로)

나. ‘전용차량 교체 및 용도변경 기준’ 개정사항 반영(제3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한 전용차량의 교체 또는 용도변경 기준 신설

다. 사고 시 차량 교체 요건(차량 수리) 강화 · 보완(제10조)

- 사고로 인한 차량 교체 요건(규칙 제10조제1항제3호) 중 차량 수리와 관련된 절차의 개정 사항 반영 등 조문 일괄 정비
- 차량 수리 내역, 차량 운행의 적합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해 정비업체의 검사확인 절차를 필수요건으로 강화한 취지 반영

라. 차량 의무보험 가입 · 검사 및 정보 게시 의무화(제16조의2)

- 공무용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 정기검사 실시, 차량 이용자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 조항 신설[국민권익위원회 권고]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운행 방지 및 정기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방지로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방식 개선

마.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별표 정비(별표)

- 각 차종별 ‘업무용’ 을 ‘일반 업무용’ 으로 용어 변경
- 승용(전용)의 교체 요건 중 ‘최단운행연한(내용 연수)’ 요건 삭제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1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교지·시설물 임차기간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교지·시설물 임차기간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2월 11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 교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정함으로써, 교육의 안정성과 학교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차기간) ①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학교등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임차기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임차기간의 예외) ① 외국인학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제2조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교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임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적용받는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임차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2. 교지, 시설물의 신축 또는 매입 등 장기부지 확보를 추진 중이나, 실제 이전 또는 사용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화재, 붕괴,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② 외국인학교등이 제1항에 따른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4조(임차기간 변동사항의 알림) 외국인학교등은 교지 또는 시설물 임차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 임차기간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교육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외국인학교등이 10년 미만으로 임차 중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규칙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2025. 4. 8.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 등”)이 교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임차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시 ·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나. 이에 서울 지역 외국인학교등의 평균 수업연한과 「초 · 중등교육법」 상 유사한 성격을 지닌 다른 각종학교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교 운영의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교지 · 시설물 임차기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규칙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제1조)

나.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규정함 (제2조)

다.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임차기간의 예외로 둘 수 있는 사항을 정하되, 그 최소한의 기간도 5년 이상으로 규정함 (제3조)

라.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 임차기간에 관한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제4조)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5-469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2026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 조기 반영
   나. 일반직공무원 정·현원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원 조정
   다.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에 따른 정원 조정
   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직속기관 포함)
   : 6급 (감)3명, 7급 (증)5명, 8급 (증)4명, 계 (증)6명
   ○ 교육지원청
   : 6급 (증)1명, 8급 (증)1명, 계 (증)2명
   ○ 각급학교
   : 5급 (증)1명, 6급 (증)18명, 7급 (감)1명, 8급 (감)26명, 계 (감)8명
   나. 일반직공무원 직렬별·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교육행정 5급 (증)2명, 교육행정 또는 시설 5급 (감)1명, 계 (증)1명
   ○ 6급: 교육행정 6급 (증)16명, 방송통신 6급 (감)1명, 시설관리 6급 (증)1명, 계 (증)16명
   ○ 7급: 교육행정 7급 (증)18명, 시설관리 7급 (증)1명, 사무운영 7급 (감)15명, 계 (증)4명
   ○ 8급: 교육행정 8급 (증)2명, 운전 8급 (감)1명, 시설관리 8급 (감)21명, 사무운영 8급 (감)1명, 계 (감)21명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10층 행정관리담당관(우 03178)
   ○ 이메일: jeunsan@sen.go.kr(※ 전화문의: 02-2282-8644)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927	6	1,800	1,492	4,629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일반직	일반직 계		7,157	6	1,521	1,155	4,475
	2 · 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3급	부이사관	9	–	9	–	–
	3 · 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4급	소계	44	–	33	11	–
		서기관	39	–	29	10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	–	4	1	–
	4 · 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7	–	7	–	–
	5급	소계	344	1	150	61	132
		교육행정	254	1	88	47	118
		행정	6	–	6	–	–
		사서	31	–	31	–	–
		보건	1	–	1	–	–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	4	–	6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3	2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공업 또는 시설	20	–	9	11	–
		교육행정 · 공업 또는 시설	6	–	–	–	6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
	6급	소계	2,066	5	522	334	1,205
		교육행정	1,341	5	230	204	902
		전산	58	–	30	28	–
		사서	130	–	119	11	–
		공업	14	–	12	–	2
		녹지	–	–	–	–	–
		보건	17	–	7	10	–
		식품위생	6	–	4	–	2
		간호	5	–	5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시설	41	–	18	23	–
		방송통신	–	–	–	–	–
		시설관리	305	–	42	11	252
		운전	4	–	2	–	2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10	–	4	–	6
일반직	6급	열관리운영	21	–	11	–	10
		사무운영	59	–	22	12	25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 · 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11	–	2	9	–
	7급	소계	2,714	–	563	515	1,636
		교육행정	1,759	–	245	368	1,146
		전산	62	–	46	16	–
		사서	173	–	173	–	–
		공업	20	–	8	12	–
		녹지	–	–	–	–	–
		보건	30	–	16	14	–
		간호	5	–	5	–	–
		시설	45	–	18	27	–
		시설관리	514	–	24	15	475
		운전	12	–	3	6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56	–	11	33	12
		교육행정 또는 사서	3	–	3	–	–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보건 또는 식품위생	–	–	–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3	7	–
	8급	소계	1,948	–	223	223	1,502
		교육행정	1,257	–	65	119	1,073
		전산	22	–	11	11	–
		사서	84	–	84	–	–
		공업	13	–	1	12	–
		보건	21	–	4	17	–
		시설	49	–	7	42	–
		시설관리	475	–	43	6	426
		운전	9	–	1	5	3
		전기운영	–	–	–	–	–
일반직	8급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9급	소계	–	–	–	–	–
		시설관리	–	–	–	–	–
		운전	–	–	–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전문 경력관	소계	7	–	7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제작PD	1	–	1	–	–
		평생교육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다군	4	–	4	–	–
		속기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연구사	소계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별정직	별정직 계		8	–	8	–	–
	4급 상당(비서)		1	–	1	–	–
	5급 상당(비서)		4	–	4	–	–
	6급 상당(비서)		3	–	3	–	–
특정직	특정직 계		761	–	270	337	154
	장학관·교육연구관	소계	129	–	69	60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78	–	40	38	–
	장학사·교육연구사		632	–	201	277	154

신 · 구 대비표

현 행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927	6	1,794	1,490	4,637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일반직	일반직 계		7,157	6	1,515	1,153	4,483
	2·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3급	부이사관	9	-	9	-	-
	3·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4급	소계	44	-	33	11	-
		서기관	39	-	29	10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	-	4	1	-
	4·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7	-	7	-	-
	5급	소계	343	1	150	61	131
		교육행정	252	1	87	47	117
		행정	6	-	6	-	-
		사서	31	-	31	-	-
		보건	1	-	1	-	-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	4	-	6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3	2
		교육행정 또는 시설	2	-	2	-	-
		공업 또는 시설	20	-	9	11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6	-	-	-	6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
	6급	소계	2,050	5	525	333	1,187
		교육행정	1,325	5	231	204	885
		전산	58	-	31	27	-
		사서	130	-	119	11	-
		공업	14	-	12	-	2
		녹지	-	-	-	-	-
		보건	17	-	7	10	-
		식품위생	6	-	4	-	2

개 정 안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927	6	1,800	1,492	4,629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일반직	일반직 계		7,157	6	1,521	1,155	4,475
	2·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3급	부이사관	9	-	9	-	-
	3·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4급	소계	44	-	33	11	-
		서기관	39	-	29	10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	-	4	1	-
	4·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7	-	7	-	-
	5급	소계	344	1	150	61	132
		교육행정	254	1	88	47	118
		행정	6	-	6	-	-
		사서	31	-	31	-	-
		보건	1	-	1	-	-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	4	-	6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3	2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공업 또는 시설	20	-	9	11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6	-	-	-	6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
	6급	소계	2,066	5	522	334	1,205
		교육행정	1,341	5	230	204	902
		전산	58	-	30	28	-
		사서	130	-	119	11	-
		공업	14	-	12	-	2
		녹지	-	-	-	-	-
		보건	17	-	7	10	-
		식품위생	6	-	4	-	2

현 행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간호	5	-	5	-	-
		시설	41	-	18	23	-
		방송통신	1	-	1	-	-
		시설관리	304	-	42	11	251
		운전	4	-	2	-	2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10	-	4	-	6
		열관리운영	21	-	11	-	10
		사무운영	59	-	22	12	25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1	-	2	9	-
	7급	소계	2,710	-	558	515	1,637
		교육행정	1,741	-	235	367	1,139
		전산	62	-	45	17	-
		사서	173	-	173	-	-
		공업	20	-	8	12	-
		녹지	-	-	-	-	-
		보건	30	-	16	14	-
		간호	5	-	5	-	-
		시설	45	-	18	27	-
		시설관리	513	-	21	15	477
		운전	12	-	3	6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71	-	20	33	18
		교육행정 또는 사서	3	-	3	-	-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개 정 안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간호	5	-	5	-	-
		시설	41	-	18	23	-
		방송통신	-	-	-	-	-
		시설관리	305	-	42	11	252
		운전	4	-	2	-	2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10	-	4	-	6
		열관리운영	21	-	11	-	10
		사무운영	59	-	22	12	25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1	-	2	9	-
	7급	소계	2,714	-	563	515	1,636
		교육행정	1,759	-	245	368	1,146
		전산	62	-	46	16	-
		사서	173	-	173	-	-
		공업	20	-	8	12	-
		녹지	-	-	-	-	-
		보건	30	-	16	14	-
		간호	5	-	5	-	-
		시설	45	-	18	27	-
		시설관리	514	-	24	15	475
		운전	12	-	3	6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56	-	11	33	12
		교육행정 또는 사서	3	-	3	-	-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현 행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보건 또는 식품위생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3	7	-
	8급	소계	1,969	-	219	222	1,528
		교육행정	1,255	-	60	118	1,077
		전산	22	-	11	11	-
		사서	84	-	84	-	-
		공업	13	-	1	12	-
		보건	21	-	4	17	-
		시설	49	-	7	42	-
		시설관리	496	-	43	6	447
		운전	10	-	1	5	4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9급	소계	-	-	-	-	-
		시설관리	-	-	-	-	-
		운전	-	-	-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전문 경력관	소계	7	-	7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 제작PD	1	-	1	-	-
		평생교육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다군	4	-	4	-	-

개 정 안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보건 또는 식품위생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3	7	-
	8급	소계	1,948	-	223	223	1,502
		교육행정	1,257	-	65	119	1,073
		전산	22	-	11	11	-
		사서	84	-	84	-	-
		공업	13	-	1	12	-
		보건	21	-	4	17	-
		시설	49	-	7	42	-
		시설관리	475	-	43	6	426
		운전	9	-	1	5	3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9급	소계	-	-	-	-	-
		시설관리	-	-	-	-	-
		운전	-	-	-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전문 경력관	소계	7	-	7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 제작PD	1	-	1	-	-
		평생교육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다군	4	-	4	-	-

현 행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속기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연구사	소계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별정직	별정직 계		8	-	8	-	-
	4급상당(비서)		1	-	1	-	-
	5급상당(비서)		4	-	4	-	-
	6급상당(비서)		3	-	3	-	-
특정직	특정직 계		761	-	270	337	154
	장학관·교육연구관	소계	129	-	69	60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78	-	40	38	-
	장학사·교육연구사		632	-	201	277	154

개 정 안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속기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연구사	소계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별정직	별정직 계		8	-	8	-	-
	4급상당(비서)		1	-	1	-	-
	5급상당(비서)		4	-	4	-	-
	6급상당(비서)		3	-	3	-	-
특정직	특정직 계		761	-	270	337	154
	장학관·교육연구관	소계	129	-	69	60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78	-	40	38	-
	장학사·교육연구사		632	-	201	277	15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2조(직급별정원) ①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직급별정원) ①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 -

2025년 월 일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25-99호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2-46호(1982.02.09.)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6호(2025.01.22.)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38호(2025.04.25.)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 수표구역 공공임대산업시설 신축공사 내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104-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2) 사업의 명칭 : 수표구역 공공임대산업시설 신축공사 내 도시계획시설(철도) 조성 사업
다.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면 적 : 384.56㎡
- 규 모 : L= 31.59~54.89m, B= 8.0~10.29m, H= 11.35~31.17m(지하2층~지상1층)
라. 입체적 결정 범위(출입구 일부)
- 지상1층 : A= 113.47㎡, H= 31.17~24.20m (해수면기준)
- 지하1층 : A= 316.65㎡, H= 24.20~18.50m (해수면기준)
- 지하2층 : A= 368.64㎡, H= 18.50~11.35m (해수면기준)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트윈웍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김남용)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6층 (서소문동, 태평로빌딩)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의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 사업의 준공 예정일 : 2027.10.31.까지
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정비과(☎ 02-3396-5772)에 비치

◈ 중랑구고시 제2025-145호

도시관리계획(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16호(2000.07.31.)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8호로(2007.01.25.)로 결정(변경)된 「상봉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중 랑 구 청 장

Ⅰ. 결정(변경)취지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획지로 계획된 필지 중 개발의사가 없는 필지(중화동 207-13)를 제외하고 중화동 207-22 단독개발을 위해 주민제안된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 변경{획지계획(207-22, -13) → 획지계획삭제(단일필지)}, 도로 신설{소로3-가호선(B=3~4m, L=39m)}, 공개공지 신설{1개소(망우로변)}, 건축한계선 변경(1~3m → 1.5~3m), 차량출입불허구간 축소(출입구간 6m → 8m)]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상봉동 129번지 일대	150,000 (1,592.1)	-	150,000 (1,592.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44호 ('97.8.5.)	-

※ ( )는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일원 LH 신축매입약정주택 면적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359	중화동 208	중화동 209-7	일반도로	중랑역	'07.01.25 서고제07-18호	-
기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73	상봉동 130-5	상봉동 130-163	보행자 전용도로	동부시장	-	-
기정	소로	2	1	8	특수도로	70	중화동 208-3	중화동 208-4	보행자 전용도로	-	' 98.12.24 서고제98-433호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70	중화동 208-38	중화동 208-16	일반도로	-	'07.01.25 서고제07-18호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63	중화동 207-13	중화동 207-12	일반도로	-	' 98.12.24 서고제98-433호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45	상봉동 130-17	상봉동 130-154	일반도로	-	' 98.12.24 서고제98-433호	-
신설	소로	3	가	3~4 (3~4)	국지도로	39 (39)	중화동 207-22	중화동 207-14	일반도로	-	-	-

※ 폭원, 연장의 ( )는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일원 LH 신축매입약정주택 내 사항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3-가	• 신설 (B=3~4m, L=39m)	•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규모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필지별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A	A2	6,302.8	중랑구 중화동 207-22, 13	1,758.0	획지계획
변경	A	A2	6,274.9	중랑구 중화동 207-13	289.0	획지계획 폐지 (단일필지)
				중랑구 중화동 207-22	1,441.1	획지계획 폐지 (단일필지)

※ 중화동 207-22 일부(27.9㎡)가 도시계획시설 신설도로(소로3-가)로 편입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랑구 중화동 207-13, 22번지	• 가구면적 및 획지계획 변경	• 공동개발 의사가 없는 필지 간 획지계획 폐지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에 따른 면적 감소

2.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필지별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 정	변 경
A2	중랑구 중화동 207-22	용 도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	좌동
		건폐율	60% 이하	좌동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360%	좌동
		높 이	최고높이 80m	좌동
		배 치	시행지침 제17조~제19조 참조	좌동
		형 태	시행지침 제20조~제30조 참조	좌동
		색 채	시행지침 제23조 참조	좌동
		건축선	건축한계선 1~3m	건축한계선 1.5~3m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건축한계선	• 대상지 서측 건축한계선 변경	• 차량 진출입을 위한 건축한계선 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공지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제어요소	내 용	
기정	A1~A5 B1~B3 C1~C13	필지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대지내 공지중 공개공지로 지정 되지 않은 부분	전면공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8조 참고	–
기정	A2	중랑구 중화동 207-21	공공 보행통로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9조 참조	–
신설		중랑구 중화동 207-22	공개공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7조 참조	망우로(35m)변
기정		중랑구 중화동 207-24	공개공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7조 참조	복개도로변

– 변경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망우로(35m)변	• 공개공지 신설	• 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시민 휴식 공간 제공

나. 차량동선 및 주차동선에 관한 사항(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제어요소	내 용	
A2	중랑구 중화동 207-22	차량출입불허구간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3조 참조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 축소	• 건축한계선 변경에 따른 단순차량출입불허구간 축소

4.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적률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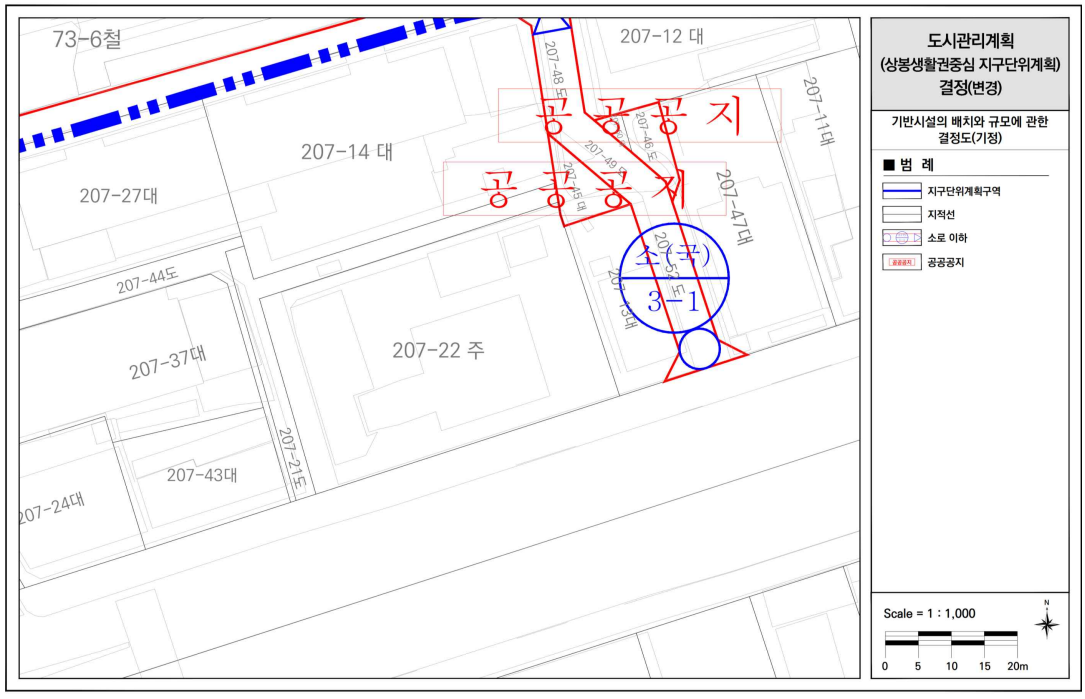
1) 기 결정내용 기재 생략

Ⅲ. 관계도면: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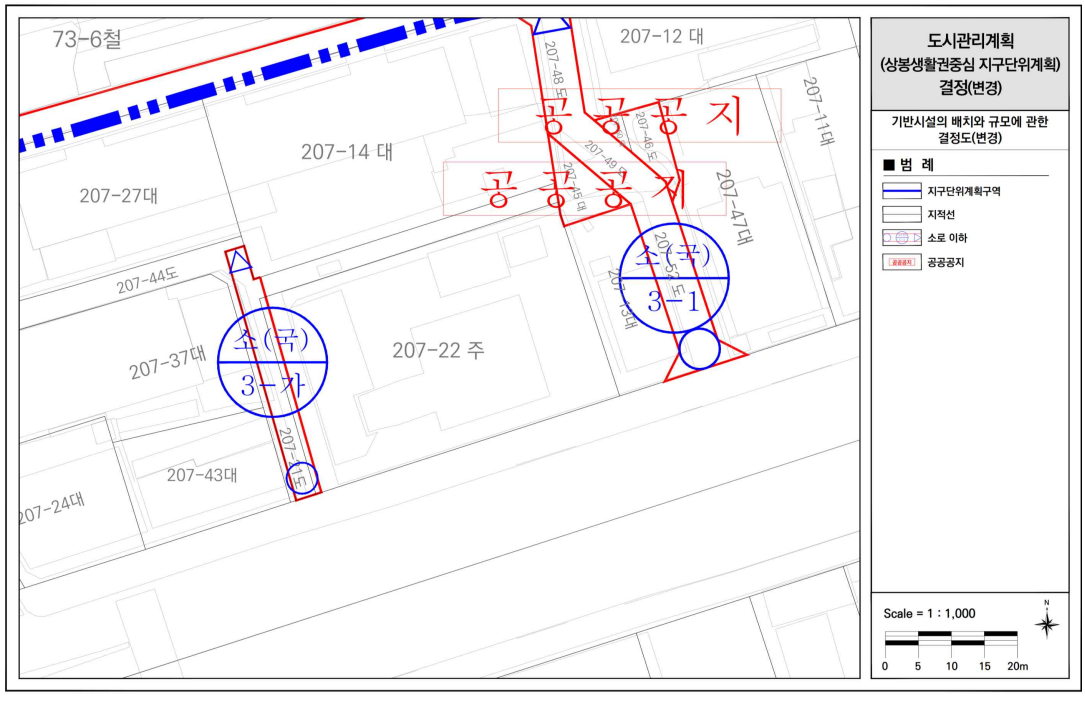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중랑구청 도시계획과(☎ 2094-218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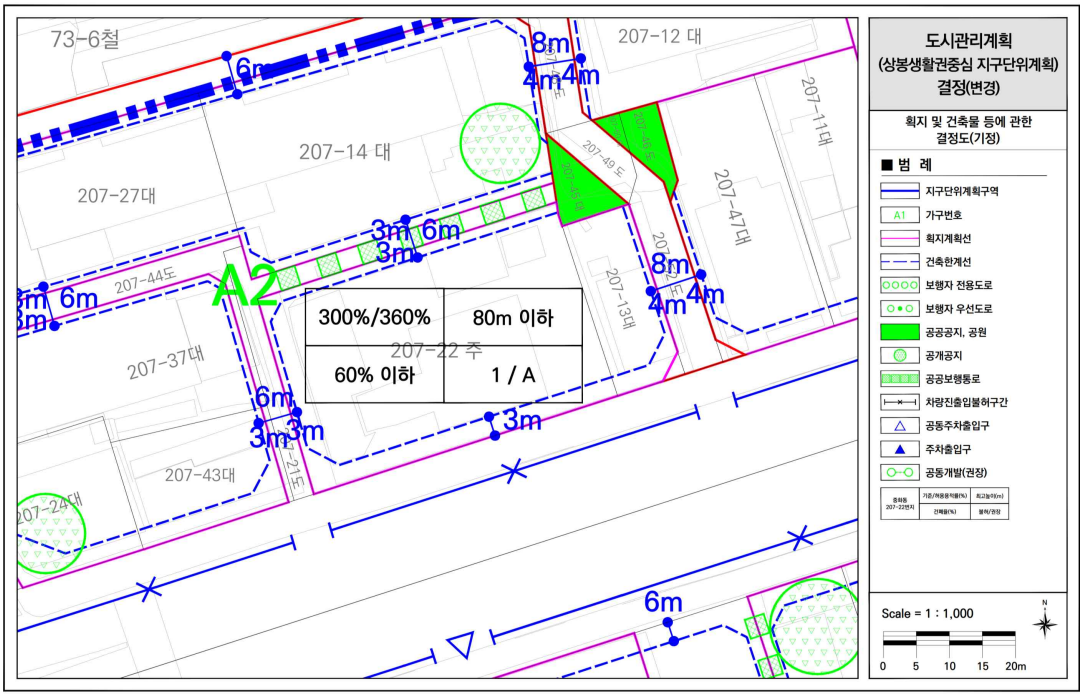
■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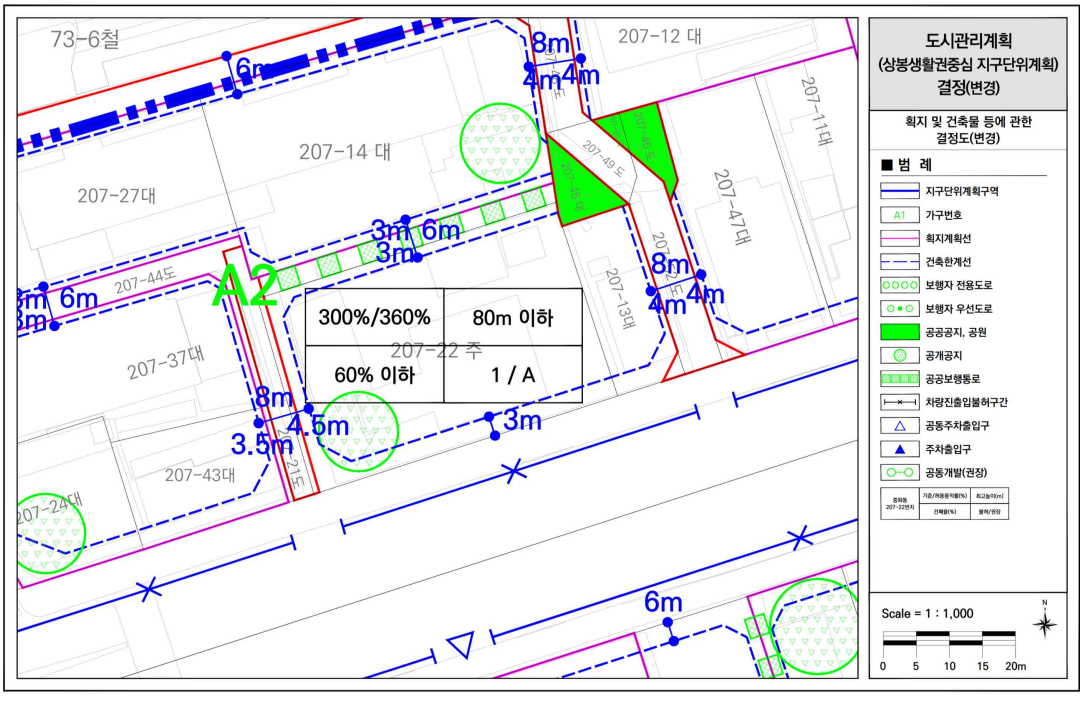
■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강북구고시 제2025-155호

도시관리계획(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77호(2025.08.28.)로 결정된「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강 북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77호(2025.8.28.)로 결정된 화계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결정도면상 단순 표기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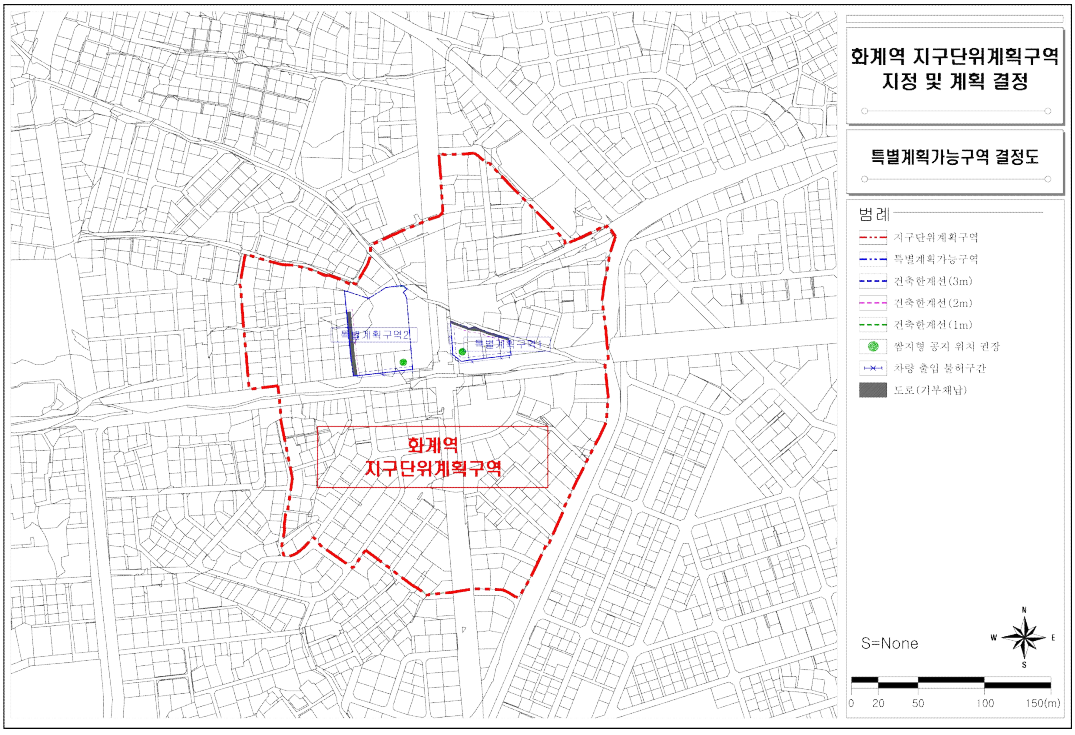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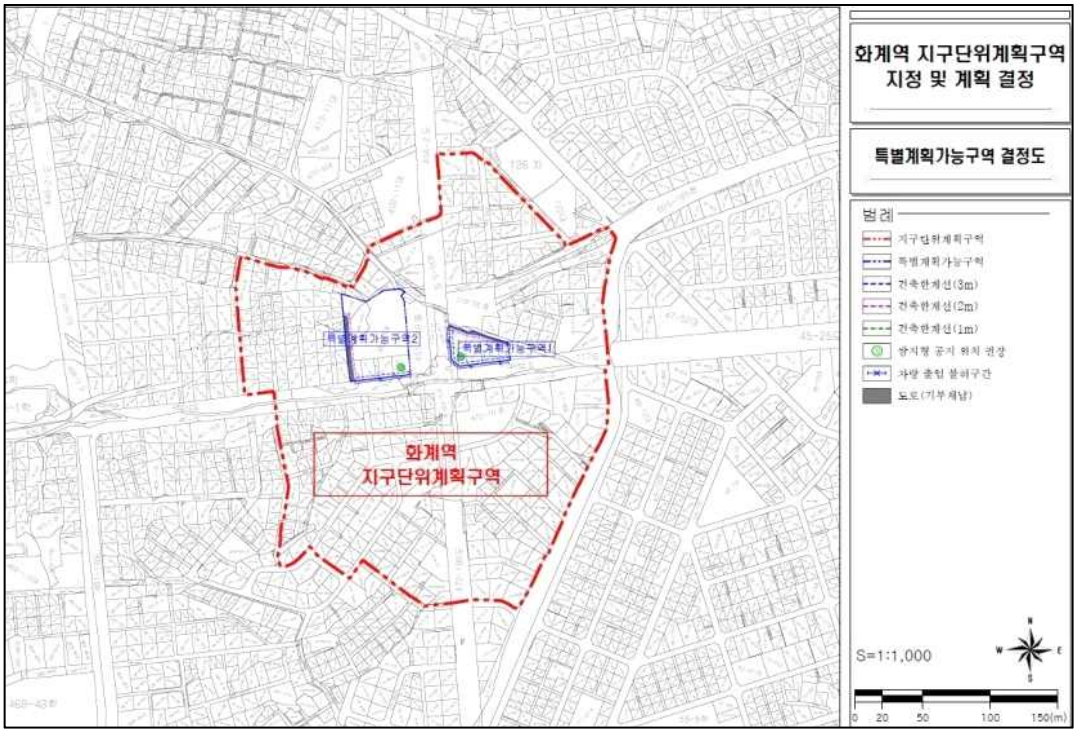
Ⅳ.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권장용도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건폐율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용적률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높이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건축선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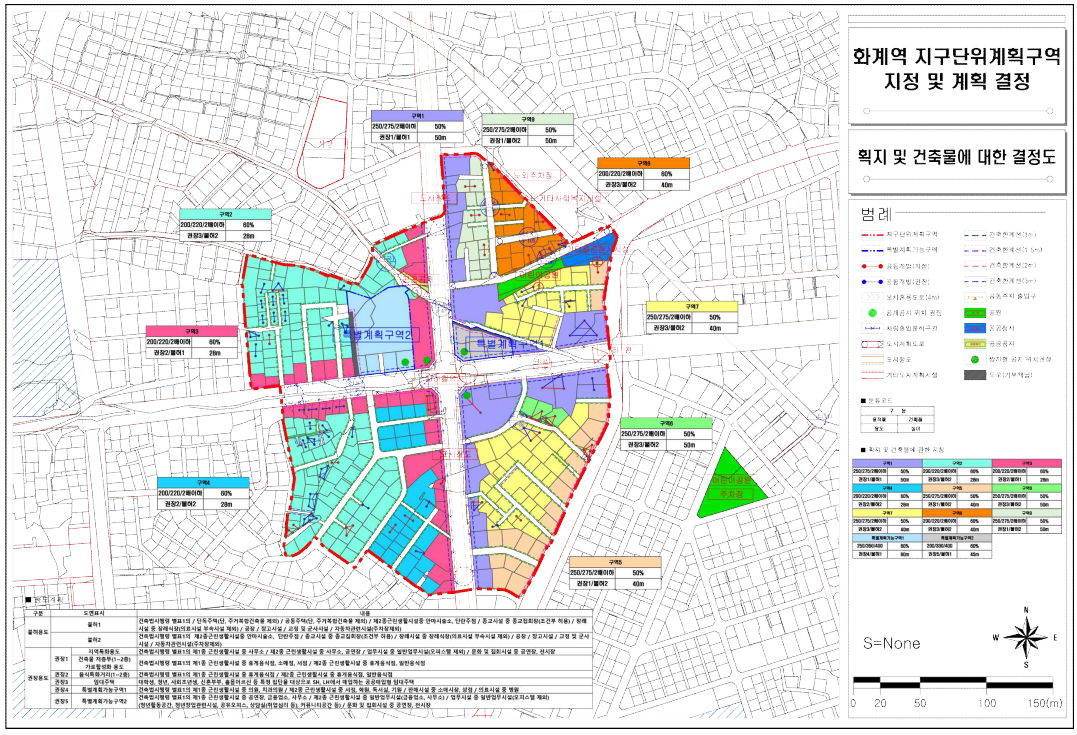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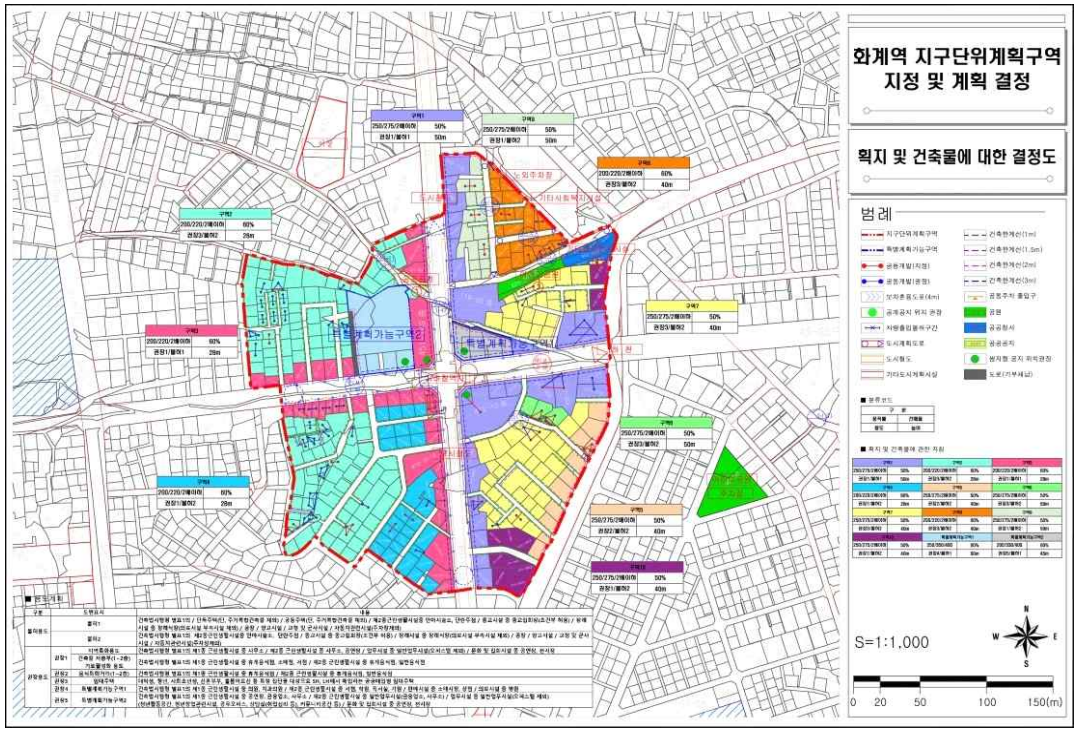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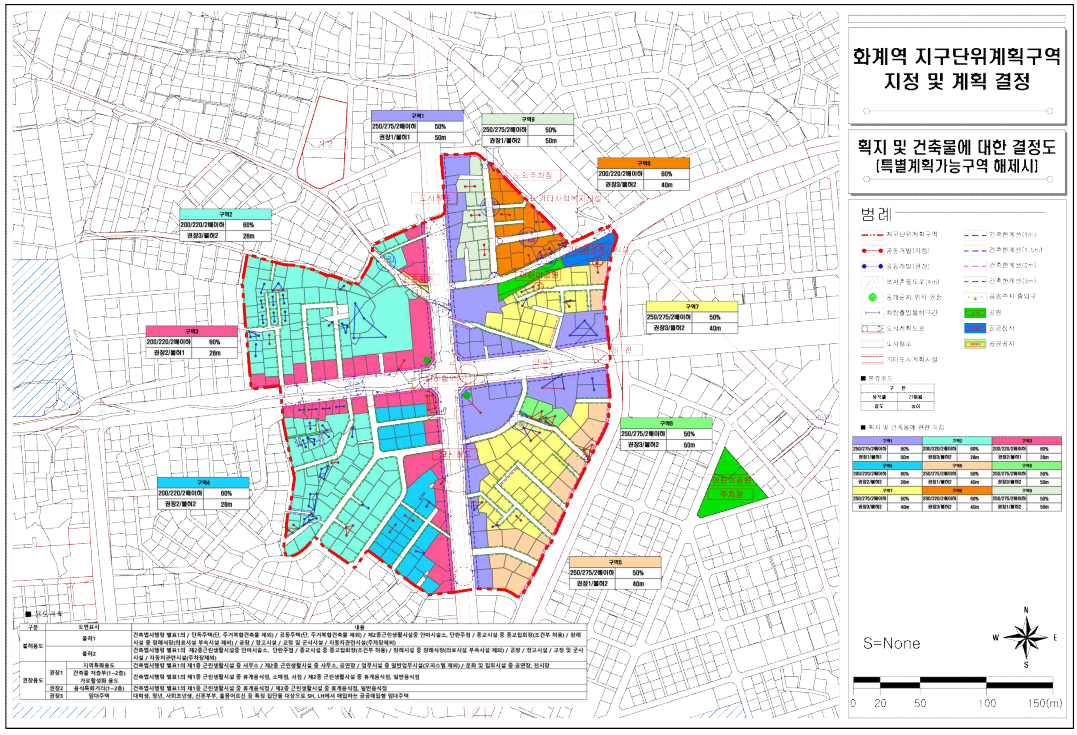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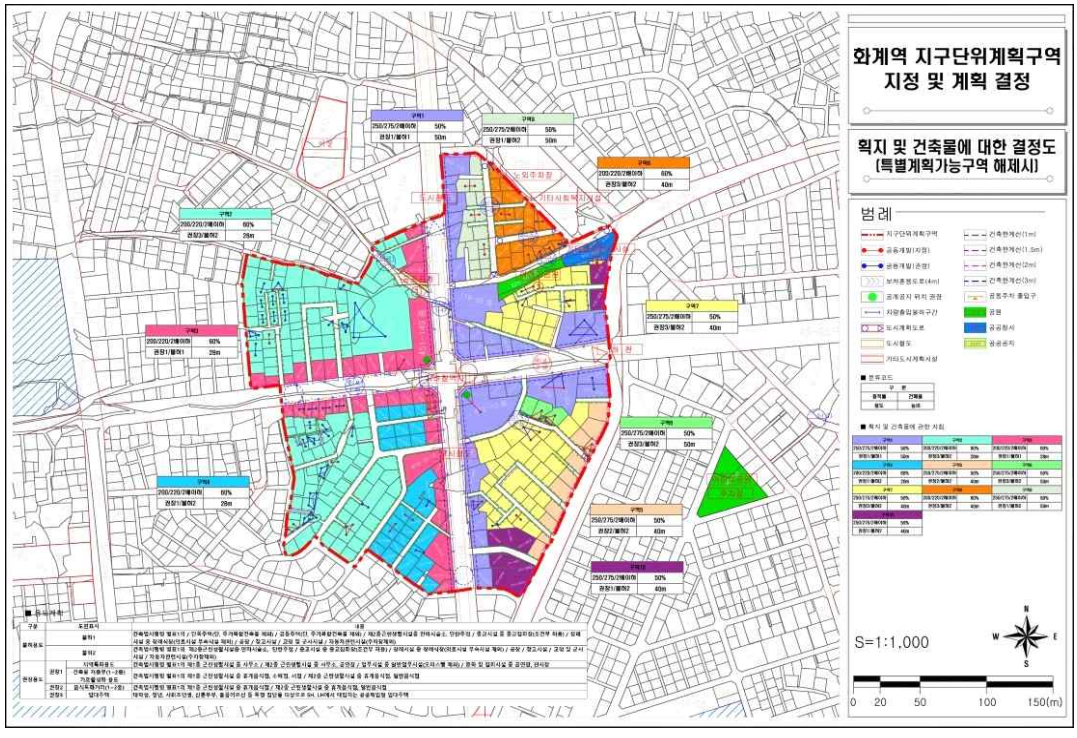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도(변경)



○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도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시)(기정)



○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도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시)(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열람편의를 위해 강북구 도시계획과(☎901-6872) 및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고시 제2025-1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호(1995.1.20.)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103호(2004.4.10.)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016-92호(2016.4.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오릉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609호(2020.4.23.)로 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113호(2020.6.29.) ,제2021-241호(2021.12.23.) 및 제2023-97호(2023.7.13.)로 변경 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시행하고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4. 관계도서는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61 등 2필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 당초 : 토지보상 810㎡(진관동 산61 등 2필지)
  - 변경 : 토지보상 810㎡(진관동 산61 등 2필지) 및 조성사업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5.12.31.

바. 고시방법 : 서울시보에 게재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진관동	산61	임	13,450	532	박*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아파트 **동 ***호				
						이*준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5길 *, ***호(**동)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대표자)			
						이*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 수기마을***** ***동 ***호	이*보	울산시 남구 동산로69번길 **, ***동 ****호(신정동, 문수로2차 ****)	근저당권자	
						황*덕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동)				
2	갈현동	285-275	대	278	278	임*규	서울시 중랑구 묵동 ***, ****** ***동 ****호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진관동	산61-3	임	532	532	서울특별시					
2	갈현동	285-275	대	278	278	서울특별시					

◈ 동작구고시 제2025-17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06호(1998.8.2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2호(2021.1.7.)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동 작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중복결정(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및 공간적범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상도 SOC사업 변경에 따라 중복결정(사회복지시설, 주차장) 폐지 및 비도시계획시설(행복주택) 폐지를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주차장	상도동 438번지 외 2필지	1,258.8	감) 1,258.8	-	동작구고시 2021-2호 (`21.01.07)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시설폐지 - 면적 : 1,258.8㎡ → 0㎡ (감)1,258.8㎡)	• 「2022년 동작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대상지 소재 상도1동의 주차장 확보율(161.6%)이 높으므로 필요성이 낮아 폐지

□ 공공 · 문화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체육 시설	상도동 438번지 외 2필지	1,258.8	-	1,258.8	동작구고시 2021-2호 (`21.01.07)	중복결정 폐지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체육시설	• 중복결정 폐지	•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폐지에 따른 중복결정 폐지 (체육시설 단독 결정)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사회 복지 시설	구립 노인정	상도동 438번지 외 2필지	1,258.8	감) 1,258.8	-	서울시고시 1998-306호 (`98.08.26)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회 복지 시설	• 시설폐지 - 면적 : 1,258.8㎡ → 0㎡ (감)1,258.8㎡)	• 주변 경로당 다수 설치로 기능 중복을 고려해 경로당 공간을 조정하고, 체육시설의 편익시설로 활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 폐지

□ 건축물의 범위

▌건축물의 범위(변경) 조서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60 이하	250 이하	3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변경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건축물의 범위(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용적률 : 250% 이하 → 200%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에 따라 용적률 200%로 변경
	• 높이 : 3층 이하 → 7층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를 고려하여 높이 계획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공간적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사회복지시설	상도동 438번지 외 2필지	면적	685.6	감) 685.6	-	동작구고시 2021-2호 (`21.01.07)	• 비도시계획시설(행복주택) 미설치에 따른 공간적 범위 폐지 • 도시계획시설(공간적 범위) 폐지
				층	지상1층, 지상3층	-	-		
변경	-	체육시설		면적	1,245.7	감) 1,245.7	-		
				층	지하1~2층, 지상2층	-	-		
변경	-	주차장		면적	420.1	감) 420.1	-		
				층	지상1층	-	-		

▌ 도시계획시설(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공간적 범위)	변경사유	비고
사회복지시설	• 도시계획시설(공간적 범위) 폐지	• 기존 도시계획시설 상부에 계획하였던 비도시계획시설(행복주택) 도입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간적 범위) 폐지	-
체육시설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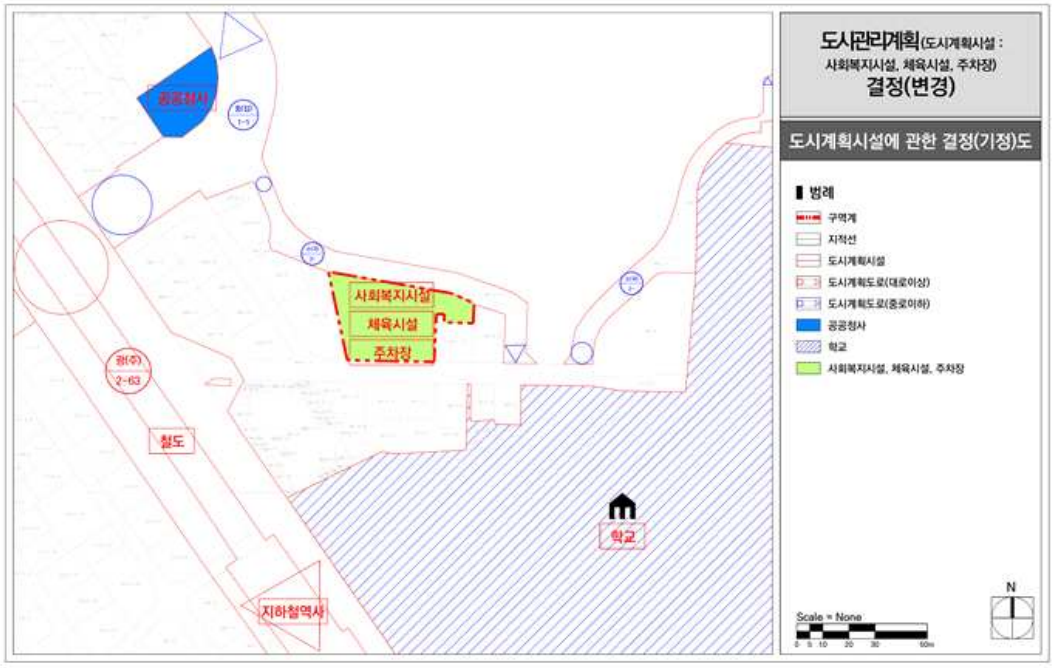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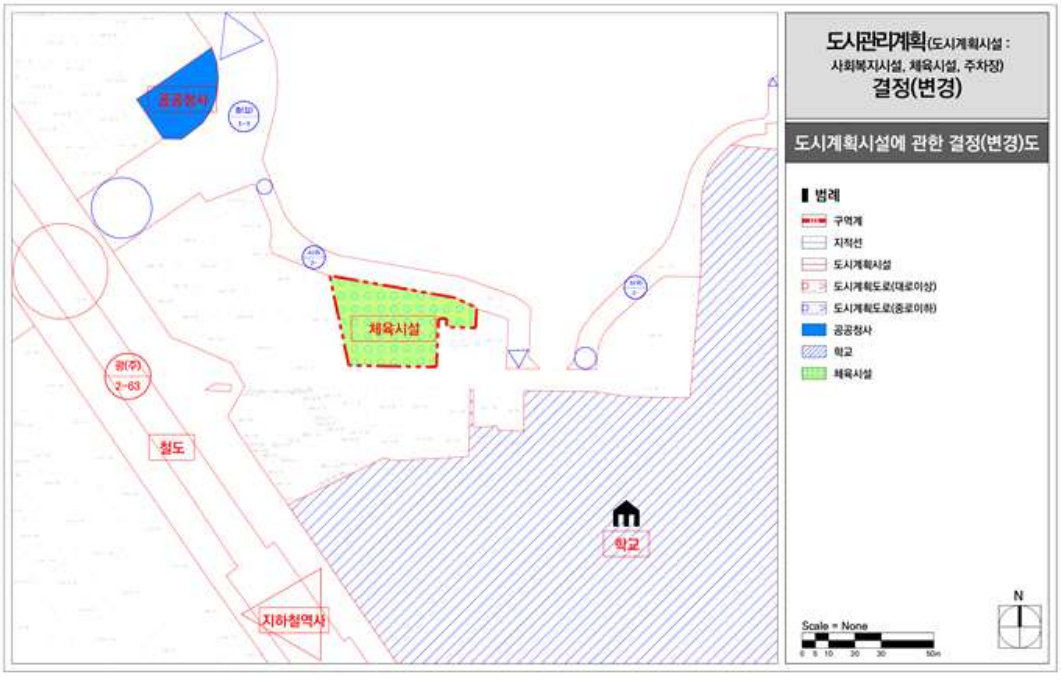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02-820-1081)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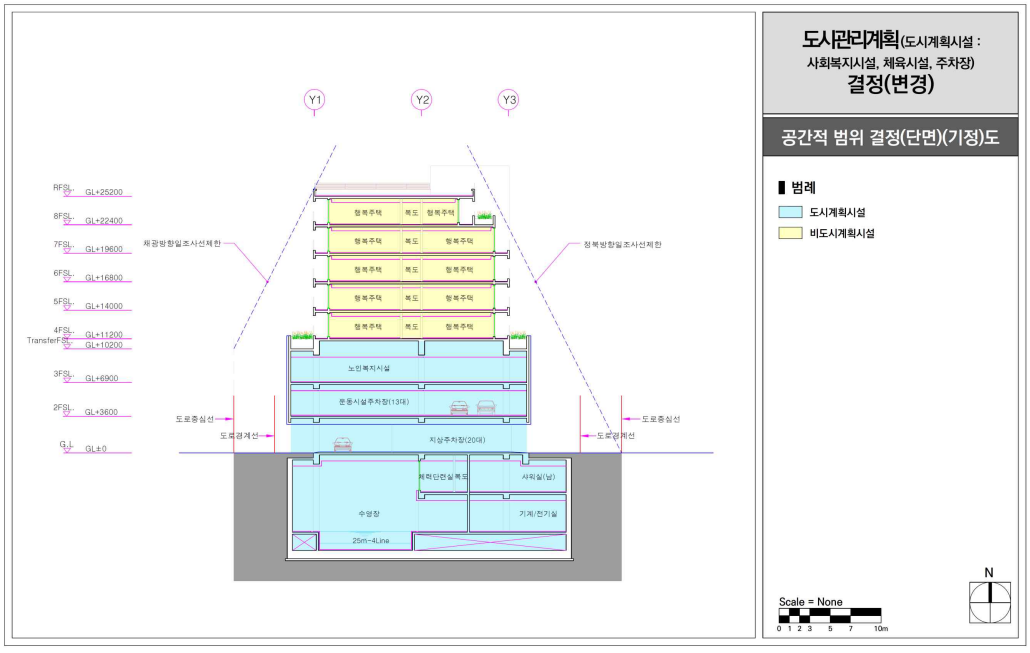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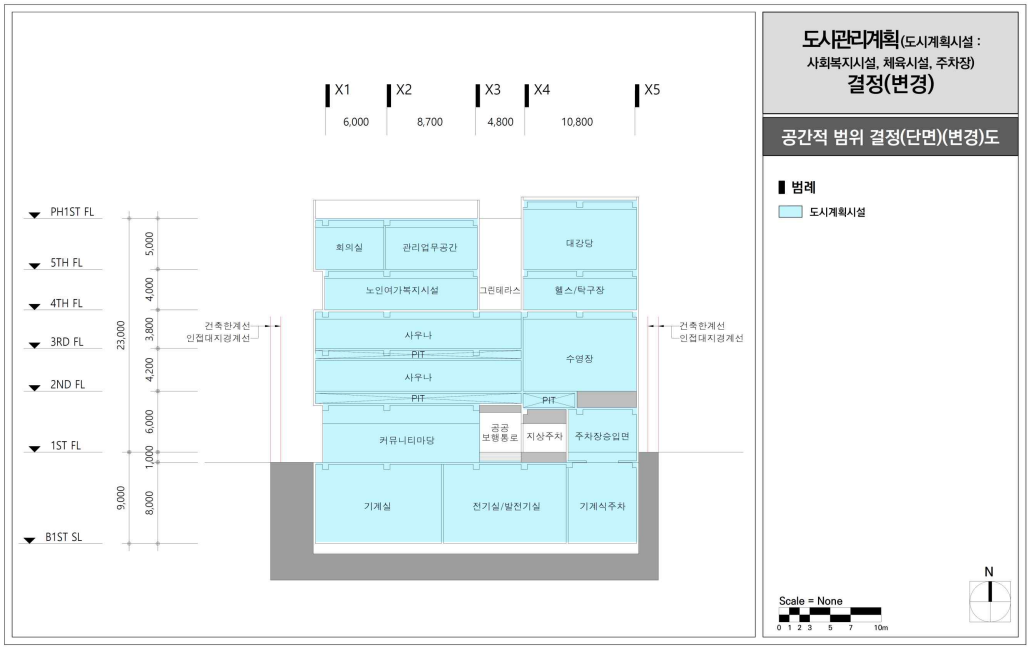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공간적 범위 결정(단면)(기정)도



■ 공간적 범위 결정(단면)(변경)도



◈ 동작구고시 제2025-17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 고시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149호(2021. 7. 8.)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24-185호(2024. 12. 26.)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 02-820-107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6-1외 3필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명 칭 :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다. 사업규모 (변경없음)
- 규 모 : 699.1㎡
- 용 도 : 공공공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주소 변경)
- 성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기존)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 (변경)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기간 변경)
- (기존) 실시계획 작성고시일로부터 2025. 12. 31.
- (변경) 실시계획 작성고시일로부터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세부내용 변경)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없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	본동 46-1	대지	366.4	36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366.4/366.4				사용
2	본동 46-2	대지	140	14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	140/140				사용
3	본동 46-3	대지	129.7	129.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129.7/129.7				사용
4	본동 9-74	대지	63	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	63/63				사용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변경없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이용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본동 9-8 (제1호)	건물 (1층)	연와조	39.7	상가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길 ○○○	김○숙				
2	본동 9-8 (제2호)	건물 (1층)	연와조	29.8	창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	장○상				
3	본동 9-8 (제3호)	건물 (1층)	연와조	25.6	창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	장○상				
4	본동 9-8 (제4호)	건물 (1층)	연와조	29	상가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길 ○○○	김○숙				
5	본동 9-8 (제5호)	건물 (1층)	연와조	14.5	창고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	윤○연				
6	본동 9-8 (제6호)	건물 (2층)	연와조	144.7	상가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	윤○림, 송○선				
7	본동 9-30 (제2호)	건물 (1층)	세멘부럭조	34.1	주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서○원, 서○숙, 서○원				
8	본동 9-30 (제2호)	건물 (2층)	세멘부럭조	36.5	주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서○원, 서○숙, 서○원				
9	본동 9-30 (제1호)	건물 (1층)	목조	75.4	주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서○원, 서○숙, 서○원				
10	본동 9-30 (제1호)	건물 (2층)	목조	51.1	주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서○원, 서○숙, 서○원				
11	본동 9	건물 (1층)	철근조	117	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	이○수				기존무허가 건물
12	본동 9	건물 (2층)	철근조	117	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	이○수				기존무허가 건물

영 업 권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상호	영업권의 종류	영 업 주		이해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	본동 9-8 (제1호)	지상1층	한강손칼국수	한식점업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길 ○○○	김○숙				
2 (당초)	본동 9-8 (제2호) 본동 9-8 (제3호)	지상1층	광수농수산	소매업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김○수				
2 (변경)	본동 9-8 (제2호) 본동 9-8 (제3호)	지상1층	광수농수산	소매업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김○수				
3	본동 9-8 (제4호) 본동 9-8 (제5호)	지상1층	성실금속	건설업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최○진				
4	본동 9-8 (제6호)	지상2층	셈수학	출판업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	송○선				
5	본동 9-8 (제6호)	지상2층	(사)전국주산수학 암산교육회	사무실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	윤○림				
6	본동 9-30 (제2호)	지상1층	일신전자	임가공업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최○영				

◈ 서초구고시 제2025-2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5-359호(2025.7.10.)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개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명칭 : 신보광변전소-반포변전소 간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성명 :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303, 201호(동빙고동, 현대그린빌딩)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內
  - 준공예정일 : 2029. 06. 30.
 5) 사업시행지의 규모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용산구 서빙고동 153-3	서초구 잠원동 79	한강	1,360	4,182	서고 제2025-359호 (2025.7.10.)	○중복결정 - 공원(202㎡) - 철도(125㎡) - 대로(148㎡) - 대로(321㎡) - 녹지(39㎡) - 소로(20㎡) ○송전선로 폭원:3.0m~3.67m

2.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계도면 : “게재생략”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1	서초구 잠원동	79	도	6,332.6	20	서초구	-	
2		115	도	32,679.4	67	서울특별시	-	
3		117	도	20,413.5	39	서울특별시	-	
4		119	제	25,345.3	77	서울특별시	-	
5		121	천	166,130.7	601	서울특별시	-	
6		121-8	도	56,101.3	46	서울특별시	-	
7		153	천	69,388	154	건설부	-	
8		156	천	150,109	1,223	건설부	-	
9		156-1	천	6,508	193	건설부	-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따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고시 제2025-11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50호(1979. 5. 8.)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25호(2021. 2. 4.)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109호(2021. 3. 4.)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213호(2022. 12. 22.)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4-102호(2024. 12. 5.)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일대 올림픽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전략기획과에 비치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02-2147-21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송 파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88, 88-1, 88-7, 88-8) (변경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사업
   - 사업의 명칭: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관리, 업무, 관광사업, 유스호스텔시설 부지내 올림픽회관 업무시설 증축)

   다. 사업의 규모 (변경 없음)
   - 세부시설명: 관리, 업무, 관광사업, 유스호스텔시설
   - 부지면적: 123,492.3㎡
   - 건축연면적: 86,608.0㎡

   라. 사업시행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변경 없음)
   마.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18.4.1.~ 2025.12.31. ⇒ 변경: 2018.4.1.~ 2026.12.31. (1년 연장)
     - 변경사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취득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 변경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없음

구 공 고

◈ 성북구공고 제2025-2188호

도시관리계획[종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①-1(고려시장상가)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30호(2023.06.08.)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종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성 북 구 청 장

가. 공 고 일 : 2025. 12.11.(목)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2025.12.26.까지)
다.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2241-2682)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종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북구 종암동 10-258 일대	105,359	-	105,35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30호 (2023.06.08.)	-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5,359.0	-	105,359.0	100.0	-
주거지역	소계	105,359.0	-	105,359.0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769.0	-	2,769.0	2.6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654.0	감) 3,897.5	3,756.5	3.6	-
	제2종일반주거지역	727.0	-	727.0	0.7	-
	제3종일반주거지역	94,209.0	감) 5,611.9	88,597.1	84.1	-
	준주거지역	-	증) 9,509.4	9,509.4	9.0	-

※ 용도지역의 변경은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 변경하며, 구체적 사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지침에 따름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종암동 10-15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3,897.5㎡	종암동 10-15 일대(특별계획구역①)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5,611.9㎡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기정	대로	1	8	35~40	간선 도로	6,100 (841)	제기동	수유동	일반 도로	52.03.25. (내고 23호)	종암로
2	기정	대로	3	27	25	보조 간선도로	527 (12)	고대 동북측	임업 시험장입구	일반 도로	66.11.29. (건고 2906호)	회기로
3	기정	중로	2	127	15~20	집산 도로	850 (35)	종암동 12-62	종암동 1-114	일반 도로	71.04.07. (건고 198호)	월곡로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4	기정	중로	2	335	15	국지 도로	1280 (54)	종암동 23-79	안암동5가 산1-37	일반 도로	-	북악산로
5	기정	소로	1	A	10	국지 도로	280 (65)	종암동 25-57	종암동 23-43	일반 도로	-	종암로 3길
6	기정	소로	3	A	6	국지 도로	200	종암동 23-59	종암동 23-27	일반 도로	-	북악산로 31길
7	기정	소로	3	B	6	국지 도로	464 (35)	종암동 23-78	종암동 48-8	일반 도로	-	종암로 9길
8	기정	소로	3	553	8	국지 도로	26 (26)	종암동 16-10	종암동 16-16	일반 도로	20.03.05 (성북구고시 35호)	종암로
9	신설	소로	2	A	8~10	국지 도로	300	종암동 10-164	종암동 10-15	일반 도로	-	-

※ 중로 2-335, 소로1-A, 소로3-A, 소로3-B : 최초 결정된 도로조서 확인불가로 최초결정일 등 미기재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A	• 도로 신설 - 폭원(B) : 8~10m - 연장(L) : 300m	• 종암동 10-15 일대(특별계획구역①)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의한 도로 신설

(2) 철도 : 변경없음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4.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없음

< 이 하 여 백 >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나) 공동개발

■ 공동개발 계획 : 변경없음

■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가구 번호	지번	필지면적 (㎡)	공동개발 시 면적(㎡)	계획내용	비고
19	–	0-17가	14,310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특별계획구역① (고려시장상가)
		10-158대				
		10-15주				
		10-162대				
		10-163대				
		10-166대				
		10-16대				
		10-178대				
		10-17대				
		10-20대				
		10-222대				
		10-223대				
		10-224대				
		10-225대				
		10-226대				
		10-227대				
		10-228대				
		10-229대				
		10-22대				
		10-230대				
		10-231대				
		10-232대				
		10-233대				
		10-234대				
		10-235대				
		10-236대				
		10-237대				
		10-238대				
		10-239대				
		10-240대				
		10-241대				

구분	가구 번호	지번	필지면적 (㎡)	공동개발 시 면적(㎡)	계획내용	비고
		10-242대				
		10-243대				
		10-244대				
		10-245대				
		10-246대				
19	-	10-248대	14,310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특별계획구역 ① (고려시장상가)
		10-249대				
		10-250대				
		10-251대				
		10-254대				
		10-255대				
		10-256대				
		10-257대				
		10-258대				
		10-259대				
		10-260대				
		10-263대				
		10-264대				
		10-265대				
		10-267대				
		10-270대				
		10-272대				
		10-273대				
		10-274대				
		10-277대				
		10-278대				
		10-279대				
		10-280대				
		10-281대				
		10-282대				
		10-283대				
		10-292대				
		10-90구				
		10-91대				
		10-94대				
		10-95구				
		10-97구				
		8-115대				
		8-116대				

구분	가구 번호	지번	필지면적 (㎡)	공동개발 시 면적(㎡)	계획내용	비고
		8-117대				
		8-118대				
		8-119대				
		8-120대				
		8-121대				
		8-122대				
		8-123대				
		8-124대				
		8-125대				
		8-126대				
		8-127대				
		8-128대				
		8-129대				
		8-130대				
19	-	8-131대	14,310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특별계획구역 ① (고려시장상가)
		8-132대				
		8-133대				
		8-134대				
		8-135대				
		8-136대				
		8-137대				
		8-138대				
		8-139대				
		8-140대				
		8-141대				
		8-142대				
		8-143대				
		8-144대				
		8-145대				
		8-146대				
		8-147대				
		8-176대				
		8-177대				
		8-178대				
		8-179대				
		8-180대				
		8-181대				
		8-50대				
		8-51대				
		8-69대				

구분	가구 번호	지번	필지면적 (㎡)	공동개발 시 면적(㎡)	계획내용	비고
		8-74대				
		8-76대				
		8-77대				
		8-84대				
		8-95대				
		10-93구				
		10-19도				
		10-21도				
		8-78도				
		8-228도				
		10-275대				
		10-156도				
		8-88도				
		10-164도				
		10-266대				
		10-18도				
		10-176도				
		10-14도				
		10-300도				
		8-71도				
		8-67도				
		8-85 대				
19	-	8-64도	14,310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특별계획구역 ① (고려시장상가)
		8-8도				
		8-66도				
		10-180도				
		10-98도				
		10-96대				
		10-299도				

※ 면적은 사업시행 단계에서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변경되는 부분만 기재

– 변경

구분	가구 번호	지번	필지면적 (㎡)	공동개발 시 면적(㎡)	계획내용	비고
19	–	10-15주	1,909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특별계획구역①-2 (고려시장상가)
		0-17가	12,40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특별계획구역①-1 (고려시장상가)
		10-158대				
		10-162대				
		10-163대				
		10-166대				
		10-16대				
		10-178대				
		10-17대				
		10-20대				
		10-222대				
		10-223대				
		10-224대				
		10-225대				
		10-226대				
		10-227대				
		10-228대				
		10-229대				
		10-22대				
		10-230대				
		10-231대				
		10-232대				
		10-233대				
		10-234대				
		10-235대				
		10-236대				
		10-237대				
		10-238대				
		10-239대				
		10-240대				
		10-241대				
		10-242대				
19	–	10-243대	12,40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특별계획구역①-1 (고려시장상가)
		10-244대				
		10-245대				
		10-246대				
		10-248대				
		10-249대				
		10-250대				

구분	가구 번호	지번	필지면적 (㎡)	공동개발 시 면적(㎡)	계획내용	비고
		10-251대				
		10-254대				
		10-255대				
		10-256대				
		10-257대				
		10-258대				
		10-259대				
		10-260대				
		10-263대				
		10-264대				
		10-265대				
		10-267대				
		10-270대				
		10-272대				
		10-273대				
		10-274대				
		10-277대				
		10-278대				
		10-279대				
		10-280대				
		10-281대				
		10-282대				
		10-283대				
		10-292대				
		10-90구				
		10-91대				
		10-94대				
		10-95구				
		10-97구				
		8-115대				
		8-116대				
		8-117대				
		8-118대				
		8-119대				
		8-120대				
		8-121대				
		8-122대				
		8-123대				

구분	가구 번호	지번	필지면적 (㎡)	공동개발 시 면적(㎡)	계획내용	비고
		8-124대				
		8-125대				
19	-	8-126대	12,40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특별계획구역①-1 (고려시장상가)
		8-127대				
		8-128대				
		8-129대				
		8-130대				
		8-131대				
		8-132대				
		8-133대				
		8-134대				
		8-135대				
		8-136대				
		8-137대				
		8-138대				
		8-139대				
		8-140대				
		8-141대				
		8-142대				
		8-143대				
		8-144대				
		8-145대				
		8-146대				
		8-147대				
		8-176대				
		8-177대				
		8-178대				
		8-179대				
		8-180대				
		8-181대				
		8-50대				
		8-51대				
		8-69대				
		8-74대				
		8-76대				
		8-77대				
		8-84대				
		8-95대				
		10-93구				

구분	가구 번호	지번	필지면적 (㎡)	공동개발 시 면적(㎡)	계획내용	비고
		10-19도				
		10-21도				
		8-78도				
		8-228도				
		10-275대				
		8-88도				
		10-164도				
		10-266대				
		10-18도				
		10-176도				
		10-14도				
19	-	10-300도	12,40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특별계획구역①-1 (고려시장상가)
		8-71도				
		8-67도				
		8-85대				
		8-64도				
		8-8도				
		8-66도				
		10-180도				
		10-98도				
		10-96대				
		10-299도				

※ 면적은 사업시행 단계에서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변경되는 부분만 기재

■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특별계획구역 ①-1 (고려시장상가)	• 특별계획구역① 분할 • 지번 변경 - 종암동 10-156 삭제	• 특별계획구역① 분할계획에 따른 조서 변경 - 특별계획구역①-1 : 고려시장상가 부지, 동진아파트 부지 - 특별계획구역①-2 : SK주유소 부지(종암동 10-15) • 종암동 10-156는 10-19와 합병 ('69.12.11.)되었으므로 지번 삭제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건축물 배치 · 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가) 특별계획구역① (고려시장상가) 계획지침

- 기정

<table>
<tr><th>구분</th><th colspan="4">계획지침</th><th>비고</th></tr>
<tr><td>계획방향</td><td colspan="4">• 홍릉벤처벨리와 연계한 바이오·의료 R&D 연구 및 지원기능 유도
• 동북선 105역(숭례초교) 지하철 출입구와 저층부 연계 및 보행네트워크 활성화</td><td>-</td></tr>
<tr><td rowspan="2">구역면적</td><td rowspan="2">통합
개발시</td><td colspan="3">분할개발시</td><td rowspan="2">• 분할가능선을 근거로 분할시행 가능</td></tr>
<tr><td>A
(SK주유소 부지)</td><td>B
(동진아파트 부지)</td><td>C
(고려시장상가 부지)</td></tr>
<tr><td>14,310㎡</td><td>1,909㎡</td><td>1,776㎡</td><td>10,625㎡</td><td></td></tr>
<tr><td>용도지역</td><td colspan="4">• 현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 근린상업지역(고려시장상가 획지 포함 시)
※ 분할가능선에 따라 고려시장상가를 미포함한 획지 또는 고려시장상가 단독 획지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최대 준주거지역 범위 내 변경 가능</td><td>-</td></tr>
<tr><td>건폐율</td><td colspan="4">• 60% 이하</td><td rowspan="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준수
• 용도지역 혼재 필지의 경우 가중평균치 적용</td></tr>
<tr><td>용적률</td><td colspan="4">• 통합개발 시(고려시장상가 획지 포함)
기준용적률 : 230% / 허용용적률 : 378% / 상한용적률 : 600%
• 분할개발 시 : 준주거지역 용적률체계 적용
※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따름</td></tr>
<tr><td>높이</td><td colspan="4">• 통합개발 시(고려시장상가 획지 포함 시) : 80m 이하
• 분할개발 시 : 60m 이하
※ 주유소부지 제외 시 높이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주유소경계 이격거리 25m 이상에 따른 높이 완화)
※ 고려시장상가 이면부 주거지 등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정 높이 계획 수립</td><td>-</td></tr>
</table>

구분		계획지침		비고
건축물 용도	지정 용도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1항에 따른 벤처기업	• 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제외)의 5% 이상 설치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저층부 (1~2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 아, 자목 ※ 라. 서점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자. 일반음식점	• 저층부 전면 외벽길이의 1/2이상, 저층부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
	불허 용도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타 용도와 복합 설치하는 경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물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종암로변 5m 이상, 이면부 3m 이상 후퇴		• 지침도 참조
	대지 안의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규제) - 종암로변 : 인접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고, 바닥 포장은 인접 보도의 포장형식(바닥 패턴 및 재료 등)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조성 - 이면부 :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차도 및 보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차도부속형으로 조성		-
		• 공개공지 : 위치권장 - 지하철 출입구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종암로변으로 위치 권장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준용 • 지침도 참조
		• 공공보행통로 : 위치권장 (폭원 4m 이상) -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기존 가로와 연계하여 동서간 보행연결이 가능토록 공공보행통로 위치 권장 ※ B, A+B 부지 개발시 이면부 공공보행통로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를 보차혼용통로로 위치권장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준용 • 지침도 참조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계획지침</th><th>비고</th></tr>
<tr><td colspan="2"></td><td>• 지하연결통로(권장)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 및 건물 이용자의 건물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하철역사와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조성
– 구체적인 연결통로의 형태, 설치방식(도시계획시설 결정, 점용허가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td><td>• 서울시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td></tr>
<tr><td colspan="2"></td><td>• 지하철 정거장 환기구 이설(권장)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마련을 위해 공공보도에 설치된 정거장 환기구를 대지 내로 이설
– 정거장 환기구의 이설은 서울시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함</td><td>• 서울시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td></tr>
<tr><td colspan="2">공공기여에 관한 계획</td><td>• 통합개발 시(고려시장상가 획지 포함 시) : 순부담률 37% 이상
• 분할개발 시 : 가중평균 적용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순부담률 15% 이상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순부담률 25% 이상
• 공공기여 제공 : 공공기여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실현 가능하고 연속성 있는 공공기여 계획 수립
• 도로 확보를 우선으로 하되, 부족한 기반시설은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
• 분할개발 시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필요한 기반시설 용량 등을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 확보
※ 구체적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서울시 관리부서와 협의
<table>
<tr><th colspan="3">공공기여(공공시설 등) 항목 및 우선 순위</th></tr>
<tr><td>1</td><td>도로확폭</td><td>• 지침도 참조</td></tr>
<tr><td>2</td><td>공공임대산업시설 (바이오 R&D관련기업 입주),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형 기숙사</td><td rowspan="2">• 시설 활용 및 관리 용이성 등 고려하여 집중배치</td></tr>
<tr><td>3</td><td>지역필요시설(건축물) 기부채납
: 청소년 아동 복지시설, 주차장 등 생활권계획상 부족시설</td></tr>
</table></td><td>•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준용
• 용도지역 혼재 필지의 경우 가중평균치 적용
• 도로 확보 시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
• 공동주택 건립 시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 수립기준” 또는 “역세권복합 개발(고밀주거) 계획수립기준” 적용</td></tr>
<tr><td colspan="2">형태/색채/경관</td><td>•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결정조서 참조</td><td>–</td></tr>
<tr><td colspan="2">인센티브계획</td><td>• 인센티브계획 결정조서 참조</td><td>–</td></tr>
<tr><td colspan="2">교통처리계획</td><td>• 교통처리계획 결정조서 참조</td><td>• 지침도 참조</td></tr>
</table>

※ 역세권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업별 운영기준에 따름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계획기준(주거용 용적률, 주거 외 용도 비율 등)은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참조

– 변경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5">계획지침</th><th>비고</th></tr>
<tr><td colspan="3">계획방향</td><td colspan="5">• 홍릉벤처밸리와 연계한 바이오 · 의료 R&D 연구 및 지원기능 유도
• 동북선 105역(숭례초교) 지하철 출입구와 저층부 연계 및 보행네트워크 활성화</td><td>–</td></tr>
<tr><td colspan="3" rowspan="2">구역면적</td><td rowspan="2">통합
개발시</td><td colspan="4">분할개발시</td><td rowspan="2">• 분할가능선을 근거로 분할시행 가능</td></tr>
<tr><td>A
(SK주유소 부지)</td><td>B
(동진아파트 부지)</td><td colspan="2">C
(고려시장상가 부지)</td></tr>
<tr><td colspan="3">14,310㎡</td><td>1,909㎡</td><td>1,776㎡</td><td colspan="2">10,625㎡</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td><td colspan="5">• 현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 근린상업지역(고려시장상가 획지 포함 시)
※ 분할가능선에 따라 고려시장상가를 미포함한 획지 또는 고려시장상가 단독 획지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최대 준주거지역 범위 내 변경 가능</td><td>–</td></tr>
<tr><td colspan="3">건폐율</td><td colspan="5">• 60% 이하</td><td rowspan="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준수
• 용도지역 혼재 필지의 경우 가중평균치 적용</td></tr>
<tr><td colspan="3">용적률</td><td colspan="5">• 통합개발 시(고려시장상가 획지 포함)
기준용적률 : 229.50% / 허용용적률 : 341.80% / 상한용적률 : 400%
• 분할개발 시 : 준주거지역 용적률체계 적용
※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따름</td></tr>
<tr><td colspan="3">높이</td><td colspan="5">• 통합개발 시(고려시장상가 획지 포함 시) : 120m 이하
• 분할개발 시 : 60m 이하
※ 주유소부지 제외 시 높이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주유소경계 이격거리 25m 이상에 따른 높이 완화)
※ 고려시장상가 이면부 주거지 등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정 높이 계획 수립</td><td>–</td></tr>
<tr><td rowspan="2">건축물
용도</td><td>지정
용도</td><td>전층</td><td colspan="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1항에 따른 벤처기업</td><td>• 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제외)의 5% 이상 설치</td></tr>
</table>

구분		계획지침		비고
	권장 용도	저층부 (1~2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 아, 자목 ※ 라. 서점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자. 일반음식점	• 저층부 전면 외벽길이의 1/2이상, 저층부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
건축물 용도	불허 용도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타 용도와 복합 설치하는 경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물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종암로변 5m 이상, 이면부 3m 이상 후퇴		• 지침도 참조
	대지 안의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규제) – 종암로변, 이면부 : 인접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고, 바닥 포장은 인접 보도의 포장형식(바닥 패턴 및 재료 등)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조성(보도부속형)		-
		• 공개공지 : 위치권장 – 지하철 출입구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종암로변으로 위치 권장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준용 • 지침도 참조
		• 공공보행통로 : 위치권장 (폭원 4m 이상) –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기존 가로와 연계하여 동서간 보행연결이 가능토록 공공보행통로 위치 권장 ※ B, A+B 부지 개발시 이면부 공공보행통로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를 보차혼용통로로 위치권장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준용 • 지침도 참조
		• 지하연결통로(권장)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 및 건물 이용자의 건물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하철역사와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조성 – 구체적인 연결통로의 형태, 설치방식(도시계획시설 결정, 점용허가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서울시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계획지침</th><th>비고</th></tr>
<tr><td colspan="2"></td><td>• 지하철 정거장 환기구 이설(권장)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마련을 위해 공공보도에 설치된 정거장 환기구를 대지 내로 이설
– 정거장 환기구의 이설은 서울시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함</td><td>• 서울시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td></tr>
<tr><td colspan="2">공공기여에 관한 계획</td><td>• 통합개발 시(고려시장상가 획지 포함 시) : 순부담률 37% 이상
• 분할개발 시 : 가중평균 적용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순부담률 15% 이상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순부담률 25% 이상
(연속)</td><td>• 「서울특별시 지구 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 운영기준 및 매뉴얼」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준용</td></tr>
<tr><td colspan="2">공공기여에 관한 계획</td><td>• 공공기여 제공 : 공공기여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실현 가능하고 연속성 있는 공공기여 계획 수립
• 도로 확보를 우선으로 하되, 부족한 기반시설은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
• 분할개발 시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필요한 기반시설 용량 등을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 확보
※ 구체적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서울시 관리부서와 협의
<table>
<tr><th colspan="3">공공기여(공공시설 등) 항목 및 우선 순위</th></tr>
<tr><td>1</td><td>도로확폭</td><td>• 지침도 참조</td></tr>
<tr><td>2</td><td>공공임대산업시설 (바이오 R&D관련기업 입주),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형 기숙사</td><td rowspan="2">• 시설 활용 및 관리 용이성 등 고려하여 집중배치</td></tr>
<tr><td>3</td><td>지역필요시설(건축물) 기부채납
: 청소년 아동 복지시설, 주차장 등 생활권계획상 부족시설</td></tr>
</table></td><td>• 용도지역 혼재 필지의 경우 가중평균치 적용
• 도로 확보 시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
• 공동주택 건립 시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 수립기준” 또는 “역세권복합 개발(고밀주거) 계획수립기준” 적용</td></tr>
<tr><td colspan="2">형태/색채/경관</td><td>•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결정조서 참조</td><td>–</td></tr>
<tr><td colspan="2">인센티브계획</td><td>• 인센티브계획 결정조서 참조</td><td>–</td></tr>
<tr><td colspan="2">교통처리계획</td><td>• 교통처리계획 결정조서 참조</td><td>• 지침도 참조</td></tr>
</table>

※ 역세권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업별 운영기준에 따름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계획기준(주거용 용적률, 주거 외 용도 비율 등)은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참조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용적률	• 가중평균한 용적률로 조정	•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므로 용적률 가중평균 적용
높이	• 통합개발 시 최고높이 변경 - 80m → 120m (증 40m)	• 주유소부지 제외에 따라 주유소경계 이격거리(25m)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높이완화
대지안의 공지	• 이면부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정 - 차도부속형 → 보도부속형	• 이면부 도로 확폭으로 보차도 분리됨에 따라 이면부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3.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5. 용도지역 조정가능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① (고려시장상가)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구역명	특별계획구역 ① (고려시장상가)		
기준/허용용적률	230%/378% 이하	①-1	229.50%/341.80% 이하
		①-2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체계 적용

- 인센티브 항목 : 변경없음

유형	인센티브 항목		세부계획기준	비고
중점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기준용적률×(조성면적/연면적)×0.4	- 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제외)의 5%이상 설치 시 적용
		권장용도	기준용적률×(조성면적/연면적)×0.8	- 저층부 전면 외벽길이의 1/2이상, 저층부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 시 적용
	대지 안의 공지	지하연결통로	기준용적률×0.15	- 서울시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계획 유도	대지 안의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1	- 권장 위치 준수 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0.7	- 권장 위치 준수 시
	환기구 이설		기준용적률x0.09	- 서울시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환기구 이설 시
	공유주차장 설치		기준용적률×0.05	- 대지 내 주차장의 20% 이상을 공유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계획 유도	친환경	물환경 빗물이용시설	기준용적률×0.05	- 빗물저류·이용시설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대기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준용적률×0.05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확보 시
		대기환경 미세먼지 저감장치	기준용적률×0.05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지역기여시설로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 미세먼지 저감장치 예시 : 그린룸, 기후적응형 벤치, 기후텐트, 공기정화장치 등
		생활환경 유니버설 디자인(BF인증)	기준용적률×0.05	- 의무대상 : 일반등급 초과시 - 비의무대상 : 일반등급 취득시

※ 계획유도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음

※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② (국민은행 전산센터) ~ 마.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 변경없음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7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마. 특별계획구역①-1(고려시장상가)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① (고려시장상가)	성북구 종암동 10-15 일대	14,310	-
변경	특별계획구역①-1 (고려시장상가)	성북구 종암동 10-15 일대	12,401	특별계획구역 분할
	특별계획구역①-2 (고려시장상가)		1,909	

■ 변경 사유서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특별계획구역①-1 (고려시장상가)	성북구 종암동 10-15 일대	12,401	• 종암동 10-15 일대(특별계획구역①)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분할가능선을 근거로 특별계획구역 변경

※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지적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401.0	-	12,401.0	100.0	-
주거지역	소계	12,401.0	-	12,401.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843.0	감) 3,897.5	1,945.5	15.7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6,558.0	감) 5,611.9	946.1	7.6	-
	준주거지역	-	증) 9,509.4	9,509.4	76.7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종암동 10-15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3,897.5㎡	• 종암동 10-15 일대(특별계획구역①)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5,611.9㎡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A	8~10	국지 도로	300	종암동 10-164	종암동 10-166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A	• 도로 신설 - 폭원(B) : 8~10m - 연장(L) : 300m	• 종암동 10-15 일대(특별계획구역①)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의한 도로 신설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번호	구역명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	특별계획구역 ① (고려시장상가)	14,310	성북구 종암동 10-15 일대	11,123.4	주상복합용지
변경	-	특별계획구역 ①-1 (고려시장상가)	12,401	성북구 종암동 10-15 일대	9,509.4	주상복합용지
		특별계획구역 ①-2 (고려시장상가)	1,909		1,614.0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지정 용도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1항에 따른 벤처기업	• 업무시설 - 지상2층 설치 (지상층 연면적의 5.03%)
권장 용도	저층부 (1~2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 아, 자목 ※ 라. 서점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자. 일반음식점	• 좌동 - 지상1~2층 설치 (저층부 바닥 면적의 74.9%)
불허 용도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타 용도와 복합 설치하는 경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좌동

※ 지정용도는 지상층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5%이상 설치
※ 권장용도는 저층부 전면 외벽길이의 1/2이상, 저층부 바닥면적의 50%이상 설치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폐율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60%이하	좌동	준주거지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준수

나) 용적률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 통합개발 시(고려시장상가 획지 포함) - 기준 230%/허용 378%/상한 600% • 분할개발 시 - 준주거지역 용적률체계 적용 ※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따름	-	-
변경	• 통합개발 시(고려시장상가 획지 포함) - 기준 230%/허용 378%/상한 600% • 분할개발 시 - 준주거지역 용적률체계 적용 - 기준 229.50%/허용 341.80%/상한 400.00% ※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따름	• 기준 229.50% • 허용 316.94% • 상한 400.00%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준수
※ 용도지역 혼재 필지의 경우 가중평균치 적용

■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

구분	기존 연면적 (지상)	증가하는 용적률		완화 후 연면적 (지상)
		공공임대 (39세대)	용적률 완화 세대 (39세대)	
연면적 (지상)	37,949.7㎡	4,795.44㎡	4,795.44㎡	47,540.58㎡
용적률	400%	50%	50%	500%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계획 상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적용

다) 높이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 통합개발 시(고려시장상가 획지 포함) : 80m이하 • 분할개발 시 : 60m이하 ※ 주유소부지 제외 시 높이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주유소경계 이격거리 25m 이상에 따른 높이 완화) ※ 고려시장상가 이면부 주거지 등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정 높이 계획 수립	-	-
변경	• 통합개발 시(고려시장상가 획지 포함) : 80m이하 • 분할개발 시 : 60m 이하 ※ 주유소부지 제외 시 높이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주유소경계 이격거리 25m 이상에 따른 높이 완화) ※ 고려시장상가 이면부 주거지 등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정 높이 계획 수립	• 120m 이하	-

4. 건축물 배치 · 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선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한계선	• 종암로변 : 5m이상 후퇴 • 이면부 : 3m이상 후퇴	• 좌동	-

나) 대지 안의 공지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 종암로변 :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 이면부 : 차도부속형으로 조성	-	규제
	공개공지	• 지하철 출입구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종암로변으로 위치 권장	-	도면참조
	공공 보행통로	• 일반인에게 상시 개발되어 기존 가로와 연계하여 동서간 보행연결이 가능토록 공공 보행통로 위치 권장 - 폭원 4m이상	-	-
	지하 연결통로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 및 건물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하철 역사와 건물을 연결 하는 지하연결통로 조성 • 구체적인 연결통로의 형태, 설치방식(도시 계획시설 결정, 점용허가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권장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지하철 정거장 환기구 이설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마련을 위해 공공보도에 설치된 정거장 환기구를 대지 내로 이설 • 정거장 환기구의 이설은 관리기준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함	-	권장
변경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 종암로변, 이면부 :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 좌동	규제
	공개공지	• 지하철 출입구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종암로변으로 위치 권장	• 좌동 - 종암로변 1개소 설치	도면참조
	공공 보행통로	• 일반인에게 상시 개발되어 기존 가로와 연계하여 동서간 보행연결이 가능토록 공공 보행통로 위치 권장 - 폭원 4m이상	• 좌동 - 1개소, 폭원 6m	-
	지하 연결통로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 및 건물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하철 역사와 건물을 연결 하는 지하연결통로 조성 • 구체적인 연결통로의 형태, 설치방식(도시 계획시설 결정, 점용허가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권장
	지하철 정거장 환기구 이설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마련을 위해 공공보도에 설치된 정거장 환기구를 대지 내로 이설 • 정거장 환기구의 이설은 관리기준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함	-	권장

다) 건축물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종암로변 회기로변	• 건축물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조성 • 셔터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설치 시 가로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시형으로 설치 • 1층 전면 가로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입면조성	규제
	건축물 진출입	전구역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	규제
	1층 개구부 높이	종암로변 회기로변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건물과 조화롭게 구성	권장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	전구역	• 수평분할요소(사인존/차양존/윈도우존 등)별 높이는 인접 건축물과 유사하게 설치	권장
건축물 외관	재료 및 색채 등	종암로변 회기로변	• 가로변 휴먼 스케일 확보를 위해 저층부와 고층부를 재료, 디자인, 색채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권장
		전구역	• 외벽재료는 금속, 반짝이는 타일,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	규제
기타	옥외광고물	전구역	• 단일 건물에 여러 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방식, 크기, 위치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하여 통일감 있도록 설치 • 옥외광고물은 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상 및 재료를 사용하여 입면과 일체감을 주도록 계획 • 「옥외광고물법」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준수	규제
	야간조명	종암로변 회기로변	• 종암로 및 회기로에 접한 건축물은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야간조명 설치 권장	권장
	담장 및 옹벽	전구역	• 담장을 설치할 경우 식재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고,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화단설치 권장	권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준용
※ 상기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또는 부득이한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사항 변경 가능

5.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table>
<tr><th>구분</th><th>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th><th>세부개발계획</th><th>비고</th></tr>
<tr>
<td>공공기여</td>
<td>• 통합개발 시(고려시장상가 획지 포함 시)
: 순부담률 37% 이상
• 분할개발 시 : 가중평균 적용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순부담률 15% 이상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순부담률 25% 이상
• 공공기여 제공 : 공공기여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실현 가능하고 연속성 있는 공공기여 계획 수립
• 도로 확보를 우선으로 하되, 부족한 기반 시설은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
• 분할개발 시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필요한 기반시설 용량 등을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 확보
※ 구체적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서울시 관리부서와 협의
<table>
<tr><th colspan="2">공공기여(공공시설 등) 항목 및 우선 순위</th></tr>
<tr><td>1</td><td>도로확폭</td></tr>
<tr><td>2</td><td>공공임대산업시설 (바이오 R&D관련기업 입주),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형 기숙사</td></tr>
<tr><td>3</td><td>지역필요시설(건축물) 기부채납
: 청소년 아동 복지시설, 주차장 등 생활권계획상 부족시설</td></tr>
</table>
</td>
<td>• 순부담률 22.84%
(순부담면적 2,814.65㎡)
① 도로 : 2,891.65㎡
(토지지분 2,814.65㎡)

※ 조성 후 기부채납</td>
<td>순부담률
19.1% 이상
(가중평균)</td>
</tr>
</table>

※ 추후 관련부서 협의,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 하 여 백 >

4 인센티브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인센티브 항목		세부계획기준 및 계획내용	완화량	비고
중점	건축물 용도	지정 용도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연면적)×0.4 • 229.50%×(2,447.43㎡/49,540.58㎡)×0.4	4.54%	- 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제외)의 5%이상 설치 시 적용
		권장 용도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연면적)×0.8 • 229.50%×(7,291.3㎡/49,540.58㎡)×0.8	27.02%	- 저층부 전면 외벽길이의 1/2이상, 저층부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 시 적용
계획 유도	대지 안의 공지	공공 보행 통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7 • 229.50%×(590.63㎡/9,509.4㎡)×0.7	9.96%	- 권장 위치 준수 시
	공유주차장 설치		• 기준용적률×0.05 • 229.50%×0.05	11.48%	- 대지 내 주차장의 20% 이상을 공유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친환경	물 환경	빗물 이용 시설	• 기준용적률×0.05 • 229.50%×0.05	11.48%	- 빗물저류 · 이용시설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대기 환경	환경 친화적 자동차	• 기준용적률×0.05 • 229.50%×0.05	11.4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확보 시
			미세 먼지 저감 장치	• 기준용적률×0.05 • 229.50%×0.05	11.48%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지역기여 시설로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 미세먼지 저감장치 예시 : 그린룸, 기후적응형 벤치, 기후텐트, 공기정화장치 등
소계 (112.30% 이하)				87.44%	-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구분	기준 및 계획내용	인센티브량
공공시설 등 제공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 = 316.94%×(1+1.3×0.684×0.295988) = 400.31% ※ 가중치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허용용적률 = 216.68%주1)/316.94% = 0.684 ※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및 대지지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 중 토지 및 대지지분으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2,814.65㎡주2)/9,509.35㎡ = 0.295988 주1)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허용용적률 :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 면적대비 가중평균하며, 순부담 면적으로 산정 = {(1,875.5㎡×200%)+(939.15㎡×250%)}/2,814.65㎡ = 216.68% ① 제2종(7층) : 1,945.5㎡-70.0㎡(국·공유지) = 1,875.5㎡ ② 제3종 : 946.15㎡-7.0㎡(국·공유지) = 939.15㎡ 주2) 토지 제공면적 : 2,814.65㎡ ① 도로 : 2,891.65㎡-77.0㎡(국·공유지) = 2,814.65㎡	400%
소계 (400% 이하)		400%

■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

구분	기존 연면적 (지상)	증가하는 용적률		완화 후 연면적 (지상)
		공공임대 (39세대)	용적률 완화 세대 (39세대)	
연면적 (지상)	37,949.7㎡	4,795.44㎡	4,795.44㎡	47,540.58㎡
용적률	400%	50%	50%	500%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계획 상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적용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대상	적용기준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종암로변 회기로변	주요 간선도로의 원활한 차량흐름 유도 및 보행단절 최소화를 위하여 대지에서의 직접적인 차량출입 불허	도면 표기

6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종합)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계획내용</th><th rowspan="2">비고</th></tr>
<tr><th colspan="4">계획지침</th><th>세부개발계획</th></tr>
<tr><td>계획방향</td><td colspan="4">• 홍릉벤처벨리와 연계한 바이오 · 의료 R&D 연구 및 지원기능 유도
• 동북선 105역(숭례초교) 지하철 출입구와 저층부 연계 및 보행네트워크 활성화</td><td>• 좌동</td><td>-</td></tr>
<tr><td rowspan="2">구역면적</td><td rowspan="2">통합
개발시</td><td colspan="3">분할개발시</td><td rowspan="2">• 12,401㎡
(B+C)</td><td rowspan="2">• 분할가능선을 근거로 분할시행 가능</td></tr>
<tr><td>A
(SK주유소 부지)</td><td>B
(동진아파트 부지)</td><td>C
(고려시장상가 부지)</td></tr>
<tr><td>14,310㎡</td><td>1,909㎡</td><td>1,776㎡</td><td>10,625㎡</td><td></td></tr>
<tr><td>용도지역</td><td colspan="4">• 현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 근린상업지역(고려시장상가 획지 포함 시)
※ 분할가능선에 따라 고려시장상가를 미포함한 획지 또는 고려시장상가 단독 획지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최대 준주거지역 범위 내 변경 가능</td><td>• 준주거지역</td><td>-</td></tr>
<tr><td>건폐율</td><td colspan="4">• 60% 이하</td><td>• 좌동</td><td rowspan="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준수
• 용도지역 혼재 필지의 경우 가중평균치 적용</td></tr>
<tr><td>용적률</td><td colspan="4">• 통합개발 시(고려시장상가 획지 포함)
기준용적률 : 230% / 허용용적률 : 378% /
상한용적률 : 600%
• 분할개발 시 : 준주거지역 용적률체계 적용
※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따름</td><td>• 기준 229.50%
• 허용 316.94%
• 상한 400.00%</td></tr>
</table>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높이		• 통합개발 시(고려시장상가 획지 포함 시) : 80m 이하 • 분할개발 시 : 60m 이하 ※ 주유소부지 제외 시 높이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주유소경계 이격거리 25m 이상에 따른 높이 완화) ※ 고려시장상가 이면부 주거지 등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정 높이 계획 수립		• 120m이하	• 주유소부지 제외
건축물 용도	지정 용도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벤처기업	• 업무시설 설치 - 2,400.0㎡ (주차장 제외) ※ 지상층 연면적의 5.03%	• 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제외)의 5% 이상 설치
	권장 용도	저층부 (1~2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 중 나목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라, 아, 자목 ※ 라. 서점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자. 일반음식점	• 지상1~2층에 근린생활시설 설치 - 7,150.0㎡ (주차장 제외) ※ 저층부 바닥면적의 74.9%	• 저층부 전면 외벽 길이의 1/2 이상, 저층부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
	불허 용도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타 용도와 복합 설치하는 경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좌동	-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물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종암로변 5m 이상, 이면부 3m 이상 후퇴	• 좌동	• 지침도 참조
	대지 안의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규제) - 종암로변, 이면부 : 인접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고, 바닥 포장은 인접 보도의 포장형식(바닥 패턴 및 재료 등)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조성(보도부속형)	• 좌동	-
건축물 배치	대지 안의 공지	• 공개공지 : 위치권장 - 지하철 출입구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종암로변으로 위치 권장	• 좌동 - 종암로변 2개소 설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준용 • 지침도 참조
		• 공공보행통로 : 위치권장 (폭원 4m 이상) -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기존 가로와 연계하여 동서간 보행연결이 가능토록 공공보행통로 위치 권장 ※ B, A+B 부지 개발시 이면부 공공보행통로 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를 보차혼용통로로 위치 권장	• 좌동 - 1개소, 폭원 6m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준용 • 지침도 참조
		• 지하연결통로(권장)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 및 건물 이용자의 건물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하철역사와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조성 - 구체적인 연결통로의 형태, 설치방식(도시계획시설 결정, 점용허가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서울시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 지하철 정거장 환기구 이설(권장)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마련을 위해 공공보도에 설치된 정거장 환기구를 대지 내로 이설 – 정거장 환기구의 이설은 서울시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함	–	• 서울시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 통합개발 시(고려시장상가 획지 포함 시) : 순부담률 37% 이상 • 분할개발 시 : 가중평균 적용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순부담률 15% 이상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순부담률 25% 이상 • 공공기여 제공 : 공공기여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실현 가능하고 연속성 있는 공공기여 계획 수립 • 도로 확보를 우선으로 하되, 부족한 기반시설은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 • 분할개발 시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필요한 기반시설 용량 등을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 확보 ※ 구체적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서울시 관리부서와 협의 (연속)	• 순부담률 22.84% (순부담면적 2,814.65㎡) ① 도로 : 2,891.65㎡ (토지지분 2,814.65㎡) (연속)	• 「서울특별시 지구 단위계획 수립 기준·관리운영 기준 및 매뉴얼」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준용 • 용도지역 혼재 필지의 경우 가중평균치 적용 • 도로 확보 시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 (연속)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기여(공공시설 등) 항목 및 우선 순위 1 도로확폭 • 지침도 참조 2 공공임대산업시설 (바이오 R&D관련기업 입주),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형 기숙사 • 시설 활용 및 관리 용이성 등 고려하여 집중배치 3 지역필요시설(건축물) 기부채납 : 청소년 아동 복지시설, 주차장 등 생활권계획상 부족시설	※ 조성 후 기부채납	• 공동주택 건립 시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수립기준” 또는 “역세권복합개발(고밀주거) 계획수립기준” 적용
형태/색채/경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결정조서 참조	• 좌동	–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인센티브계획	• 인센티브계획 결정조서 참조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7개 항목 적용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1개 항목 적용	-
교통처리계획	• 교통처리계획 결정조서 참조	• 좌동	• 지침도 참조

※ 역세권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업별 운영기준에 따름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계획기준(주거용 용적률, 주거 외 용도 비율 등)은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참조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시계획과(☎02-2241-26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공고 제2025-20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77호(2024.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5-25호(2025.3.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고양지축 지구 외 진입도로 건설공사(대로1-A호선)」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기 위해 같은 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0-5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8-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칭: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진입도로 건설공사(대로1-A호선)

다. 사업시행 규모(변경)
- (기정) 도로 신설(왕복 6차로, L=115.9m, B=35m, A=4,013.8㎡)
- (변경) 도로 신설(왕복 6차로, L=115.9m, B=35m, A=10,853.3㎡)
※ 변경사유 : 대로1-A 개설을 위해 대로1-A와 연결되는 도로(5개소)의 정비계획 변경 (재포장, 지장물 이설 등)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2)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용현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없음)
1) 착 수 일 : 2025년 3월 27일
2) 준공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조서 참조(변경)

사. 열람기간 : 2025. 12. 11. ~ 2025. 12. 25.

아.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경기북부고양단지조성3팀(☏031-960-9817)
은평구 도로과(☏02-351-7903)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기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32	하천	3,954.7	357.5	공	서울특별시				
2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33	공원	569.6	16.6	공	은평구 (서울특별시)				
3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5	하천	1,349.3	1,349.3	공	서울특별시				
4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34	도로	3,527.0	196.4	공	서울특별시				
5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8-10	전	253.0	37.0	국	국토교통부				
6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8-11	전	189.0	136.0	국	국토교통부				
7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02-35	하천	76,230.0	1,877.0	국	환경부				
8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02-37	하천	953.0	44.0	국	건설부				
합계				87,025.6	4,013.8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45	도로	2,445.5	303.9	공	고양시				
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51	도로	8,272.7	2,619.9	공	고양시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83	도로	3,047.6	401.5	공	고양시				
4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32	하천	3,954.7	357.5	공	서울특별시				
5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33	공원	569.6	16.6	공	은평구 (서울특별시)				
6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5	하천	1,349.3	1,349.3	공	서울특별시				
7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34	도로	3,527.0	196.4	공	서울특별시				
8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8-10	전	253.0	37.0	국	국토교통부				
9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8-11	전	189.0	136.0	국	국토교통부				
10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02-35	하천	76,230.0	1,877.0	국	환경부				
1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02-37	하천	953.0	44.0	국	건설부				
12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6	도로	3,330.6	1,363.3	공	서울특별시				
13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26-1	도로	6,735.9	1,338.1	공	서울특별시				
14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1	도로	2,706.7	765.6	공	은평구 (서울특별시)				
15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4	공원	553.0	47.2	공	은평구 (서울특별시)				
합계				114,117.6	10,853.3						

◈ 은평구공고 제2025-20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22호(1997.2.13.)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022-73호(2022.2.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향림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697호(2019.5.9.)로 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9-103호(2019.8.16.)로 최초 고시 및 은평구 고시 제2023-65호(2023.6.8.)로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향림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351-8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불광동 472-2 등 2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향림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변경)
  1) 당 초 : 토지보상 21,453㎡(불광동 472-2 등 26필지)
  2) 변 경 : 토지보상 21,453㎡(불광동 472-2 등 26필지) 및 조성사업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5.12.31.까지
바. 공고방법 : 은평구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사.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02-351-8019)
아. 열람기간 : 공고일(2025년 12월 11일)로부터 14일간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별첨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향림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소유권이외권리
1	불광동	472-2	전	1,359	1,185	윤*선	고양시 ***구 노루목로 79, ***동 901호(**동 **마을)				1	불광동	472-6	전	1,185	1,185	서울특별시				
2	불광동	산138-5	임야	1,091	916	권*철	춘천시 **로 *** 102동 ***6호(**동, ****아파트)				2	불광동	산138-9	임야	916	916	서울특별시				
3	불광동	472	전	532	532	윤*선	고양시 ***구 ***로 79, ***동 901호(**동 **마을)				3	불광동	472	전	532	532	서울특별시				
4	진관동	산56-2	임야	62	62	권*철	춘천시 **로 *** 102동 ***6호(**동, ****아파트)				4	진관동	산56-2	임야	62	62	서울특별시				
5	진관동	산56-3	임야	669	669	권*철	춘천시 **로 *** 102동 ***6호(**동, ****아파트)				5	진관동	산56-3	임야	669	669	서울특별시				
6	불광동	산137-3	임야	648	612	박*복	고양시 **구 **로2**번길 31(**동)	이몽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121	근저당권	6	불광동	산137-4	임야	612	612	서울특별시				
7	불광동	472-1	전	1,074	1,046	권*철	춘천시 **로 *** 102동 ***6호(**동, ****아파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압류	7	불광동	472-5	전	1,046	1,046	서울특별시				
8	불광동	476-1	대지	417	39	권*철	춘천시 **로 *** 102동 ***6호(**동, ****아파트)	서울특별시		압류	8	불광동	476-9	대지	39	39	서울특별시				
9	불광동	475-1	대지	38	38	전**	서울시 은평구 **로94길 5-**(불광동)				9	불광동	475-1	대지	38	38	서울특별시				
						김*숙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길 5-**(불광동)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소유권이외권리
10	불광동	산138-1	임야	11,448	2,573	주식회사 ****	서울시 은평구 **로1길 6, *동 ***호(대조동)				10	불광동	산138-8	임야	2,573	2,573	서울특별시				
11	불광동	산149	임야	3,273	1,637	호*전	서울시 **구 **로25길 28, ***동 104호(정*****원아파트)				11	불광동	산149-1	임야	1,637	1,637	서울특별시				
						이*민	서울시 노원구 **로 31, ***동 27**호(**동, 그***아파트)															
						호*수	서울시 은평구 ***21길 35, 2층동 ***호(신사동)															
12	불광동	산156-2	임야	1,414	823	차*철	서울시 은평구 ***로1길 31, 101동 ***호(*****아파트)				12	불광동	산156-7	임야	823	823	서울특별시				
13	불광동	산157	임야	397	397	권*준	서울시 송파구 ***로 212, *동 4302호(******리스)				13	불광동	산157	임야	397	397	서울특별시				
14	불광동	44-1	전	152	152	최*환	서울시 서초구 ****4길 49,***동 10**호(*****자아파트)				14	불광동	44-1	전	152	152	서울특별시				
15	불광동	44-3	전	106	106	최*환	서울시 서초구 ***로4길 49, ***동 10**호(신반포17차아파트)				15	불광동	44-3	전	106	106	서울특별시				
16	불광동	산19-7	임야	2	2	오*호	서울시 은평구 ***88가길 12(***동)				16	불광동	산19-7	임야	2	2	서울특별시				
17	불광동	산19-8	임야	19	19	오*호	서울시 은평구 통***8가길 12(**동)				17	불광동	산19-8	임야	19	19	서울특별시				
18	불광동	산19-3	임야	99	98	오*준	서울시 은평구 ***38길 21, 4층 ***호(**동)				18	불광동	산19-9	임야	98	98	서울특별시				
19	불광동	산19-5	임야	627	627	양*자	경기도 파주시 쇄**30, ***동 13**호(금촌동, **마을)				19	불광동	산19-5	임야	627	627	서울특별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소유권이외권리
						천*아	경기도 파주시 쇄**30, ***동 13**호(금촌동, **마을)													
20	불광동	산18	임야	10,512	1,588	서*자	대구시 동구 송**10길 34, 103동 ***호(****림 이스트밸리)				20	불광동	산18-1	임야	1,588	1,588	서울특별시				
						서*자	대구시 수성구 ***46길 43, 106동 ***호(보***아파트)														
						서*자	대구시 수성구 ***25안길 17, **호(지산동)														
						지*곤	경북 경산시 ***32길 20, 112동 ***호(**아파트)														
						지*석	대구시 수성구 ***25안길 17, ***호(지산동)														
						정*광	경기도 안양시 **구 **로 113, 1***호(*****아파트)														
						한*만	서울시 강남구 **로165, ***호(논현동, *****빌)														
						오*선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로 **-6														
						이*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로 375-*(**동)														
21	불광동	산6-1	임야	790	790	이*진	서울시 마포구 ***266, 113동 1***호(**아파트)				21	불광동	산6-1	임야	790	790	서울특별시				
22	불광동	산6-8	임야	750	750	강*욱	경기도 성남시 **구 중앙공원로20, ***동 ****호(**아파트)				22	불광동	산6-8	임야	750	750	서울특별시				
23	불광동	산6-10	임야	7,269	3,170	유*은	서울시 중구 소공로 46, *동 ***호(*******아파트)				23	불광동	산6-13	임야	3,170	3,170	서울특별시				
						유*훈	서울시 종로구 **길 99, ***동 7**호(**자이아파트)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위치)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위치)						이 해 관 계 인								
	동	번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소유권외의권리	동	번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소 유 자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외권리				
24	불광동	43-2	대지	1,620	159	유*경	서울시 용산구 ***27, 6동 ***호(**아파트)															
						유*원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 207동 ****호 (****티아파트)															
						유*선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99, ***동 ***호 경희궁자이아파트)															
						유*선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99, ***동 7**호 경희궁자이아파트)															
						이*형	서울시 용산구 ***27, 6동 ***호(청화아파트)															
						이*윤	서울시 용산구 ***27, 6동 ***호(청화아파트)															
						유*선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1 현대아파트 **동 **호															
						유*선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1 현대아파트 **동 ***호															
						최*수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동 ***호 혤리오시티아파트)															
						유*훈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99, ***동 ***호 경희궁자이아파트)															
						최*원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동 2***호 혤리오시티아파트)															
						유*경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27, *동 ***호(청화아파트)															
									24	불광동	43-15	대지	159	서울특별시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권리
						유*운	서울시 중구 소공로 46, *동 ***호(쌍용남산플래티넘아파트)														
25	불광동	43-1	전	94	94	오*석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길 **불광동)				25	불광동	43-1	전	94	94	서울특별시				
						오*택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고재길 **														
						오*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 1022동 ***호(판교원마을)														
						오*택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27-16, ***동 **호(한라비발리캠퍼스2차)														
26	불광동	43-12	임야	9,988	3,369	오*석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길 **(불광동)				26	불광동	43-16	임야	3,369	3,369	서울특별시				
						오*택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고재길 **														
						오*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022동 102호(판교원마을)														
						오*택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16, **동 ***호(한라비발리캠퍼스2차)														

물 건 조 서

○사업명 : 향림근린공원 조성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불광동 산19-5	고물상	컨테이너, 시설물	1식	양*자	경기도 파주시 ***30, ***동 ***호(금촌동, **마을)	1	불광동 산19-5	고물상	컨테이너, 시설물	1식	서울특별시	
					천*아	경기도 파주시 ***30, ***동 ***호(금촌동, **마을)							
2	불광동 472-2	수목	수목	27주	윤*선	고양시 ***구 노루목로 79, ***동 901호(**동 **마을)	2	불광동 472-6	수목	수목	27주	서울특별시	
3	불광동 475-1	구조물	담장, 수목 등	1식	전**	서울시 은평구 **로94길 5-**(불광동)	3	불광동 475-1	구조물	담장, 수목 등	1식	서울특별시	
					김*숙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길 5-**(불광동)							
4	불광동 산6-8	구조물	창고, 휀스	1식	강*욱	경기도 성남시 **구 중앙공원로20, ***동 ****호(**아파트)	4	불광동 산6-8	구조물	창고, 휀스	1식	서울특별시	
5	불광동 산6-10	수목,울타리	수목, 울타리	1식	유*운	서울시 중구 소공로 46, *동 ***호(*******아파트)	5	불광동 산6-13	수목,울타리	수목, 울타리	1식	서울특별시	
					유*훈	서울시 종로구 **길 99, ***동 7**호(**자이아파트)							
					유*경	서울시 용산구 ***27, 6동 ***호(**아파트)							
					유*원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 207동 ****호 (****티아파트)							
6	불광동 43-12	구조물	휀스, 수목	1식	오*석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길 **(불광동)	6	불광동 43-16	구조물	휀스, 수목	1식	서울특별시	
					오*택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고재길 **							
					오*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022동 102호(판교원마을)							
					오*택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16, **동 ***호(한라비발리캠퍼스2차)							

◈ 은평구공고 제2025-207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22호(1997.2.13.)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022-73호(2022.2.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향림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758호(2020.5.21.)로 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109호(2020.6.29.)로 최초 고시 및 은평구 고시 제2023-93호(2023.7.13.)로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향림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351-8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55-11 등 16필지
※ 불광동 45-1 1필지 사업 시행지 제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향림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변경)
○ 당 초 : 토지보상 3,421㎡(진관동 산55-11 등 17필지)
○ 변 경 : 토지보상 3,388㎡(진관동 산55-11 등 16필지) (감 33㎡) 및 조성사업
※ 변경사유 : 불광동 45-1 사업 시행지 제외에 따른 면적 감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5.12.31.까지

바. 공고방법 : 은평구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사.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02-351-8019)

아. 열람기간 : 공고일(2025년 12월 11일)로부터 14일간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별첨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향림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변경전										변경후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권리
1	진관동	산55-11	임야	9	9	홍*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길 **, **동 ***호(압구정동, **아파트)				1	진관동	산55-11	임야	9	9	서울특별시				
						홍*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 ***동 ****호(한남동, 현대*****)														
						홍*표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 **, ***동 ***호(반포동, 반포**아파트)														
						홍*민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길 **, ***동 ****호 (잠원동, **아파트)														
						함*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 *동 ***호(잠실동, ******아파트)														
						함*인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천호동)														
2	진관동	산55-12	임야	79	79	홍*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 **동 ***호(압구정동, **아파트)				2	진관동	산55-12	임야	79	79	서울특별시				
						홍*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 ***동 ****호(한남동, 현대*****)														
						홍*표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 **, ***동 ***호(반포동, 반포**아파트)														

변경 전												변경 후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3	진관동	산55-10	임야	6	6	홍*민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길 **, ***동 ****호 (잠원동, **아파트)					3	진관동	산55-10	임야	6	6	서울특별시					
						함*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 *동 ***호(잠실동, ******아파트)																
						함*인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천호동)																
						홍*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 **동 ***호(압구정동, **아파트)																
						홍*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 ***동 ****호(한남동, 현대*****)																
						홍*표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 **, ***동 ***호(반포동, 반포*아파트)																
						홍*민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길 **, ***동 ****호 (잠원동, **아파트)																
						함*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 *동 ***호(잠실동, ******아파트)																
						함*인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천호동)																
4	진관동	산55-9	임야	65	65	홍*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 **동 ***호(압구정동, **아파트)					4	진관동	산55-9	임야	65	65	서울특별시					

변경 전												변경 후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권리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권리
5	진관동	363-8	전	34	34	장*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 ***동 ***호(언남동, ****아파트)					5	진관동	363-8	전	34	34	서울특별시				
6	진관동	산55-18 (산55)	임야	26,047	1,190	홍*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 **동 ***호(압구정동, **아파트)					6	진관동	산55-18	임야	1,190	1,190	서울특별시				
						홍*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 ***동 ****호(한남동, 현대*****)															
						홍*표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 **, ***동 ***호(반포동, 반포**아파트)															
						홍*민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길 **, ***동 ****호 (잠원동, **아파트)															
						함*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 *동 ***호(잠실동, ******아파트)															
						함*인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천호동)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위치)				이 해 관 계 인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위치)				편입면적(㎡)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동	번지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동	번지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권리
								함*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 *동 ***호(잠실동, ******아파트)														
								함*인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천호동)														
7	진관동	367-9	대	165				이*연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가학동)				7	진관동	367-9	대	165	165	서울특별시				
8	진관동	367-7	대	264				권*철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 ***동 ****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8	진관동	367-7	대	264	264	서울특별시				
9	진관동	366-3	대	165				김*일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		은평구	(세무2고)	9	진관동	366-3	대	165	165	서울특별시				
								이*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김*철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 한양아파트 **동 ****호														
								김*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아파트 **동 1001호														
								김*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														
10	진관동	366-2	대	145				이*재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				10	진관동	366-2	대	145	145	서울특별시				
11	진관동	366-8	대	20				황*옹	경기도 시흥시 서면 광명리 광명아파트 24동 306호				11	진관동	366-8	대	20	20	서울특별시				
12	진관동	산56-4	임야	99				권*철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 ***동 ****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12	진관동	산56-4	임야	99	99	서울특별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권리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권리
13	불광동	산138-5	임야	175	175	권*철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 ***동 ****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13	불광동	산138-5	임야	175	175	서울특별시				
14	불광동	476-10 (476-1)	대	417	108	권*철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 ***동 ****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14	불광동	476-10	대	108	108	서울특별시				
15	진관동	산54-11 (산54)	임야	10,607	743	김*환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 **동 ****호 (압구정동, **아파트)					15	진관동	산54-11	임야	743	743	서울특별시				
						김*숙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 **동 **호 (압구정동, **아파트)															
						김*환	서울시 중구 다산로32, **동 ***호(신당동, ****아파트)															
						김*환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3길 **, *동 ***호(양재동, ****)															
						김*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9길 **, **동 ***호(역삼동)															
						오*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 **동 ****호 (압구정동, **아파트)															
16	불광동	산155-2 (산155)	임야	8,207	121	호*전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25길 **, ***동 ***호 (정릉동, ********아파트)					16	불광동	산155-2	임야	121	121	서울특별시				
						이*미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 ***동 ***호 (양평동3가, ********아파트)													연신내새마을금고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	근저당
						원*자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7길 **-*(불광동)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7	불광동	45-1	도로	33	33	김*주 차*보 차*선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				보 상 제 외									
						차*숙														
						차*아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													
						전*순 차*정 차*환 차*탁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													

물 건 조 서

○사업명 : 향림근린공원 조성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불광동 476-10 (476-1)	석조 구조물	콘크리트	1식	권*철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5, 1**동 11**호(후평동, **** 아파트)	1	불광동 476-10	석조 구조물	콘크리트	1식	서울특별시	
2	불광동 476-10 (476-1)	이동식 주택	-	1식	권*철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5, 1**동 11**호(후평동, **** 아파트)	2	불광동 476-10	이동식 주택	-	1식	서울특별시	
3	불광동 476-10 (476-1)	고물상	컨테이너, 시설물 등	1식	황*하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 (통일로 **길 1)	3	불광동 476-10	고물상	컨테이너, 시설물 등	1식	서울특별시	

◈ 은평구공고 제2025-207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호(1995.1.20.)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103호(2004.4.10.)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016-92호(2016.4.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오릉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609호(2020.4.23.)로 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113호(2020.6.29.) ,제2021-241호(2021.12.23.) 및 제2023-97호(2023.7.13.)로 변경 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시행하고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4. 관계도서는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61 등 2필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 당초 : 토지보상 810㎡(진관동 산61 등 2필지)
  - 변경 : 토지보상 810㎡(진관동 산61 등 2필지) 및 조성사업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5.12.31.

바. 고시방법 : 서울시보에 게재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진관동	산61	임	13,450	532	박*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아파트 **동 ***호				
						이*준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5길 *, ***호(**동)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대표자)			
						이*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 수기마을***** ***동 ***호	이*보	울산시 남구 동산로69번길 **, ***동 ****호(신정동, 문수로2차 ****)	근저당권자	
						황*덕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동)				
2	갈현동	285-275	대	278	278	임*규	서울시 중랑구 묵동 ***, ****** ***동 ****호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진관동	산61-3	임	532	532	서울특별시					
2	갈현동	285-275	대	278	278	서울특별시					

◈ 은평구공고 제2025-2080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465호(1971.8.7.)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09호(1994.4.4.)호로 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83(2022.6.30.)호로 조성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2020.6.2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된 북한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759호(2020.5.21.)로 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114호(2020.6.29.) 및 제2023-98호(2023.7.13.)로 고시한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351-80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3-108 등 8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변경) :
  (당초) 토지보상 2,847㎡(불광동 23-108 등 8필지)→ (변경) 토지보상 2,847㎡(불광동 23-108 등 8필지)및 공원조성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5.12.31.까지
바. 공고방법 : 은평구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사.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02-351-8004)
아. 열람기간 : 공고일(2025년 12월 11일)로부터 14일간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별첨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불광동 23-108	전	304	304	윤**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82길 **, ***호(불광동, **아파트)				불광동 23-108	전	304	304	서울특별시					
					이**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524동 ***호(시흥동, **아파트)	유**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6동 ***호(불광동, **빌라)	채권자										
							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번길 ** (삼송동)	채권자										
					이**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10길 **-7, *층 ***호(가락동)													
2 (변경)	불광동 23-3	임	512	102	정**	서울시 서대문구 문화촌길 6-**, 102동 ****호(홍제동, *****아파트)				불광동 23-110	임	102	102	서울특별시					
3	불광동 8-313	전	437	437	홍**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수12로 **, ***호 (삼룡동)				불광동 8-313	전	437	437	서울특별시					
4 (변경)	불광동 8-58	대	810	754	홍**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90길 ** 101동 ****호(원효로1가, *****임)				불광동 8-314	대	754	754	서울특별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표시(면적구분)	소유자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5 (변경)	불광동 산35-20	임	863	491	가동 1호 84.491/863	1/3	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1, ***호(도내동)				불광동 산35-25	임	491	491	서울특별시						
						1/3	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10, ***동 ***호(성산동, ****)	서****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95	근저당권											
						1/3	창**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 *, ***호(구기동, ****)														
					가동 2호 68.491/863	1/3	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1, ***호(도내동)														
						1/3	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10, ***동 ***호(성산동, ****)	서****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95	근저당권											
						1/3	창**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 *, ***호(구기동, ****)														
					가동 3호 67.491/863	1/3	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1, ***호(도내동)														
						1/3	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10, ***동 ***호(성산동, ****)	서****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95	근저당권											
						1/3	창**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 *, ***호(구기동, ****)														
					나동 5호 51.4 491/863	1/3	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1, ***호(도내동)														
						1/3	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10, ***동 ***호(성산동, ****)	서****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95	근저당권											
						1/3	창**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 *, ***호(구기동, ****)														
					나동 6호 33.491/863	1/3	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1, ***호(도내동)														
						1/3	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10, ***동 ***호(성산동, ****)	서****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95	근저당권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표시(면적구분)	소유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3	창**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 *, ***호(구기동, ****)													
					나동 7호	1/3	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1, ***호(도내동)													
					33 491/863	1/3	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10, ***동 ***호(성산동, ****)	서****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95	근저당권										
						1/3	창**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 *, ***호(구기동, ****)													
					나동 8호	1/3	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1, ***호(도내동)													
					51.4 491/863	1/3	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10, ***동 ***호(성산동, ****)	서****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95	근저당권										
						1/3	창**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 *, ***호(구기동, ****)													
					나동 9호	1/3	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1, ***호(도내동)													
					35 491/863	1/3	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10, ***동 ***호(성산동, ****)	서****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95	근저당권										
						1/3	창**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 *, ***호(구기동, ****)													
					신원미상																
					440 491/863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6	불광동 산43-108	임	364	364	홍**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수12로 **, ***호(삼룡동)				불광동 산43-108	임	364	364	서울특별시					
7	진관동 산40-6	임	351	351	이**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48길 **-**(진관동)	은평구		(압류)	진관동 산40-6	임	351	351	서울특별시					
							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2, **** **아파트 ***동 ***2호	근저당권자										
8 (변경)	불광동 산37-3	임	5,395	44	신**	경북 문경시 산양면 연소길 **				불광동 산37-4	임	44	44	서울특별시					
					석**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튼 북서쪽 에이커리 ****-113													

물 건 조 서

○사업명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

변경전									변경후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표시	면적 (㎡)	소유 지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표시	면적 (㎡)	소유 지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불광동 산35-20	건물1동	연립주택 (연와조, 스라브기와)	나동 5호	78.28	1/3	정*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1, ***호(**동)	불광동 산35-25	건물1동	연립주택 (연와조, 스라브기와)	나동 5호	78.28	1/3	서울특별시	
				나동 6호	78.28							나동 6호	78.28			
				나동 7호	78.28	1/3	김*순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10, ***동 ***호(성산동, ****)				나동 7호	78.28	1/3		
				나동 8호	78.28							나동 8호	78.28			
				나동 9호	78.28	1/3	창*민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 *, ***호 (구기동, ****)				나동 9호	78.28	1/3		
2	진관동 산40-6	건물1동	일반주택 (세멘블럭조, 1층)	1식	-	-	이*호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길 *0-*1(진관동)	진관동 산40-6	건물1동	일반주택 (세멘블럭조, 1층)	1식	-	-	서울특별시	

◈ 은평구공고 제2025-2081호

도시계획시설(진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92호(2013.3.28.)로 최종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133호(1995.5.15.)로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2021-322호(2021.7.8.)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되었으며, 은평구 고시 제2019-101호(2019.8.8.)로 실시계획(최초)인가 및 은평구 고시 제2023-94호(2023.7.13.)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진관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진관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351-80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93-11 등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진관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 당초) 토지보상 1,262㎡(진관동 산93-11 등 3필지)
  ○ 변경) 토지보상 및 공원 조성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고시일로부터 ~ 2025. 12. 31.
  ○ 변경) 고시일로부터 ~ 2026. 12. 31.
바. 공고방법 : 은평구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사.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02-351-8027)
아. 열람기간 : 공고일(2025년 12월 11일)로부터 14일간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별첨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진관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진관동 산93-11	임야	198	198	윤*선	제주도 제주시 우정로4길 **, ***호(**일동)				진관동 산93-11	임야	198	198	서울특별시					
2	진관동 산93-18	임야	298	298	윤*선	제주도 제주시 우정로4길 **, ***호(**일동)				진관동 산93-18	임야	298	298	서울특별시					
3	진관동 산76-13	임야	766	766	김*학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28길 *, ***동 ****호(신수동, **아파트)				진관동 산76-13	임야	766	766	서울특별시					
					김*근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36나길 **, ***동 ****호(창동, *****아파트)													
					김*숙	부천시 지봉로143번길 **, *동 ***호(역곡동, **아파트)													
					정*숙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 ***동 ***호(상일동, 고덕****아파트)													

물 건 조 서

○사업명 : 진관근린공원 조성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진관동 산76-13	묘지	묘지(봉분)	4기	김*학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28길 *, ***동 ****호(신수동, **아파트)	진관동 산76-13	묘지	묘지(봉분)	4기	서울특별시	
					김*근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36나길 **, ***동 ****호(창동, *****아파트)						
					김*숙	부천시 지봉로143번길 **, *동 ***호(역곡동, **아파트)						
					정*숙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 ***동 ***호(상일동, 고덕****아파트)						

◈ 은평구공고 제2025-208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은평구 고시 제7호(1993.3.27.)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128호(1996.5.15.)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021-323호(2021.7.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신사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575호(2020.4.16.)로 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105호(2020.6.29.)로 최초 고시 및 은평구 고시 제2023-91호(2023.7.13.)로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신사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351-8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80-26(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신사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변경)
  1)당　　초 : 토지보상 780㎡(신사동 산80-26)
  2)변　　경 : 토지보상 780㎡(신사동 산80-26) 및 조성사업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5.12.31.까지
바. 공고방법 : 은평구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사.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02-351-8027)
아. 열람기간 : 공고일(2025년 12월 11일)로부터 14일간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별첨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신사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신사동	산80-26	임야	780	780	정**	서울시 마포구 신*동*				신사동	산80-26	임야	780	780	서울특별시					

◈ 은평구공고 제2025-208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계획시설(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16호(1997.5.6.)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155호(1995.6.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2025-498호(2025. 9. 1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불광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불광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576호(2020.4.16.)로 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3-92호(2023.7.13.)로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351-80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32-10 등 2필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불광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변경)
 ○ 당 초: 토지보상 1,080㎡
 ○ 변 경: 토지보상 1,080㎡ (불광동 산32-10) 및 조성사업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고시일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고시일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09:00~18:00)
사. 열람장소: 서울시 은평구 공원녹지과(은평구 은평로 195 5층, ☎351-8017)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불광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변경전										변경후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불광동	산32-10	임야	603	603	염*자	경기도 ***군 **읍 **리 241				1	불광동	산32-10	임야	603	603	서울특별시				
2	불광동	산58-26	임야	477	477	박*석	서울시 **구 **동 409 ***아파트 2**동1**6호				2	불광동	산58-26	임야	477	477	서울특별시				
						박*현	서울시 **구 **동 4*5 ****아파트 1*7-2**호														
						박*현	서울시 **구 *동 9*3 ******아파트 3*7동 5**호														

◈ 은평구공고 제2025-2084호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218호(1966.2.7.)로 최초 결정되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807호(1989.12.27.)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1호(1990.4.25.)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 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447호(2022.11.1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백련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백련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607호(2020.4.23.)로 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111호(2020.6.29.) 및 은평구 고시 제2023-95호(2023.7.13.)로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351-80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
(당초)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1-32 등 3필지→(변경)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1-59 등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백련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변경):
(당초)토지보상 215㎡(응암동 31-32 등 3필지)→(변경)토지보상 215㎡(응암동 31-59 등 3필지) 및 공원조성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5.12.31.까지

바. 공고방법 : 은평구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사.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02-351-8004)

아. 열람기간 : 공고일(2025년 12월 11일)로부터 14일간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별첨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백련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응암동 31-32	대	83	12	함**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26				응암동 31-59	대	12	12	서울특별시					
2	응암동 산7-4	임	3	3	이**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13길 ***(***동)	대한민국*** (권리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제1과	가처분금지(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응암동 산7-4	임	3	3	이**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13길 ***(***동)	대한민국***(권리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제1과	가처분금지(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변경없음
3	응암동 산7-250	임	200	200	****공사	서울시 여의공원로 ***번지				응암동 산7-250	임	200	200	서울특별시					

◈ 양천구공고 제2025-2257호

도시계획시설(온수근린공원 연의지구)사업 공사 완료 공고

1. 건설부 고시 제465(1971.08.0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21호(2025.11.13.)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습니다.

2. 양천구고시 제2019-46(2019.07.04.)호, 양천구 고시 제2019-58(2019.08.01.)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350-31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칭 : 온수근린공원(연의지구)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내용
  1). 면적 : 28,155㎡(연의지구)
  2). 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 조성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양천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마. 사업기간 : 2019. 2. ~ 2025. 10.
바. 관계도서 비치 : 양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0-3574)

◈ 동작구공고 제2025-2173호

「상도동 283-226번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보상 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동작구고시 제2025-153호(2025. 11. 6.)로 실시계획 고시된『상도동 283-226번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보상』사업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동 작 구 청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상도동 283-226번지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보상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83-226 (사회복지시설 3,096.5㎡)	실시계획고시일 ~ 2026. 12. 31.

* 해당 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열람내용
물건	상도동 283-226번지 토지에 소재한 지장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지정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5. 12. 11.(목) ~ 12. 25.(목) ※ 변동가능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동작구청 4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6. 2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보상법 제74조에 의거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 02-820-10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공고 제2025-24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227호(2021.10.28.)로 결정(변경)되고, 서초구 고시 제2022-59호(2022.03.1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서초구 고시 제2022-85호(2022.04.14.)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구간의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개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4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서초구 반포동 12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위 치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3	A	6~8	국지도로	206	반포동 128-12	반포동 128-12	21.10.28.	서초구고시 제2021-227호
소로	3	B	4	국지도로	8	반포동 124	반포동 65-1	21.10.28.	서초구고시 제2021-227호

4)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변경)

[변경 전]
- 명칭 : 주식회사 랜드미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05, 4층(역삼동, YK빌딩)

[변경 후]
- 명칭 : 폴코리아반포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1층(여의도동, 투아이에프씨)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변경 전 : 2022. 04. 14. ~ 2025. 12. 31.
- 변경 후 : 2026. 01. 01. ~ 2030. 12. 31.

6)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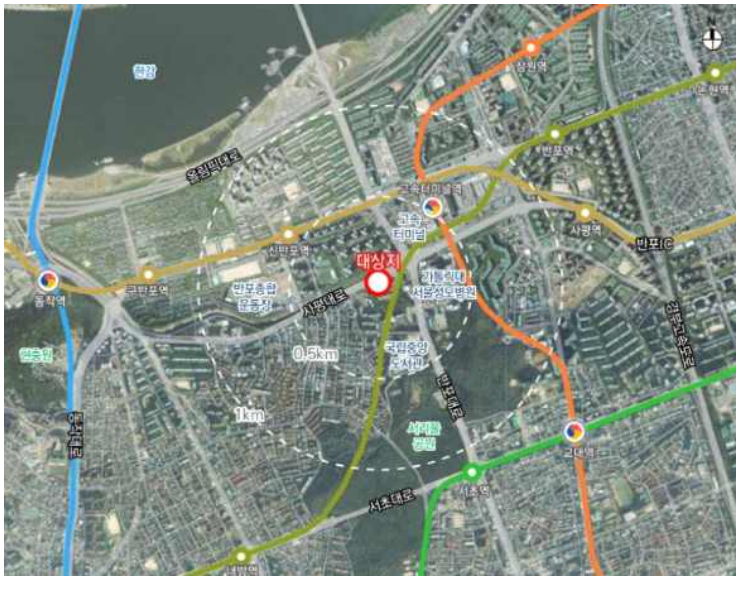
번호	동	지번	지목	면적(㎡)		변경 전 소유자별	변경 후 소유자별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	서초구 반포동	64-1	대	2,489.3	148.6	한국자산신탁(주)	신한자산신탁(주)	
2		64-3	대	1,754.8	111.6			
3		64-4	대	1,266.8	163.8			
4		64-6	대	64.8	12.4			
5		64-7	대	28.1	28.1			
6		529-2	대	45.0	45.0			
7		530-1	대	126.0	69.1			
8		64-8	도	10.0	10.0	서초구청	서초구청	
9		65-3	도	212.9	212.9			
10		124	도	1,253.2	566.7			
11		529-5	도	45.0	45.0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다.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위치도



◈ 강남구공고 제2025-2764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55-16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3052호(2024.12.26.)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55-16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04.09.) 심의 및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2025.10.29.)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하오니,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강 남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3)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55-16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강남구 논현동 55-16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논현동 55-16 일원	-	증) 3,420.5	3,420.5	-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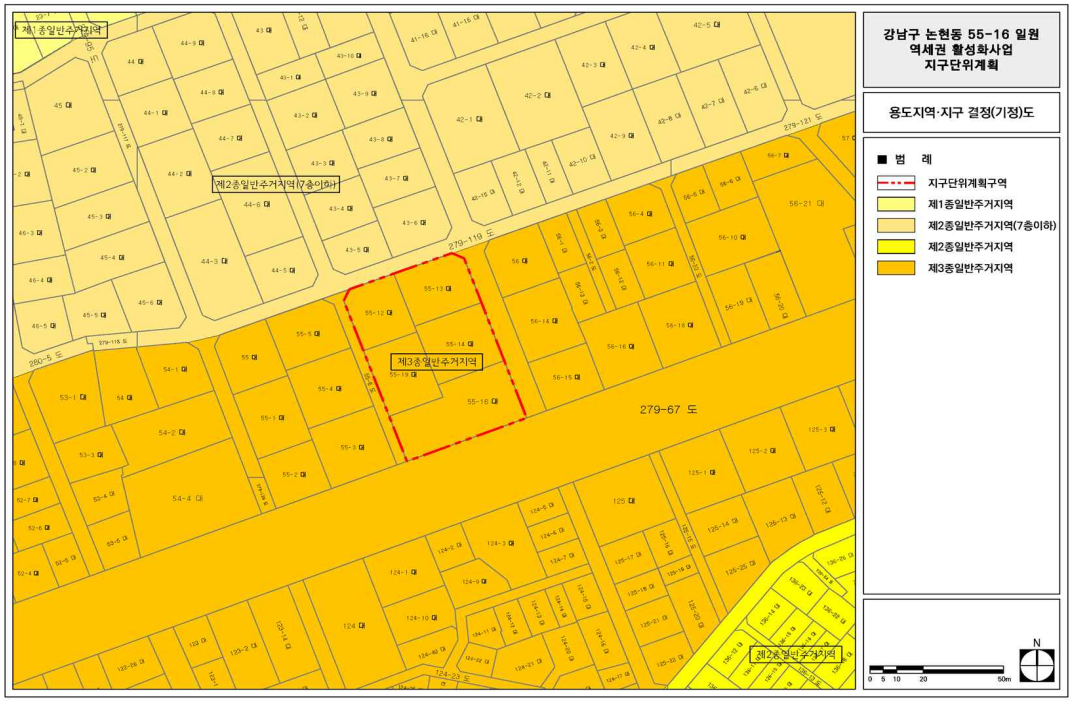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안) : 게재생략(열람도서 참고)
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안) : 게재생략(열람도서 참고)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안) : 게재생략(열람도서 참고)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안) : 게재생략(열람도서 참고)
라. 관련도서 :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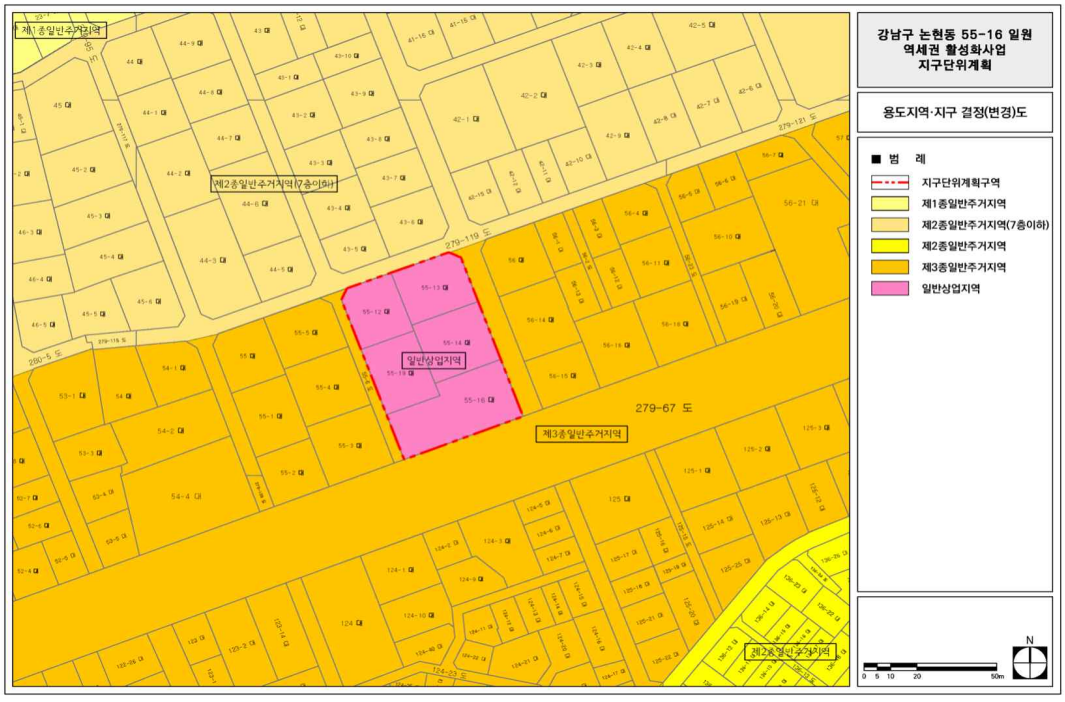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3)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강남구공고 제2025-2778호

도시공원(대모산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대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강 남 구 청 장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내역

연번	공원명	위치(소재지)	지목	부지사용계약면적(㎡)
1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강남구 일원동 산52-9	임야	44,530
2		강남구 개포동 산177-1	임야	7,126
3		강남구 개포동 산177-3	임야	1,082

2. 부지사용 계약일: 2025. 12. 1.

3. 부지사용 계약기간: 2025. 12. 1. ~ 2028. 10. 1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공고 제2025-2209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47호(1978.2.16.)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송파구고시 제132호(2019.11.28.), 송파구고시 제47호(2021.3.11.), 송파구고시 제61호(2025.6.5.)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서울아산병원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풍납동 388-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2) 명칭 : 서울아산병원 증축사업
다. 사업시행자
  1) 성명 :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정몽준
  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풍납동 388-1번지)
라. 사업규모
  - 대지 면적: 138,845.3㎡ (변경 없음)
  - 건축 면적: 61,802.33㎡ → 60,549.89㎡ (감 1,252.44㎡)
  - 연 면 적: 648,894.73㎡ → 604,655.69㎡ (감 44,239.04㎡)
  - 지상층연면적: 346,978.1㎡ → 343,207.12㎡ (감 3,770.98㎡)
  ※ 금회 변경사항: D동(심 · 뇌혈관동) → 중입자치료센터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 등
마. 사업기간 변경 : 인가일 ~ 2028. 1. 31. → 인가일 ~ 2031. 6. 30.
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 (열람 장소 비치)
사. 관계도서 : 생략 (열람 장소 비치)
아. 열람기간 및 장소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5. 12. 11. ~ 2025. 12. 24.)
  2)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02-2147-2992)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4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자연성회복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 내 한강 (행주대교~한강대교)	선박 5척: 1,465.06㎡ (기선2척, 부선3척)	반포 자연형 호안 복원공사을 위한 선박운항	'25. 12. 5. ~ '26. 3. 23.	'25. 12. 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4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세경마리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86, 6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21-9	마리나선박 1척 (헤레나/8.55톤)	마리나선박 대여업 운영	2026. 1. 1. ~ 2026. 12. 31.	2025. 12. 8.

사업소공고

◈ 강남소방서공고 제2025-5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한 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 및 소재지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소재지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11일
강 남 소 방 서 장

1. 제 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25. (14일간)

3. 공고대상

연번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1	㈜아는소방씨엔씨	심**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841호(수서동, 로즈데일빌딩)	송** 해임(2025-06-21)을 2025-08-28에 신고함	과태료 100만원
2	㈜아는소방씨엔씨	심**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841호(수서동, 로즈데일빌딩)	김** 해임(2025-07-23)을 2025-08-28에 신고함	과태료 50만원
3	㈜아는소방씨엔씨	심**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841호(수서동, 로즈데일빌딩)	이** 해임(2025-07-23)을 2025-08-28에 신고함	과태료 50만원
4	㈜아는소방씨엔씨	심**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841호(수서동, 로즈데일빌딩)	문** 해임(2025-07-28)을 2025-08-28에 신고함	과태료 50만원

4. 공고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 및 소재지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소재지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강남소방서 예방과(☎ 02-6981-7526)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 1. 9.(금) 까지
- 제출방법 : 우편(강남소방서 민원실), 전자우편(1004jh@seoul.go.kr), 방문제출 등
- 작성방법 : 붙임참조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 20%가 감경되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예정된 과태료 금액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강남소방서 예방과(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 ☎ 02-6981-7526)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소 방 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25-47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영등포소방서장

○ 등록대상

업 종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엔지니어링삼마	제 서울(영등포)- 2025-0003호 (2025. 12. 4.)	이혜린 임재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09 ,제5층 제 18호	02-866-01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소방방서 위험물안전팀(☎02-6981-70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5-481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의제기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간 이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5. 12. 11. ~ 2025. 12. 24. (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5. 12. 25. ~ 2026. 01. 07. (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년월일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통지일	의견제출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송달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우편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1	10-2 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모전및이용에관한위반과태료	2025-11	009090	61042 5-*** *****	표*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11-01 18:53	50,000	2025-11-11	2026-01-07	1078 8347 2898 7	2025-11-21	기타	제2025-481호	1	2025-12-05	2025-12-11	2025-12-24	1326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19,	6114 357	윤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2	10-2 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모전및이용에관한위반과태료	2025-11	009101	74100 6-*** *****	이*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11-08 16:18	50,000	2025-11-11	2026-01-07	1078 8347 2898 4	2025-11-21	기타	제2025-481호	1	2025-12-05	2025-12-11	2025-12-24	0308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7길	6114 357	윤영총괄과	양화한강공원내 양화1호 앞 매점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4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치수과) ☎02-3780-0656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439-1
 - 면 적: (영구) 741.1㎡ : 계단, 경사로, 내부통로, 육갑문
 (임시) 3,787.8㎡ : 적치장 및 여유공간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구암나들목 리모델링(육갑문 설치 등)

5. 점용기간: 2025.12.04. ~ 2030.12.03.

6. 공사기간: 2025.12.04. ~ 2026.12.30.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0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정정) 고시

2021년 2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마포구 성산동 670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정정) 사유 : ’ 21.2.25.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고시하였으나 도면과 지정대상지 현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를 정정하고자 함(붙임1, 붙임2)

2. 지정(정정) 연월일 : 2025. 12. 8.

3. 지정(정정)대상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

구 분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70 일대	공원	106,302.5	31,000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70	공원	106,302.5	31,000	지번정정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3)과 같음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산지방재과(☎02-2133-2182), 서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02-6438-2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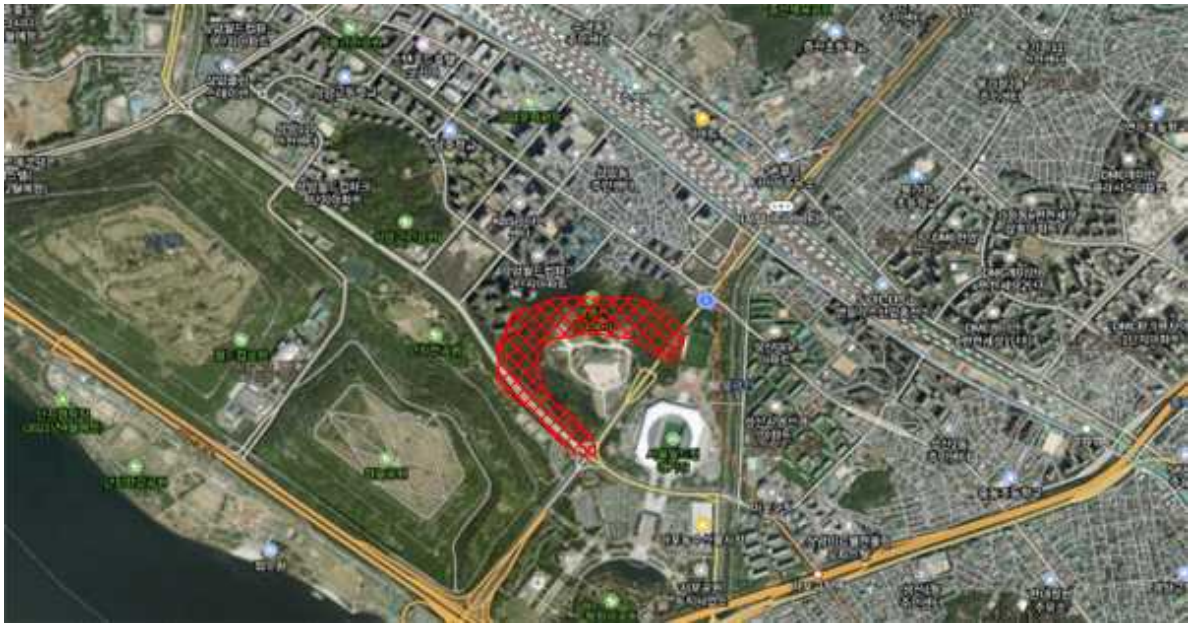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정정) 대상지 토지 조서

구 분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성 명	주 소	
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70 일대	공원	106,302.5	31,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70	공원	106,302.5	31,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지번정정

【붙 임 2】

번호: 2021년도 제 3 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 도면(기정)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기정)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70 일대	공원	106,302.5	31,000	제2021-106호·2021.2.25.

번호: 2025년도 제 1 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정정) 구역 도면 (변경)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변경)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70	공원	106,302.5	31,000	

【붙 임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⑦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